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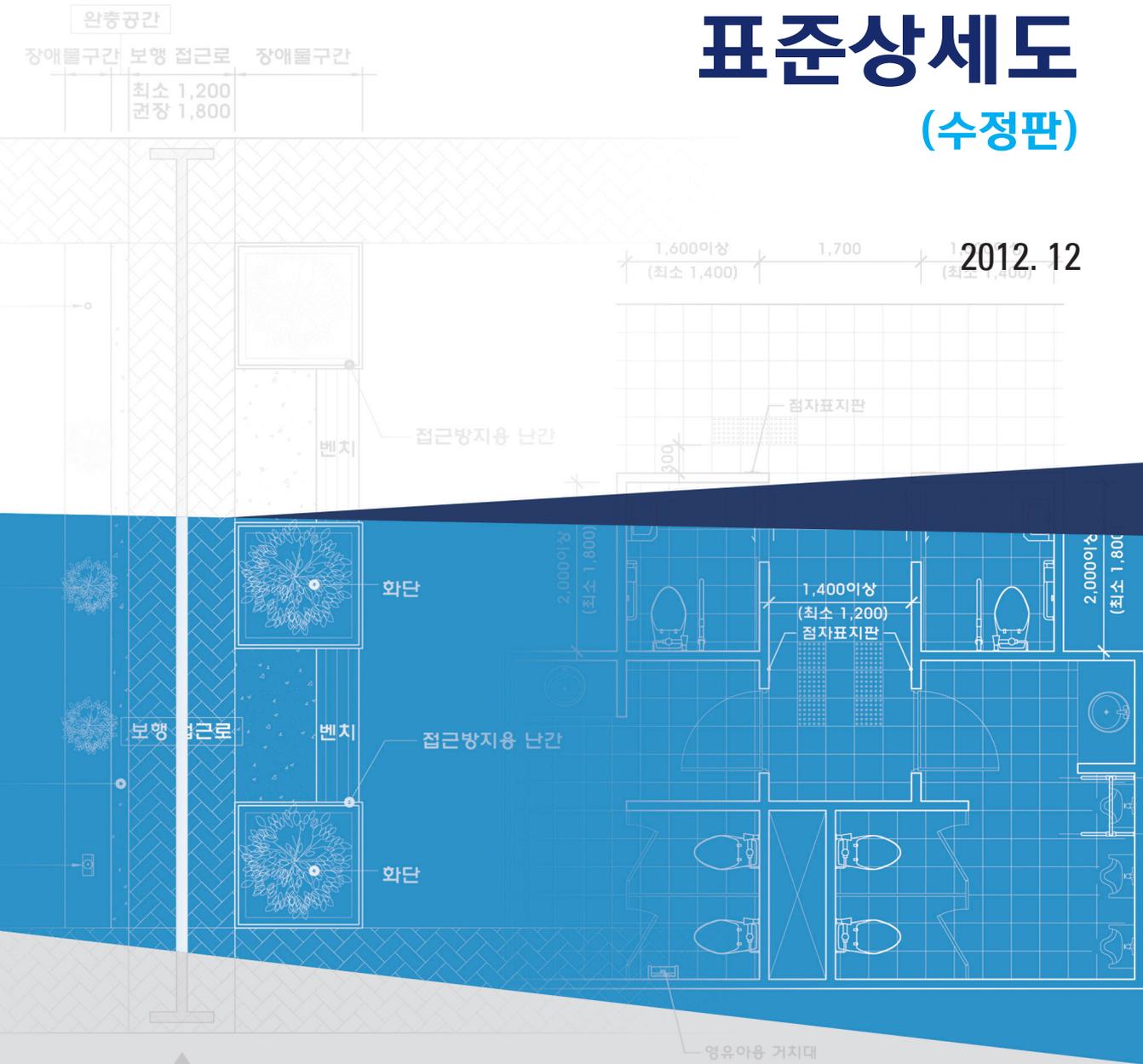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383-01

자료11-05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수정판)

2012. 12



보행자출입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구분	1. 매개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A-100-00	1.0.0 목차	1. 매개시설
A-200-00	2.0.0 목차	2. 내부시설
A-300-00	3.0.0 목차	3. 위생시설
A-400-00	4.0.0 목차	4. 안내시설
A-500-00	5.0.0 목차	5. 기타시설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1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교차없이 분리된 경우
B-111-02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경우
B-111-03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완전 분리된 경우
B-111-04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접근로
B-111-05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울타리
B-111-06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화단
B-111-07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잔디식재
B-111-08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접근로내 휠체어 교행공간
B-112-09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0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1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2	1.1.2 기울기 등	경사로 설치
B-112-13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3-14	1.1.3 경계	-
B-114-15	1.1.4 재질과 마감	-
B-114-16	1.1.4 재질과 마감	틈새가 없는 덮개-일체형
B-114-17	1.1.4 재질과 마감	틈새가 없는 덮개-분리형
B-114-18	1.1.4 재질과 마감	격자 살간격 20mm이하
B-114-19	1.1.4 재질과 마감	격자 살간격 10mm이하
B-114-20	1.1.4 재질과 마감	우수맨홀, 집수정 상세도
B-115-21	1.1.5 보행장애물	보행 접근로 완충공간
B-115-22	1.1.5 보행장애물	장애물존 완충공간
B-115-23	1.1.5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B-121-24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바로접근
B-121-25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보행접근로를 통해 주진입구에 접근
B-121-26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접근 경사로를 주차구역 전체에 설치한 경우
B-121-27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구분	1. 매개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B-121-28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경사로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B-121-29	1.2.1 설치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방식
B-121-30	1.2.1 설치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방식
B-121-31	1.2.1 설치장소	차량진출입부 험프구간 상세도
B-122-32	1.2.2 주차공간	-
B-123-33	1.2.3 유도 및 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안내도
B-123-34	1.2.3 유도 및 표시	유도 표지판
B-123-35	1.2.3 유도 및 표시	안내 표지판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1-36	1.3.1 턱낮추기	주출입문(자동문) 단차 상세도
B-131-37	1.3.1 턱낮추기	주출입문(여닫이문) 단차 상세도
B-132-38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계단, 경사로 설치
B-132-39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계단, 경사로 설치
B-132-40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경사로만 설치
B-132-41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구분	2. 내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2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여닫이문
C-211-43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자동문
C-211-44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여닫이문
C-211-45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여닫이문
C-211-46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미닫이문
C-212-47	2.1.2 문의 형태	강화유리문
C-212-48	2.1.2 문의 형태	철재문
C-212-49	2.1.2 문의 형태	목재문
C-213-50	2.1.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1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200인 경우
C-221-52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500인 경우
C-221-53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인 경우
C-221-54	2.2.1 유효폭	교행가능구간 확보한 경우
C-223-55	2.2.2 손잡이	-
C-224-56	2.2.3 보행장애물	복도의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C-224-57	2.2.3 보행장애물	계단의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C-225-58	2.2.4 안전성 확보	-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1-59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직선형 계단설치
C-231-60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꺾임형 계단설치
C-231-61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ㄱ자형 계단설치
C-232-62	2.3.2 디딤판과 철편	-
C-233-63	2.3.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2.4 장애인용 승강기	
C-241-64	2.3.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C-242-65	2.4.2 이용자 조작설비	-
	2.5 휠체어리프트	
C-251-66	2.5.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C-251-67	2.5.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C-252-68	2.5.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2.6 경사로	
C-261-69	2.6.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구분	3. 위생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1-70	3.1.1 설치장소	일반화장실 입구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D-311-71	3.1.1 설치장소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 설치
D-312-72	3.1.2 출입문의 형태	여닫이문
D-312-73	3.1.2 출입문의 형태	미닫이문
D-312-74	3.1.2 출입문의 형태	접이문
D-312-75	3.1.2 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D-312-76	3.1.2 출입문의 형태	큐비클 슬라이딩문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1-77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기본형(최소형)-1,400X1,800
D-321-78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1,800X1,800
D-321-79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1,800X2,000
D-321-80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2,000X2,000
D-322-81	3.2.2 손잡이	좌우회전식 손잡이, 상하회전식 손잡이
D-323-82	3.2.3 기타 설비	누름버튼식(벽부착형, 바닥 부착형)
D-323-83	3.2.3 기타 설비	전자감지식 대변기 수세밸브
	3.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소변기)	
D-331-84	3.3.1 구조	평면도, 측면도
D-331-85	3.3.1 구조	정면도
D-332-86	3.3.2 손잡이	-
	3.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세면대)	
D-341-87	3.4.1 구조	평면도, 측면도
D-341-88	3.4.1 구조	정면도
	3.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D-351-89	3.5.1 설치장소 및 구조	-
	3.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D-361-90	3.6.1 설치장소 및 구조	-
D-362-91	3.6.2 기타설비	탈의실 수납공간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2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3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4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세로형
D-371-95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6	3.7.1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휴지통
D-372-97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벽고정형
D-372-98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벽고정형
D-372-99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코너형

구분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4.1 점자블록	
E-411-100	4.1.1 규격 및 색상	-
E-412-101	4.1.2 설치방법	유도방향에 따라 설치
E-412-102	4.1.2 설치방법	접근로에서 선형블록의 설치
E-412-103	4.1.2 설치방법	접근로에서 점형블록의 설치
E-412-104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 접근로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E-412-105	4.1.2 설치방법	유도블록 선상에 설치 불가능한 지장물이 발생한 경우
E-412-106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E-412-107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에서 방풍실 깊이에 따른 점자블록 설치
E-412-108	4.1.2 설치방법	로비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4.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E-421-109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주출입구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E-421-110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주출입구에 근접해 있는 경우
E-421-111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복도에서의 점자안내판 설치
E-421-112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입식 점자안내판 상세도
E-422-113	4.2.2 음성안내장치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E-422-114	4.2.2 음성안내장치	종합안내센터 화상전화기 설치
E-422-115	4.2.3 기타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위치(주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1-116	5.1.1 설치장소 및 구조	더블룸
F-511-117	5.1.1 설치장소 및 구조	싱글룸
F-512-118	5.1.2 기타 설비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콘센트/스위치, 점자표지판설치
F-512-119	5.1.2 기타 설비	객실 내 화장실 설치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1-120	5.2.1 설치장소	전체 관람석 수가 200석 미만
F-521-121	5.2.1 설치장소	전체 관람석 수가 500석 미만
F-521-122	5.2.1 설치장소	관람석 중간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1-123	5.2.1 설치장소	관람석 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1-124	5.2.1 설치장소	관람석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2-125	5.2.2 관람석의 구조	휠체어 사용자 좌석의 유효바닥면적
F-522-126	5.2.2 관람석의 구조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유형
F-522-127	5.2.2 관람석의 구조	앞에 좌석이 없는 경우
F-522-128	5.2.2 관람석의 구조	앞에 좌석이 있는 경우
F-523-129	5.2.3 무대의 구조	고정형 경사로(무대)

구분	5. 기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F-523-130	5.2.3 무대의 구조	고정형 경사로(준비실)
F-523-131	5.2.3 무대의 구조	휠체어 리프트(무대)
F-523-132	5.2.3 무대의 구조	휠체어 리프트(준비실)
F-524-133	5.2.4 열람석의 구조	개인 열람석의 구조
F-524-134	5.2.4 열람석의 구조	개인 열람석의 구조
F-524-135	5.2.4 열람석의 구조	단체 열람석의 구조
F-524-136	5.2.4 열람석의 구조	단체 열람석의 구조
	5.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F-531-137	5.3.1 활동공간 및 구조	접수대의 구조
F-531-138	5.3.1 활동공간 및 구조	작업대의 구조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1-139	5.4.1 활동공간 및 구조	창구형 매표소의 구조
F-541-140	5.4.1 활동공간 및 구조	오픈형 매표소의 구조
F-542-141	5.4.2 판매기/쓰레기통	-
F-543-142	5.4.3 음료대	-
	5.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F-551-143	5.5.1 설치장소 및 구조	-
	5.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F-561-144	5.6.1 설치장소 및 구조	-
	5.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F-571-145	5.7.1 설치장소 및 구조	-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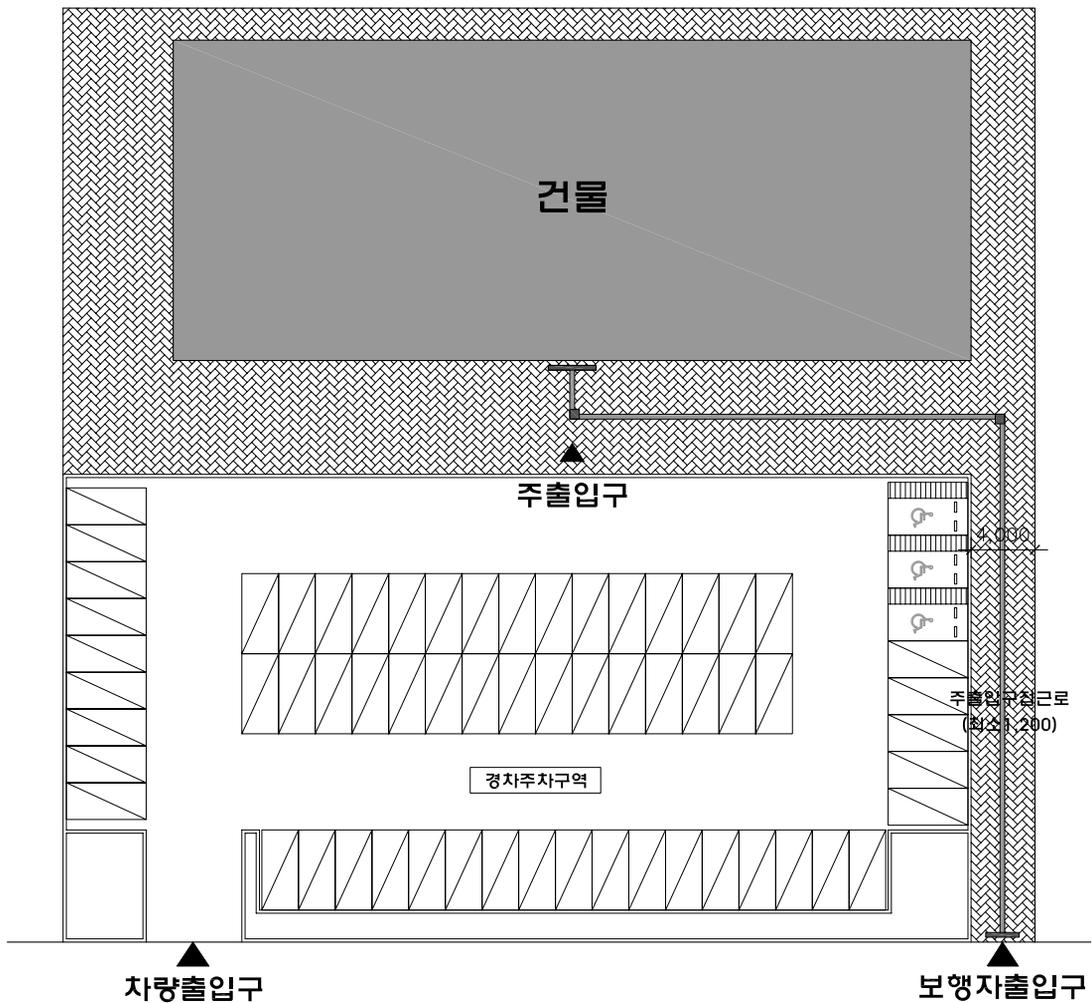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권장)

TYPE 01 - 보행접근로와 차량통선이 교차없이 분리된 경우

SCALE : 1/400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선명블록)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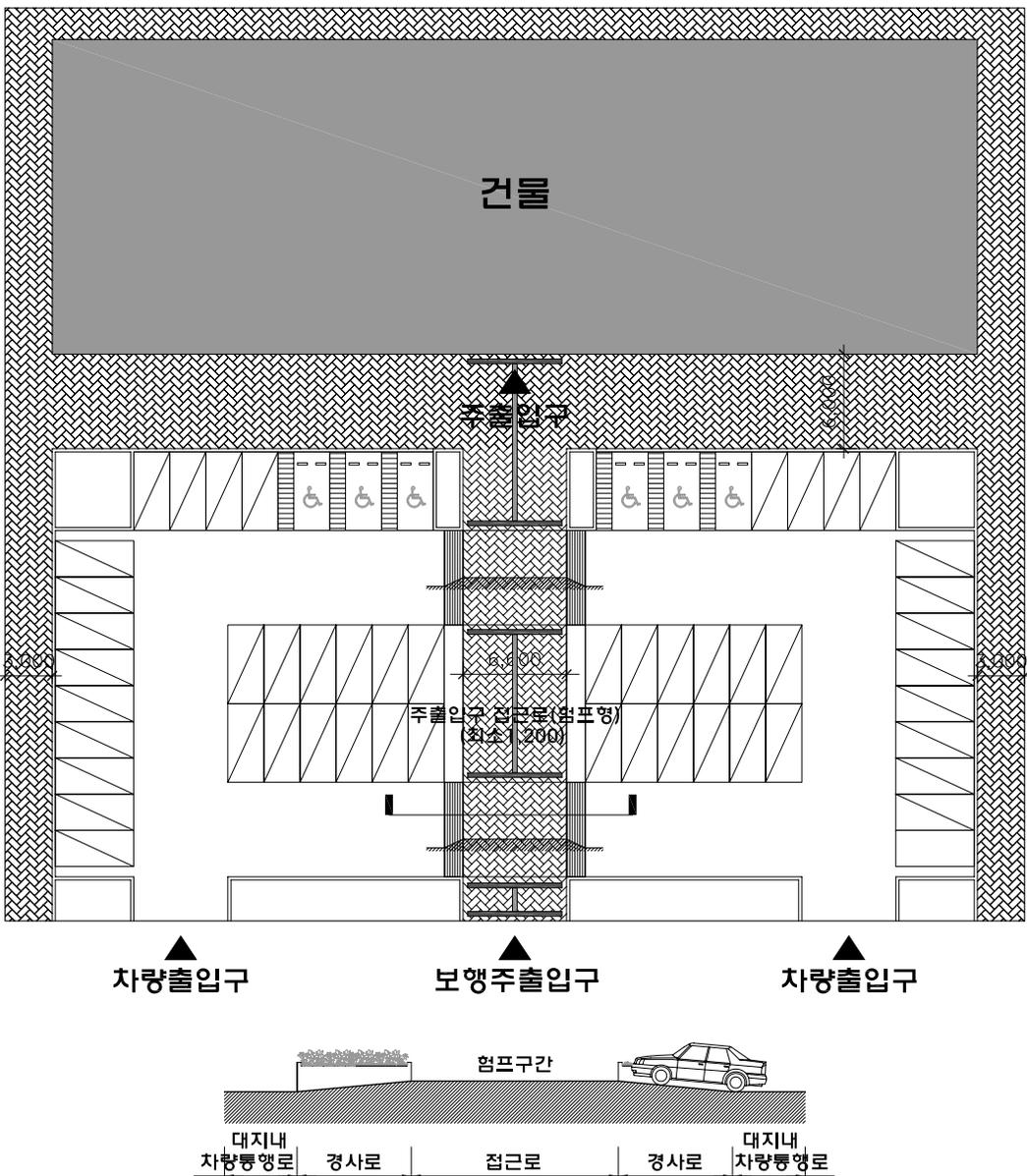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2 - 보행접근로와 차량통선이 교차하는 경우

SCALE : 1/400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선명블록)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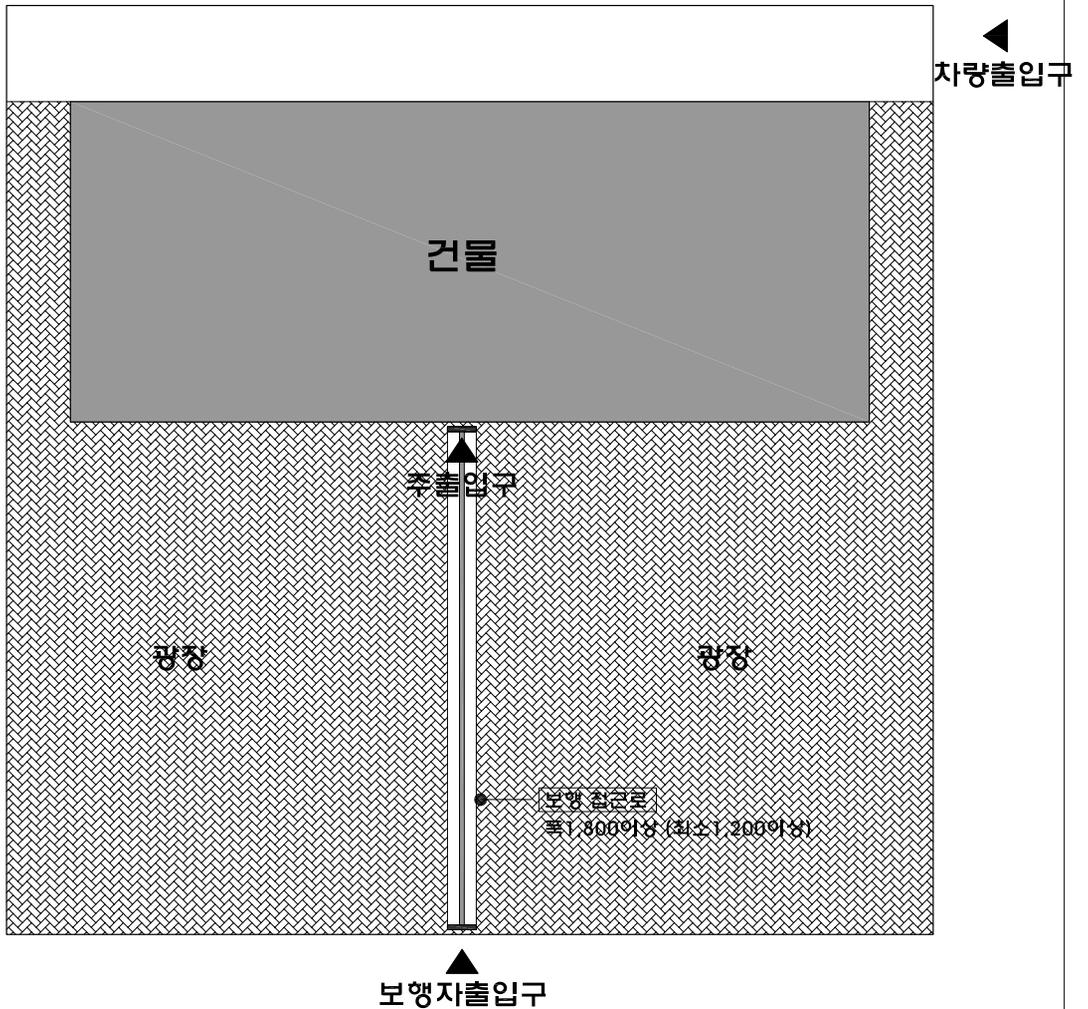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3 - 보행접근로와 차량 동선이 완전 분리된 경우

SCALE : 1/400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선명블록)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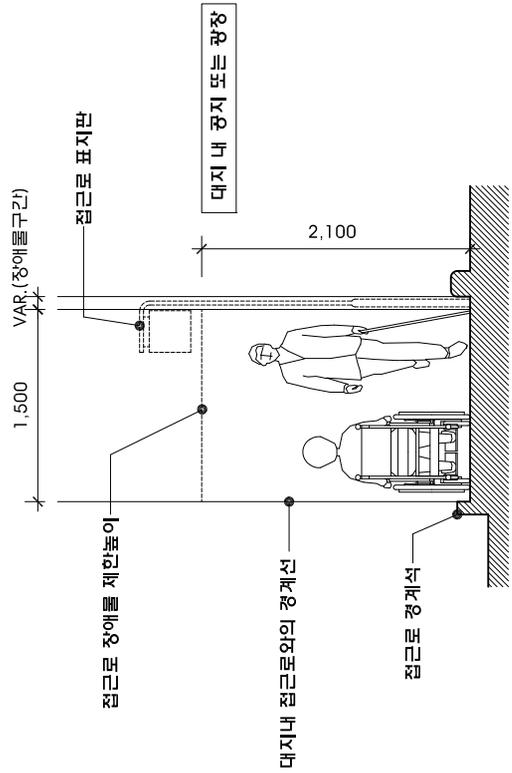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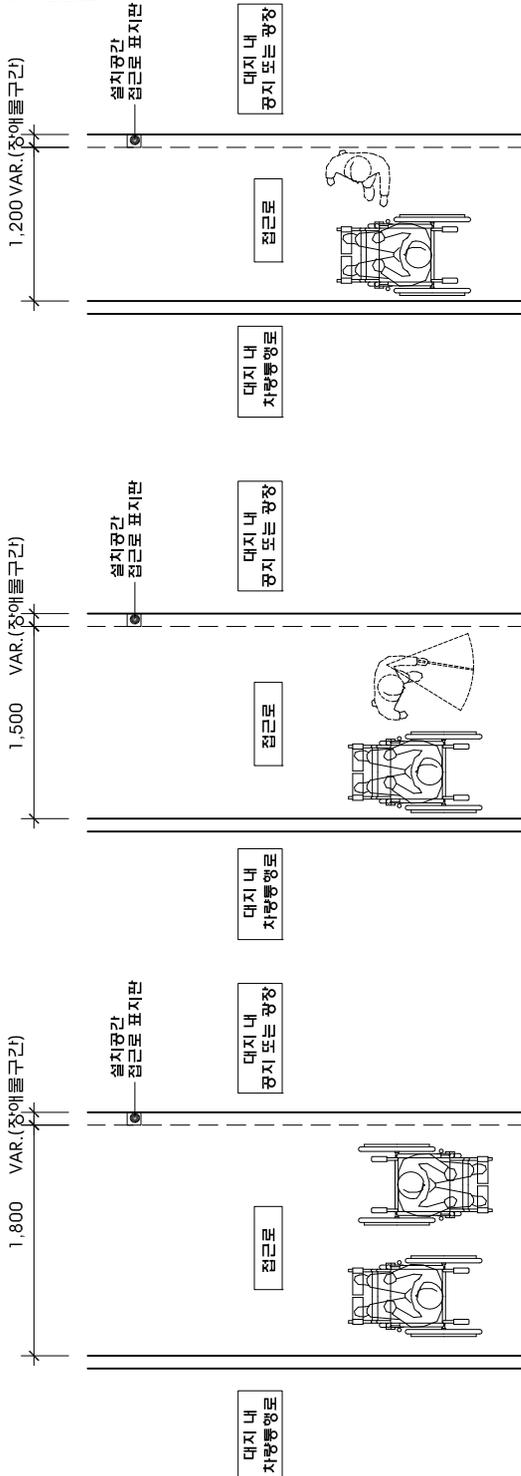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4
----	--------	----	-----------------------	----------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우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권장)

TYPE 01 - 접근로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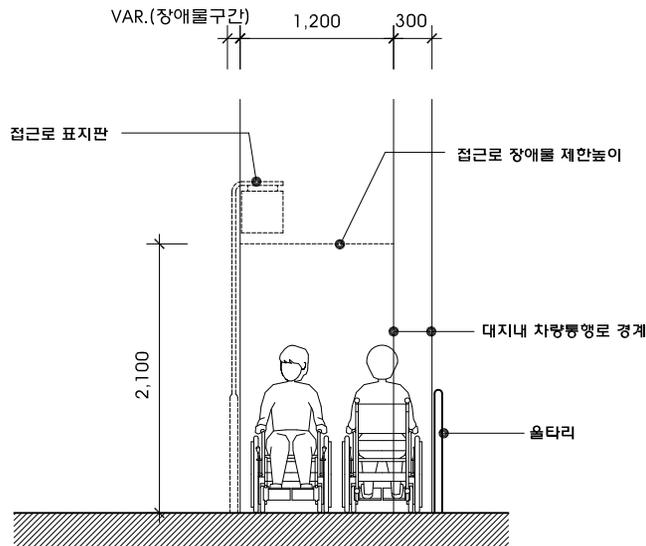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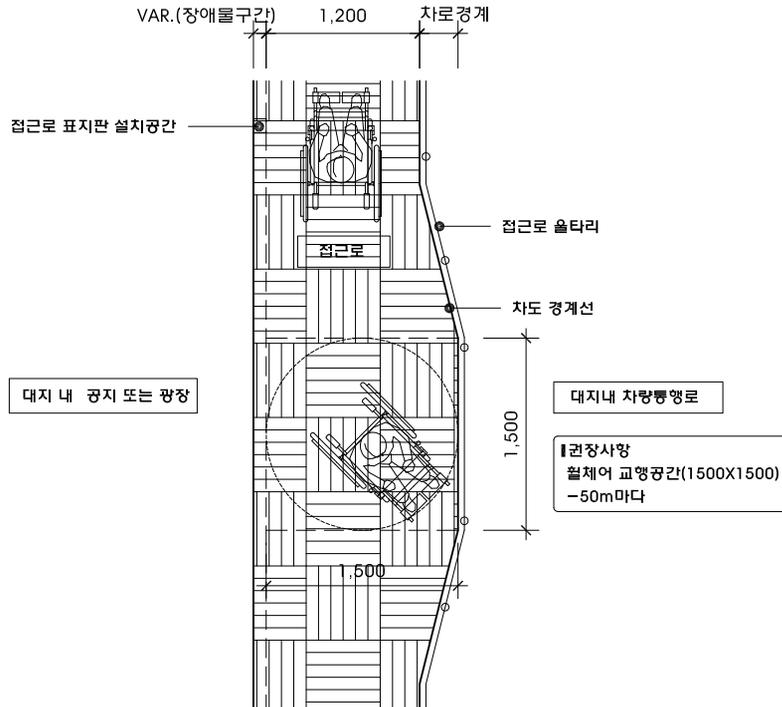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5
----	--------	----	-----------------------	----------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후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2-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울타리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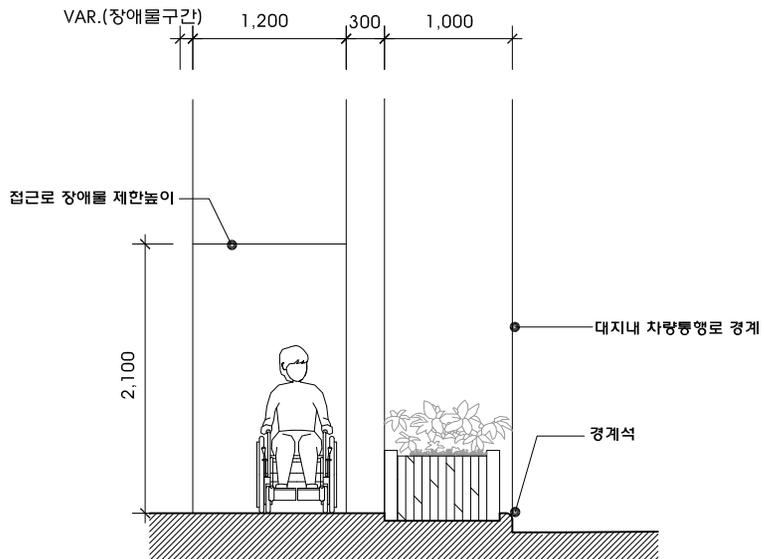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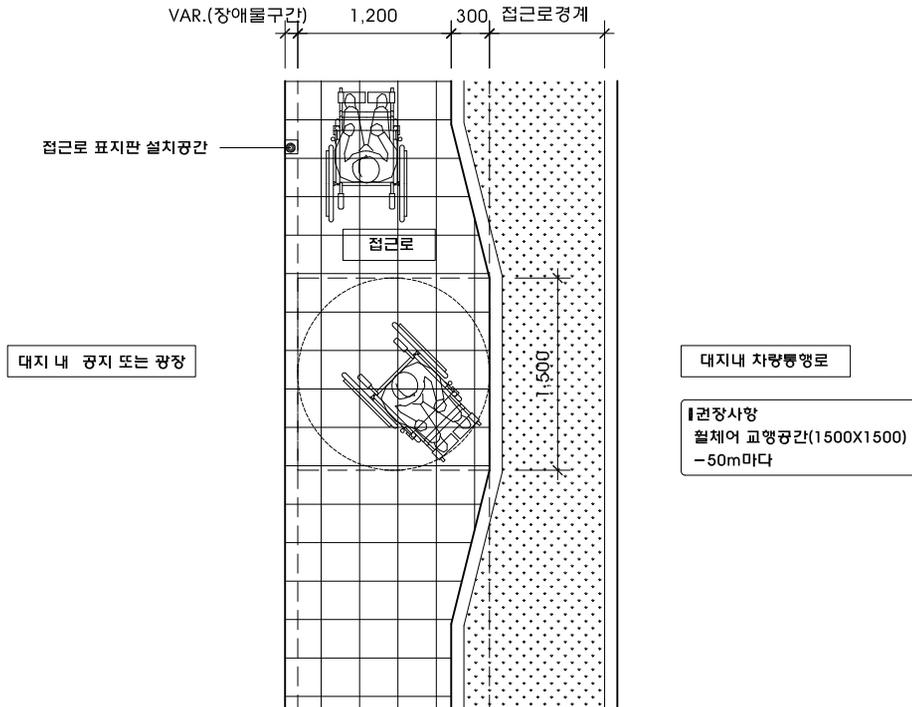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6
----	--------	----	-----------------------	----------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3-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화단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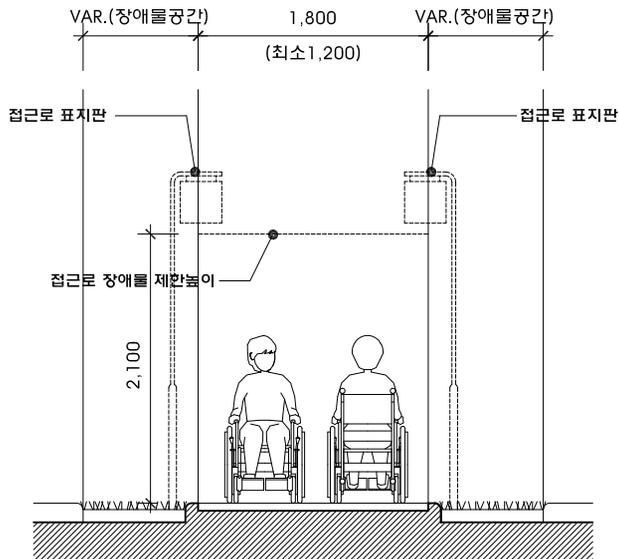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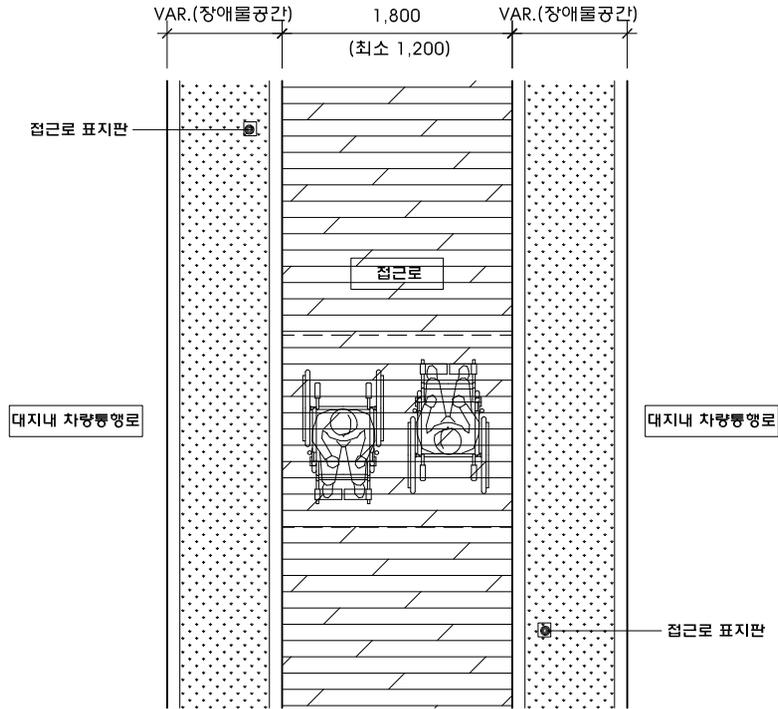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7
----	--------	----	-----------------------	----------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후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4-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잔디식재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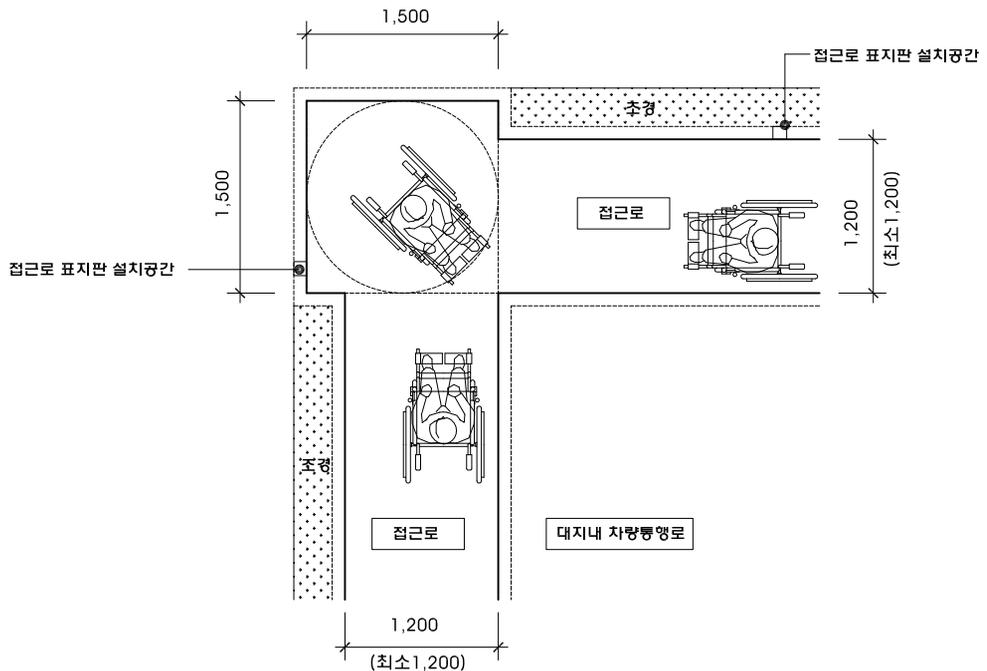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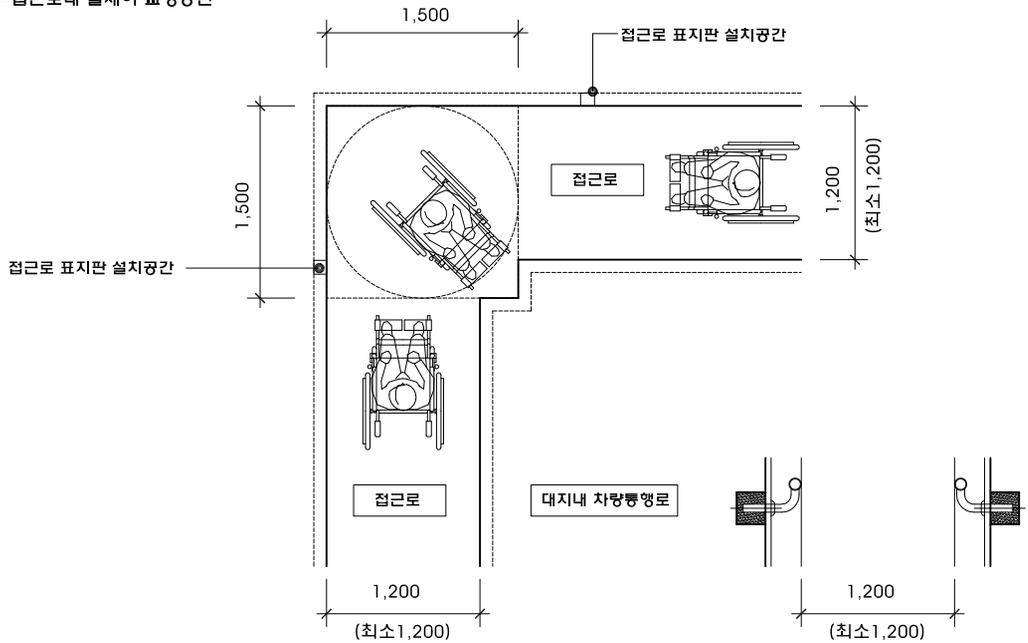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8
-----	--------	-----	-----------------------	----------

세부항목	1.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후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TYPE 05- 접근로내 휠체어 교행공간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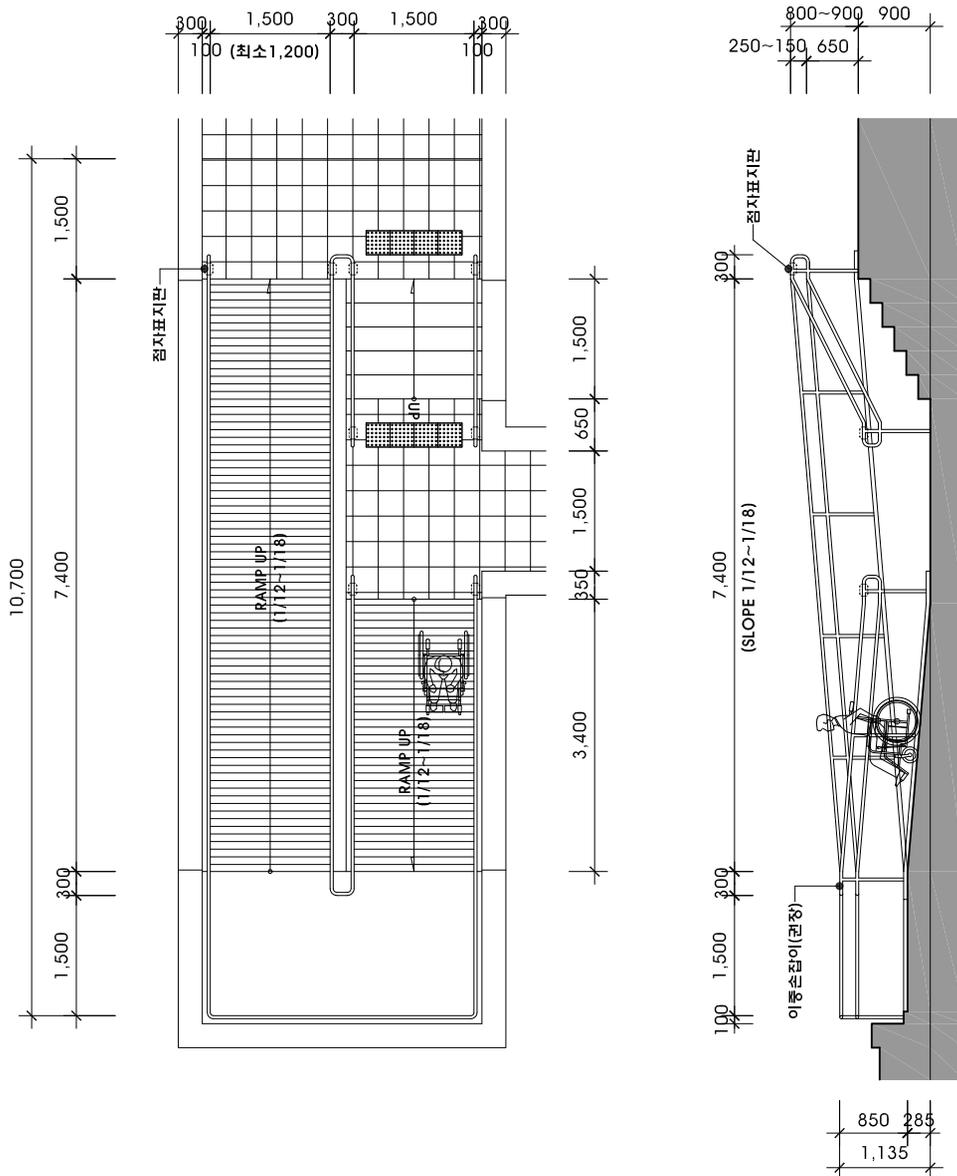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2-09
----	--------	----	-----------------------	----------

세부항목	1.1.2 기술기 등
------	-------------

- 1) 접근로의 기술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TYPE 01 - 직선형 계단과 짝인 경사로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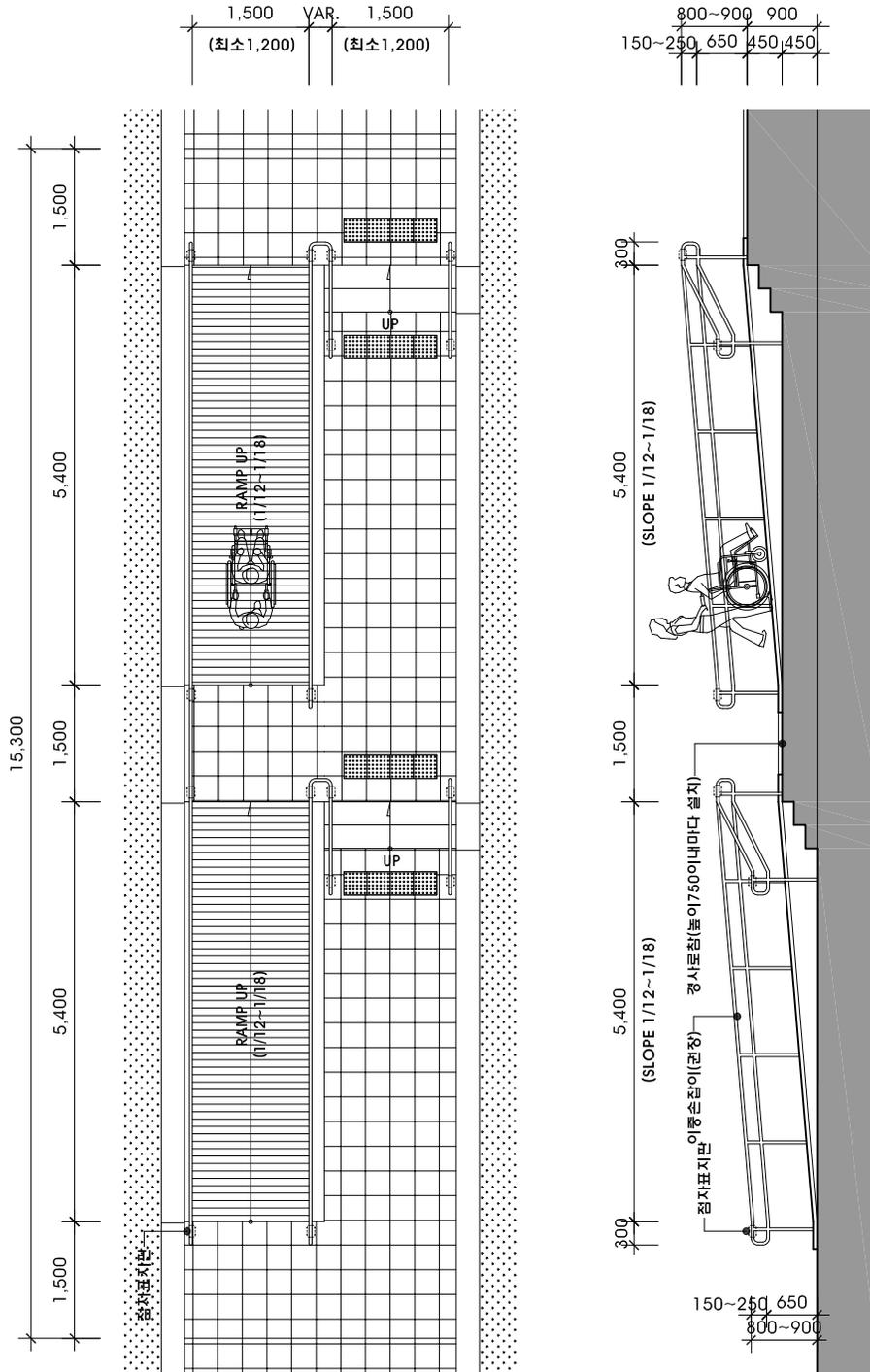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2-10
-----	--------	-----	-----------------------	----------

세부항목	1.1.2 기술기 등
------	-------------

- 1) 접근로의 기술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TYPE 02-직선형 계단과 경사로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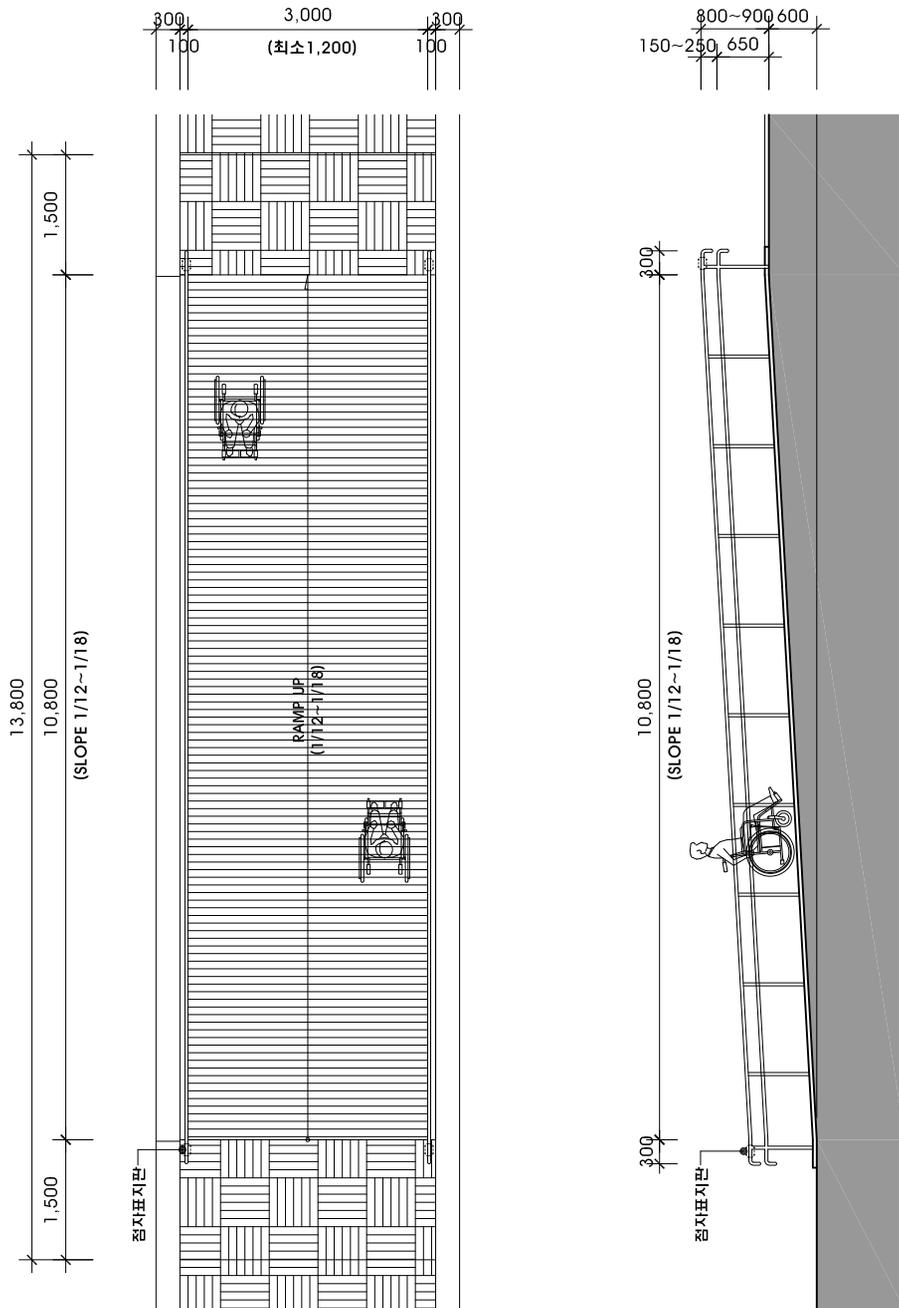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2-11
----	--------	----	-----------------------	----------

세부항목	1.1.2 기술기 등
------	-------------

- 1) 접근로의 기술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TYPE 03-직선형 경사로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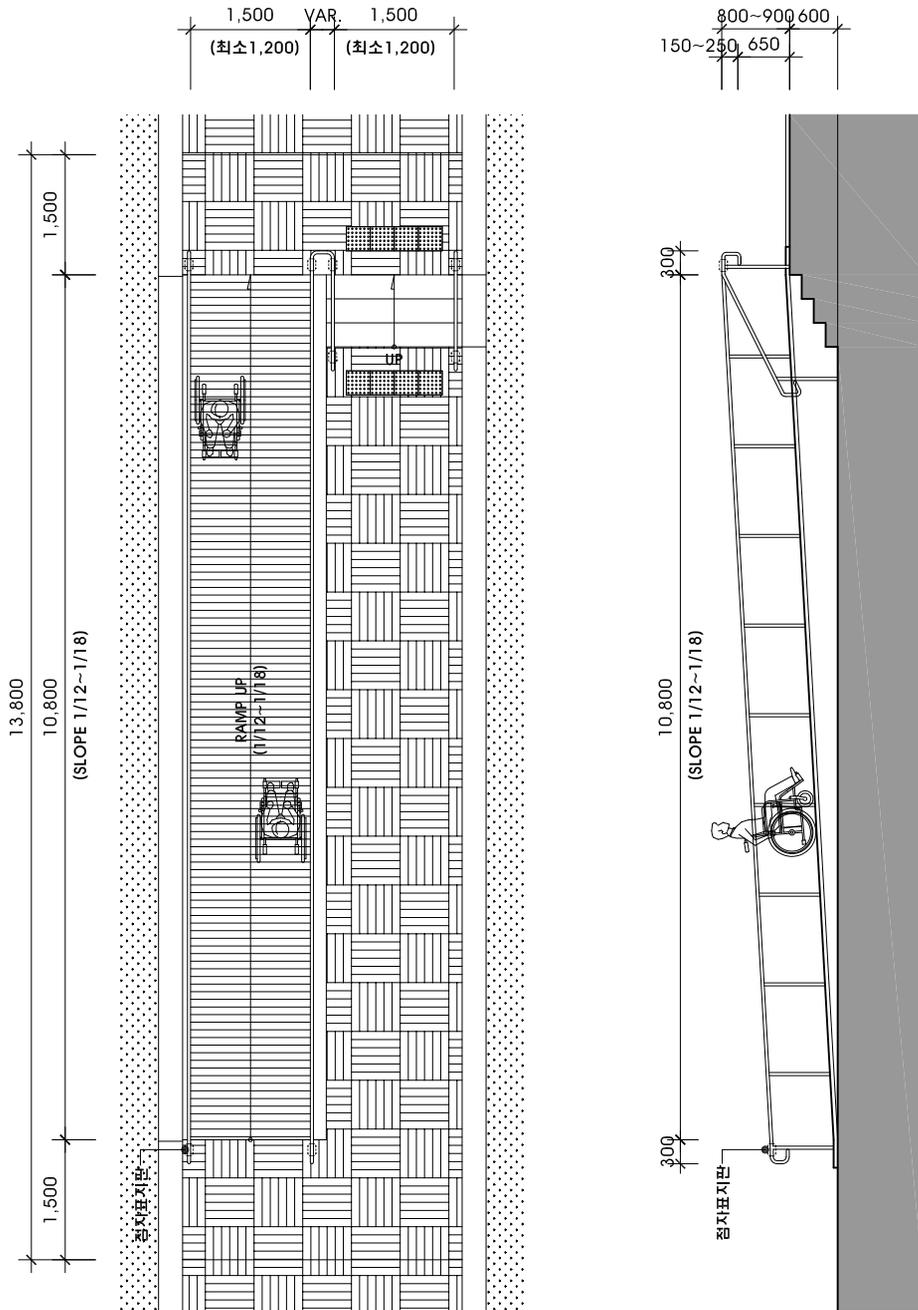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2-12
----	--------	----	-----------------------	----------

세부항목	1.1.2 기술기 등
------	-------------

- 1) 접근로의 기술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TYPE 04-직선형 계단과 경사로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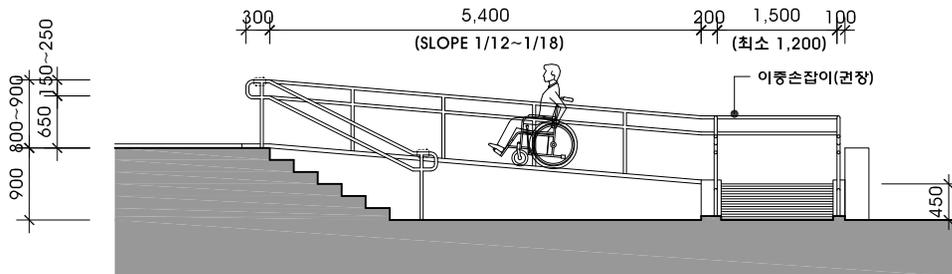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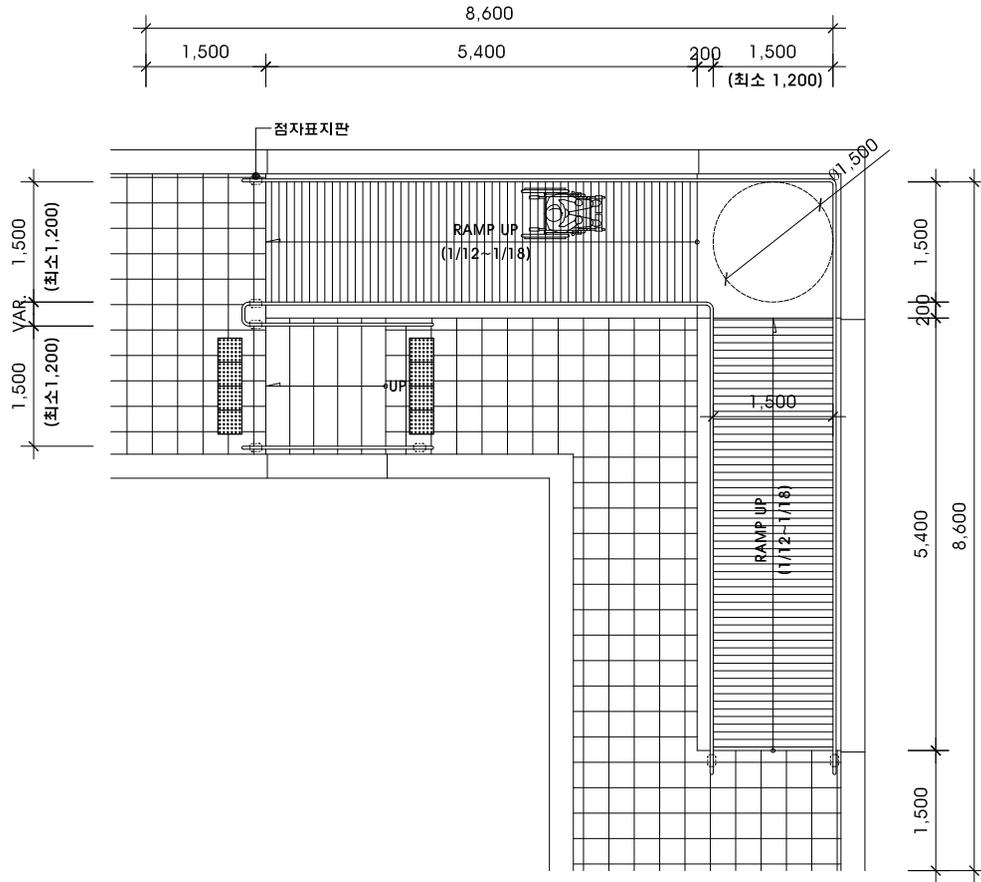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2-13
----	--------	----	-----------------------	----------

세부항목	1.1.2 기술기 등
------	-------------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TYPE 05-직선형 계단과 T자형 경사로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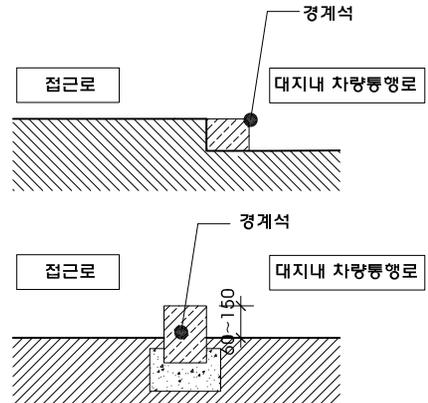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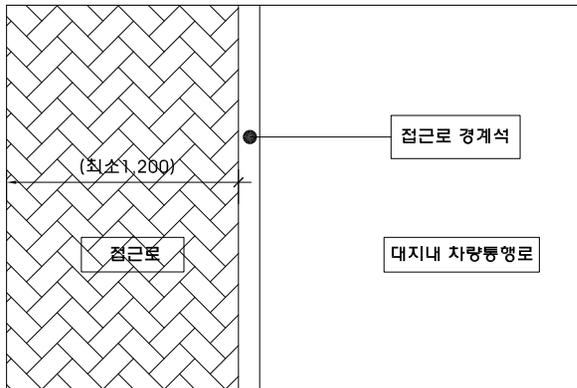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3-14
----	--------	----	-----------------------	----------

세부항목	1.1.3 경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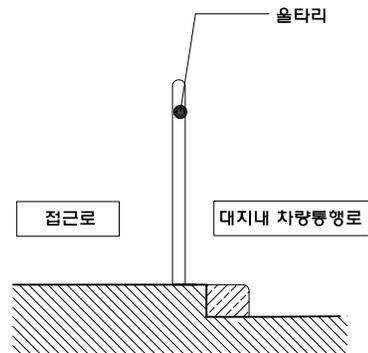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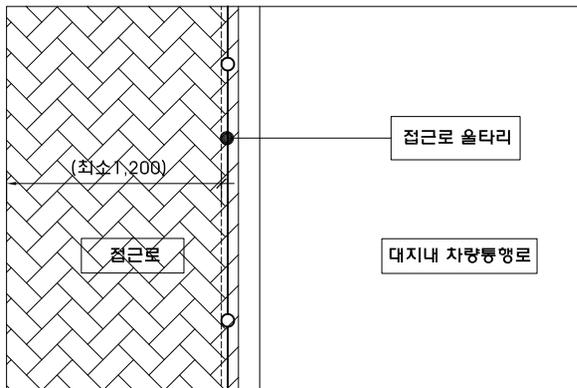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올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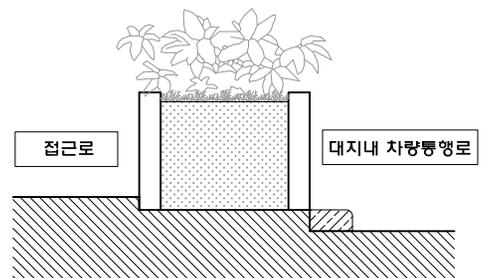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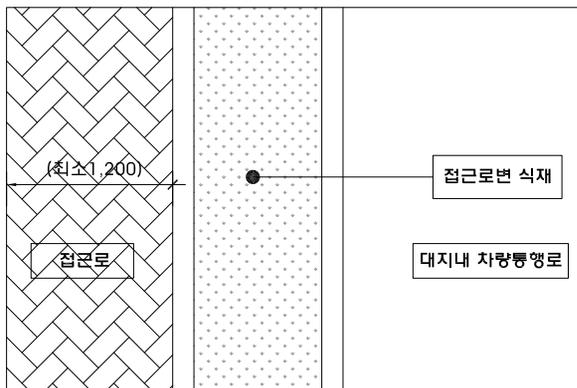
TYPE 01 - 접근로 경계석



TYPE 02 - 접근로 올타리



TYPE 03 - 접근로변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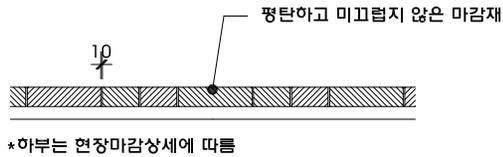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4-15
----	--------	----	-----------------------	----------

세부항목	1.1.4 재질과 마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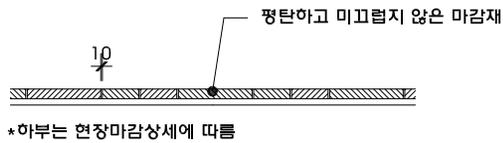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SCALE : 1/20

TYPE 01 - 블록



TYPE 02 -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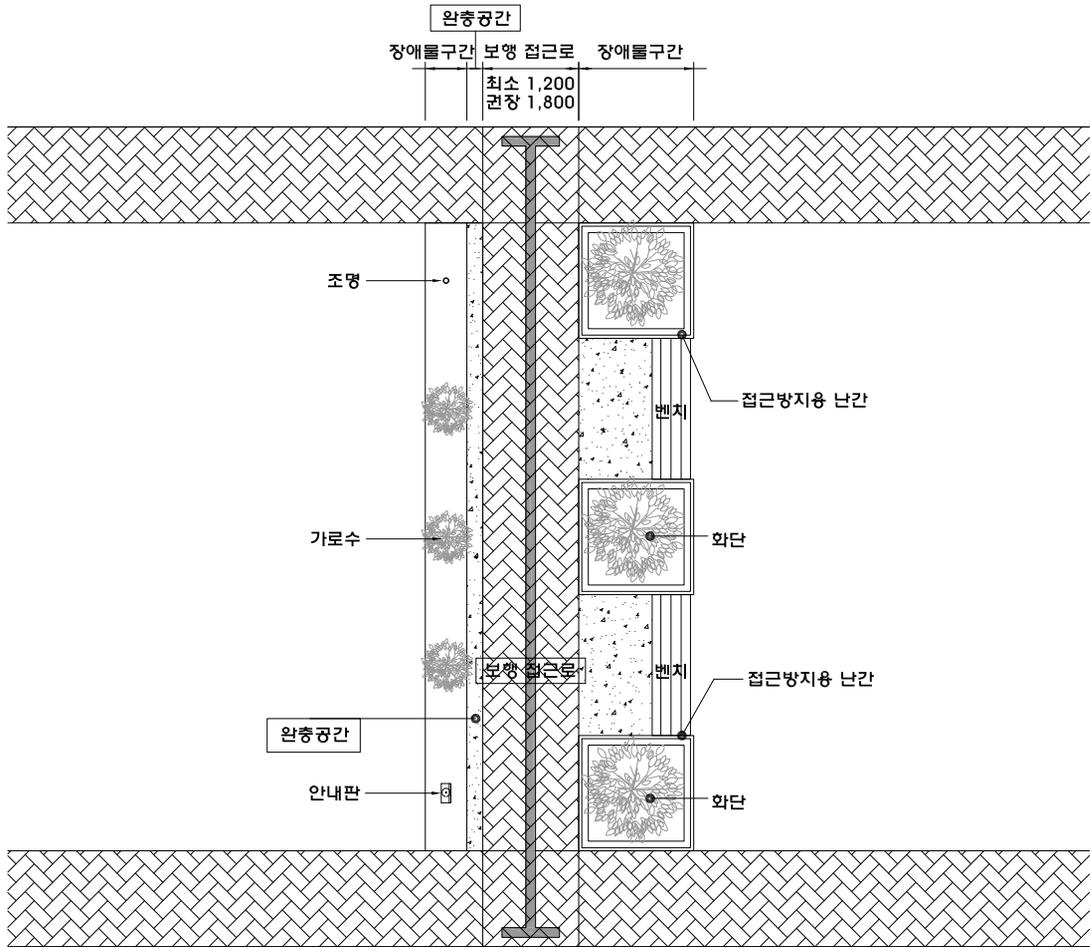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5-16
----	--------	----	-----------------------	----------

세부항목	1.1.5 보행장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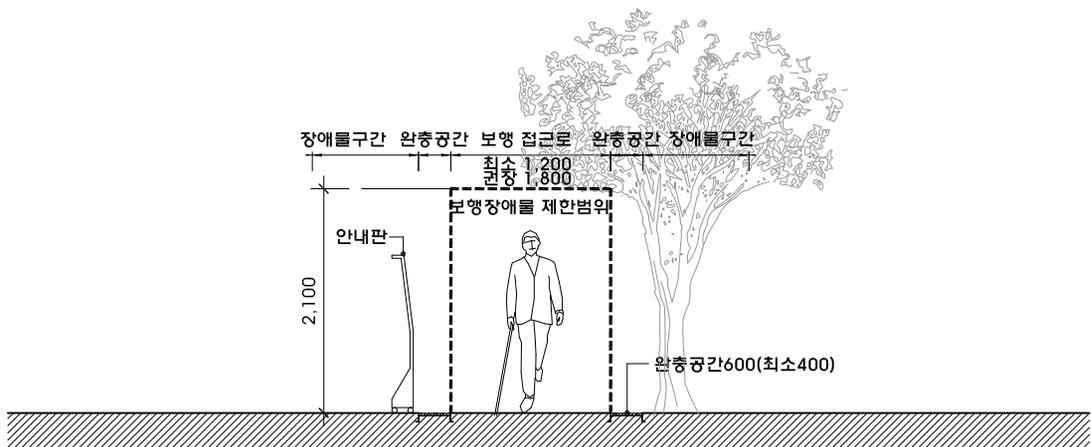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TYPE 01 - 접근로의 장애물공간과 완충공간

SCALE : 1/200



▲
보행자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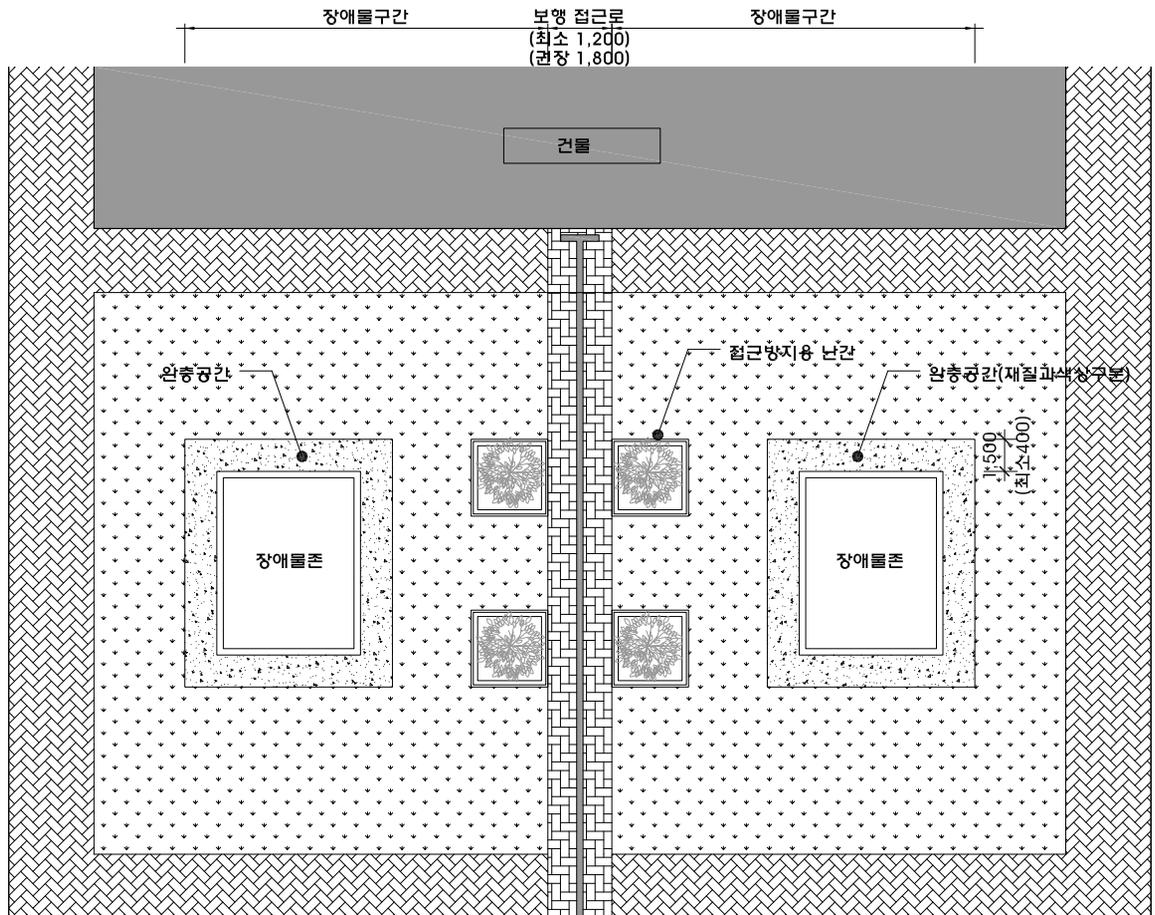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5-17
----	--------	----	-----------------------	----------

세부항목	1.1.5 보행장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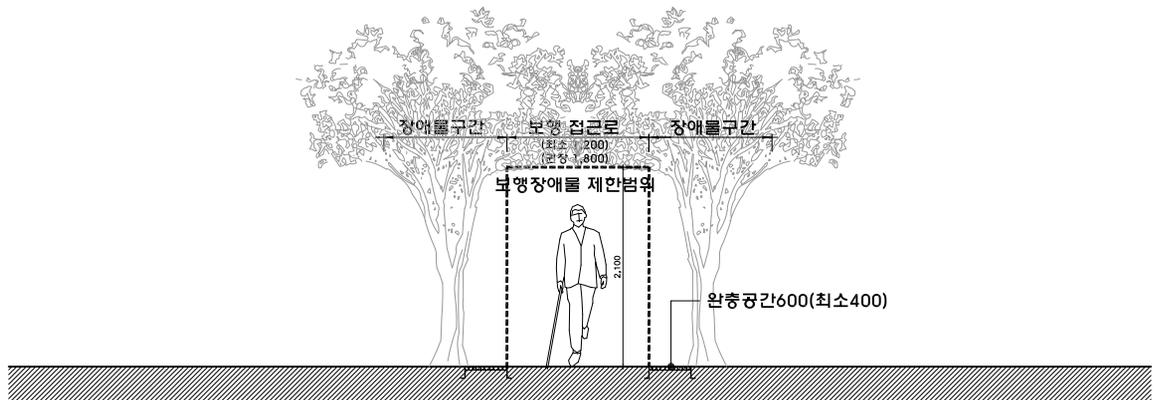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TYPE 02-진입광장의 장애물공간과 완충공간

SCALE : 1/300



보행자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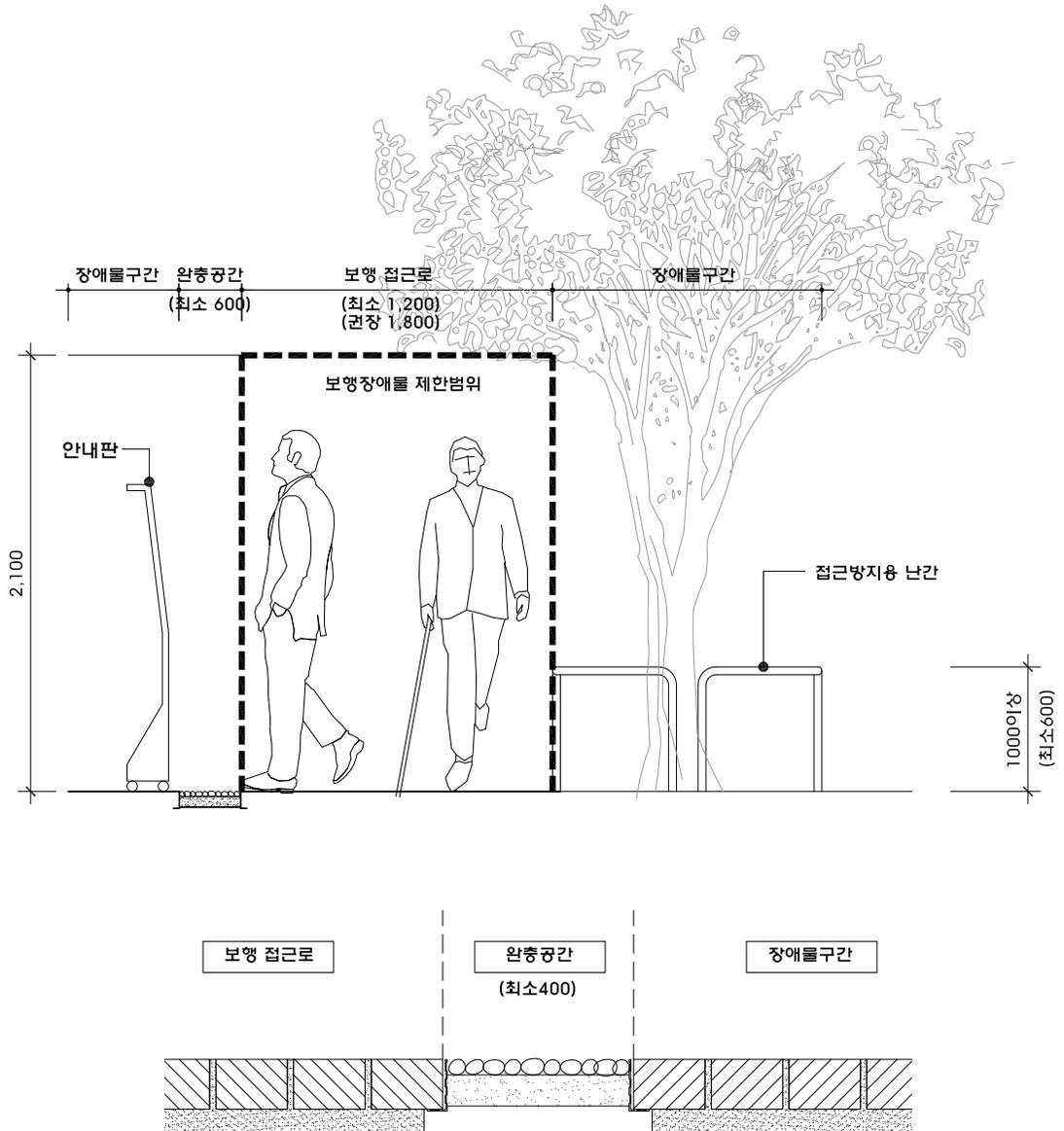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5-18
----	--------	----	-----------------------	----------

세부항목	1.1.5 보행장애물
------	-------------

- 1) 접근로에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TYPE 03-보행장애물 제한범위

SCALE :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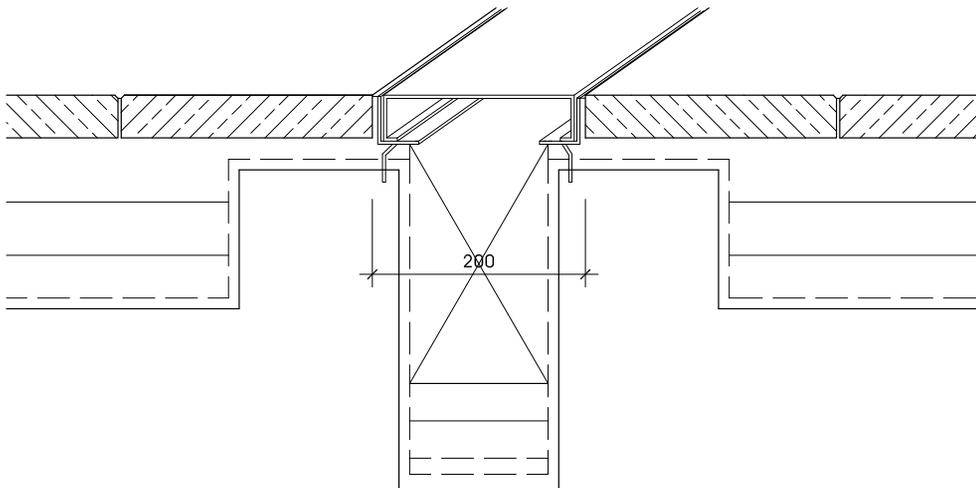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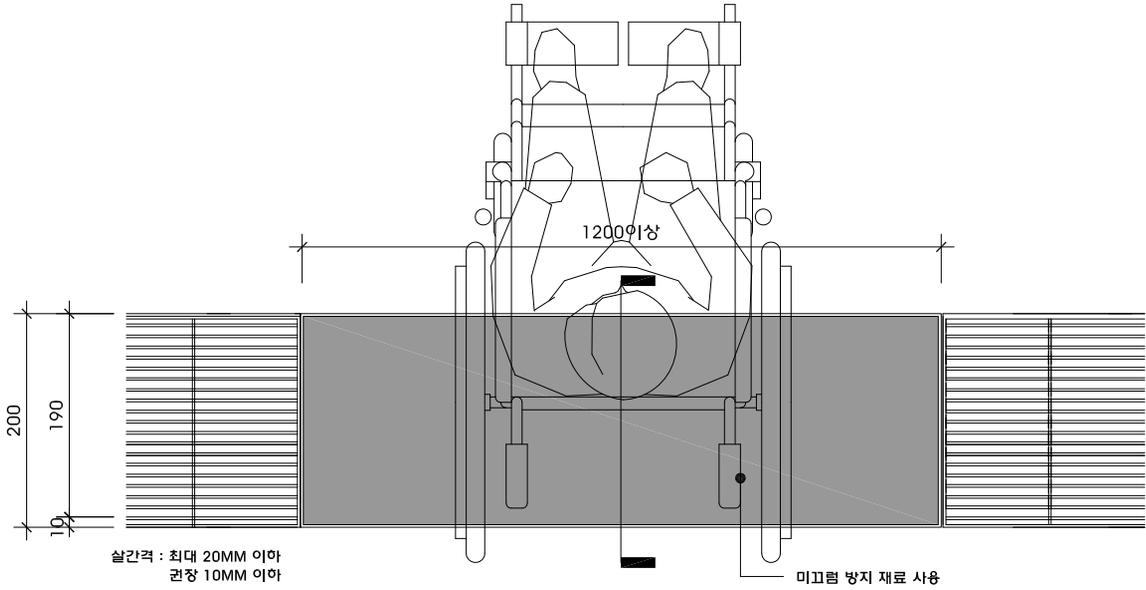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6-19
----	--------	----	-----------------------	----------

세부항목	1.1.6 턱개
------	----------

1)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턱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턱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1 - 틈새가 없는 일체형 턱개

SCALE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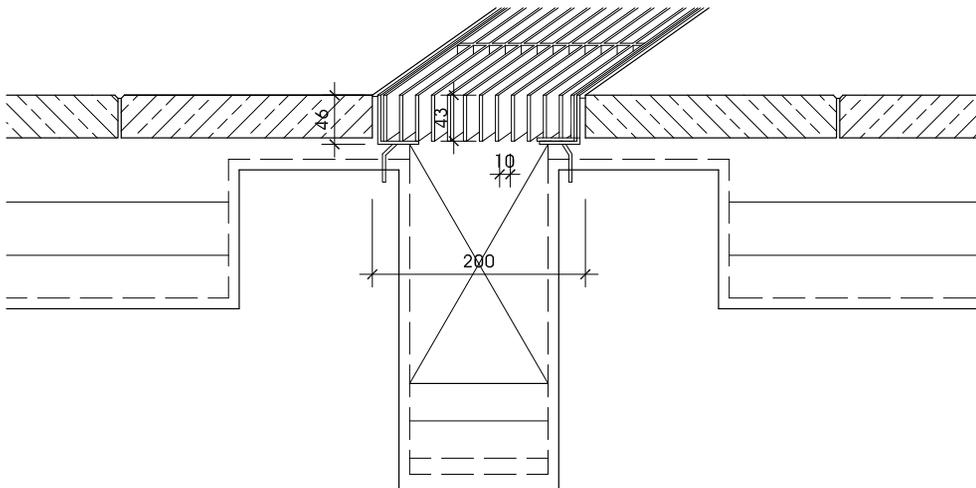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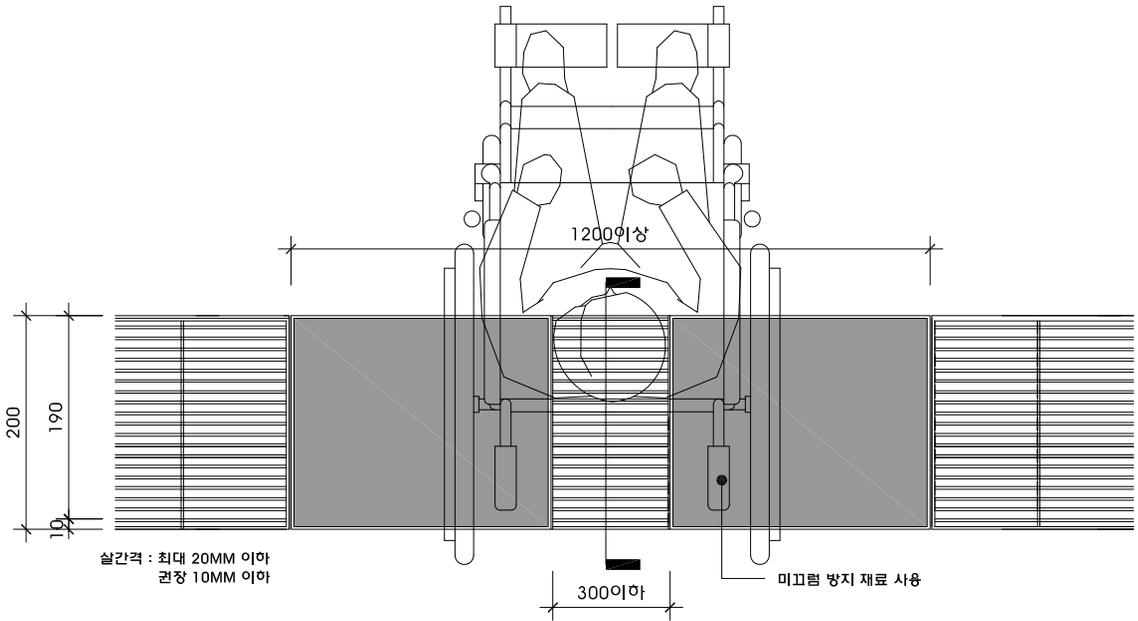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6-20
----	--------	----	-----------------------	----------

세부항목	1.1.6 턱개
------	----------

1)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턱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턱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2-틈새가 없는 분리형 턱개

SCALE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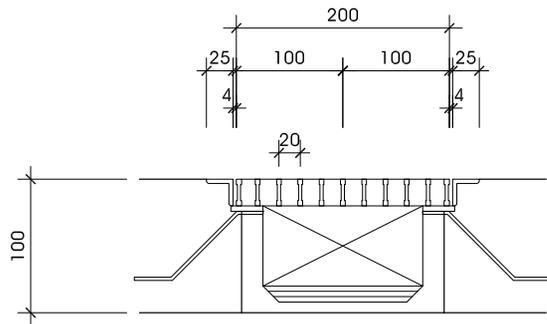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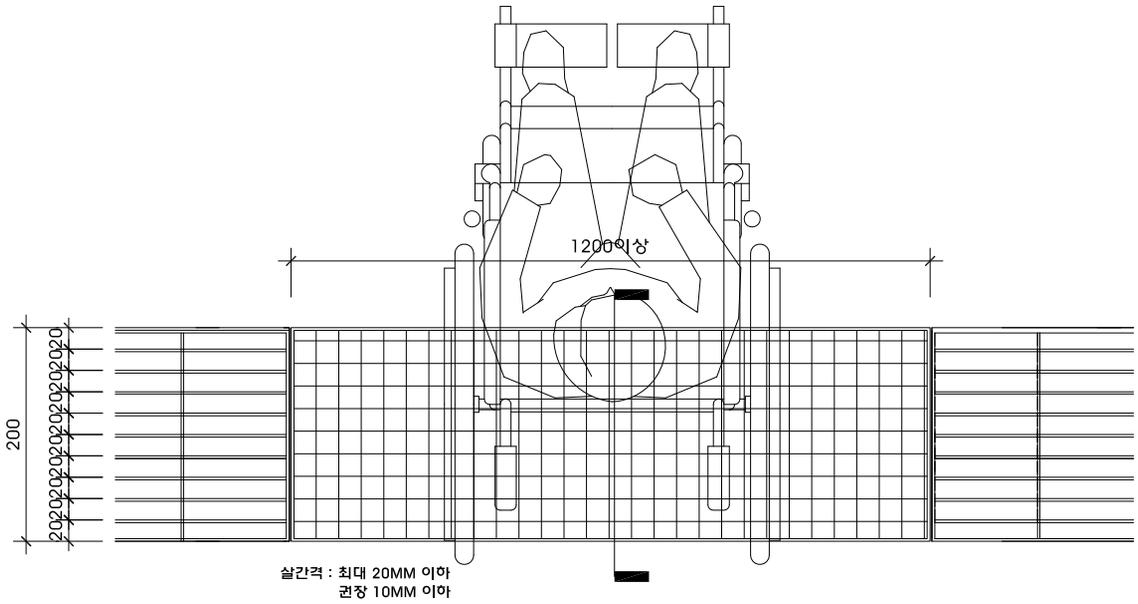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6-21
----	--------	----	-----------------------	----------

세부항목	1.1.6 턱개
------	----------

1)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턱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턱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3-격자가 20mm 미만

SCALE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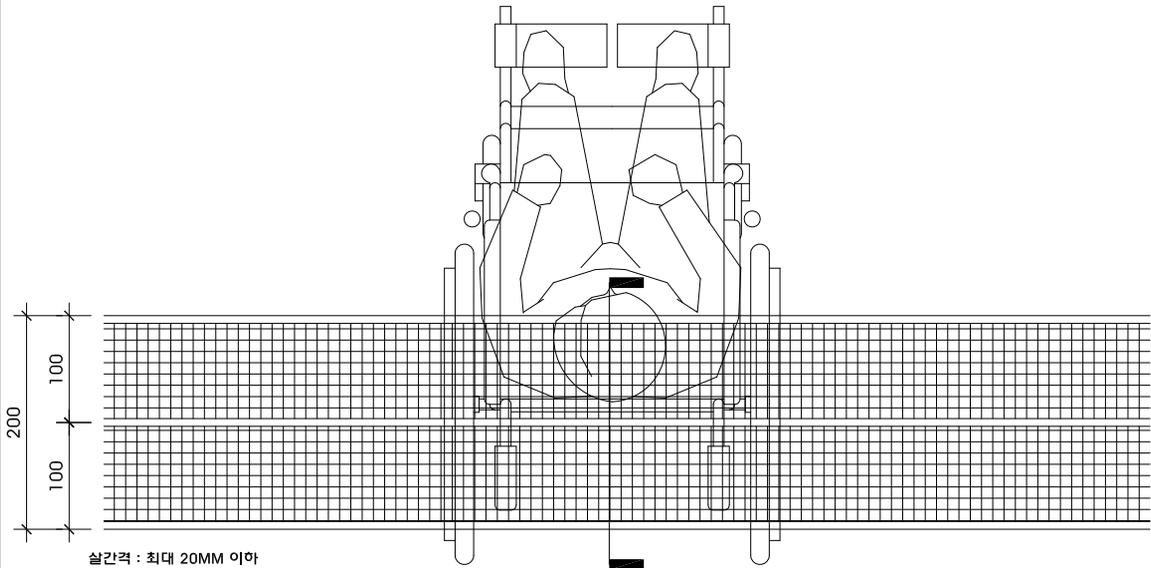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6-22
----	--------	----	-----------------------	----------

세부항목	1.1.6 턱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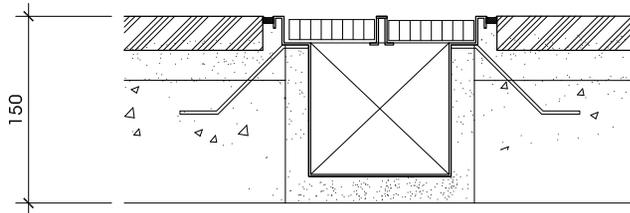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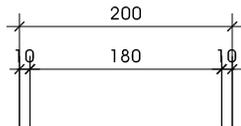
1)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턱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턱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4-격자가 10mm 미만

SCALE : 1/6



살간격 : 최대 20MM 이하
 권장 10M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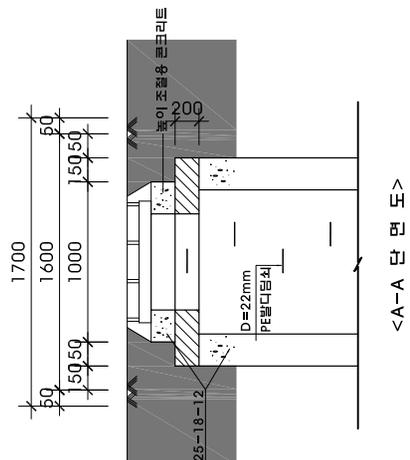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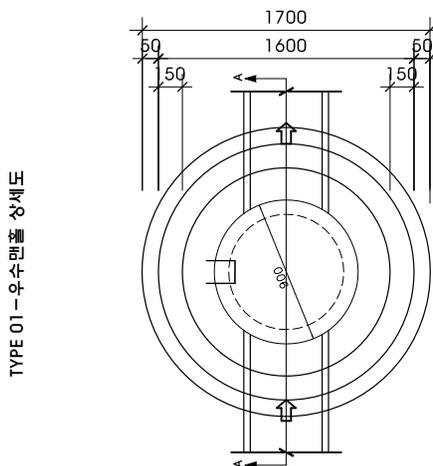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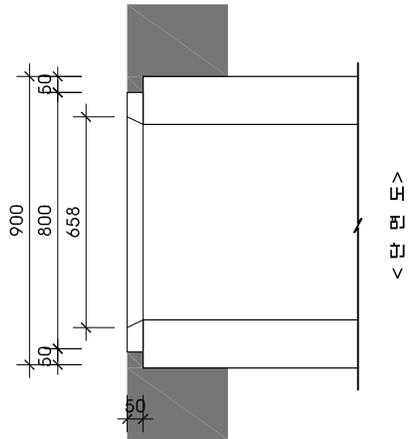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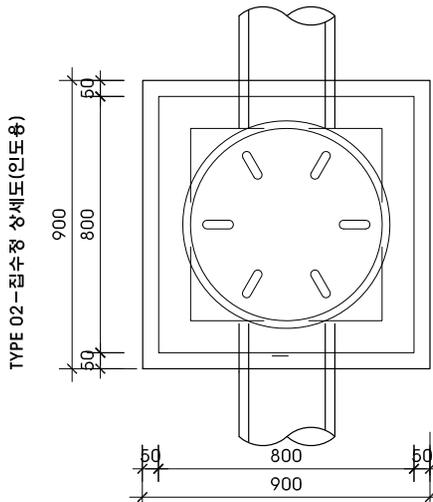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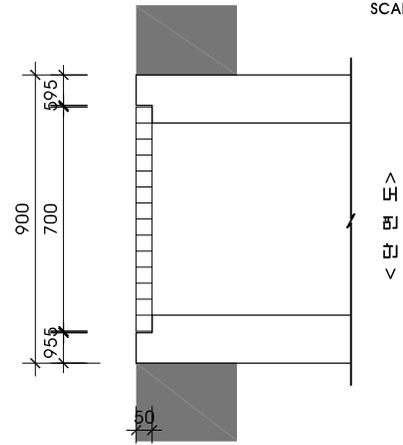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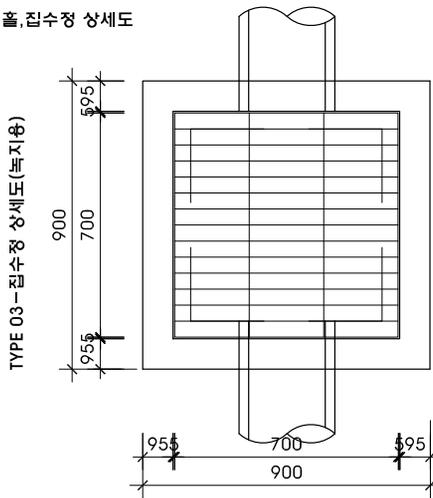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6-23
----	--------	----	-----------------------	----------

세부항목 1.1.6 턱개

1) 장애인 등이 빠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턱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턱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5 - 우수맨홀 흡수정 상세도

SCALE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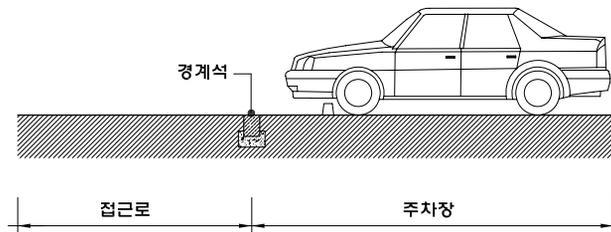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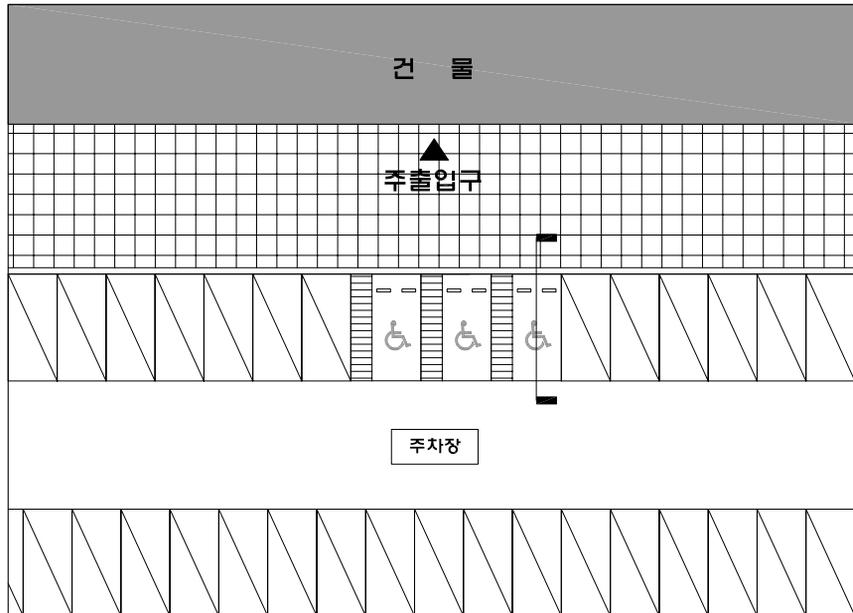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4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0

TYPE 01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바로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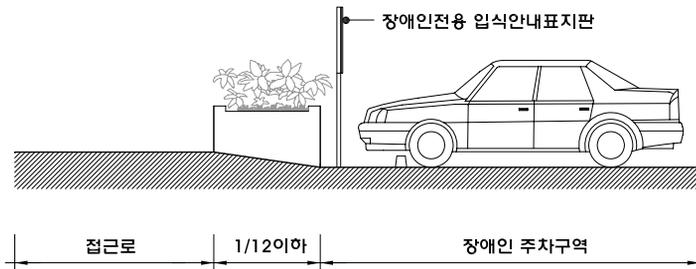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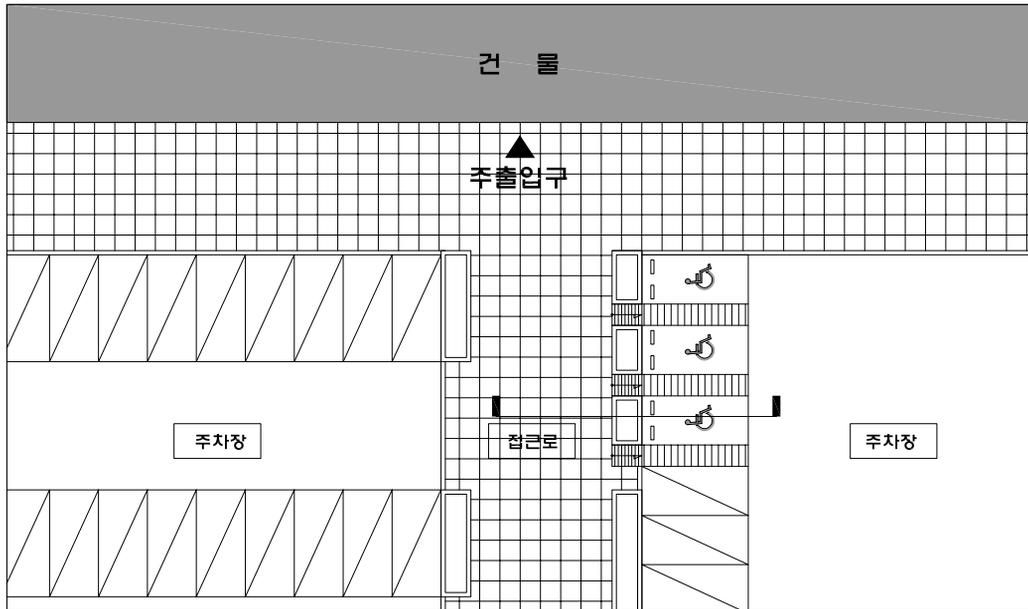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5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0

TYPE 02 주차장에서 보행접근로를 통해 주진입구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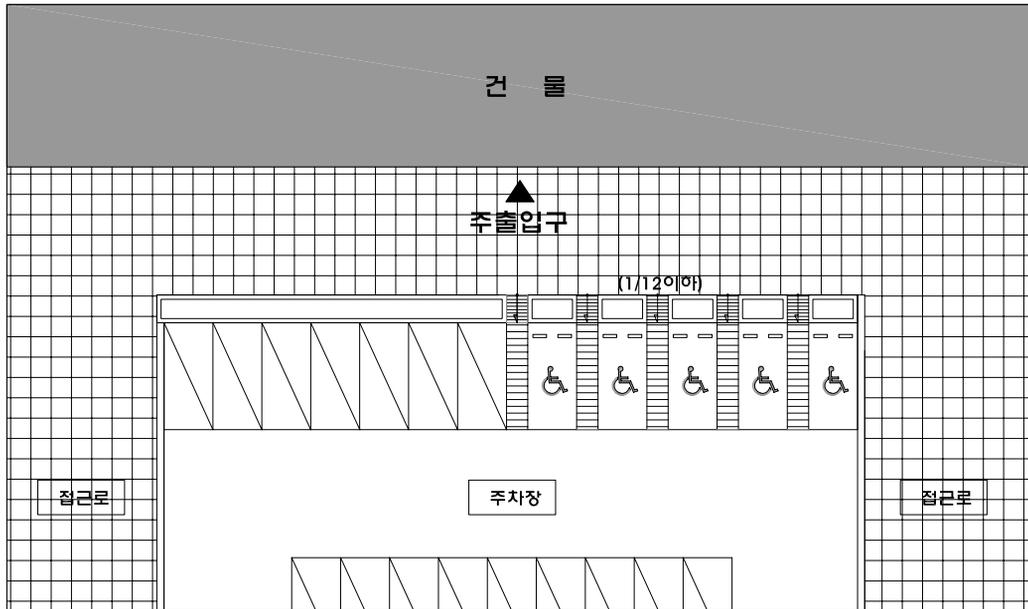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6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0

TYPE 03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접근 경사로를 주차구역 전체에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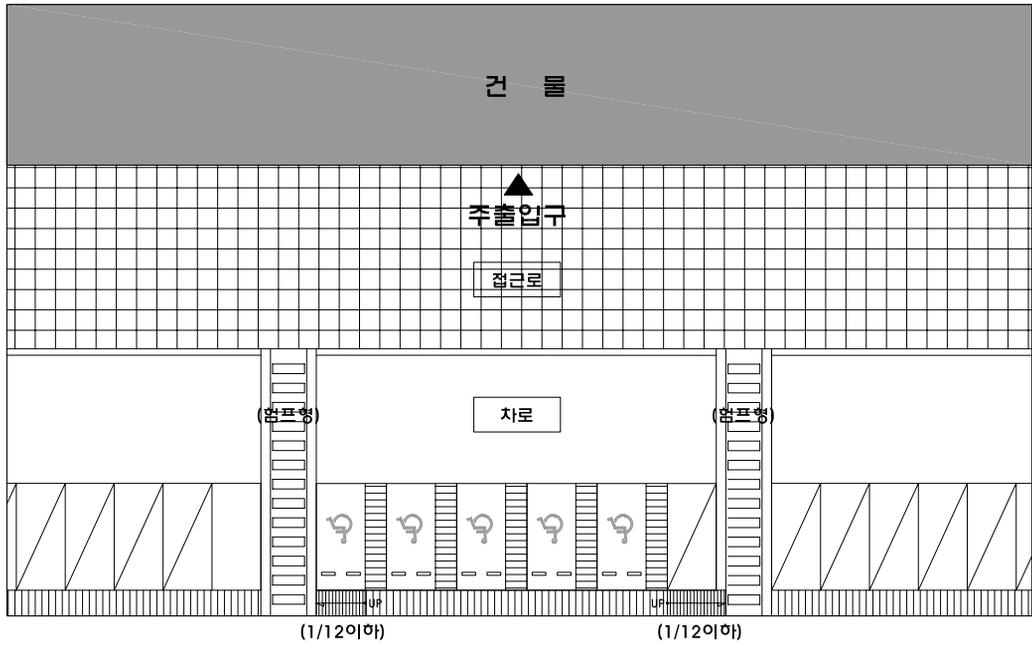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7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0

TYPE 04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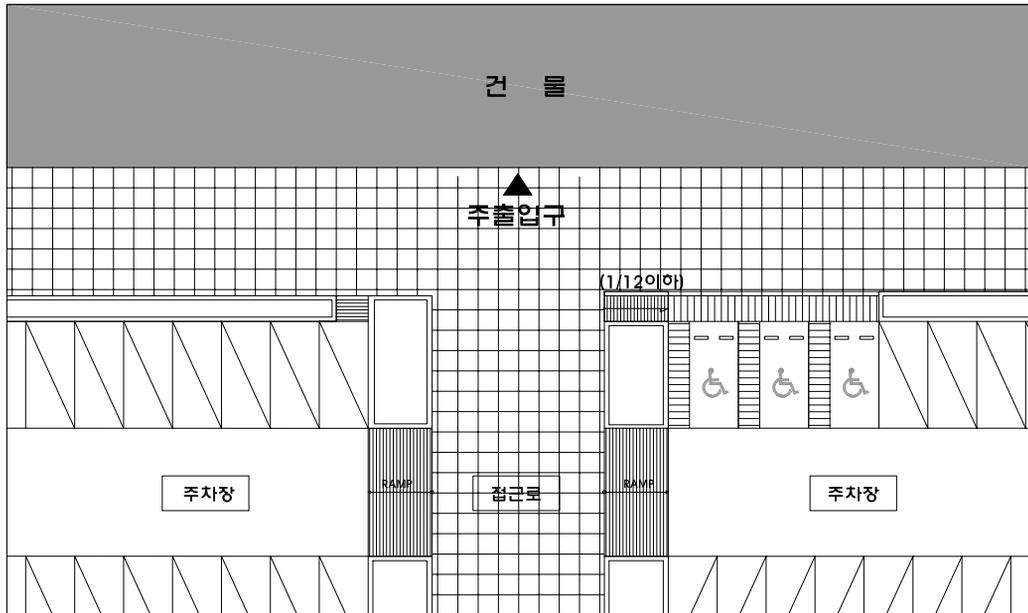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8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0

TYPE 05 주차장에서 경사로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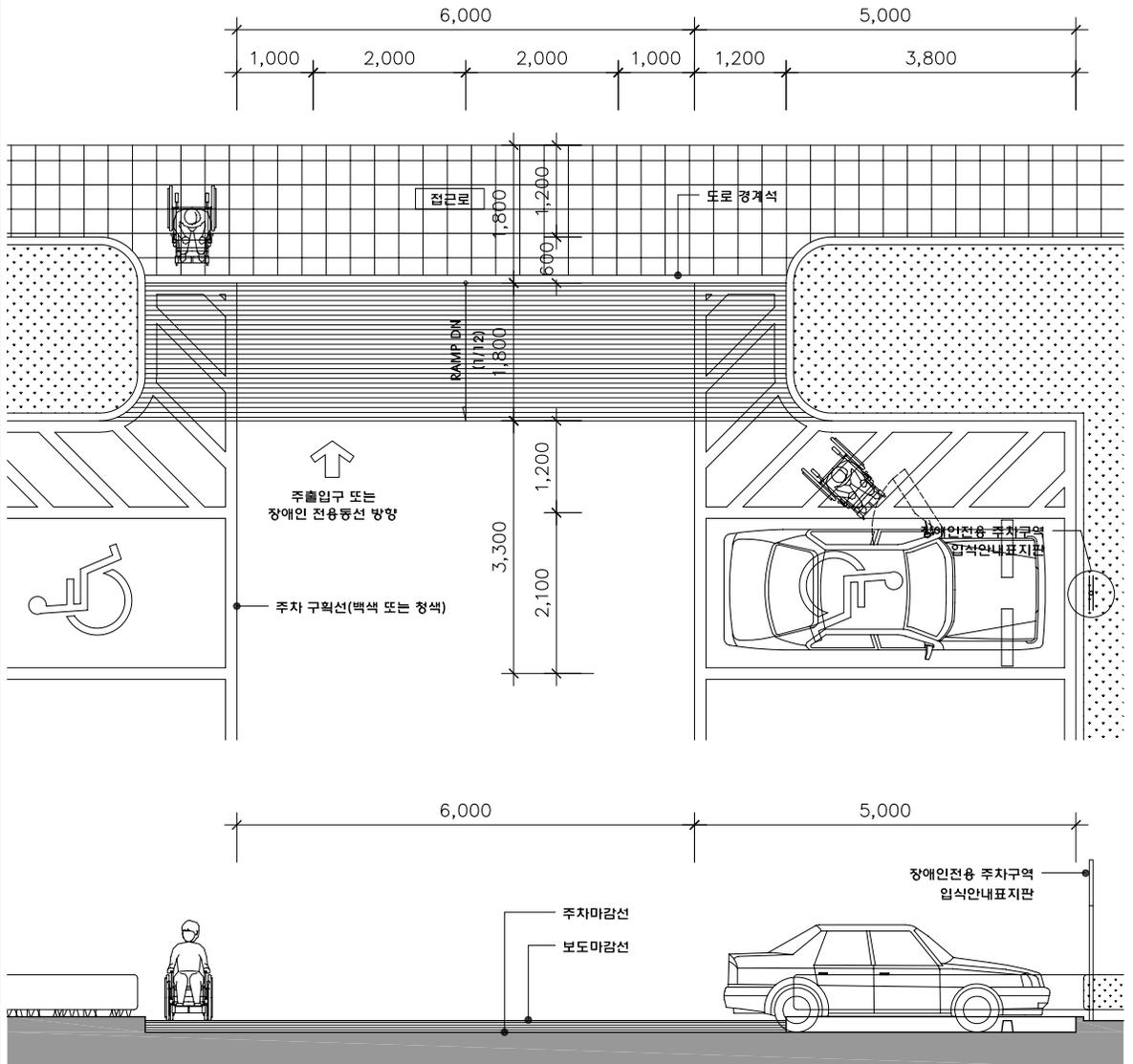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29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TYPE 01 - 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

SCALE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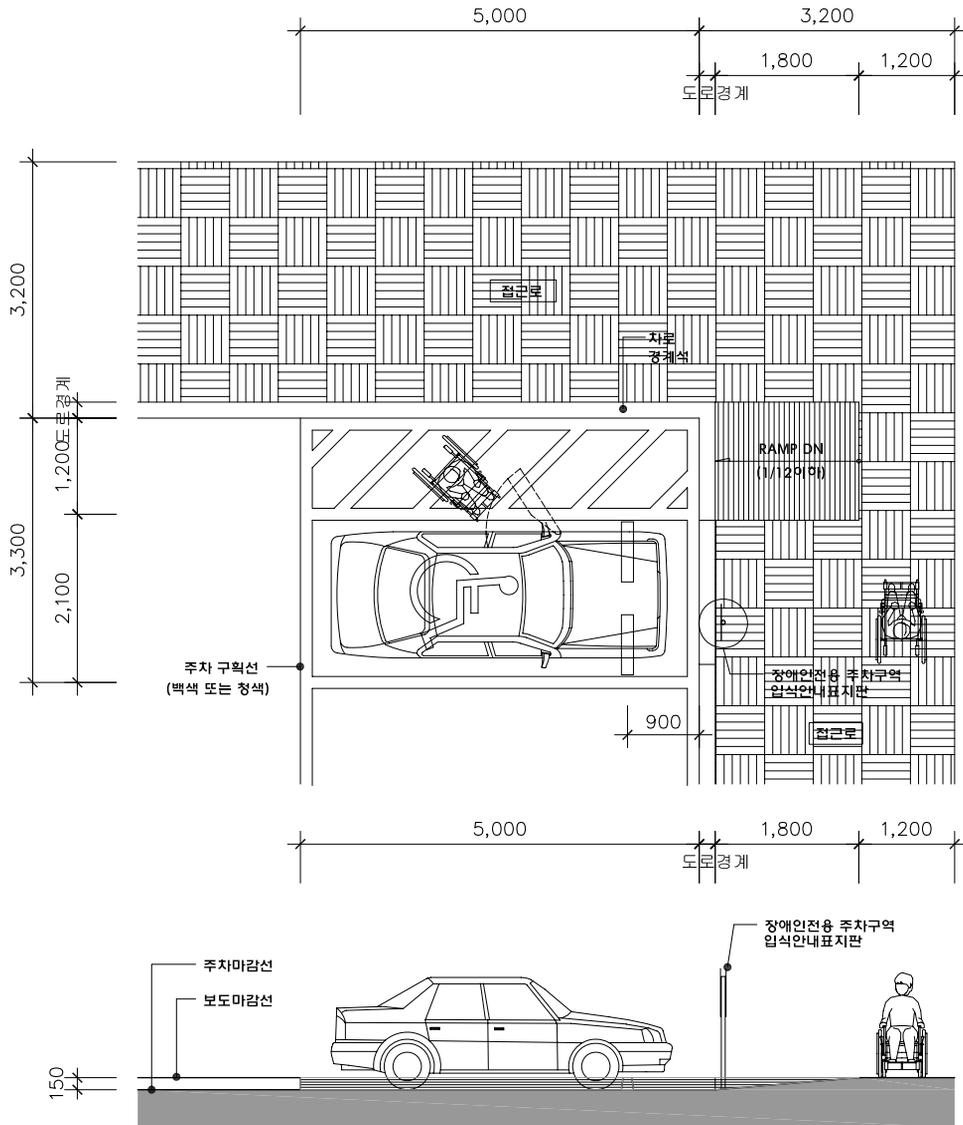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30
----	--------	----	---------------	----------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TYPE 02-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

SCALE : 1/80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1-3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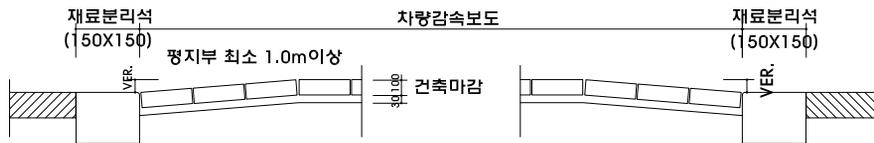
세부항목	1.2.1 설치장소
------	------------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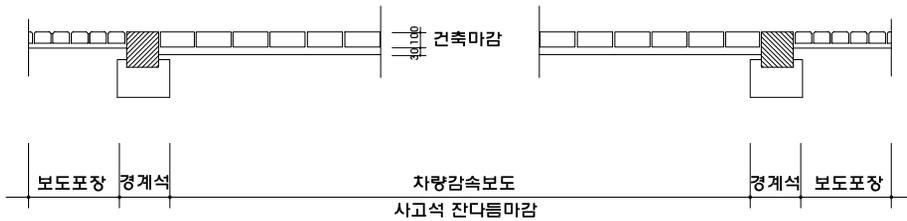
SCALE : 1/15

TYPE 01 - 차량진출입부 상세도(험프)

차량감속보도 종단면도



차량감속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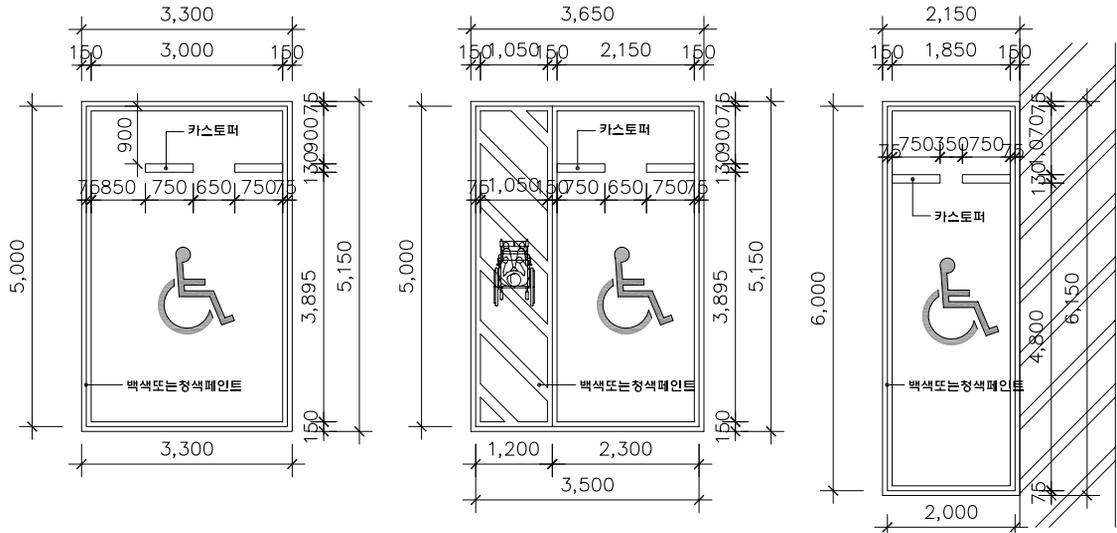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2-32
----	--------	----	---------------	----------

세부항목	1.2.2 주차공간			
------	------------	--	--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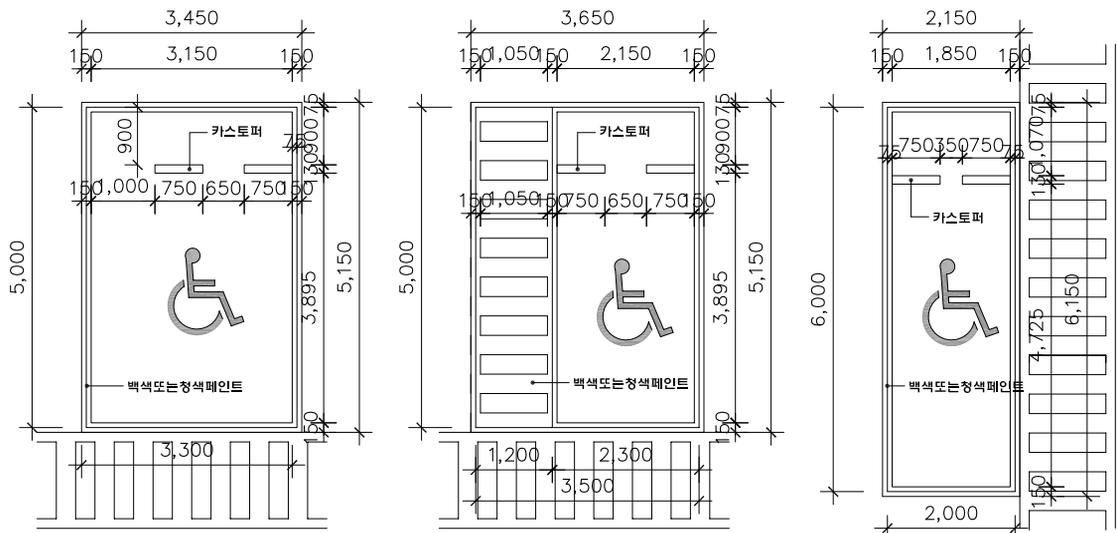
SCALE : 1/100

TYPE 01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행로에 접해서 설치.

TYPE 02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행로에 접해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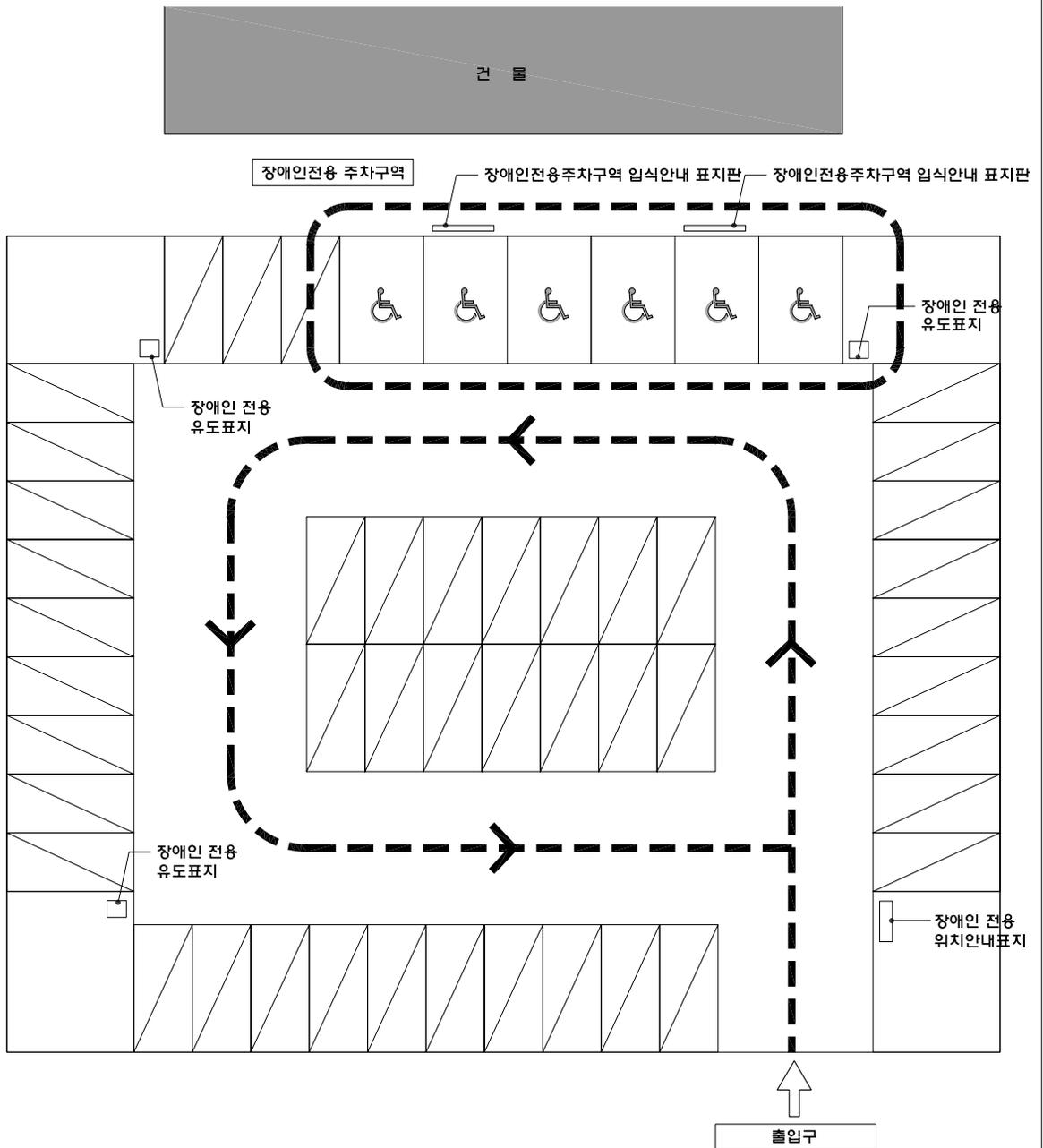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3-33
-----	--------	-----	---------------	----------

세부항목	1.2.3 유도 및 표시
------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YPE 01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안내도

SCALE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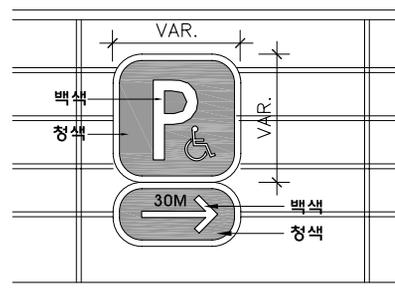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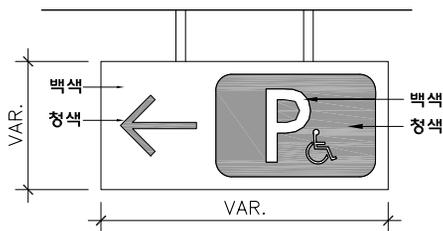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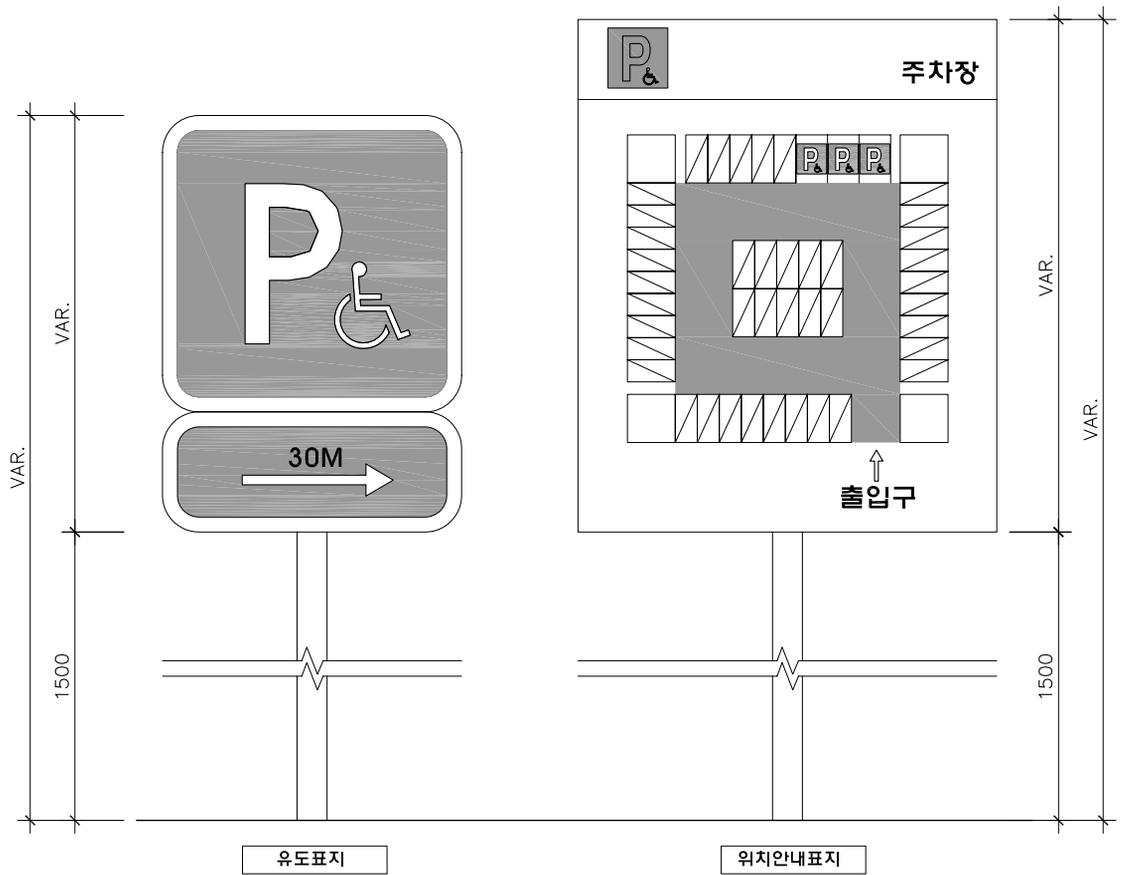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3-34
----	--------	----	---------------	----------

세부항목 1.2.3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YPE 0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표지판

SCALE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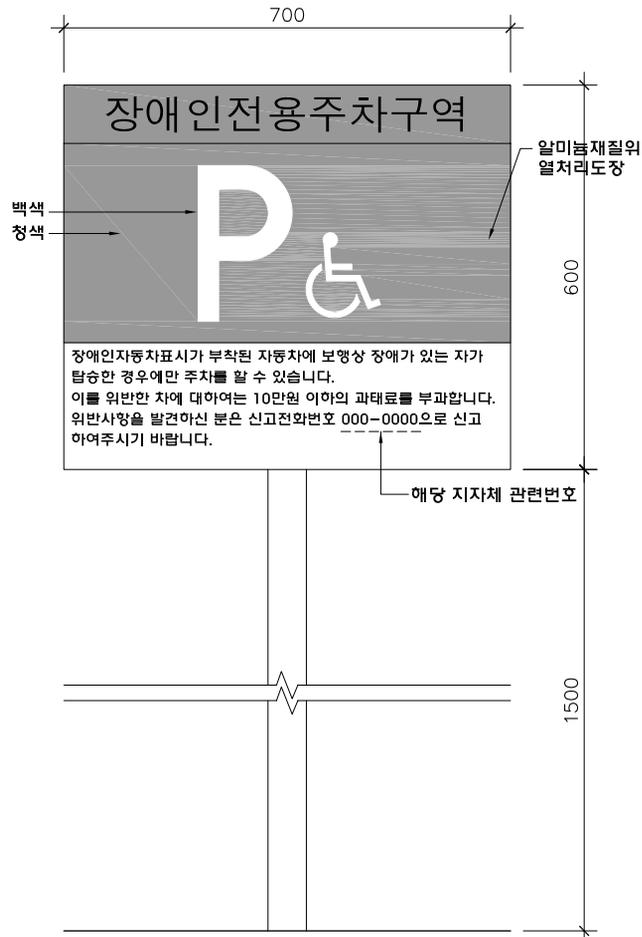
구 분	1.매개시설	항 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B-123-35
-----	--------	-----	---------------	----------

세부항목	1.2.3 유도 및 표시
------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차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 - 000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YPE 0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SCALE :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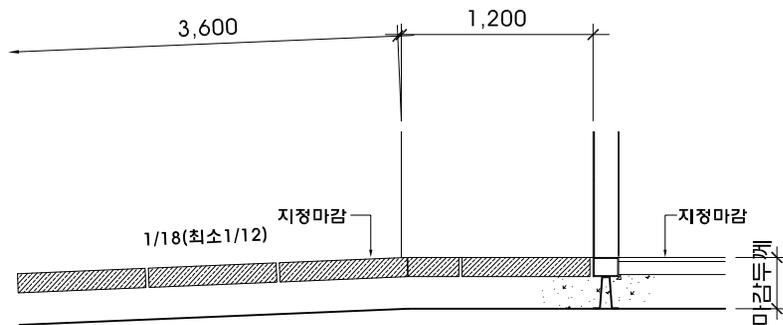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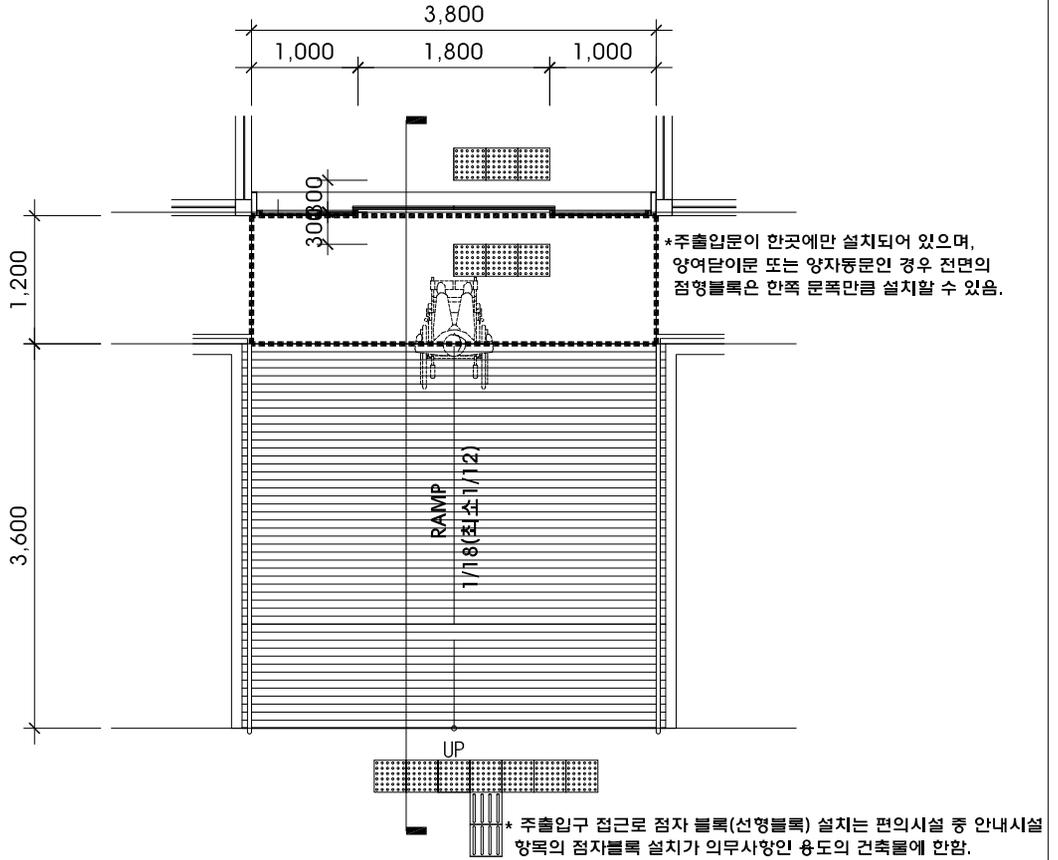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1-36
----	--------	----	-----------------------	----------

세부항목	1.3.1 턱낮추기
------	------------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 주접근로 단차 상세도(자동문)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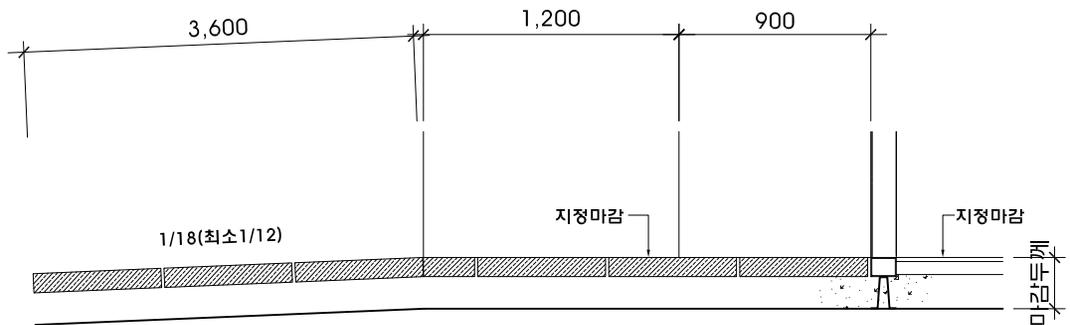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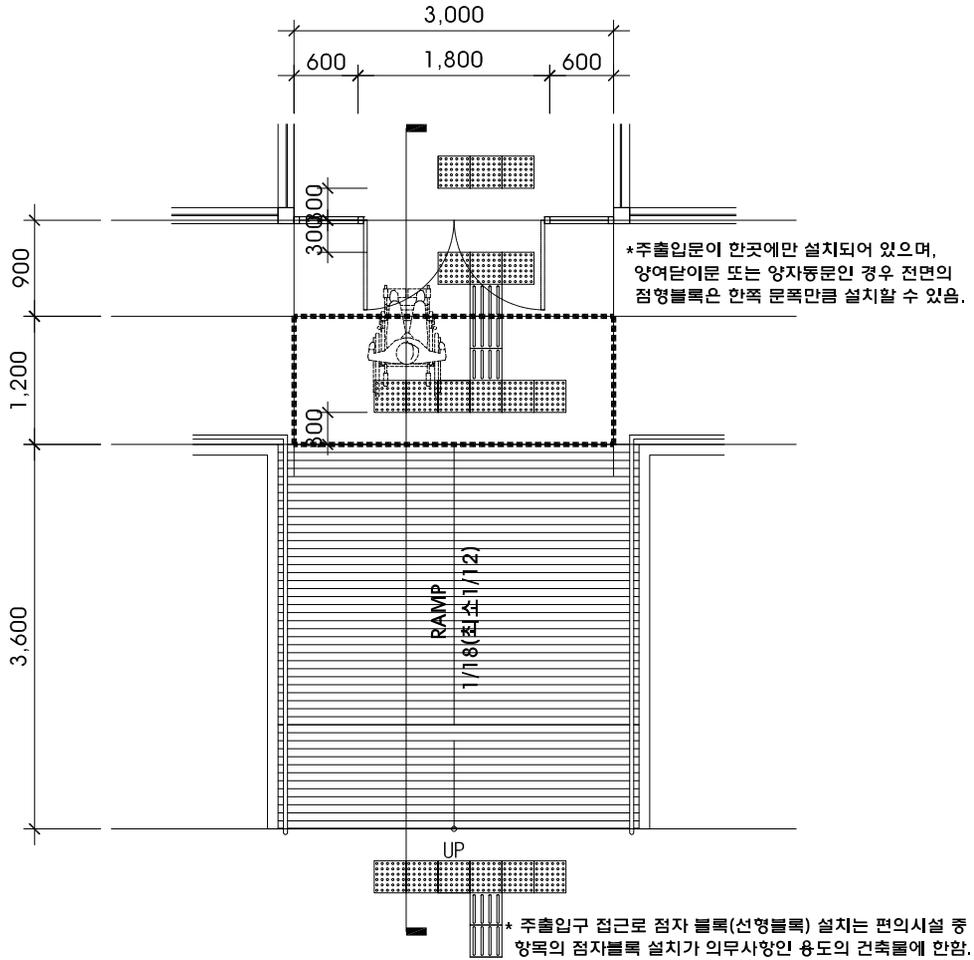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1-37
----	--------	----	-----------------------	----------

세부항목	1.3.1 턱낮추기
------	------------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 주접근로 단차 상세도(여닫이문)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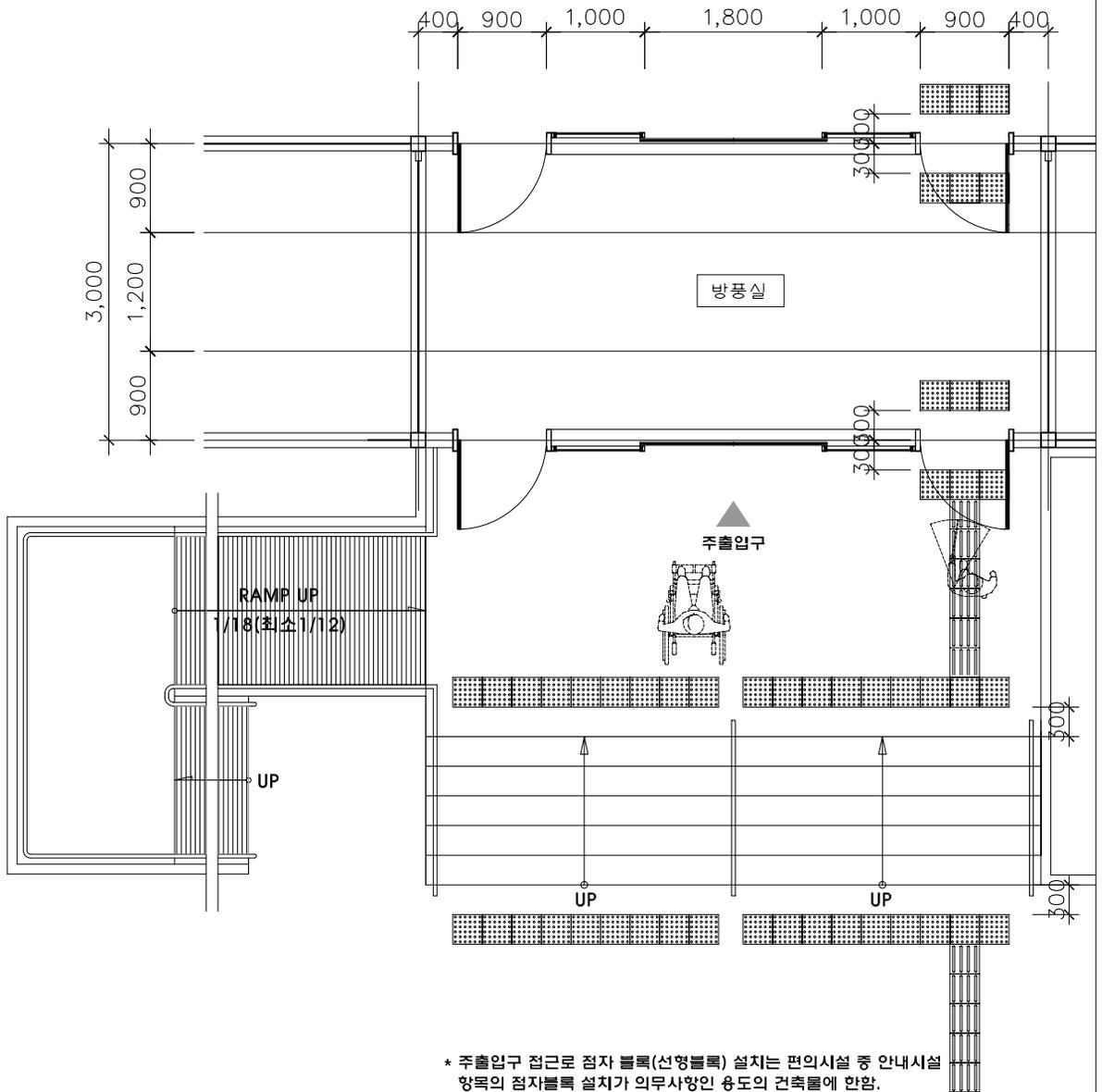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2-38
----	--------	----	-----------------------	----------

세부항목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	--	--	--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TYPE 01 - 자동문과 적인 경사로(방풍실3000이상)

SCALE : 1/60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선형블록)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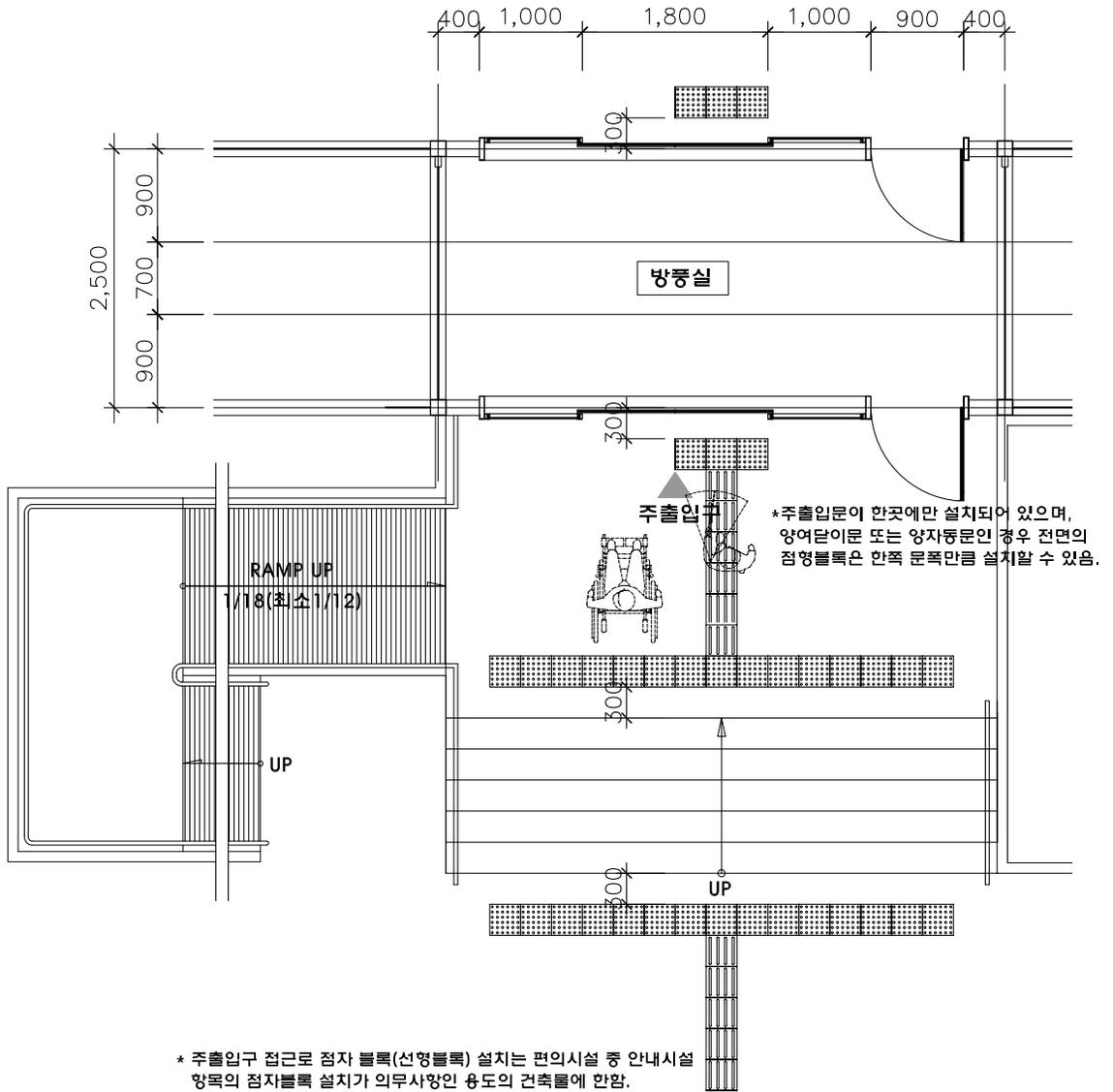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2-39
----	--------	----	-----------------------	----------

세부항목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TYPE 02-자중문과 격인 경사로(방풍실3000미만)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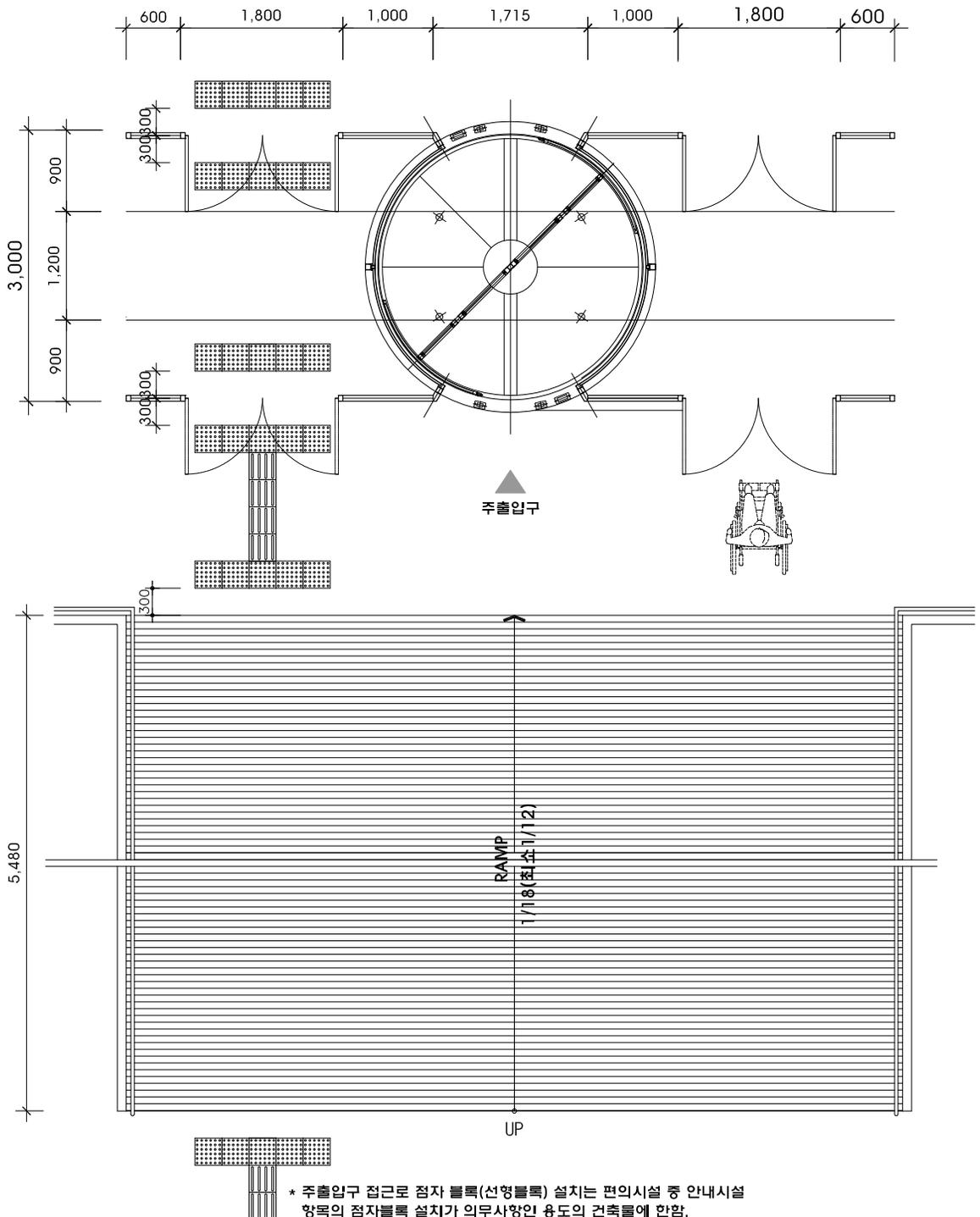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2-40
----	--------	----	-----------------------	----------

세부항목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TYPE 03-회전로과 직선형 경사로(방향실3000이상)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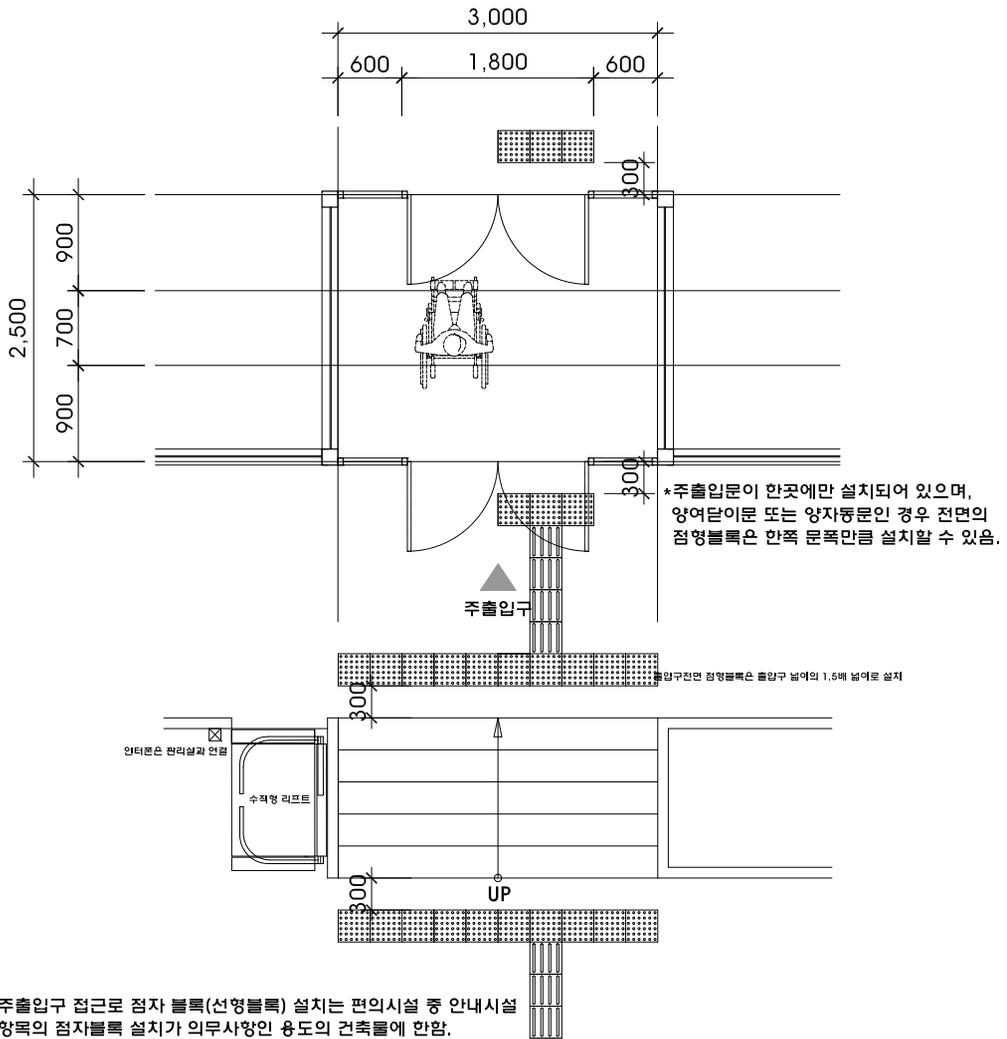
구분	1.매개시설	항목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2-41
----	--------	----	-----------------------	----------

세부항목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TYPE 03-여닫이문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방충실3000미만)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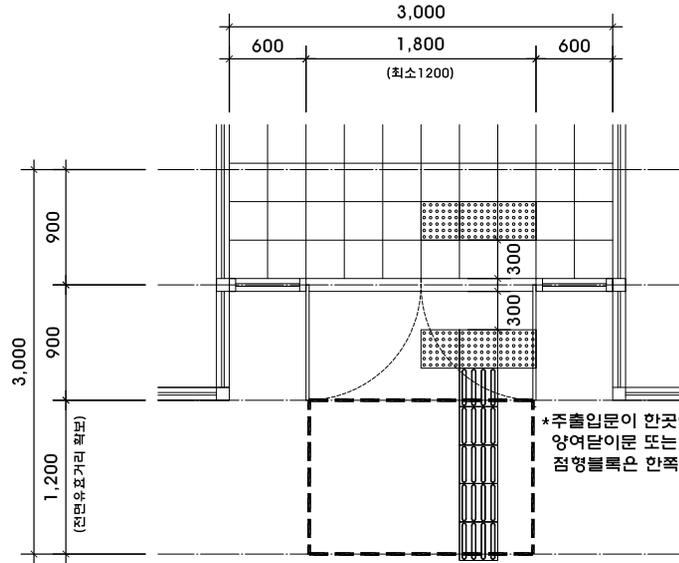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2
----	--------	----	---------------------------	----------

세부항목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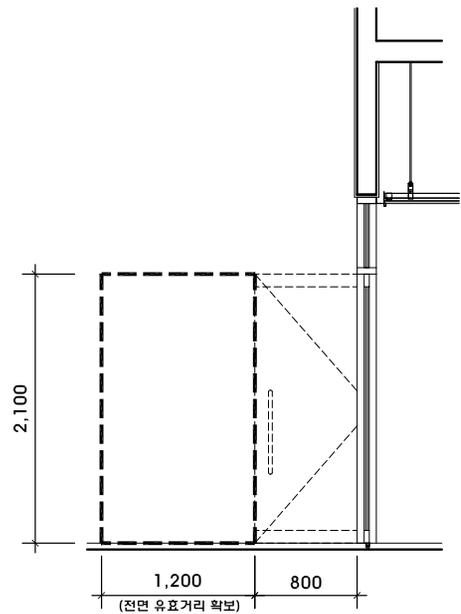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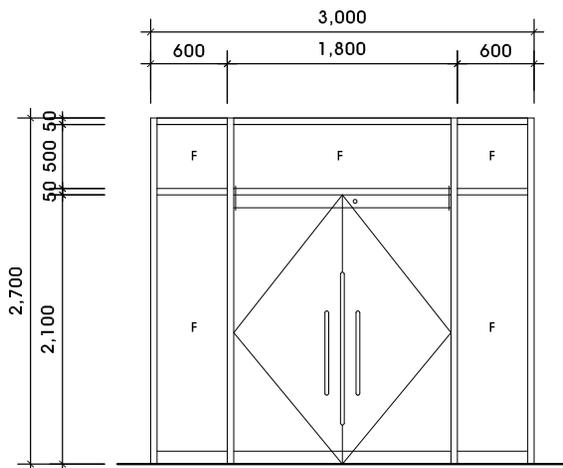
- 1)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권장)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4)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영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5)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닐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권장)

SCALE : 1/50



* 주출입문이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양여닫이문 또는 양자동문인 경우 전면의 점영블록은 한쪽 면쪽만큼 설치할 수 있음.

* 주출입구 접근로 전자블록(선영블록)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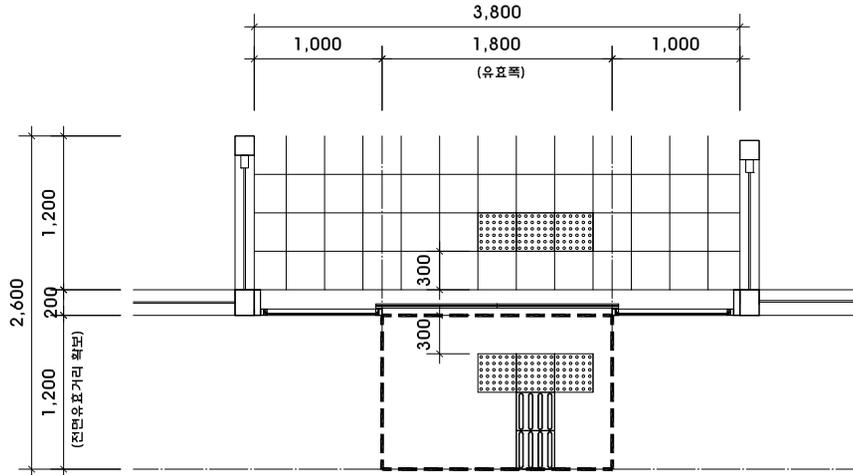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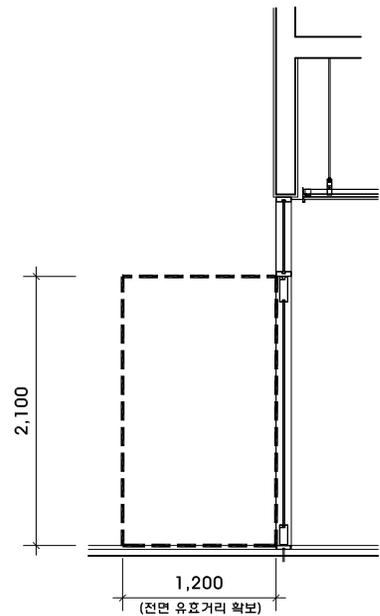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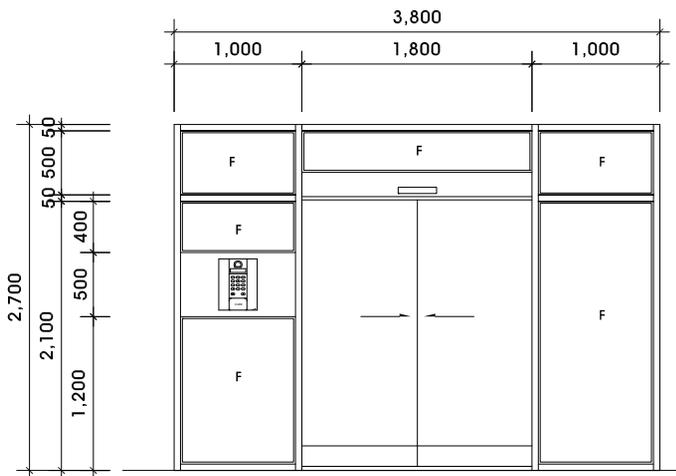
세부항목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

- 1)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권장)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4)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5)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권장)

SCALE : 1/50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선형블록) 설치시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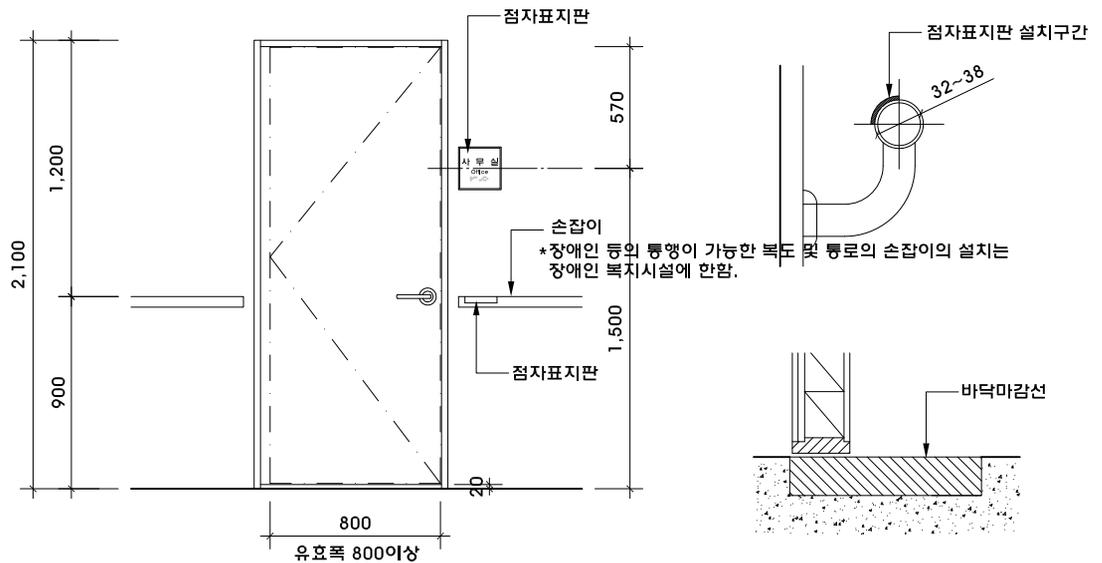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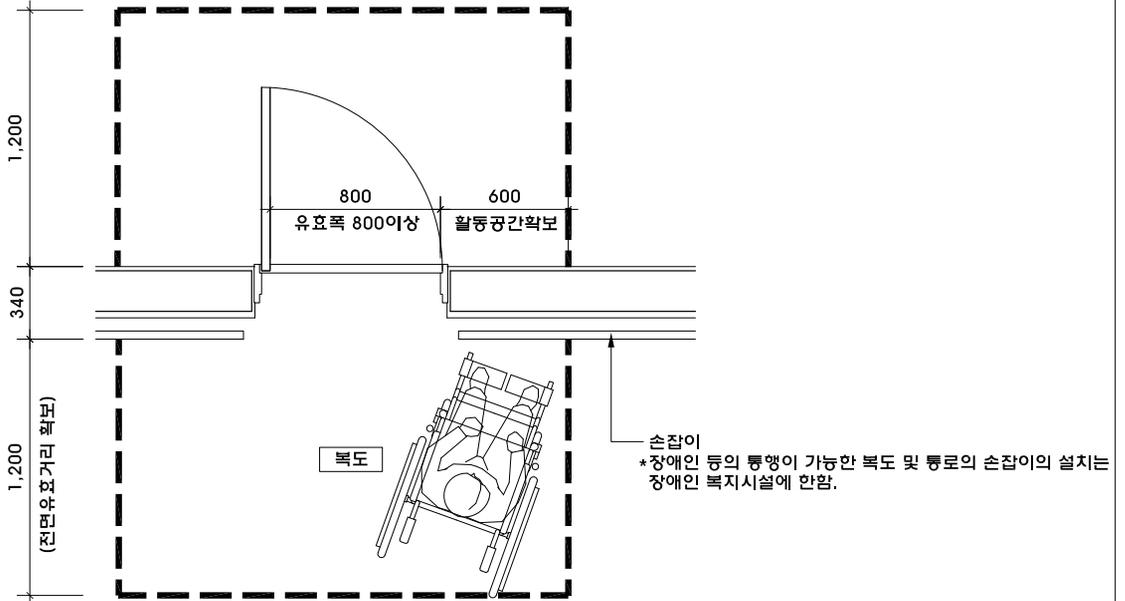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4
----	--------	----	---------------------------	----------

세부항목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

- 1)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4) 건축물 안에 강종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5)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여는 경우 손잡이를 잡기 위해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방향의 벽면은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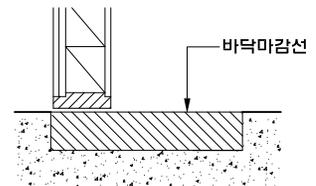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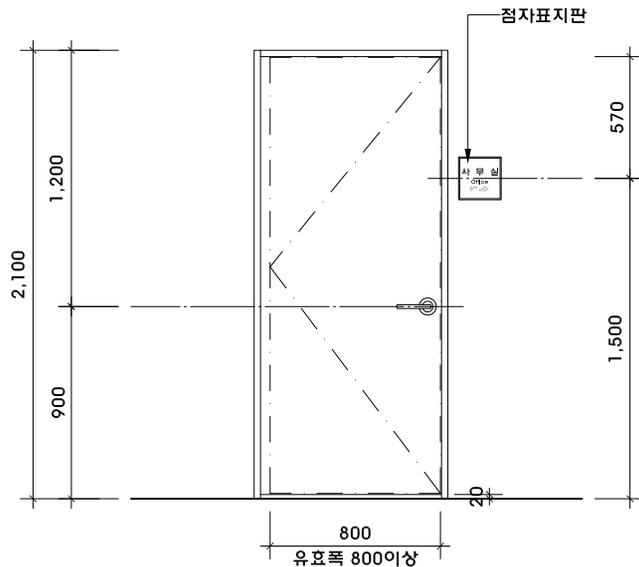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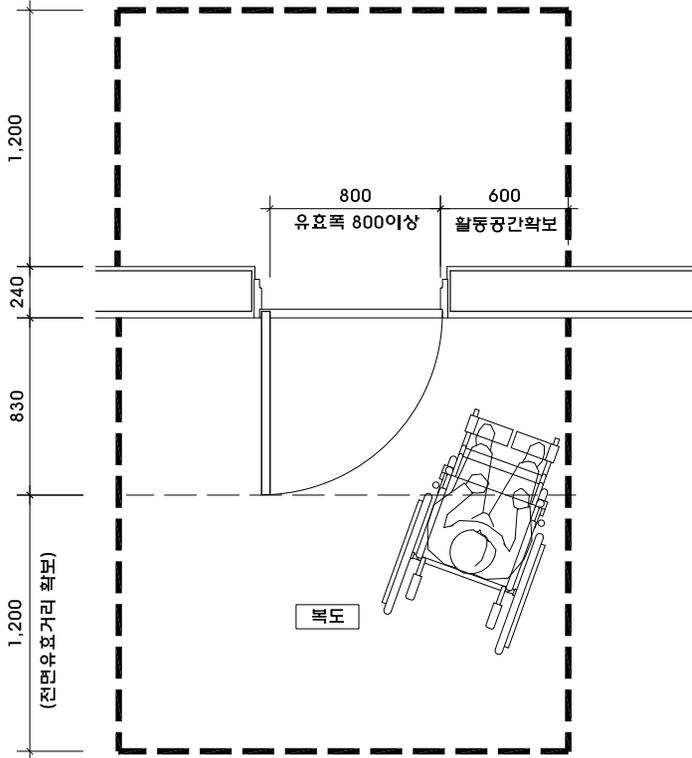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5
----	--------	----	---------------------------	----------

세부항목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

- 1)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의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4) 건축물 안에 강종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5)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여는 경우 손잡이를 잡기 위해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방향의 벽면은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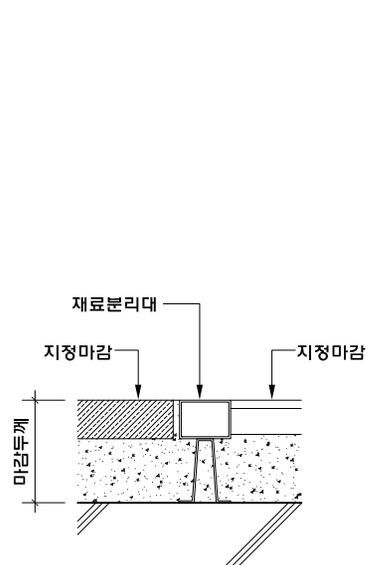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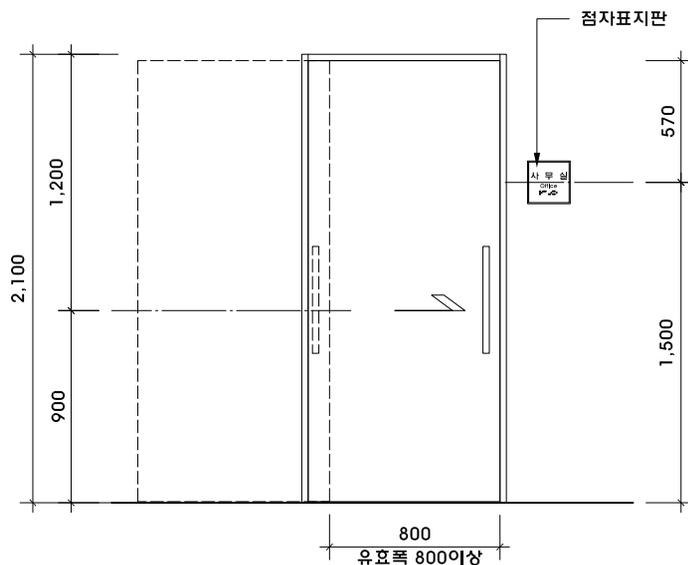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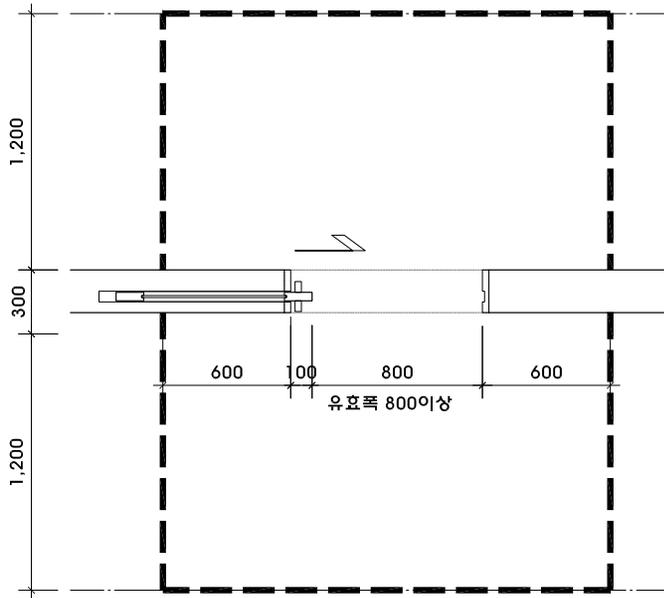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6
----	--------	----	---------------------------	----------

세부항목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

- 1)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4) 건축물 안에 광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5)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여는 경우 손잡이를 잡기 위해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방향의 벽면은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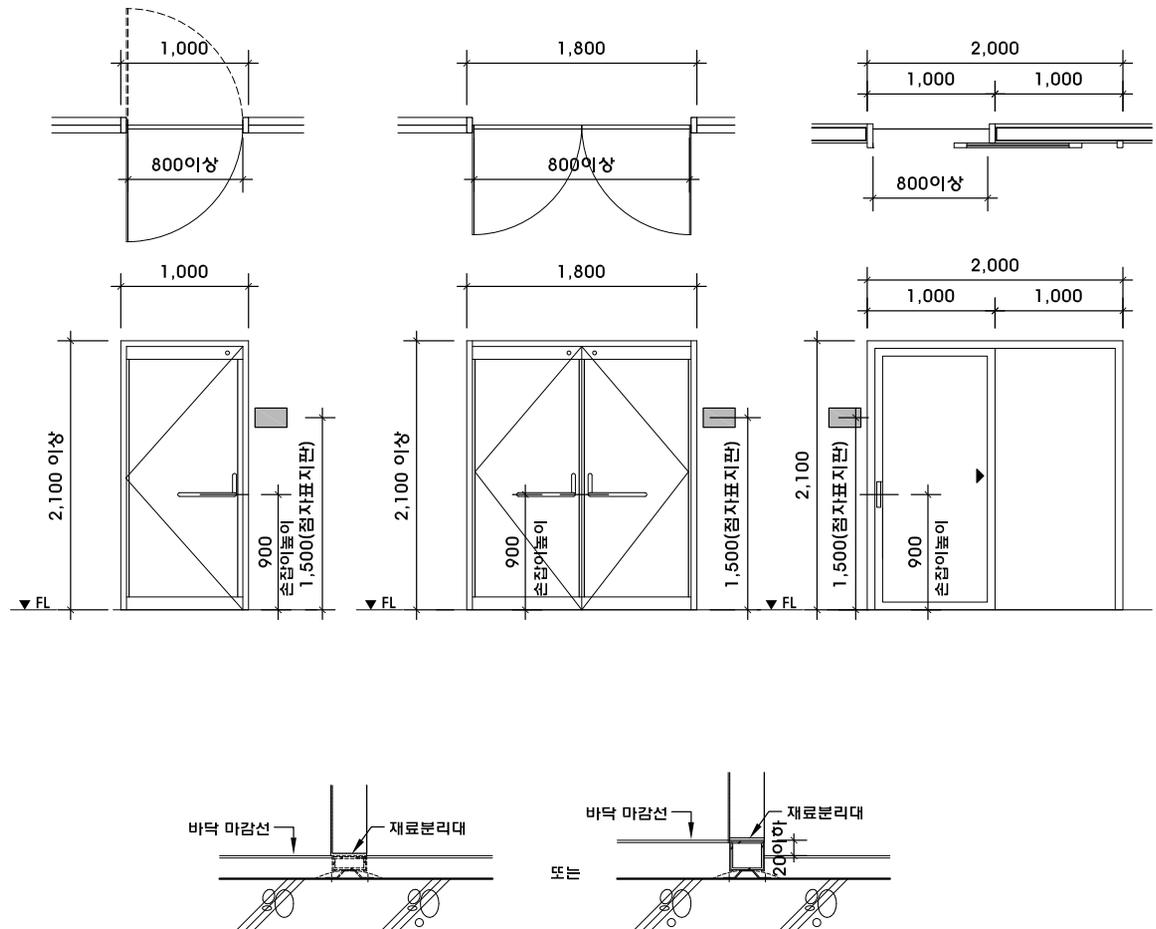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2-47
----	--------	----	---------------------------	----------

세부항목	2.1.2 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TYPE 01 강화유리문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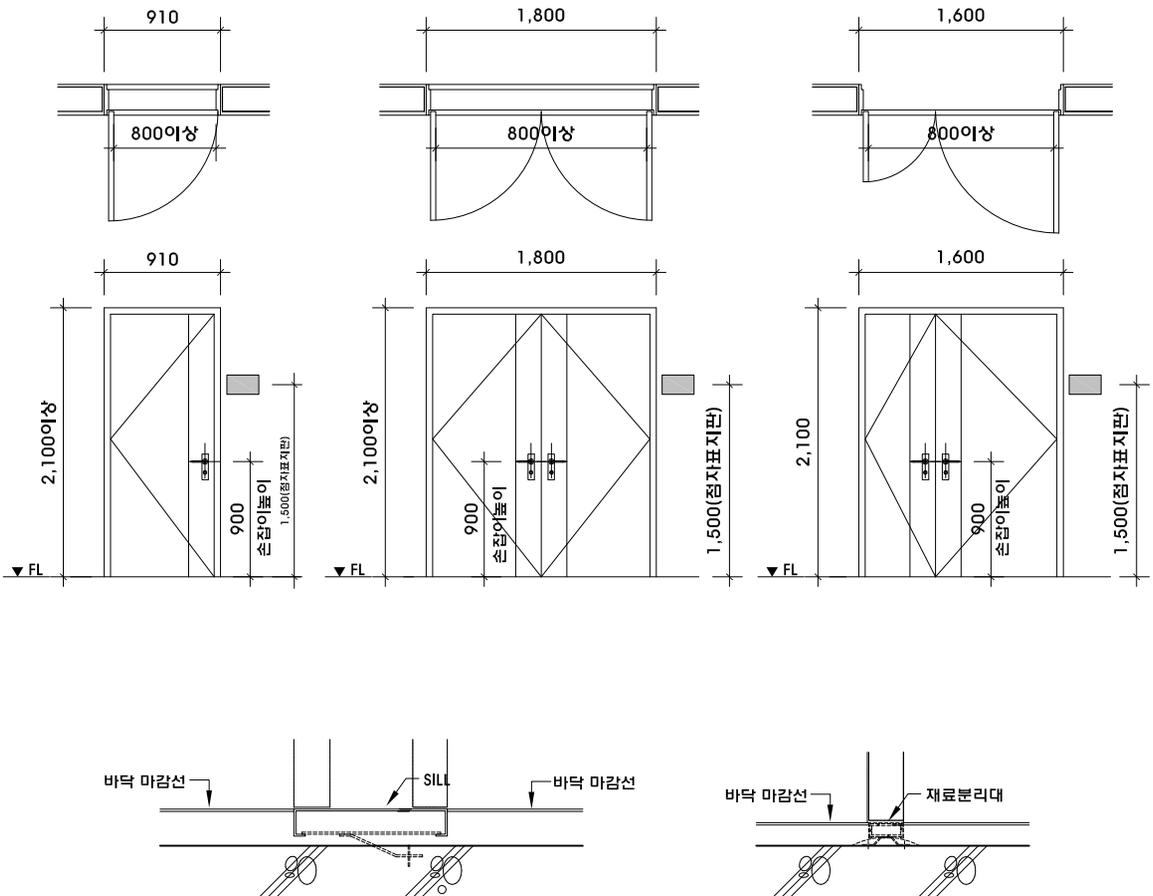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2-48
----	--------	----	---------------------------	----------

세부항목	2.1.2 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TYPE 02 철재문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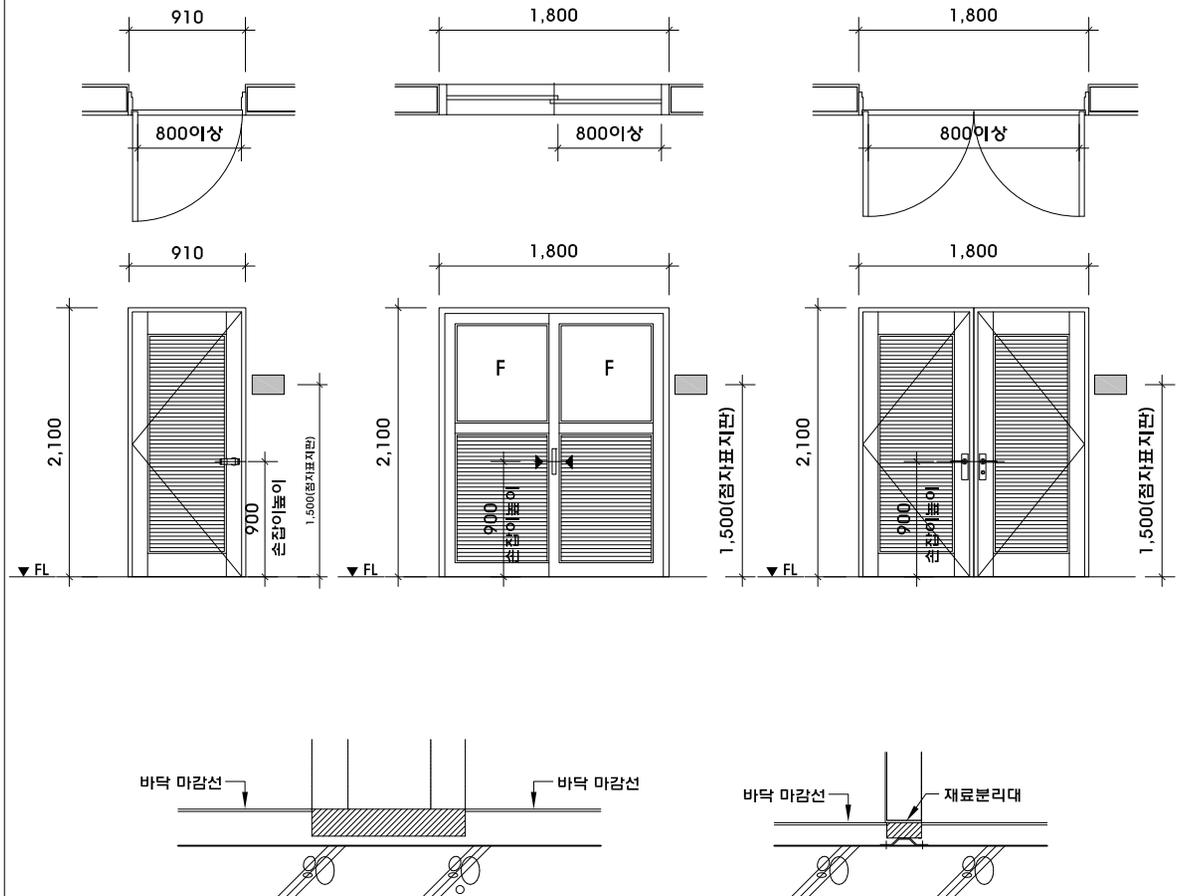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2-49
----	--------	----	---------------------------	----------

세부항목	2.1.2 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TYPE 03 목재문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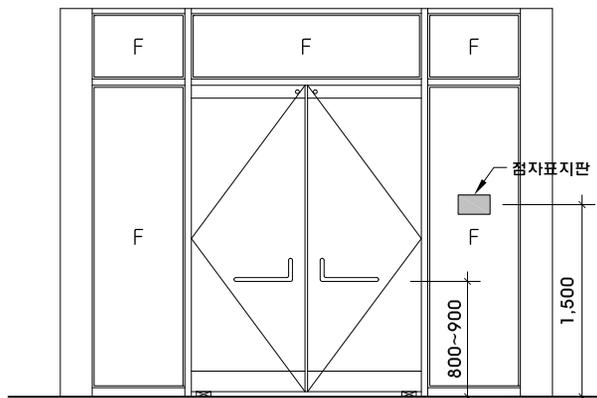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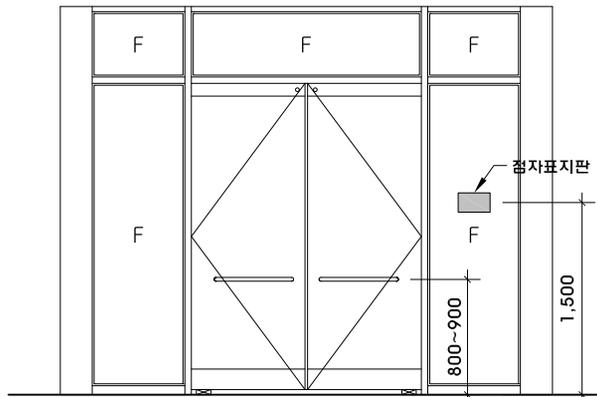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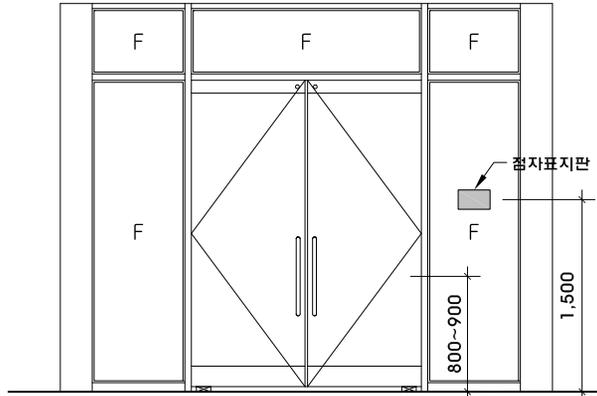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3-50
----	--------	----	---------------------------	----------

세부항목	2.1.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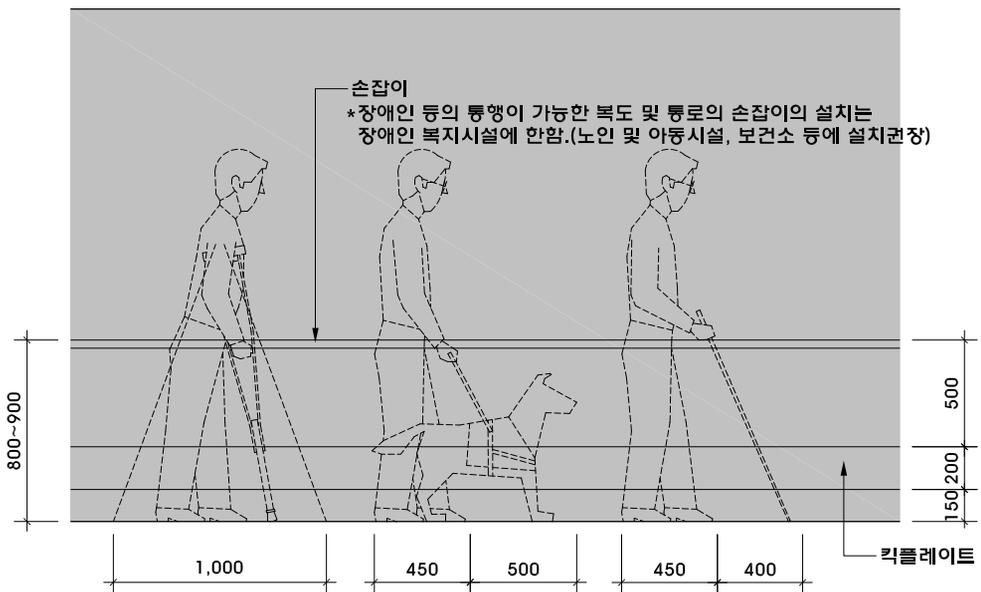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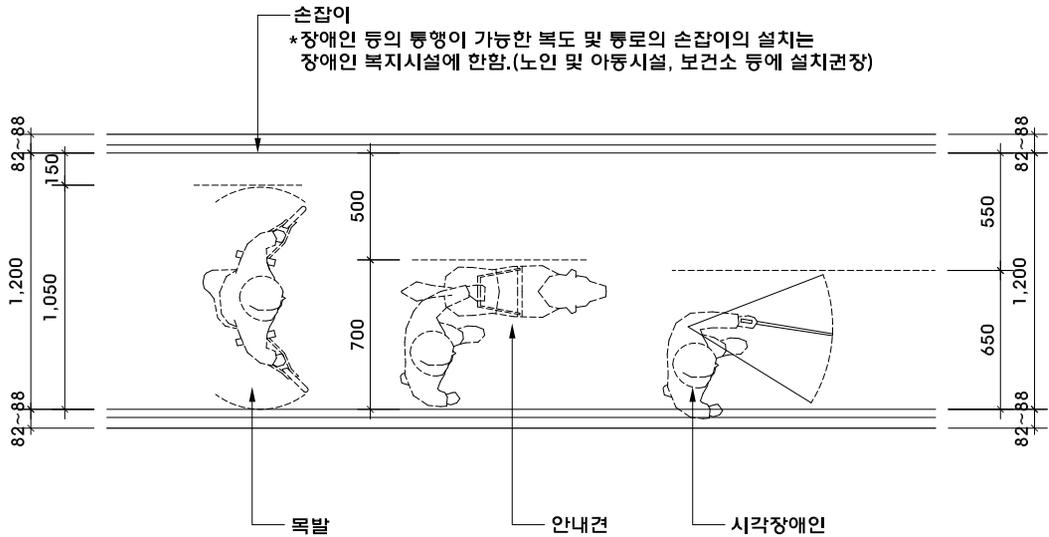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1
----	--------	----	----------------------------	----------

세부항목 2.2.1 유효폭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TYPE 01 유효폭 1200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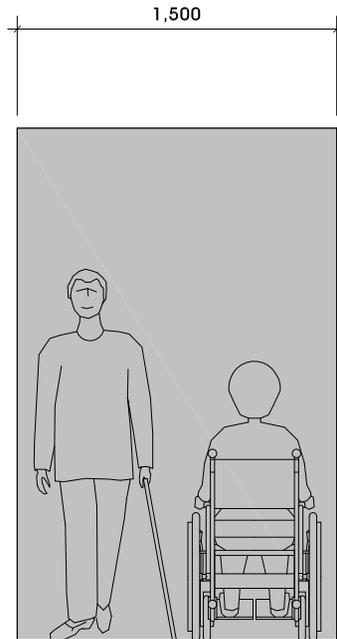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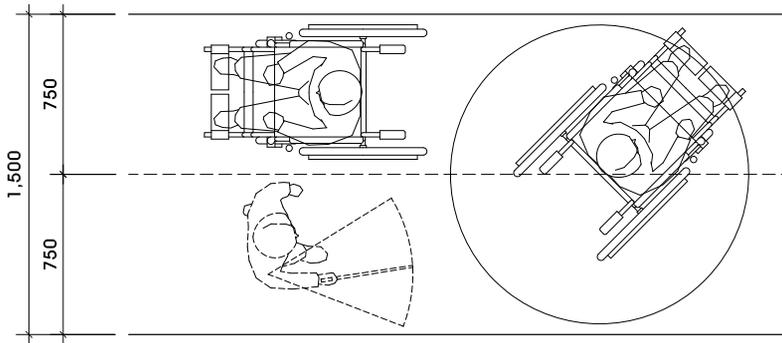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2
----	--------	----	----------------------------	----------

세부항목	2.2.1 유효폭
------	-----------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TYPE 01 유효폭 1500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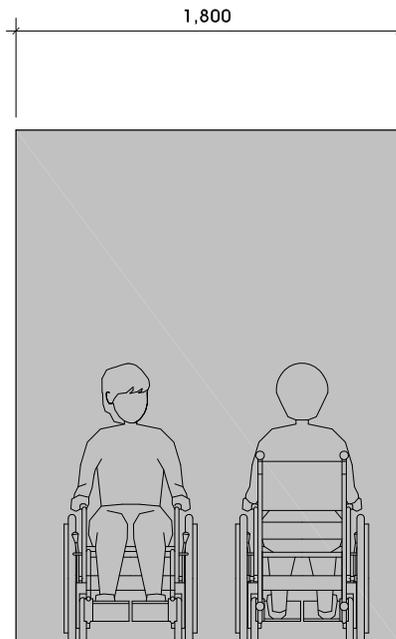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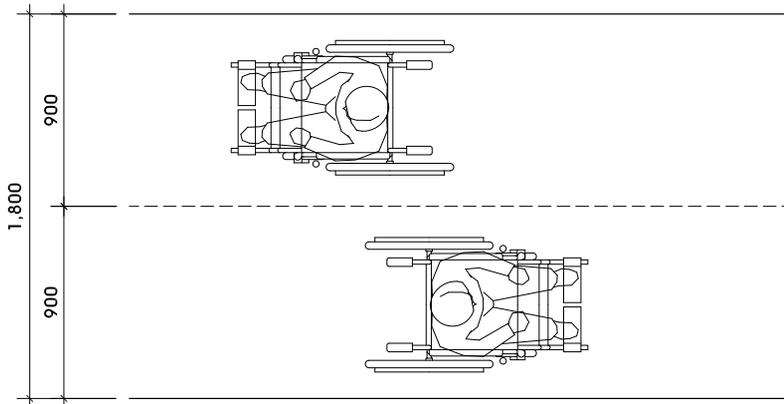
구 분	2.내부시설	항 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3
-----	--------	-----	----------------------------	----------

세부항목	2.2.1 유효폭
------	-----------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TYPE 01 유효폭 1800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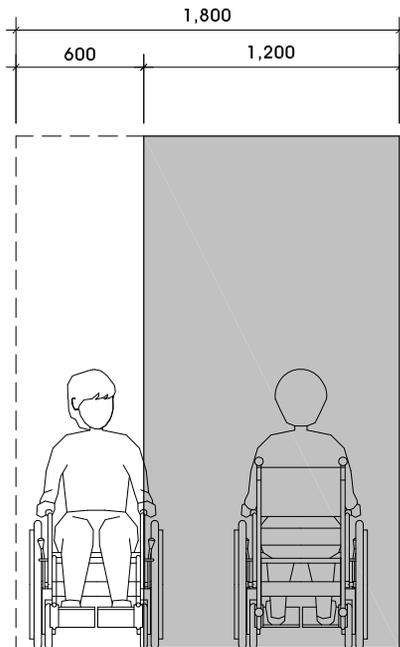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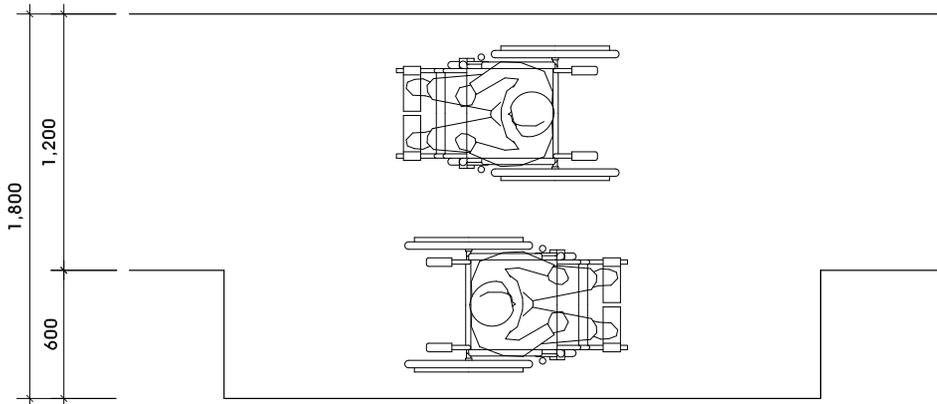
구 분	2.내부시설	항 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4
-----	--------	-----	----------------------------	----------

세부항목	2.2.1 유효폭
------	-----------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TYPE 01 유효폭 1200 일부 교행가능구간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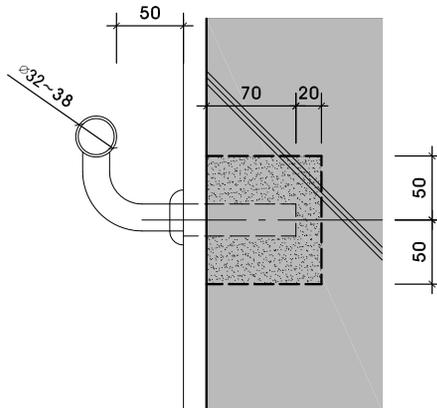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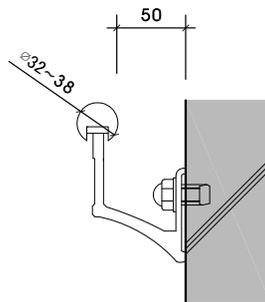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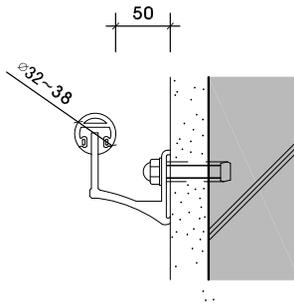


구 분	2.내부시설	항 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3-55
-----	--------	-----	----------------------------	----------

세부항목 2.2.3 손잡이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SCALE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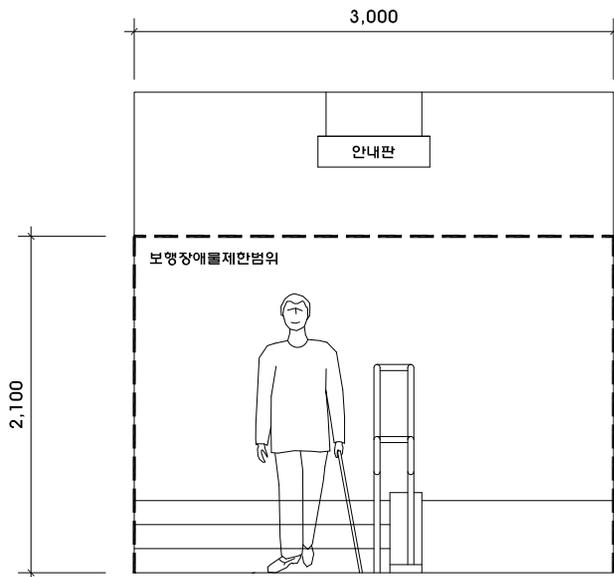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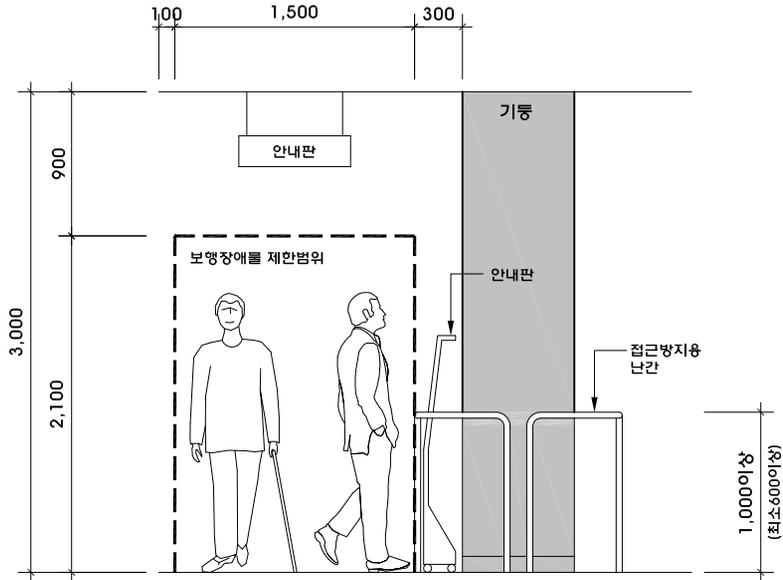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4-56
----	--------	----	----------------------------	----------

세부항목 2.2.4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SCALE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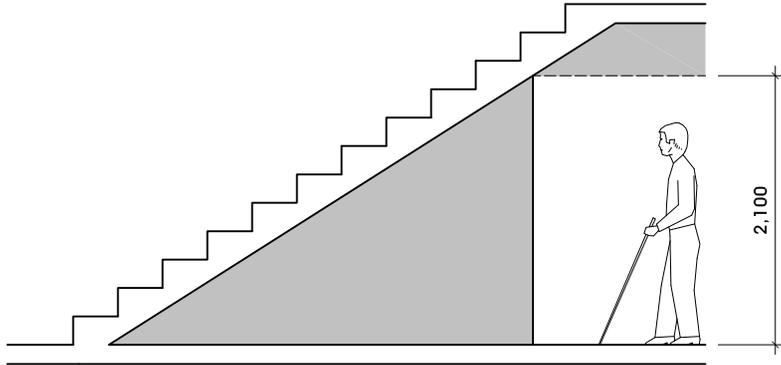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4-57
----	--------	----	----------------------------	----------

세부항목	2.2.4 보행장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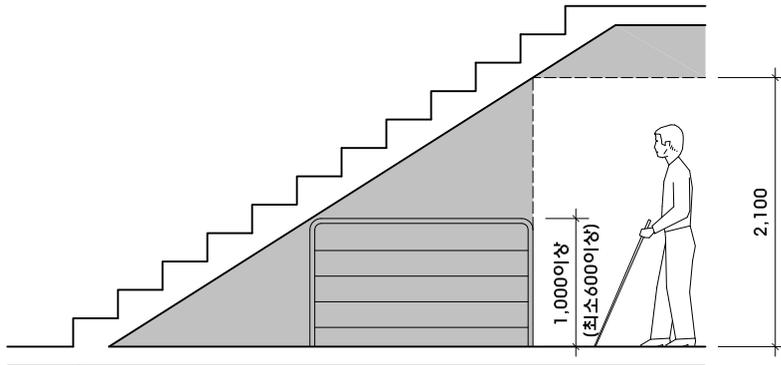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접근방지용 보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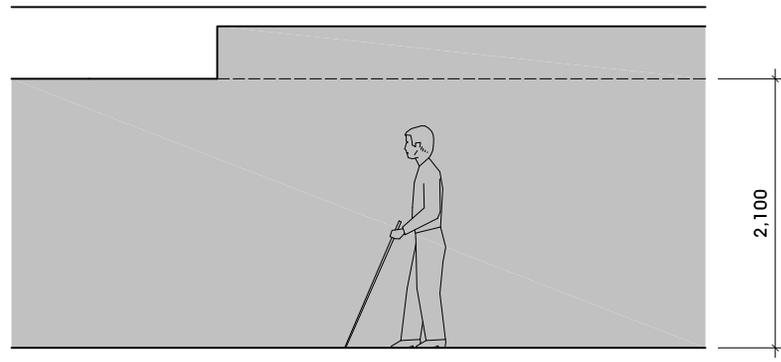
SCALE : 1/50



TYPE 02 접근방지용 난간



TYPE 03 통로 상부 유효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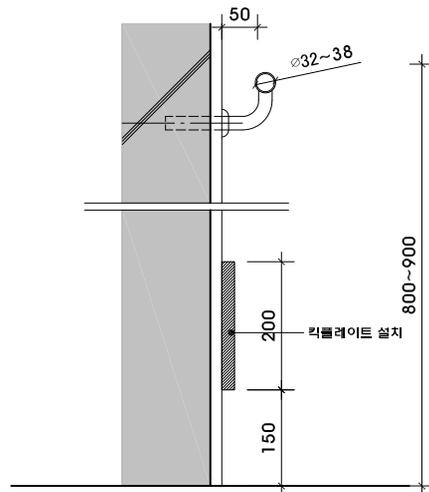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5-58
----	--------	----	----------------------------	----------

세부항목	2.2.5 안전성 확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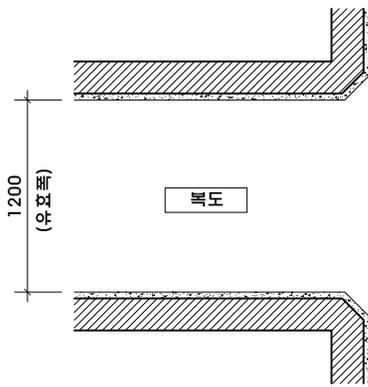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키클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SCALE :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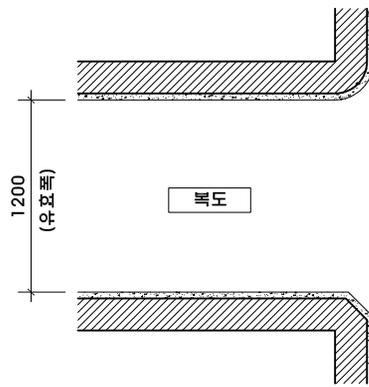
키클레이트 설치



복도 모서리 부분



[TYP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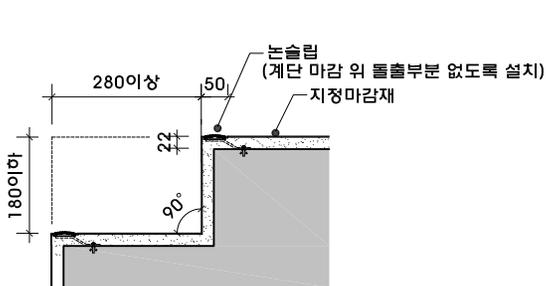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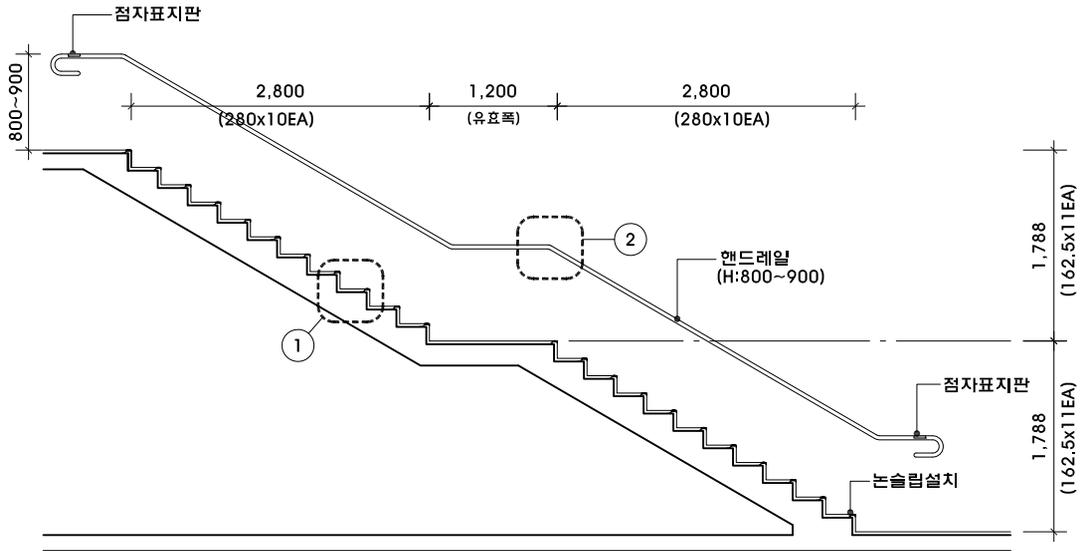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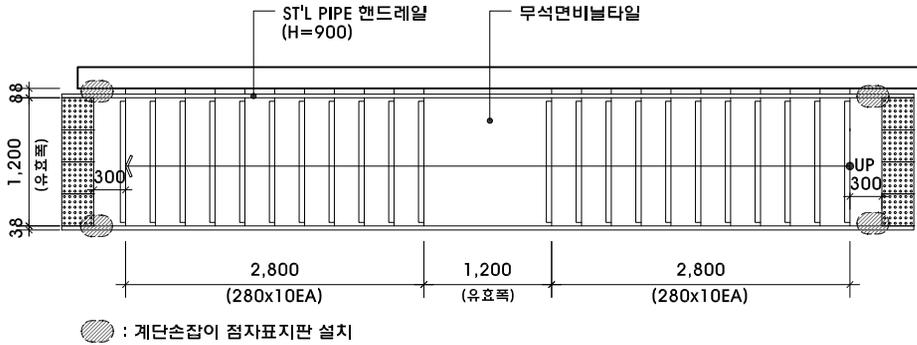
[TYPE 02]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1-5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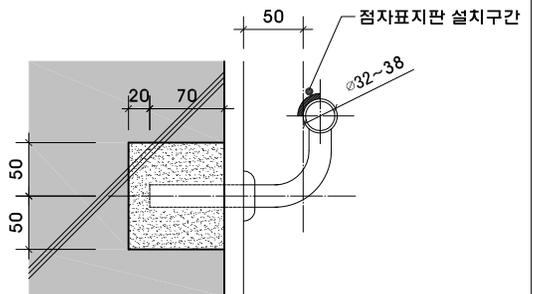
세부항목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SCALE : 1/60



DETAIL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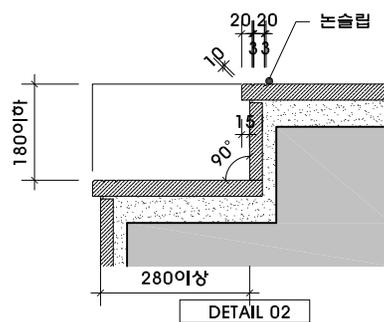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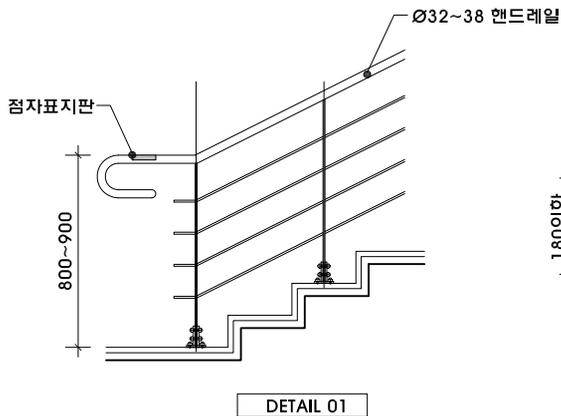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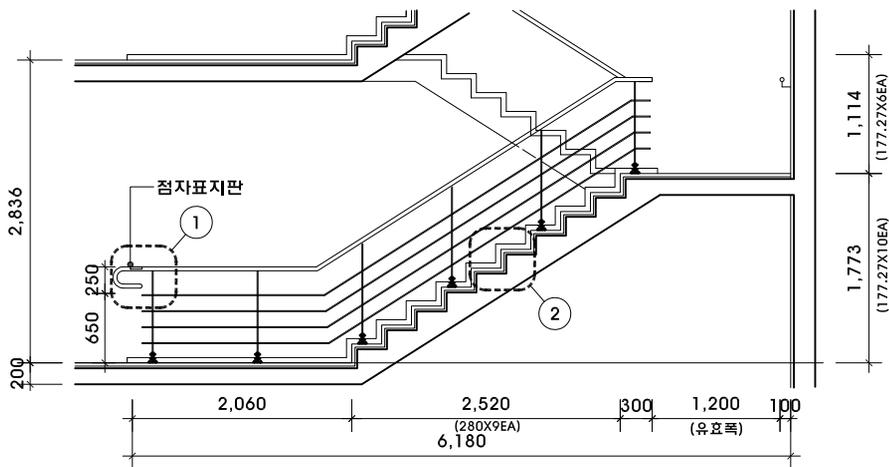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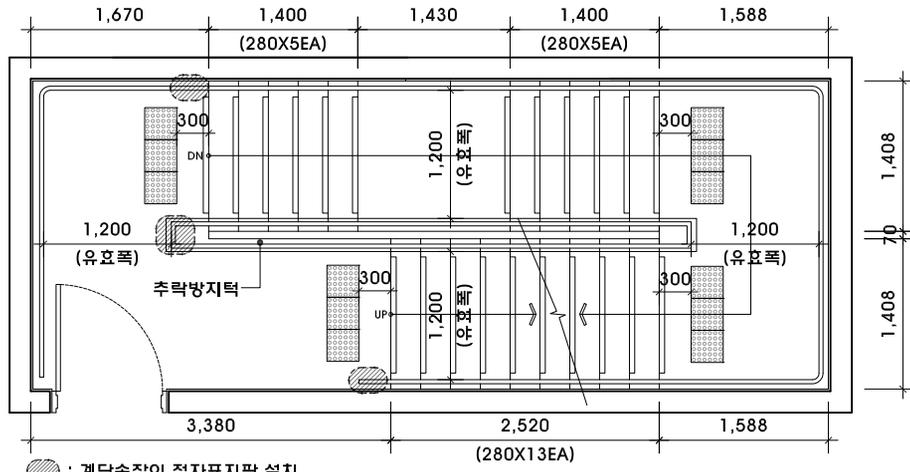
DETAIL 02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1-60
----	--------	----	-----------------------	----------

세부항목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3)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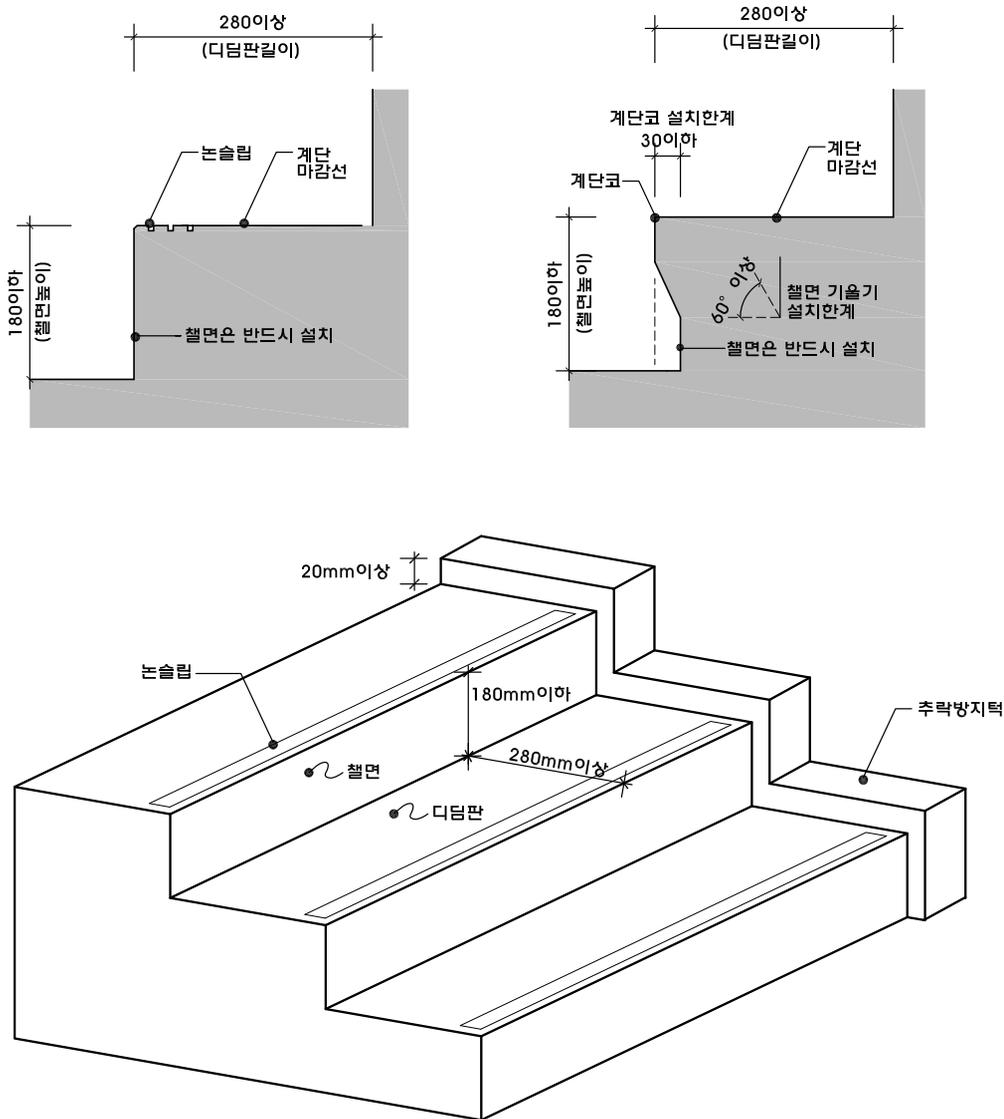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2-62
----	--------	----	-----------------------	----------

세부항목 2.3.2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권장)
- 5)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권장)

SCALE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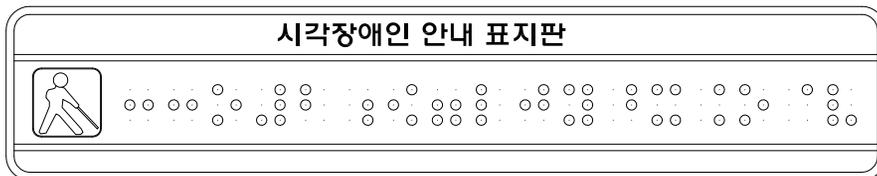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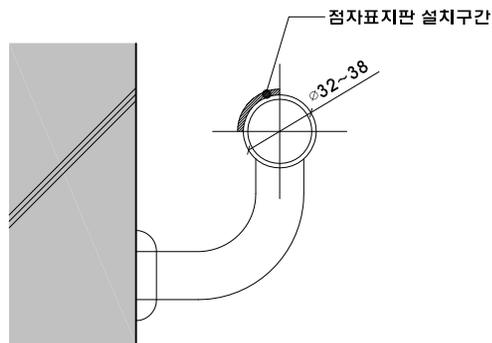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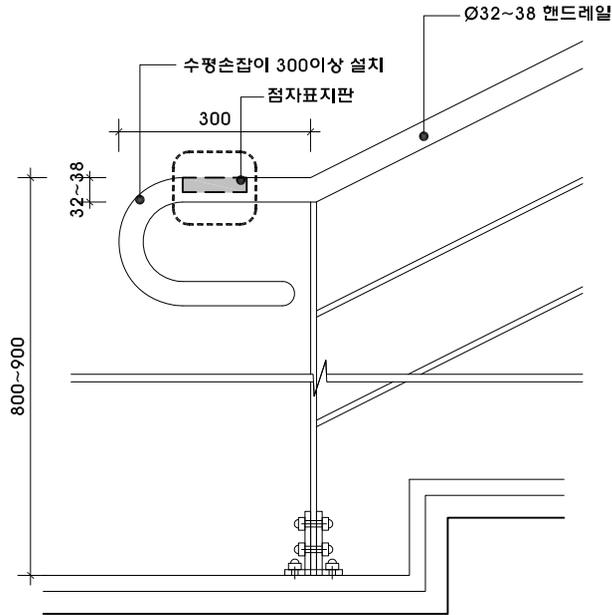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3-63
----	--------	----	-----------------------	----------

세부항목 2.3.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SCALE :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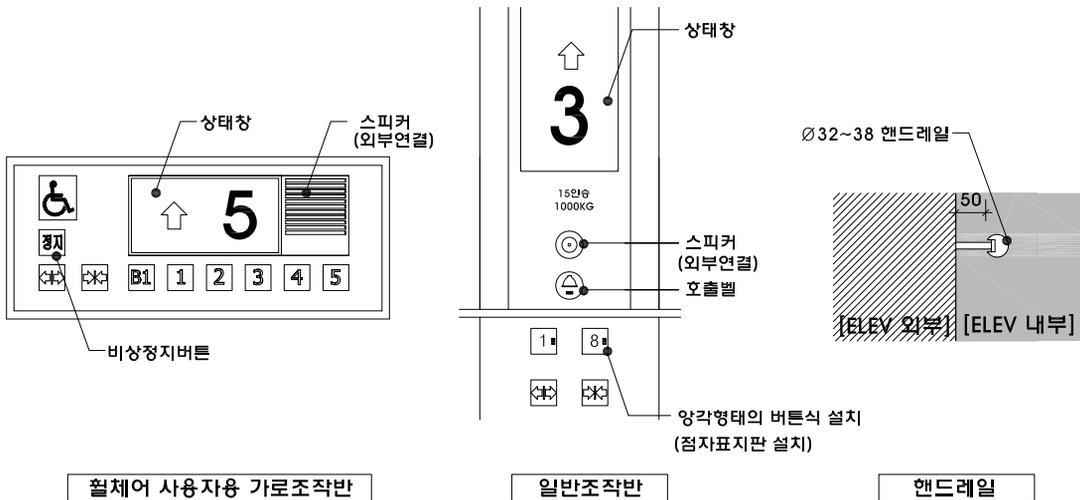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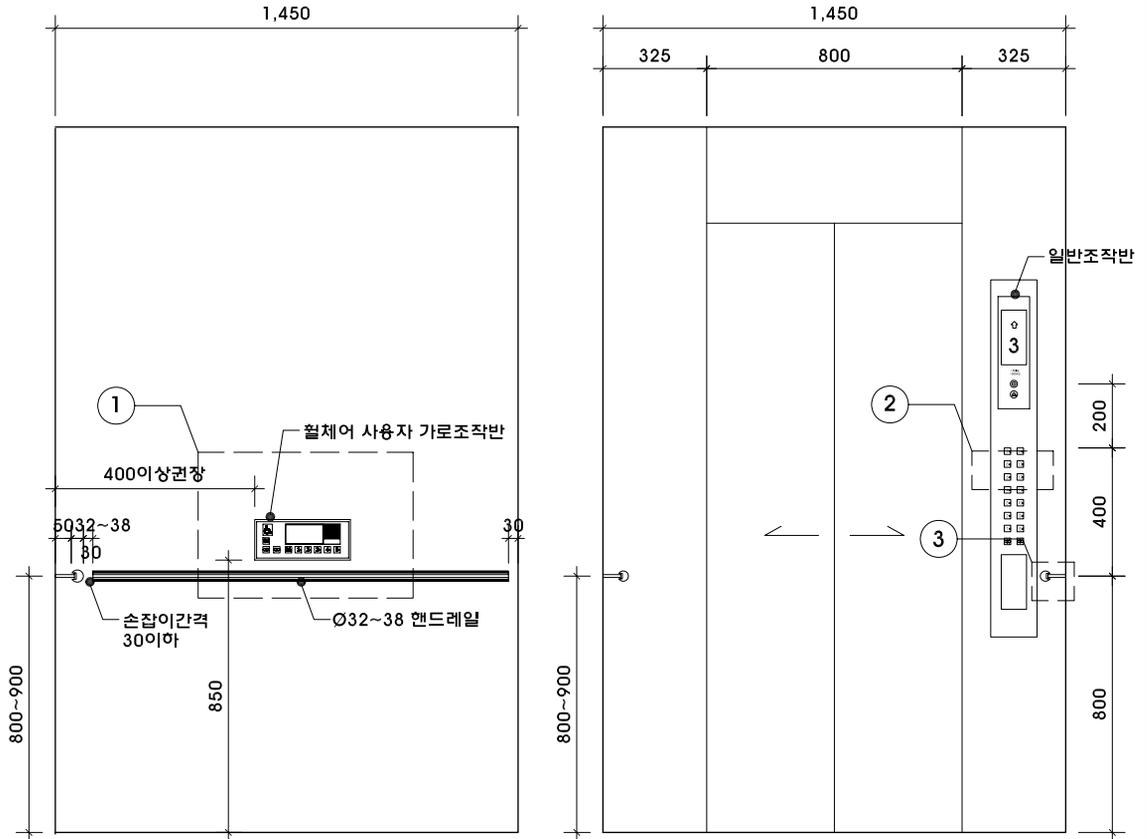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4 장애인용 승강기	C-242-65
----	--------	----	--------------	----------

세부항목 2.4.2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쪽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충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SCALE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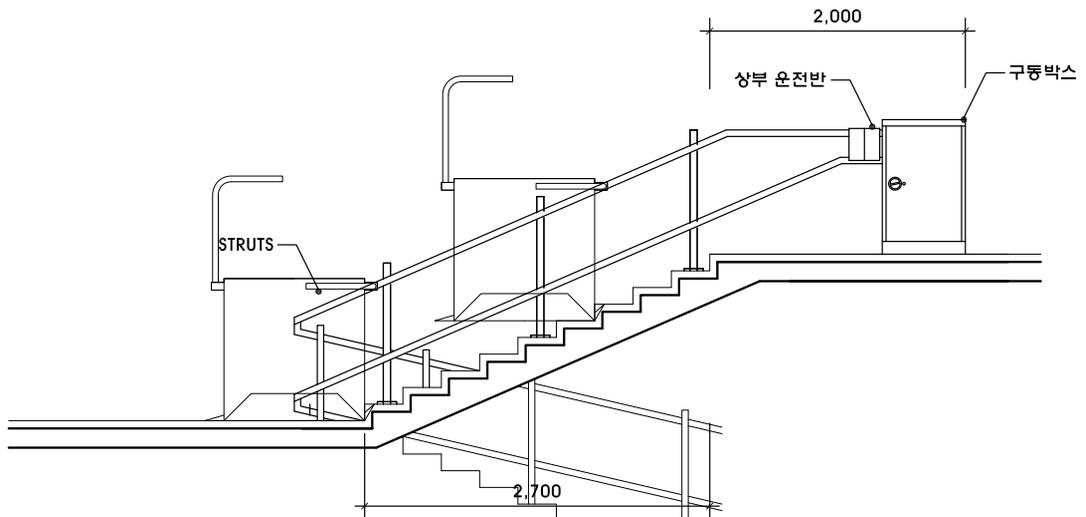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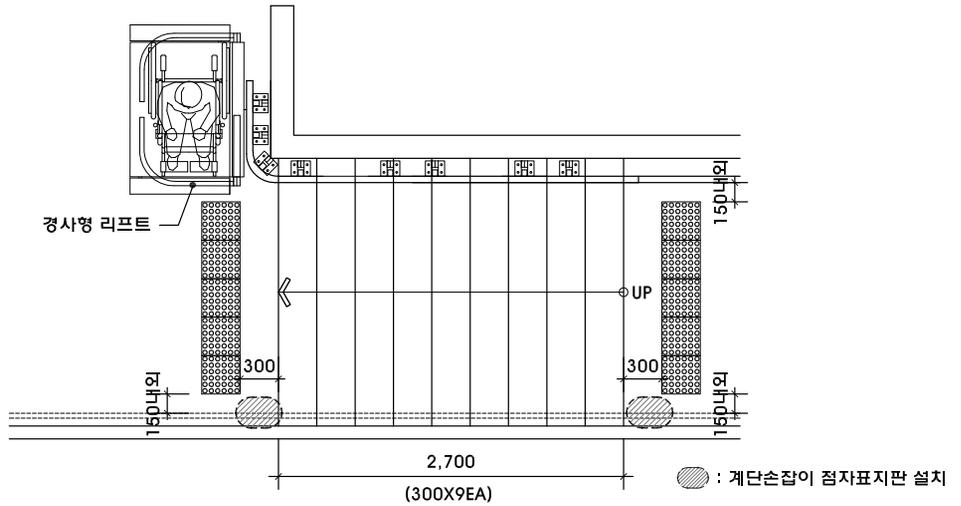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5 휠체어리프트	C-252-67
----	--------	----	------------	----------

세부항목 2.5.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영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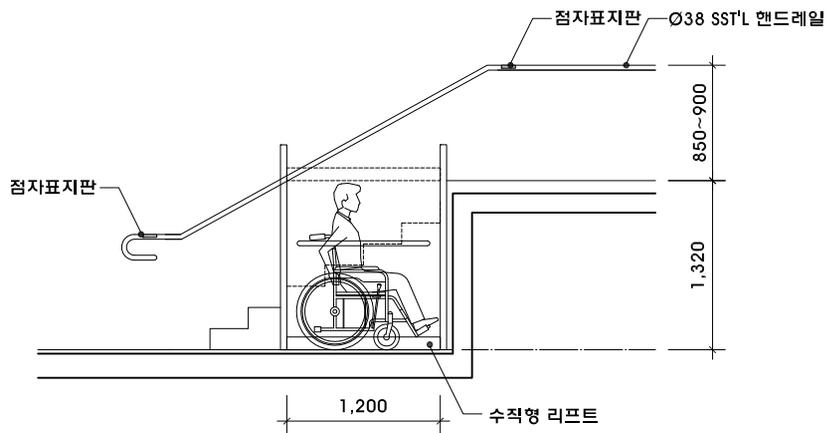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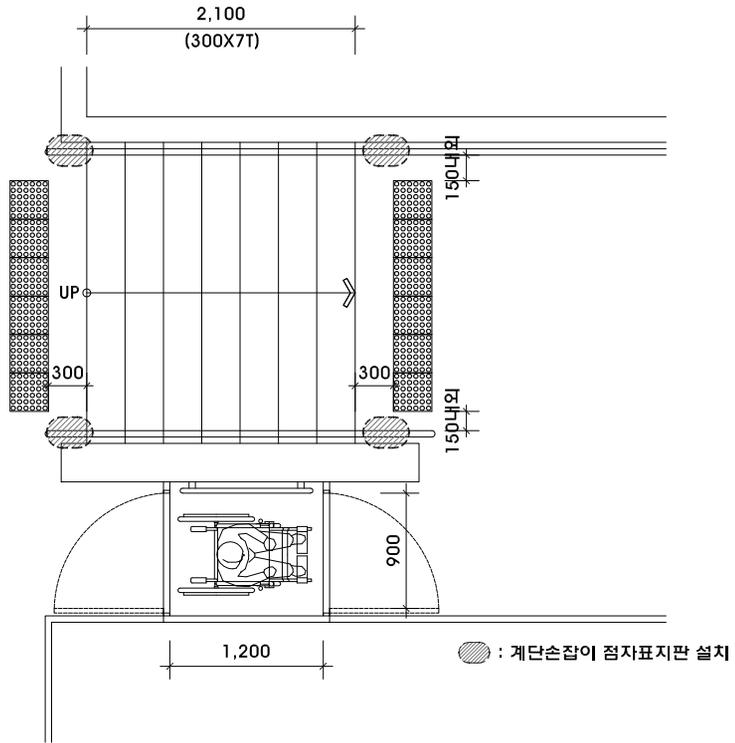
SCALE : 1/50



구분	2.내부시설	항목	2.5 휠체어리프트	C-253-68
----	--------	----	------------	----------

세부항목	2.5.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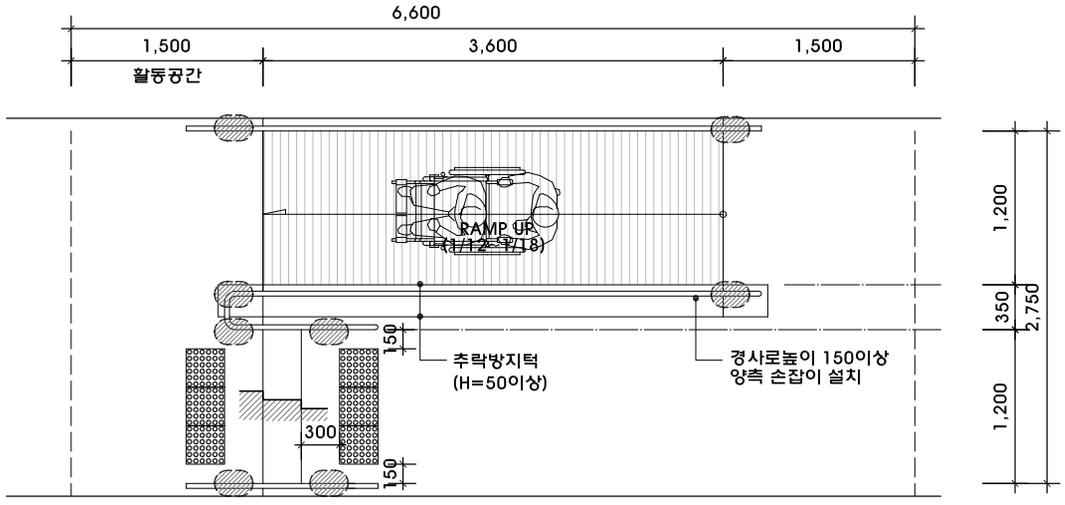


구 분	2.내부시설	항 목	2.6 경사로	C-261-6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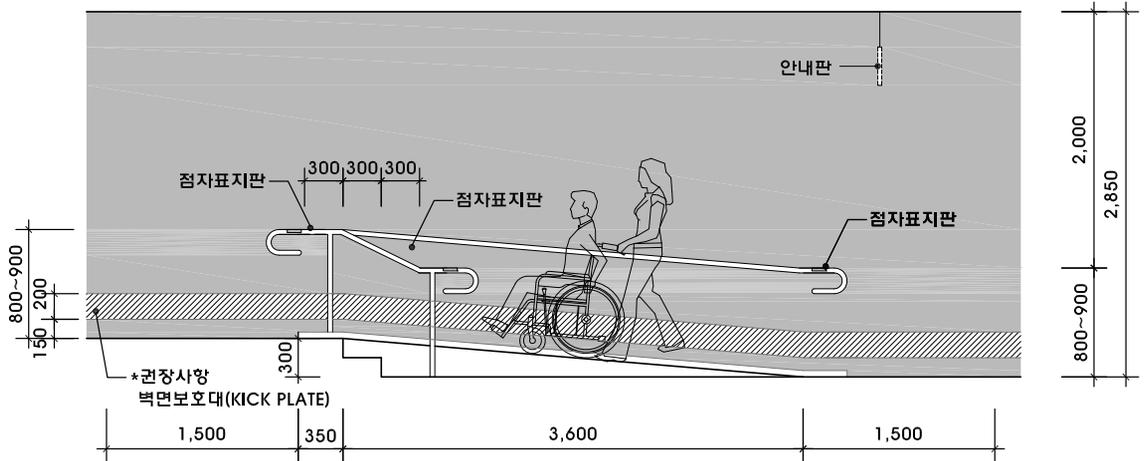
세부항목 2.6.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SCALE : 1/50



● : 계단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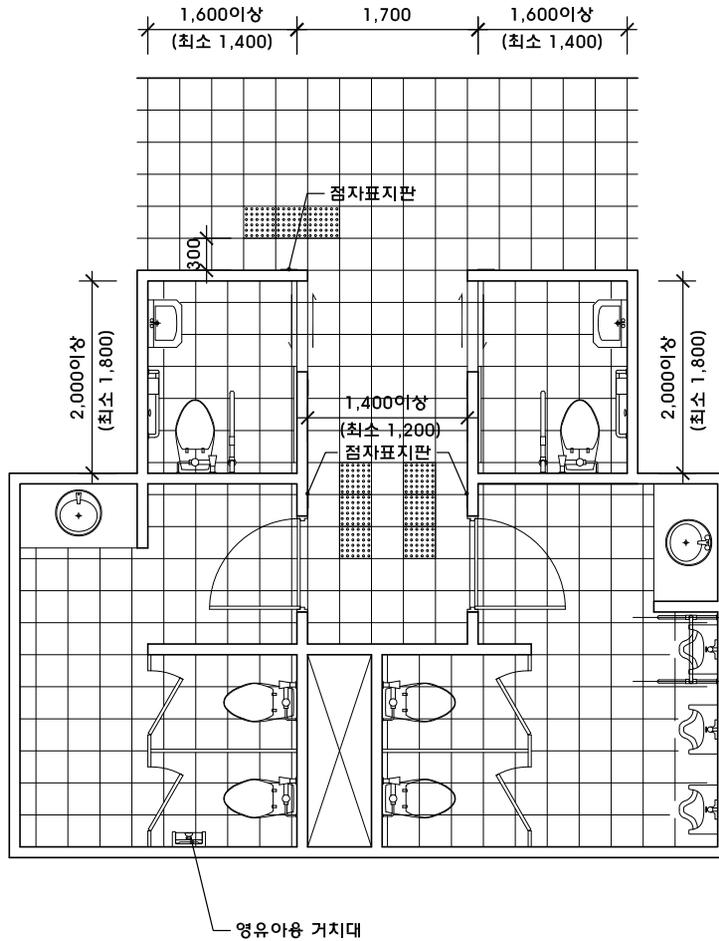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1-70
----	--------	----	-----------------------------	----------

세부항목	3.1.1 설치장소
------	------------

-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경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활동공간이 최소 1.2mX1.2m이상씩 설치되어야 한다)
- 3)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화장실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SCALE : 1/60

TYPE 01 - 일반화장실 입구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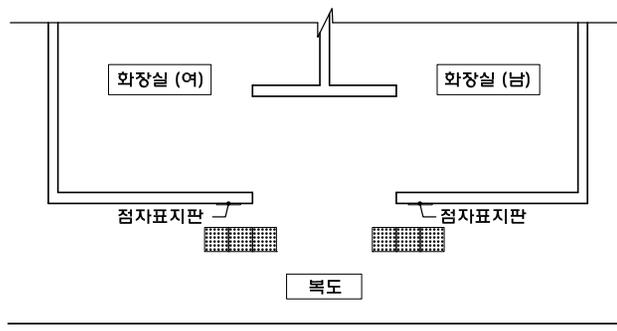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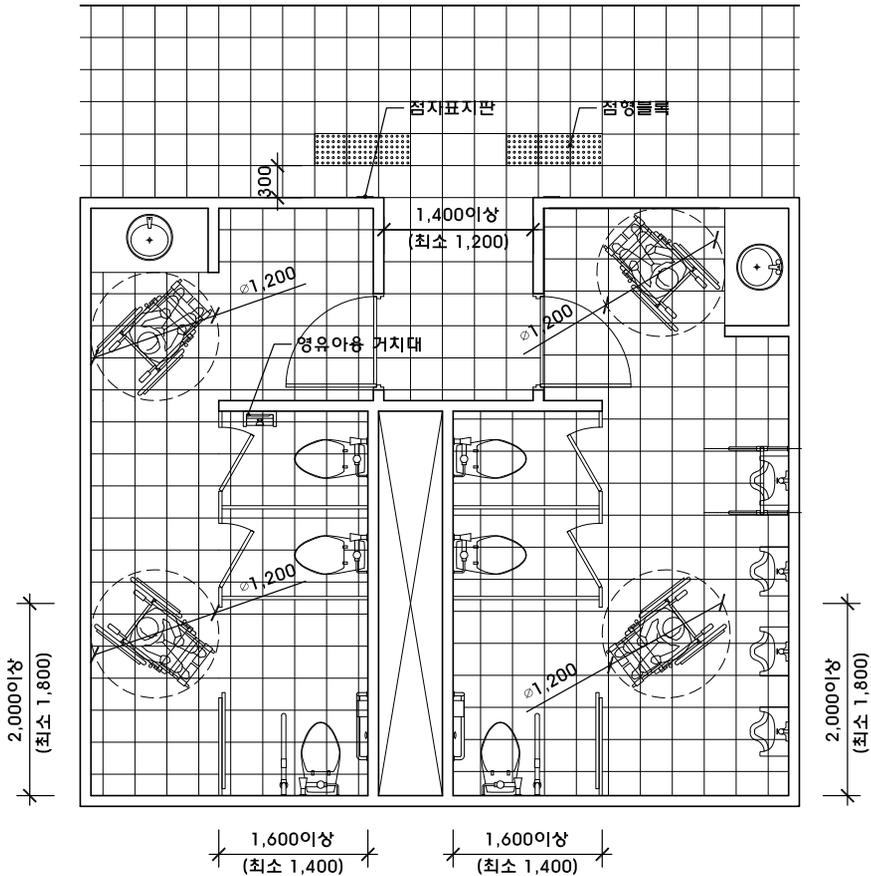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향)	D-311-71
----	--------	----	-----------------------------	----------

세부항목	3.1.1 설치장소
------	------------

-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경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활동공간이 최소 1.2mX1.2m이상씩 설치되어야 한다)
- 3)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화장실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SCALE : 1/60

TYPE 02 -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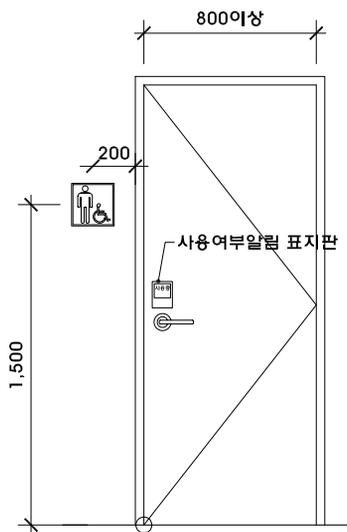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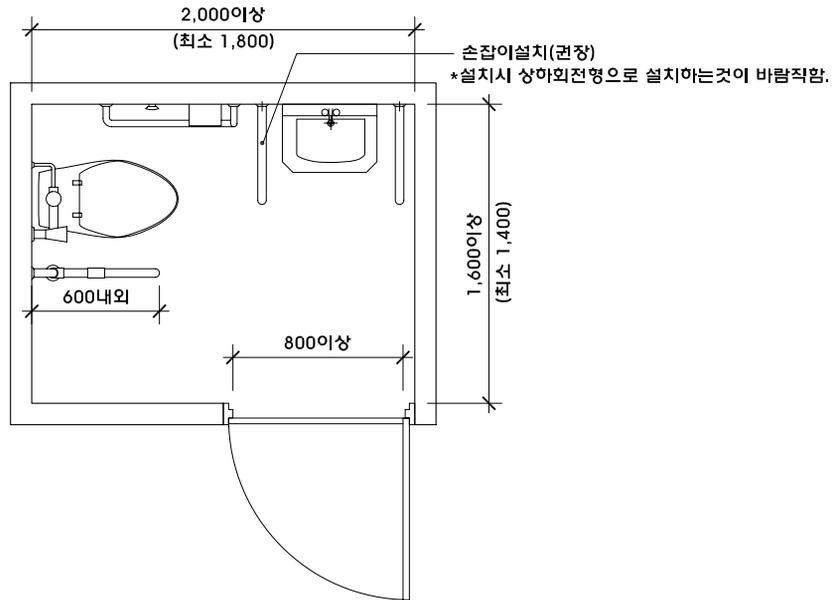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2-72
----	--------	----	-----------------------------	----------

세부항목	3.1.2 출입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명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YPE 01 - 여닫이문

SCALE : 1/30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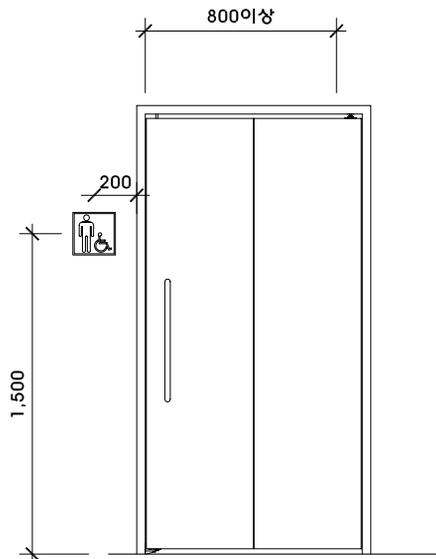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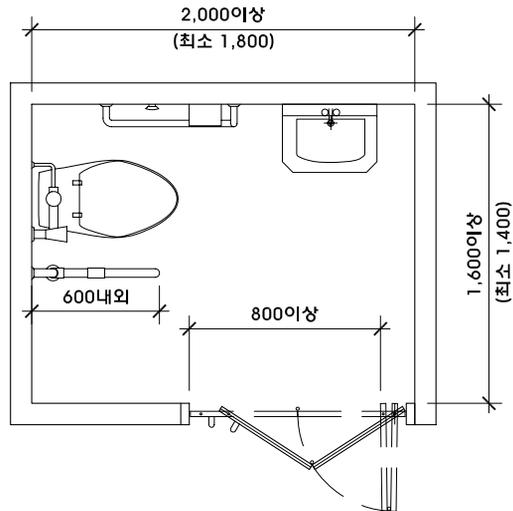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2-73
----	--------	----	-----------------------------	----------

세부항목	3.1.2 출입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영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YPE 03 - 접이문

SCALE : 1/30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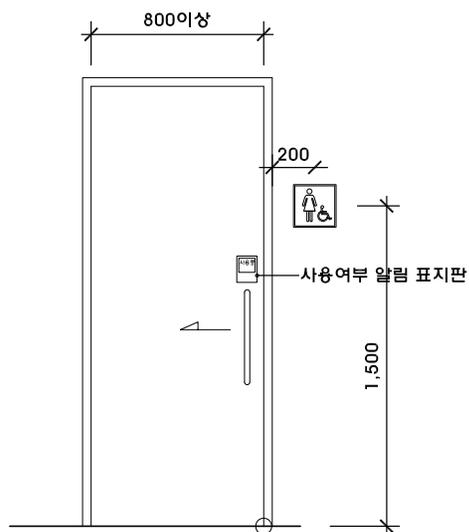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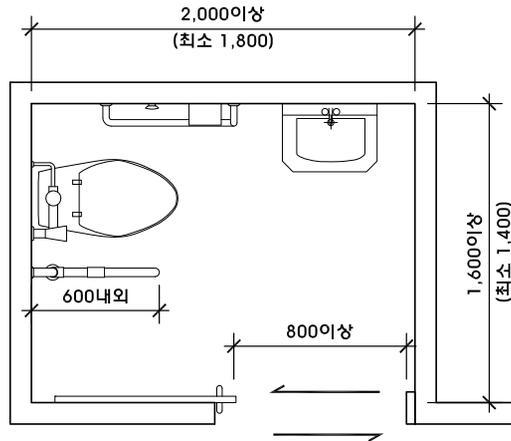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2-74
----	--------	----	-----------------------------	----------

세부항목	3.1.2 출입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YPE 02 - 미닫이문

SCALE : 1/30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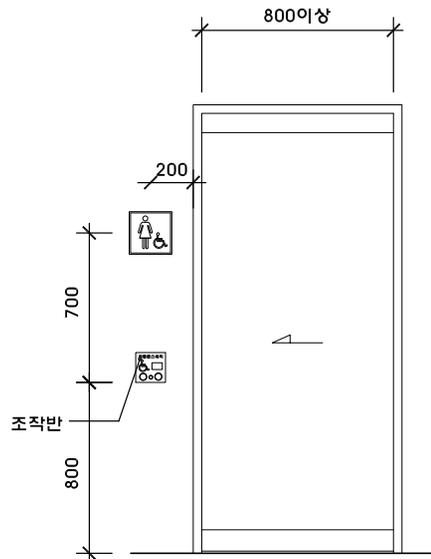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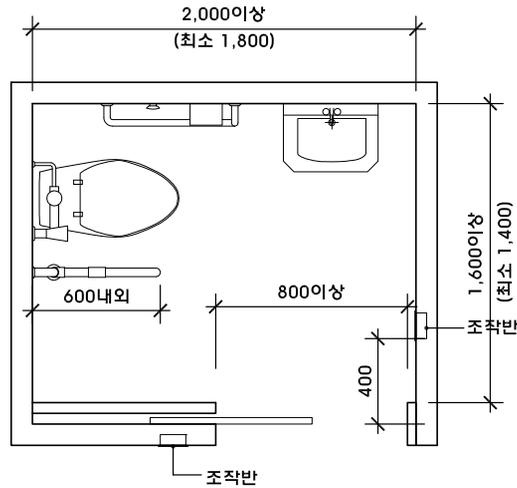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2-75
----	--------	----	-----------------------------	----------

세부항목	3.1.2 출입문의 형태
------	---------------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영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YPE 04 - 자동문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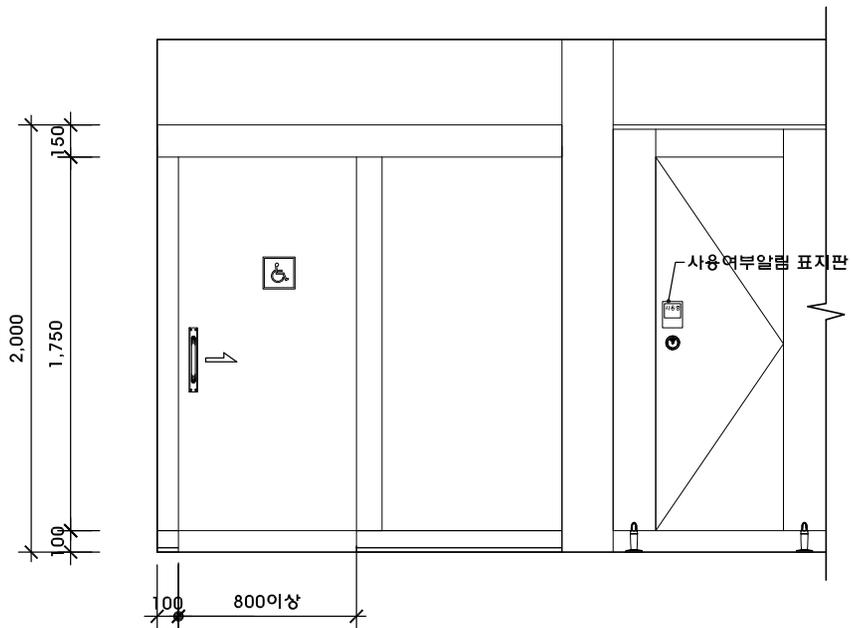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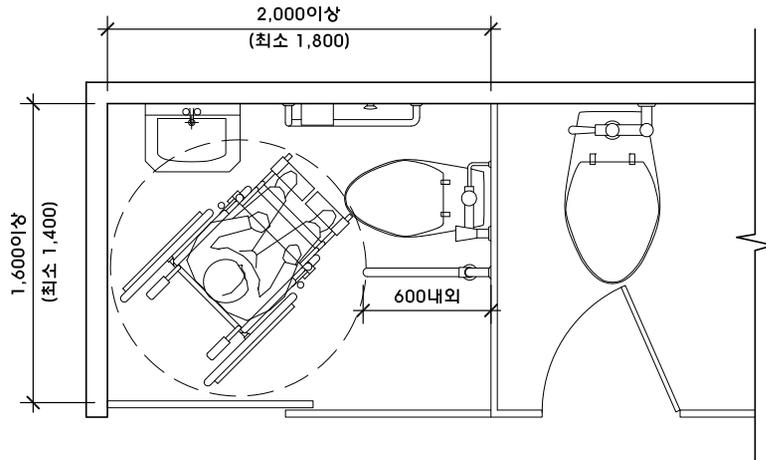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향)	D-312-76
----	--------	----	-----------------------------	----------

세부항목 3.1.2 출입문의 형태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YPE 05 - 큐비클 슬라이딩문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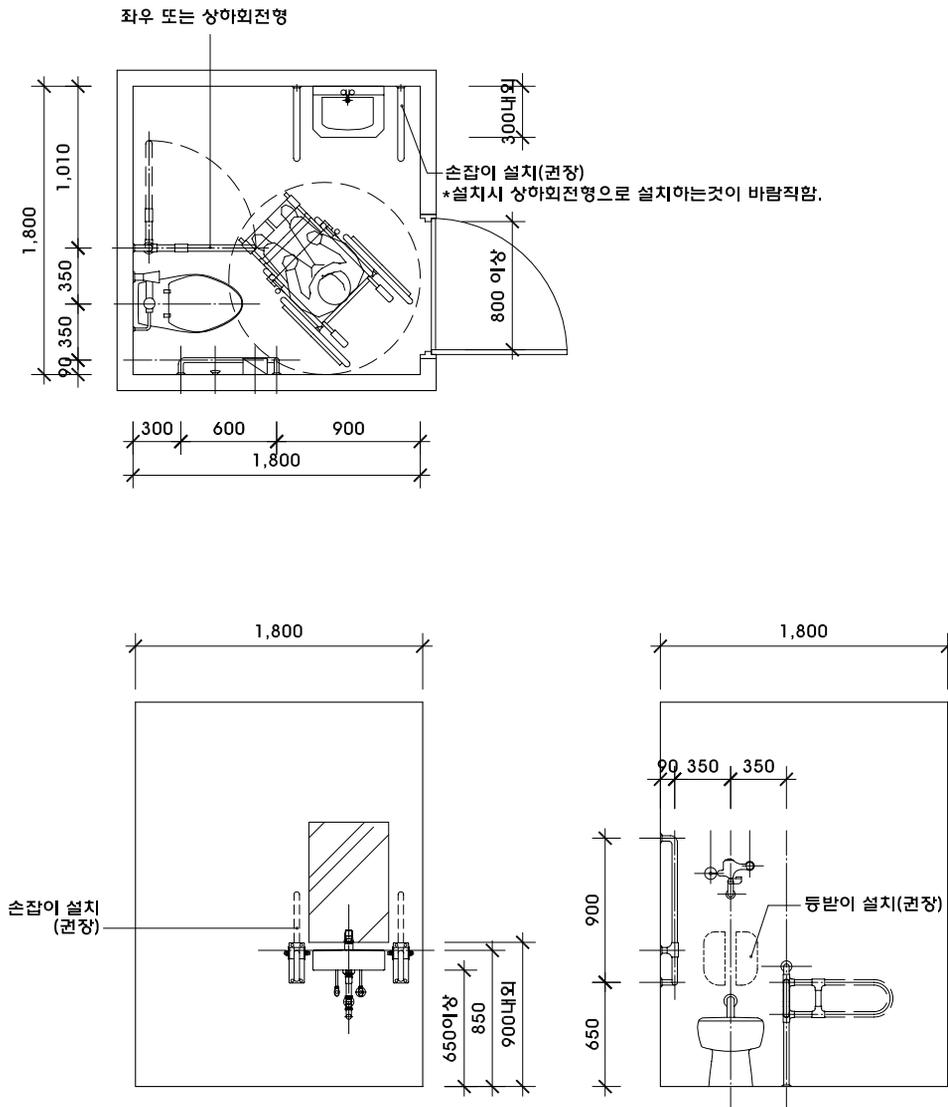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2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1-78
----	--------	----	----------------------------	----------

세부항목 3.2.1 활동공간 및 구조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TYPE 02 - 권장형

SCALE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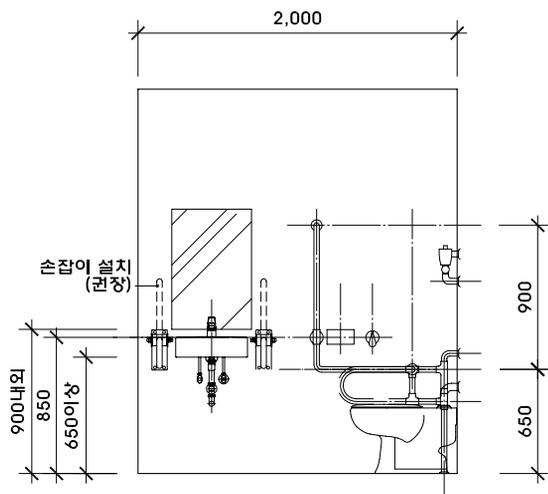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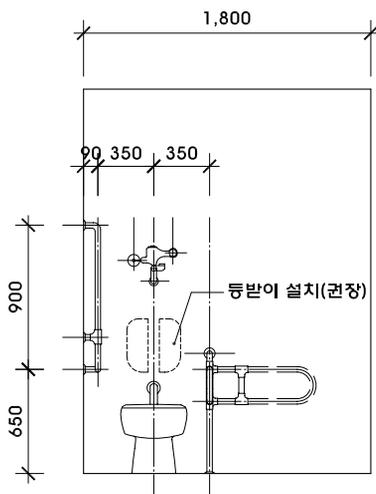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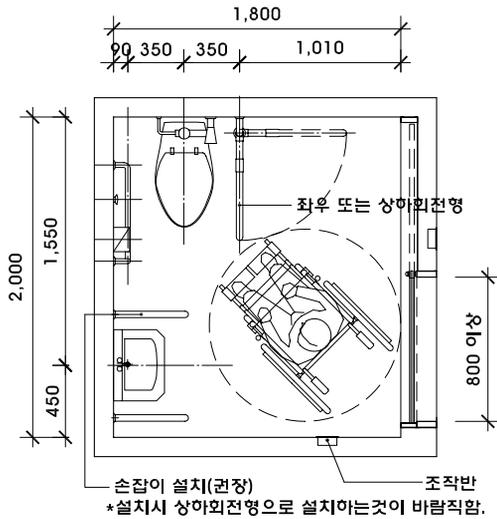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2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1-79
----	--------	----	----------------------------	----------

세부항목 3.2.1 활동공간 및 구조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TYPE 03 - 권장형

SCALE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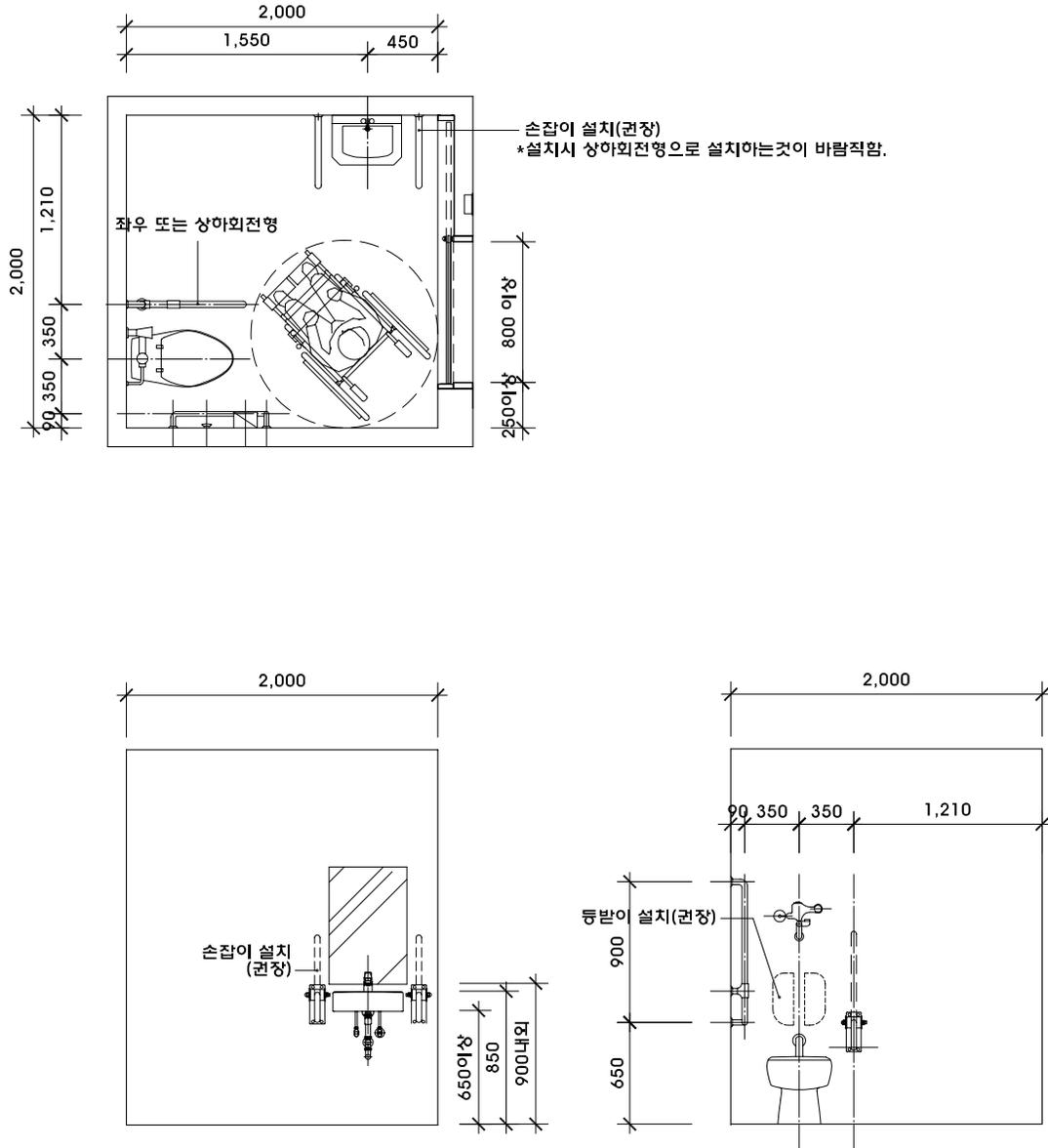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1-80
----	--------	----	----------------------------	----------

세부항목 3.2.1 활동공간 및 구조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TYPE 04 - 권장형

SCALE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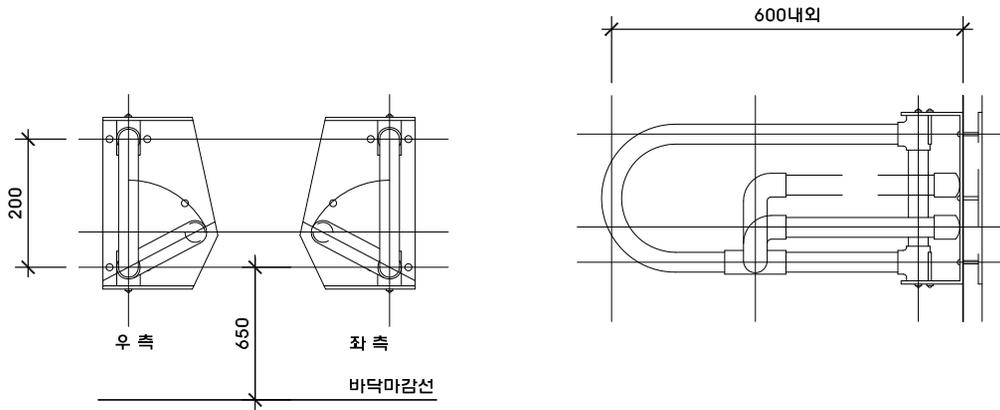
구 분	3.위생시설	항 목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2-81
-----	--------	-----	----------------------------	----------

세부항목 3.2.2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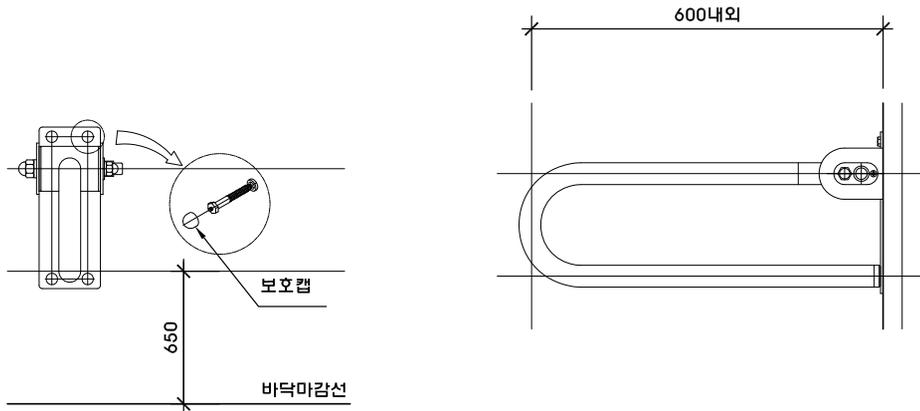
-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TYPE 01 - 좌우회전식 손잡이

SCALE : 1/10



TYPE 02 - 상하회전식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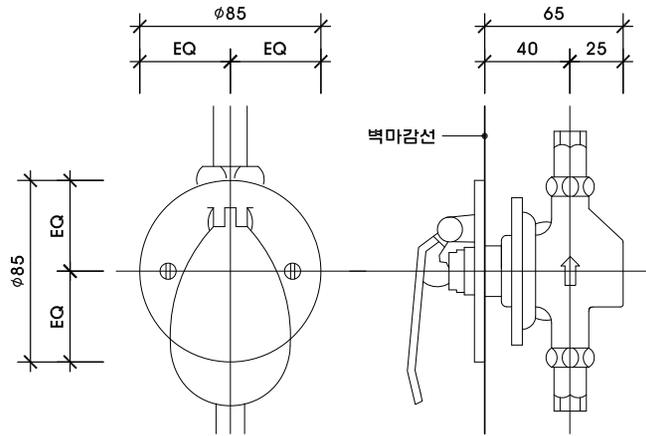
구 분	3.위생시설	항 목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3-82
-----	--------	-----	----------------------------	----------

세부항목	3.2.3 기타설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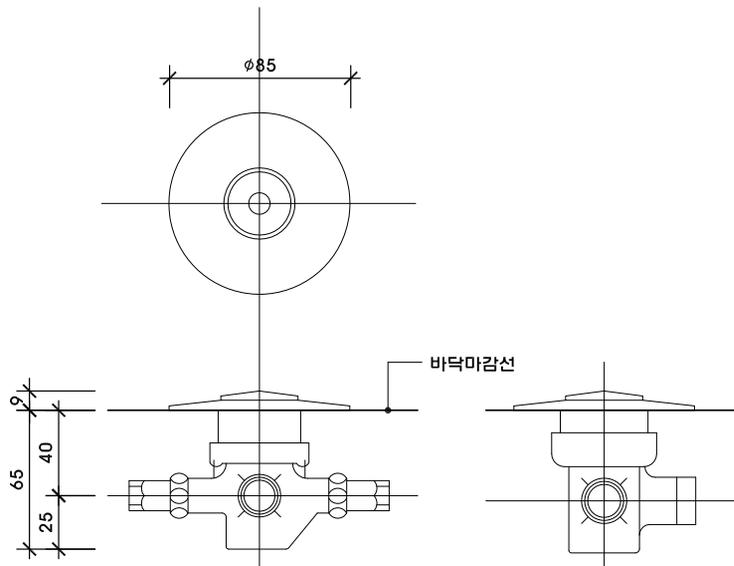
- 1) 세정장치 ·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TYPE 01 - 누름버튼식(벽부착형)

SCALE : 1/3



TYPE 02 - 누름버튼식(바닥 부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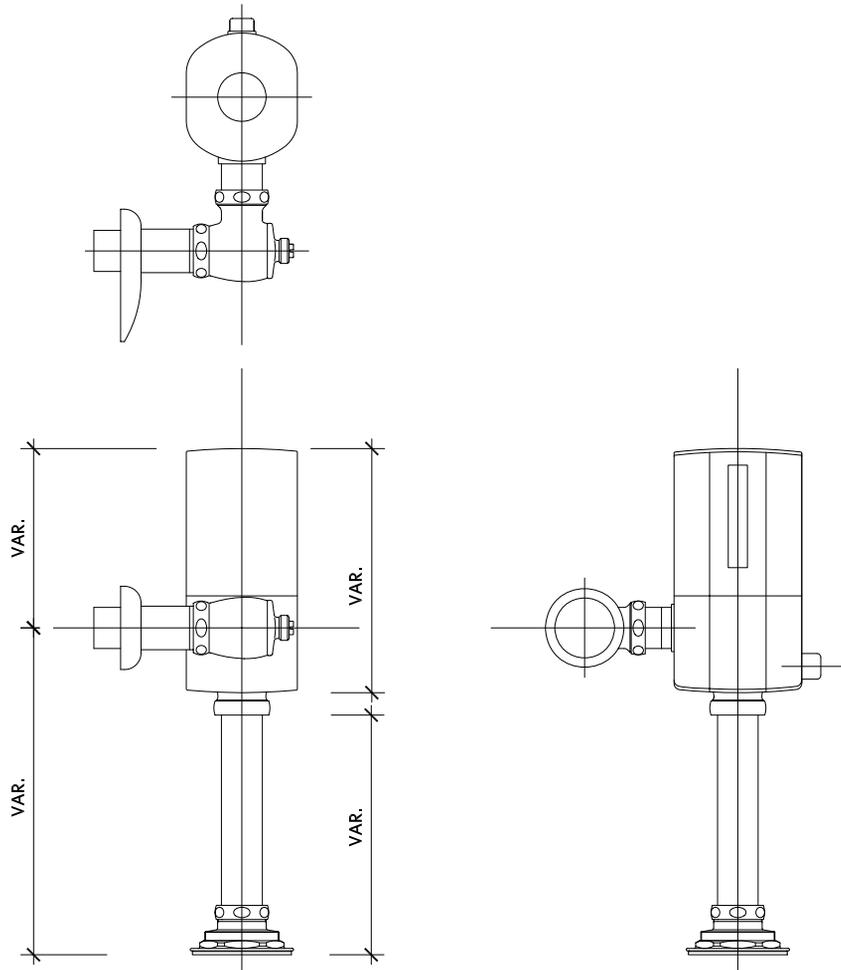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3-83
----	--------	----	----------------------------	----------

세부항목	3.2.3 기타설비
------	------------

- 1)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TYPE 03 - 전자감지식 대변기 수세밸브

SCALE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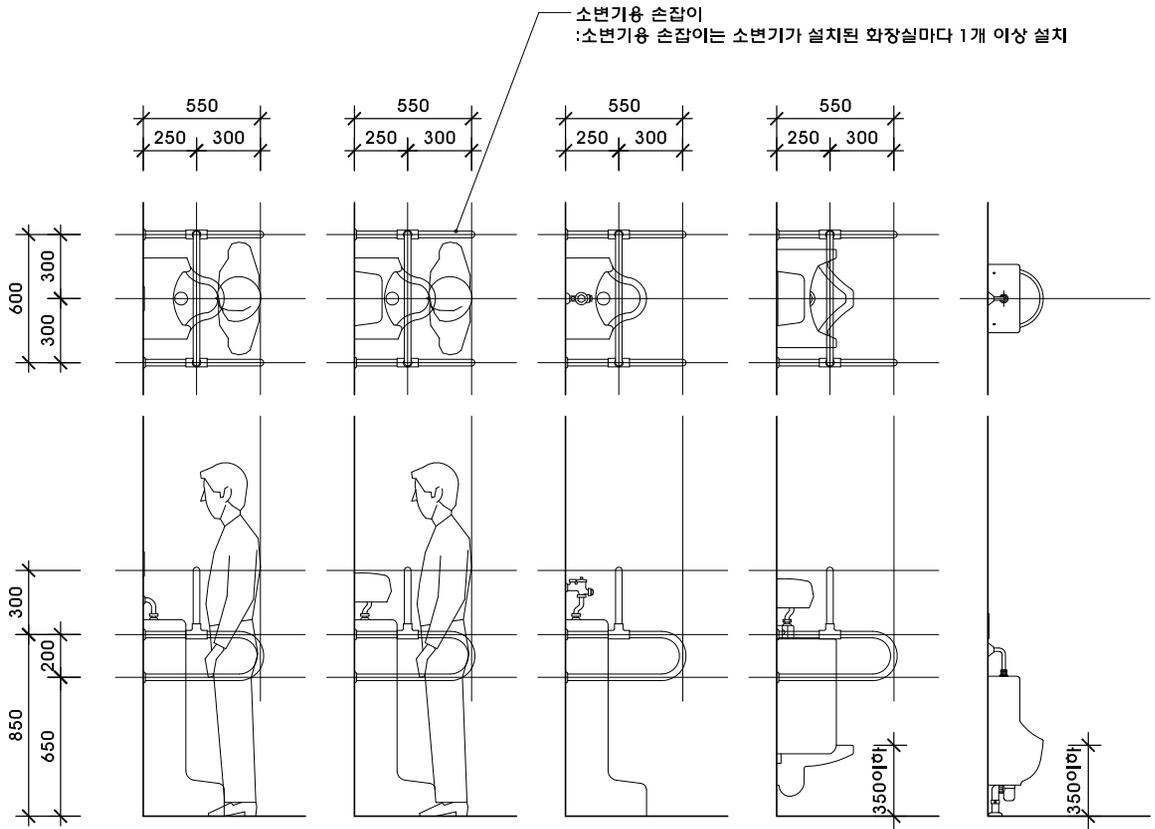
* 치수 변화는 가능하나 양변기 덮개를 세우거나 양변기 덮개를 제거하고 보조등받침을 설치했을 때 전자감응장치의 센서작동부가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 분	3.위생시설	항 목	3.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소변기)	D-331-84
-----	--------	-----	----------------------------	----------

세부항목	3.3.1 구조			
------	----------	--	--	--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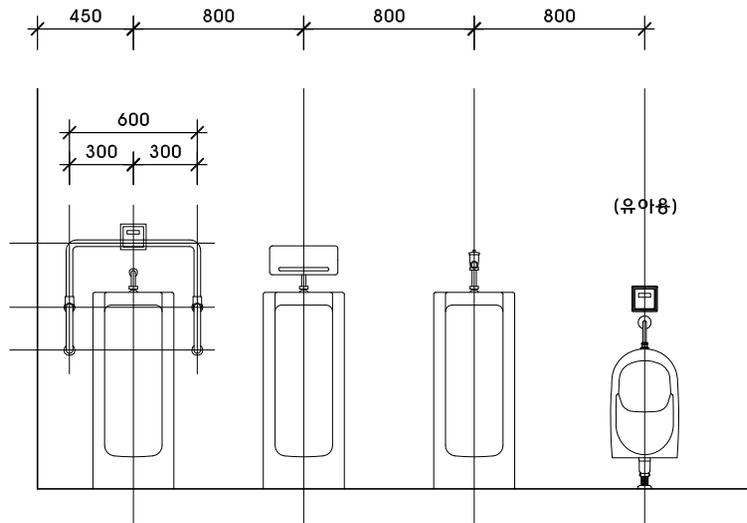


구 분	3.위생시설	항 목	3.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소변기)	D-331-85
-----	--------	-----	----------------------------	----------

세부항목	3.3.1 구조			
------	----------	--	--	--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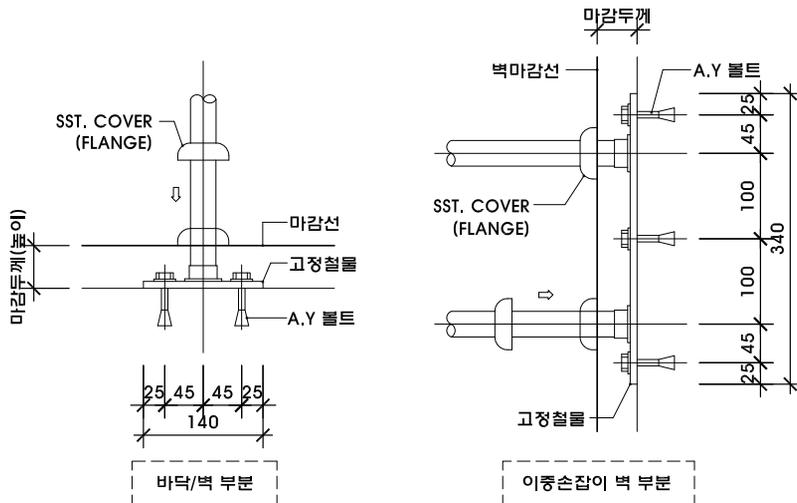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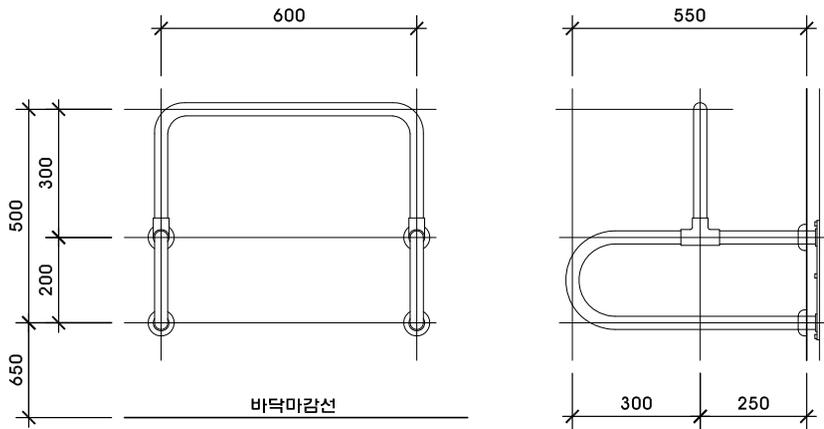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소변기)	D-332-86
----	--------	----	----------------------------	----------

세부항목 3.3.2 손잡이

- 1)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SCALE :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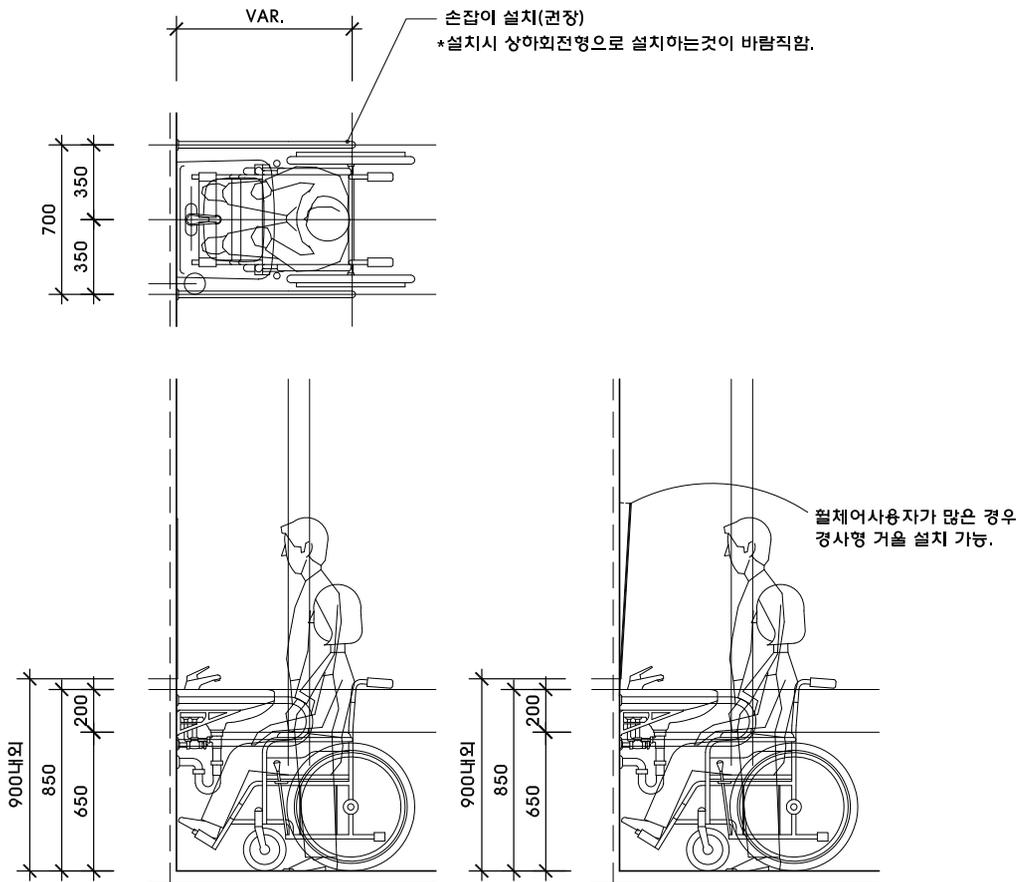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세면대)	D-341-87
----	--------	----	----------------------------	----------

세부항목	3.4.1 구조
------	----------

- 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팔꿈치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발사용자 등 보행근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4)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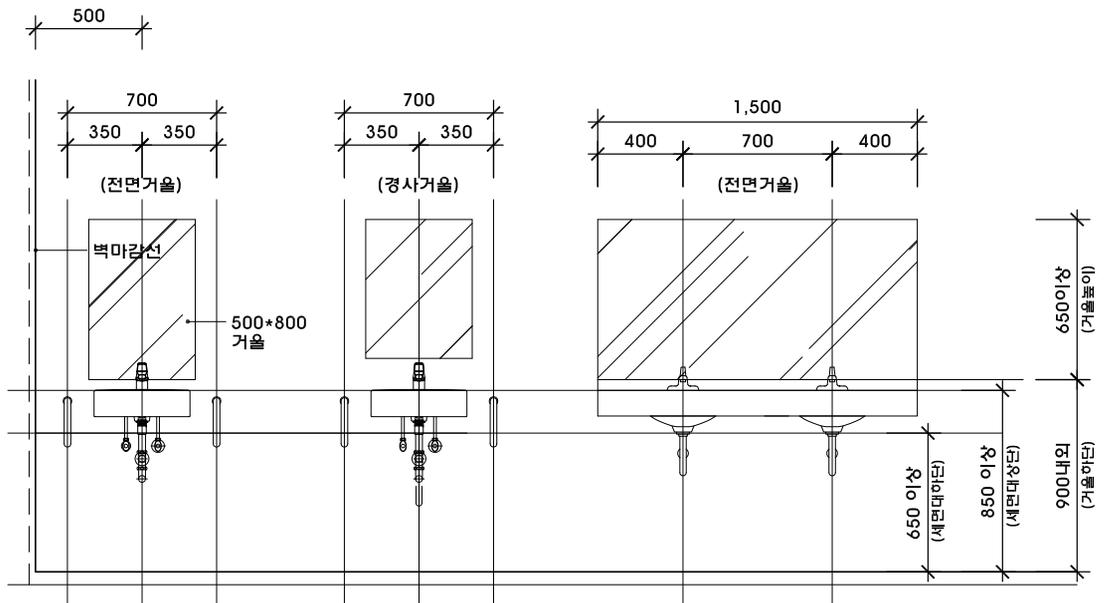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세면대)	D-341-88
----	--------	----	----------------------------	----------

세부항목	3.4.1 구조
------	----------

- 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팔꿈치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4)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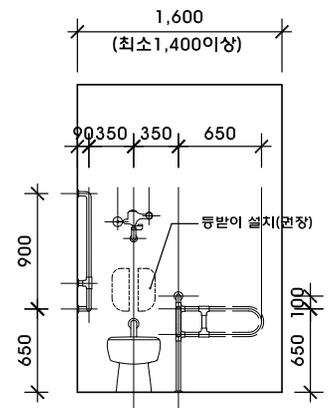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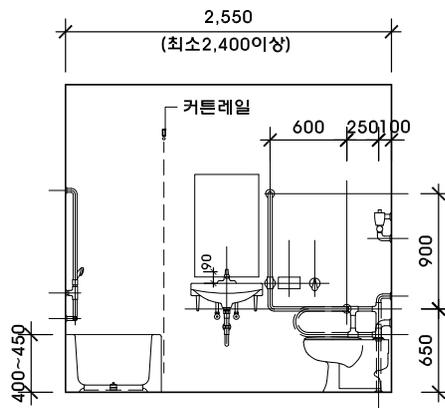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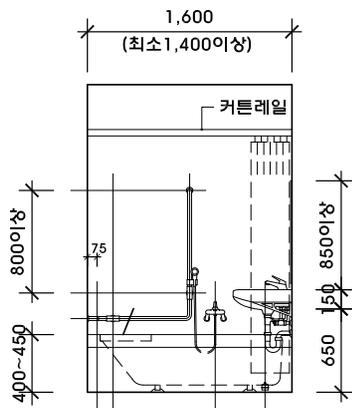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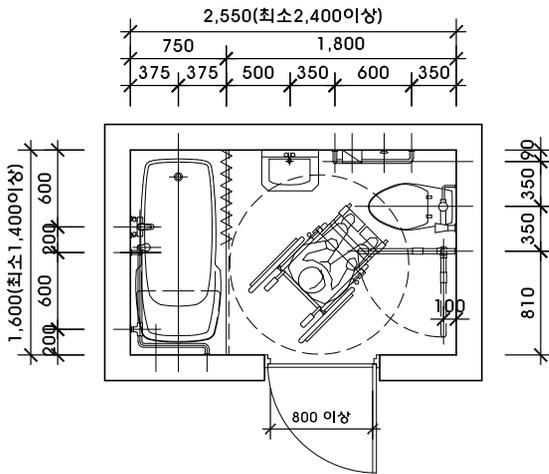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D-351-89
----	--------	----	-----------------------	----------

세부항목 3.5.1 설치장소 및 구조

- 1)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6)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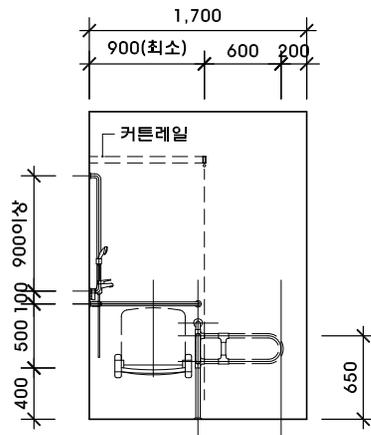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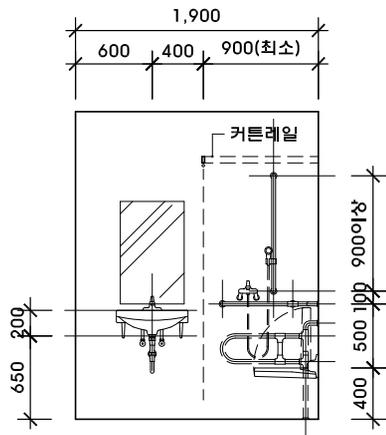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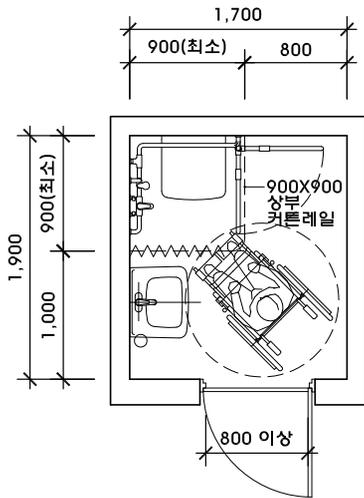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D-361-90
----	--------	----	------------------------------	----------

세부항목 3.6.1 설치장소 및 구조

- 1)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X0.9미터 또는 0.75미터X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5)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6)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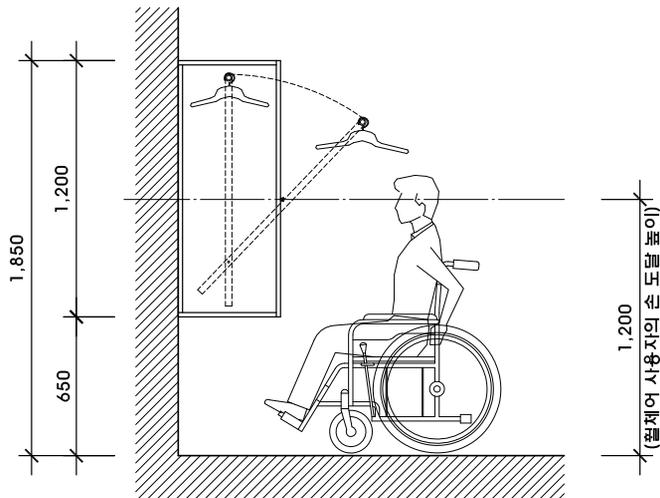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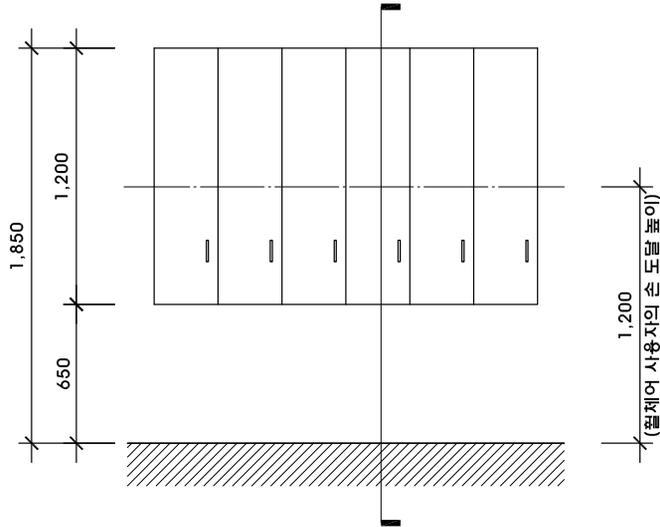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D-362-91
----	--------	----	------------------------------	----------

세부항목 3.6.2 기타 설비

- 1)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X0.9미터 또는 0.75미터X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5)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6)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YPE 01 - 탈의실 수납공간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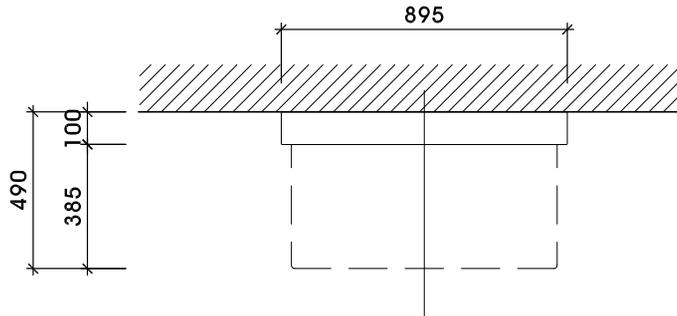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2
----	--------	----	--------------------	----------

세부항목	3.7.1 기저귀 교환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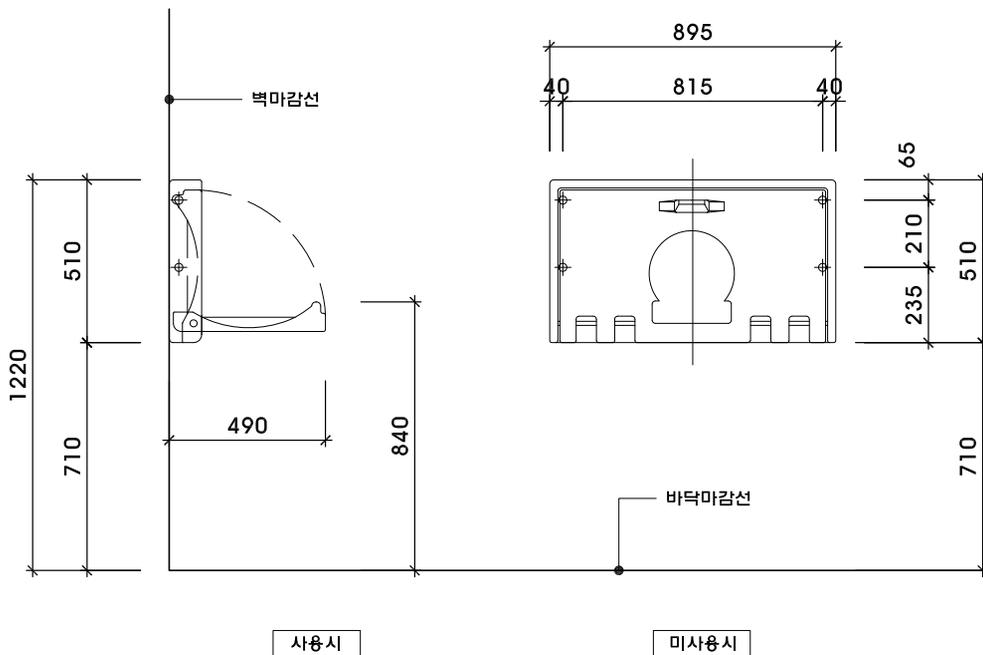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 벽고장/가로형

SCALE : 1/30



PLAN



사용시

미사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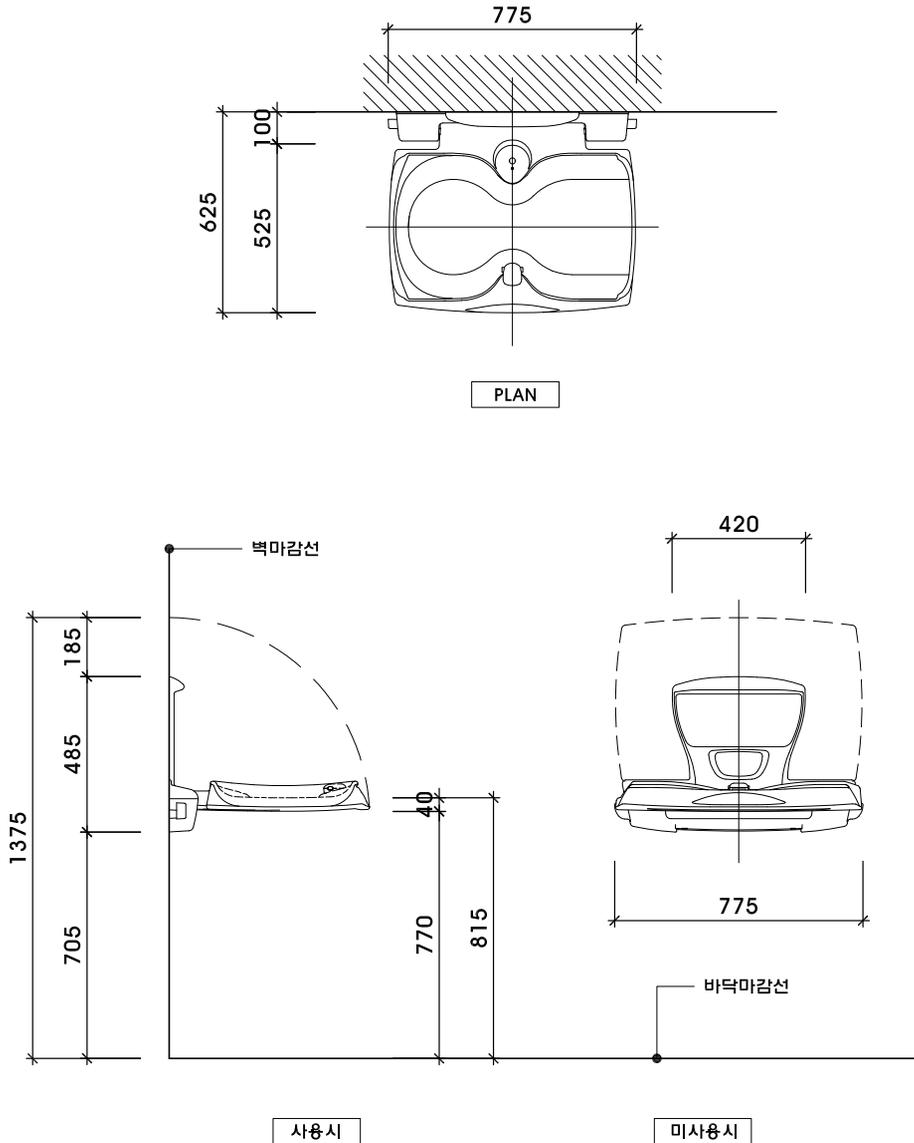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3
----	--------	----	--------------------	----------

세부항목	3.7.1 기저귀 교환대
------	---------------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2 - 벽고장/가로형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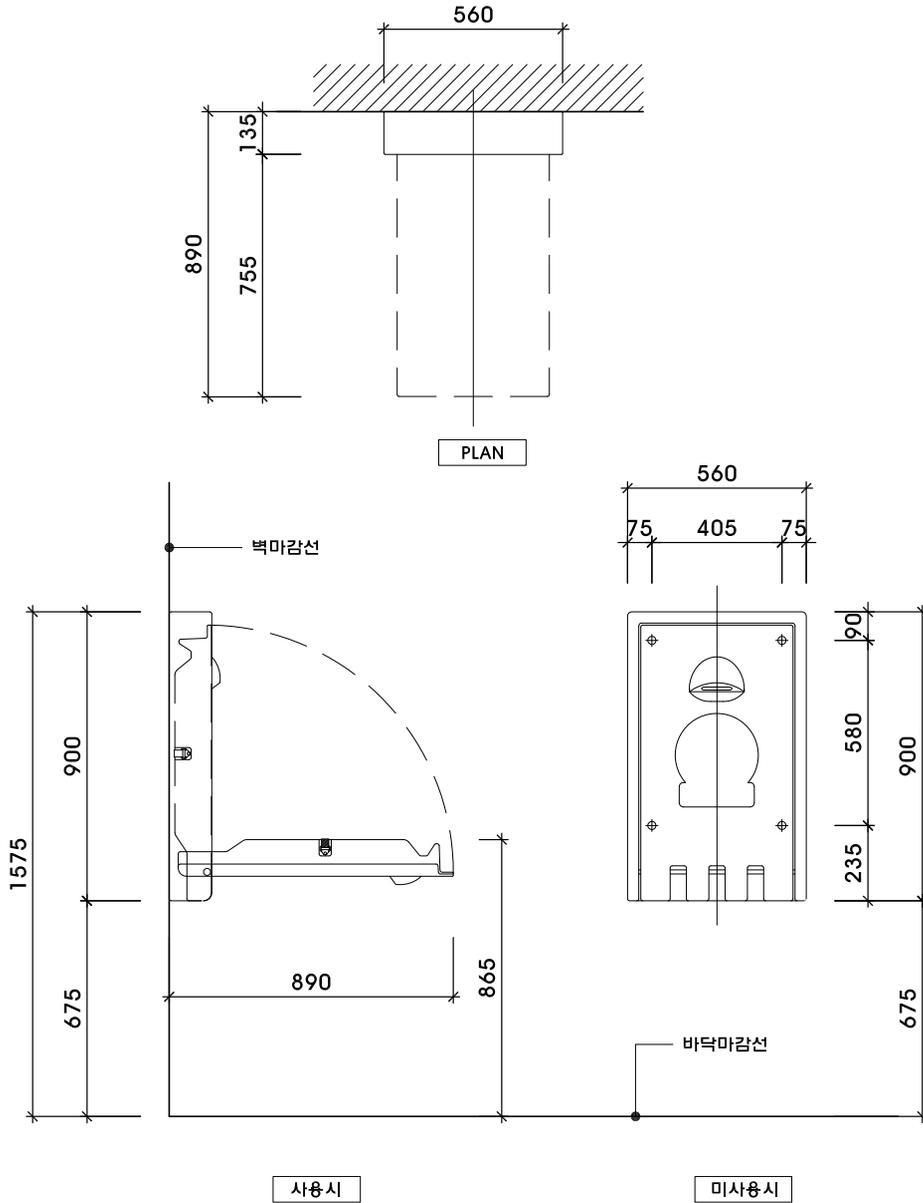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4
----	--------	----	--------------------	----------

세부항목	3.7.1 기저귀 교환대
------	---------------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3 - 벽고장/세로형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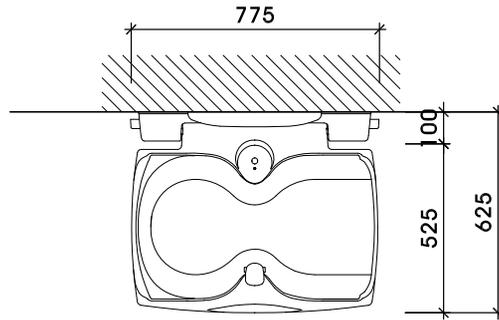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5
----	--------	----	--------------------	----------

세부항목 3.7.1 기저귀 교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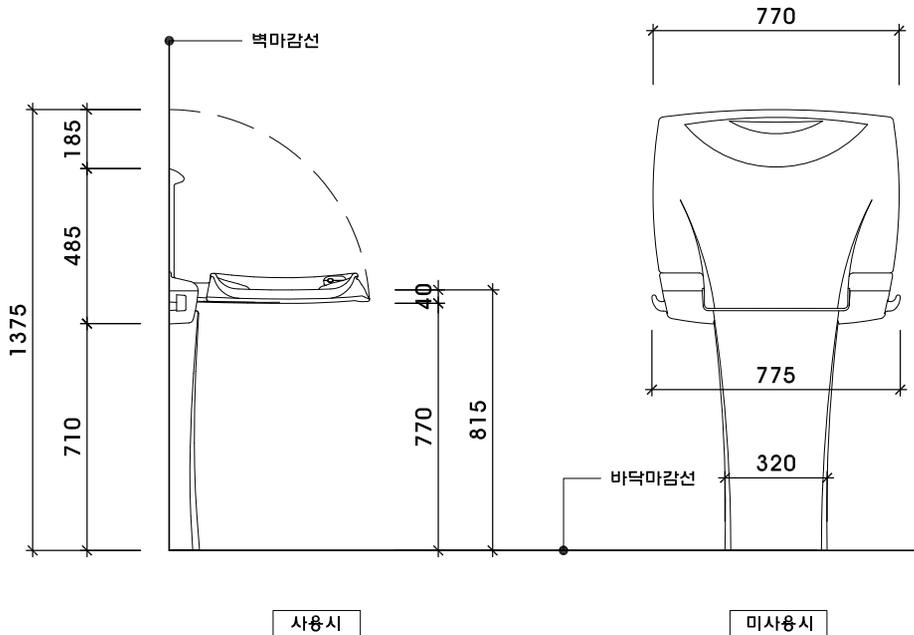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4 - 벽고장/가로형

SCALE : 1/30



PLAN



사용시

미사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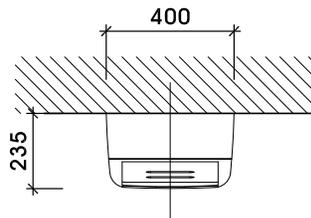
구 분	3.위생시설	항 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6
-----	--------	-----	--------------------	----------

세부항목	3.7.1 기저귀 교환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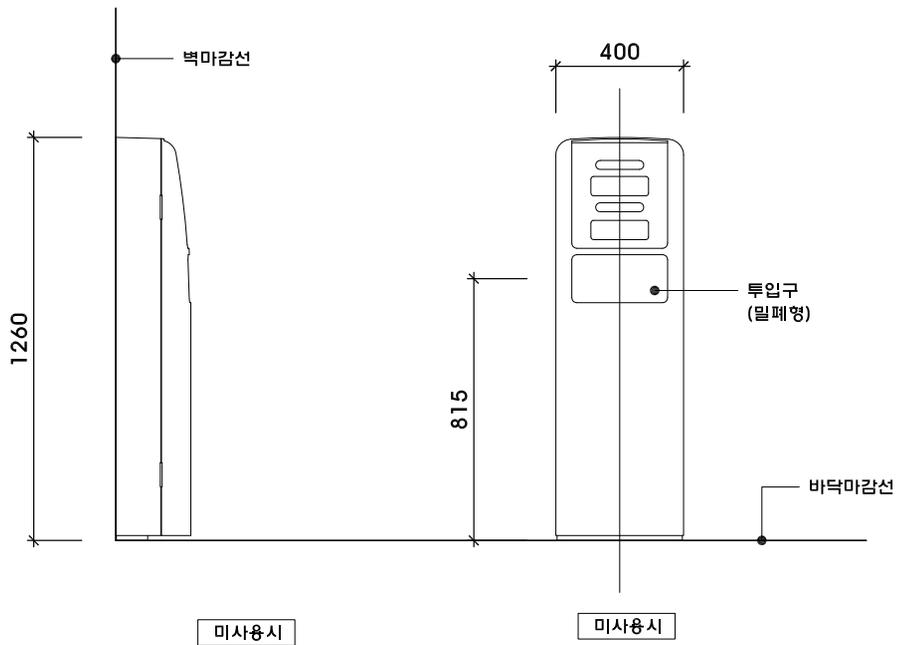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5 - 기저귀 휴지통

SCALE : 1/30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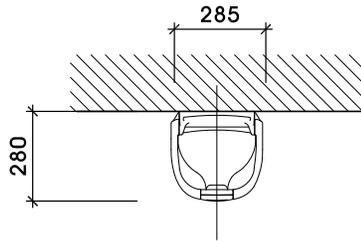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2-97
----	--------	----	--------------------	----------

세부항목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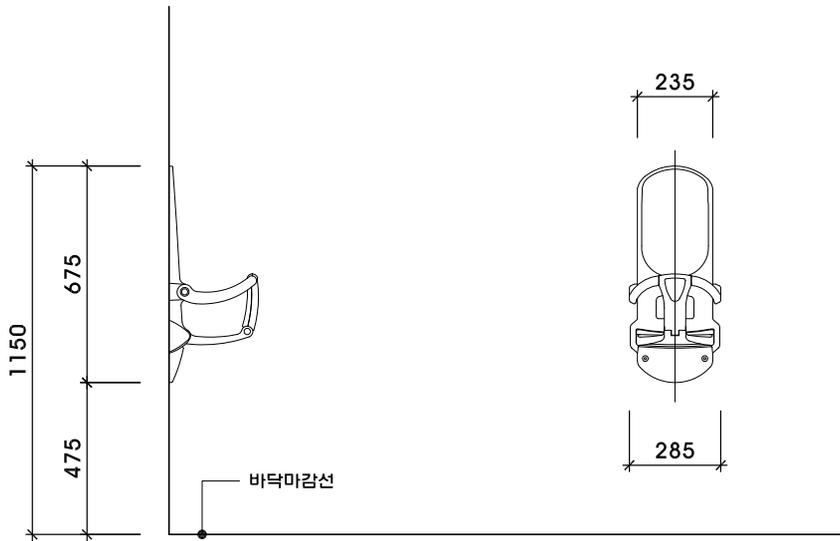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 벽고장

SCALE : 1/30



PLAN



사용시

미사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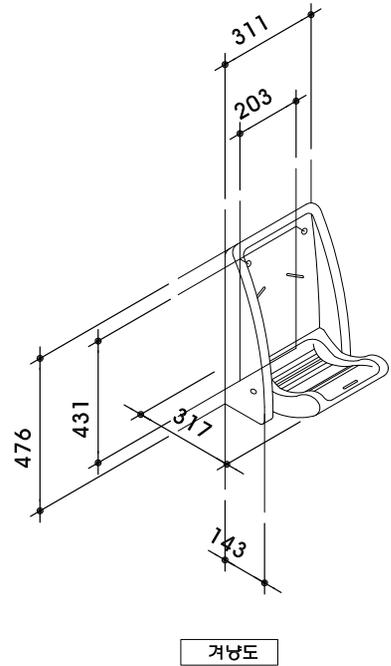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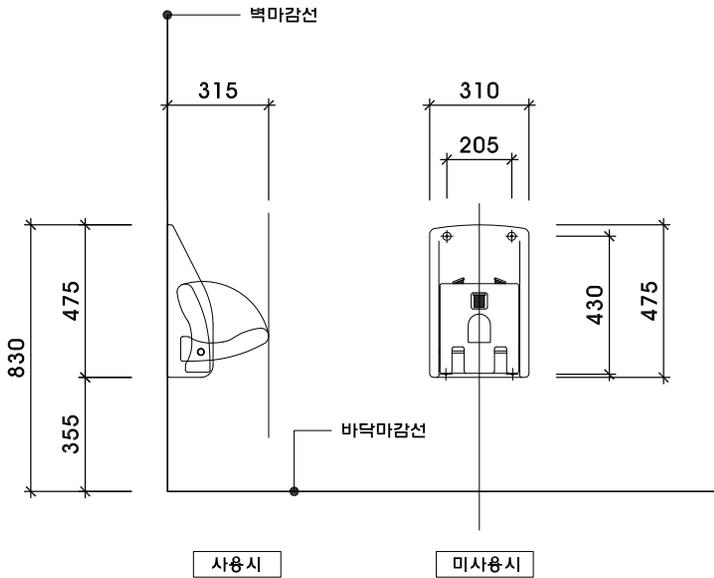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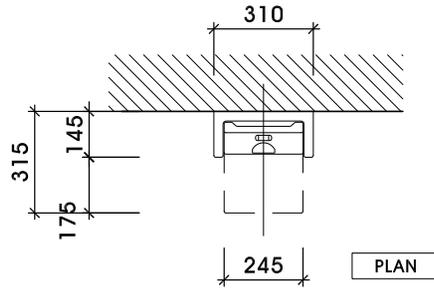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2-98
----	--------	----	--------------------	----------

세부항목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2 - 벽고정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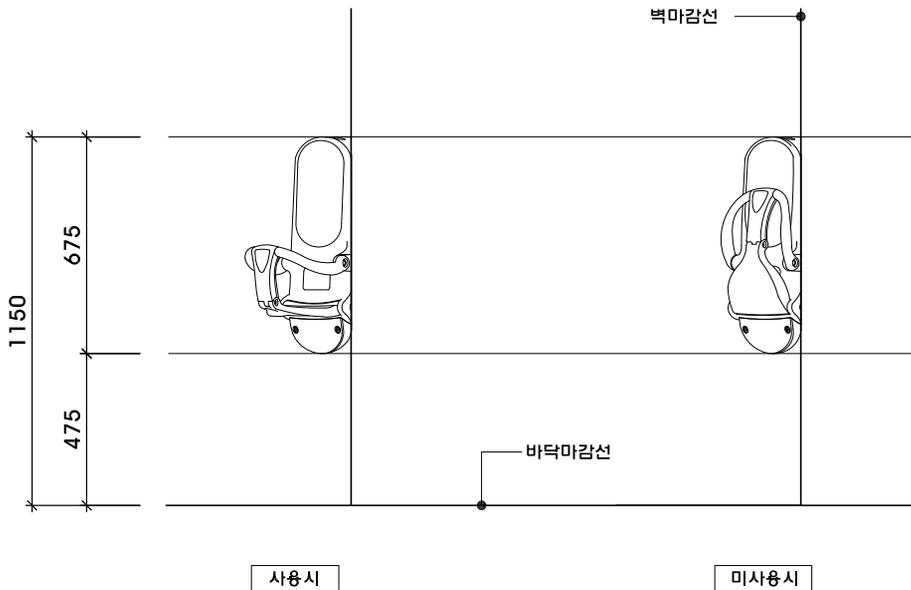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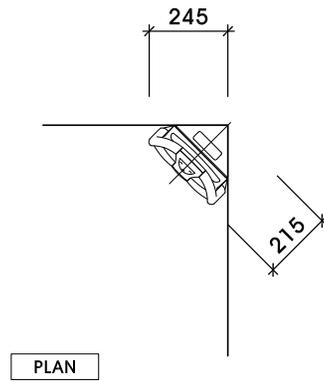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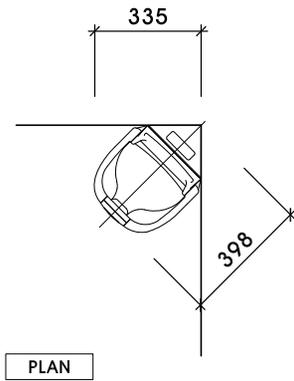
구분	3.위생시설	항목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2-99
----	--------	----	--------------------	----------

세부항목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3 - 코너고정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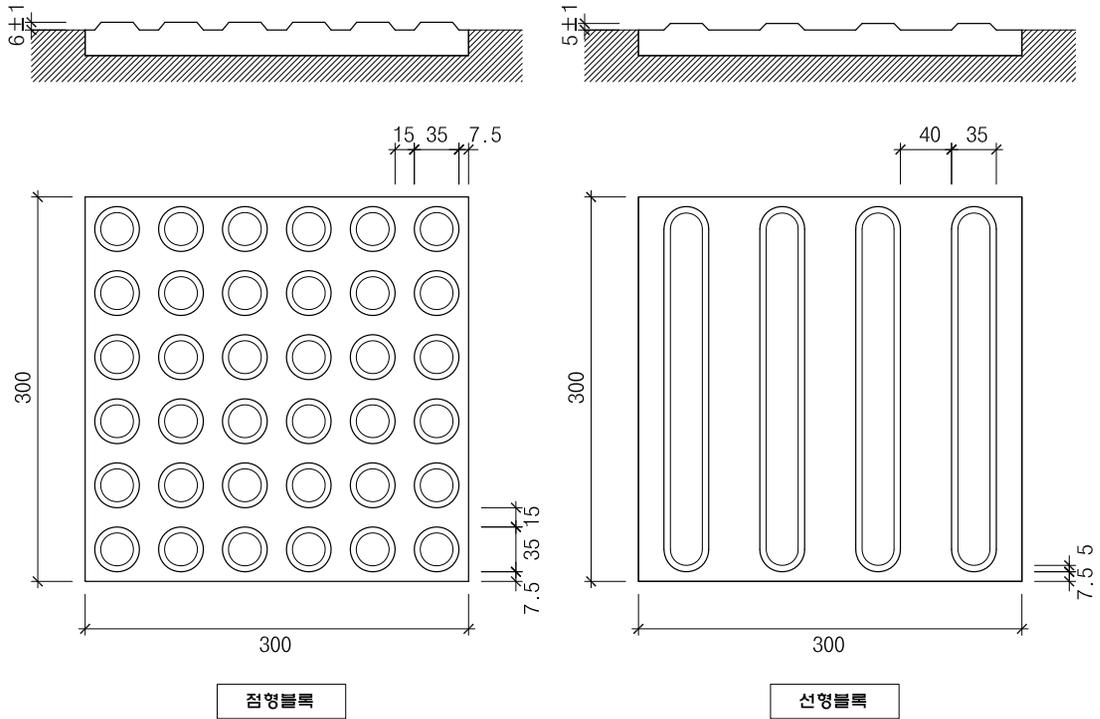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1 점자블록	E- 411-100
----	---------	----	----------	------------

세부항목 4.1.1 규격/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고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철재 점자블록은 빛이 반사되고 미끄러우며 황색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음.

SCALE : 1/5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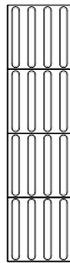
구 분	4. 안내시설	항 목	4.1 점자블록	E- 412-101
-----	---------	-----	----------	------------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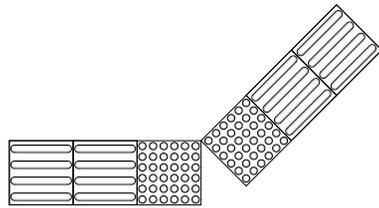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끝맺히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1 - 유도방향에 따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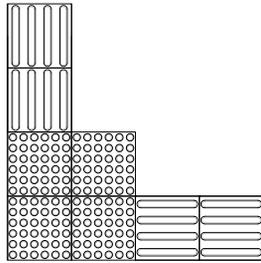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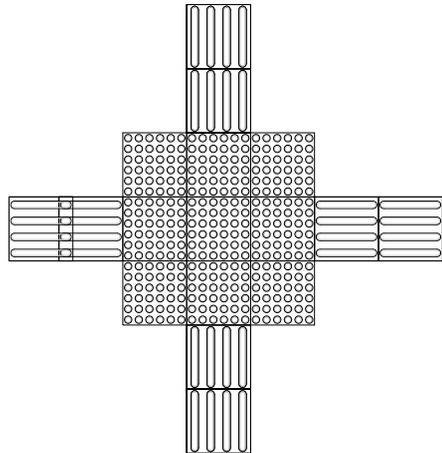
진행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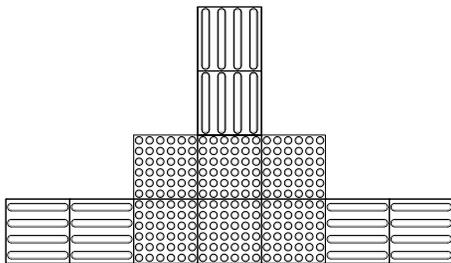
사선방향



1방향 ㄱ자형



3방향 +자형



2방향 T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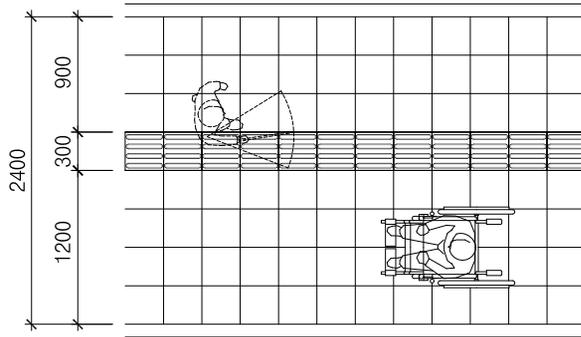
구 분	4. 안내시설	항 목	4.1 점자블록	E-412-102
-----	---------	-----	----------	-----------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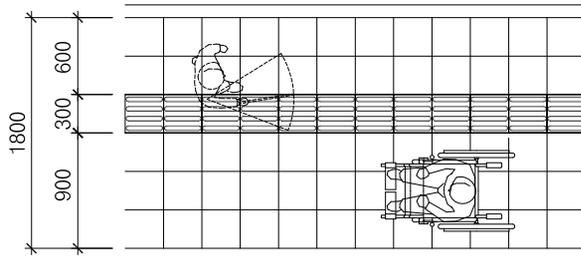
- 1) 점영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영블록이 시작·교차·결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영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2 - 접근로에서 선영블록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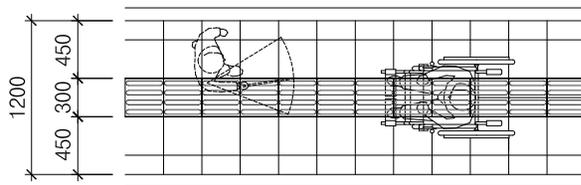
SCALE : 1/50



TYPE 01



TYPE 02



TYP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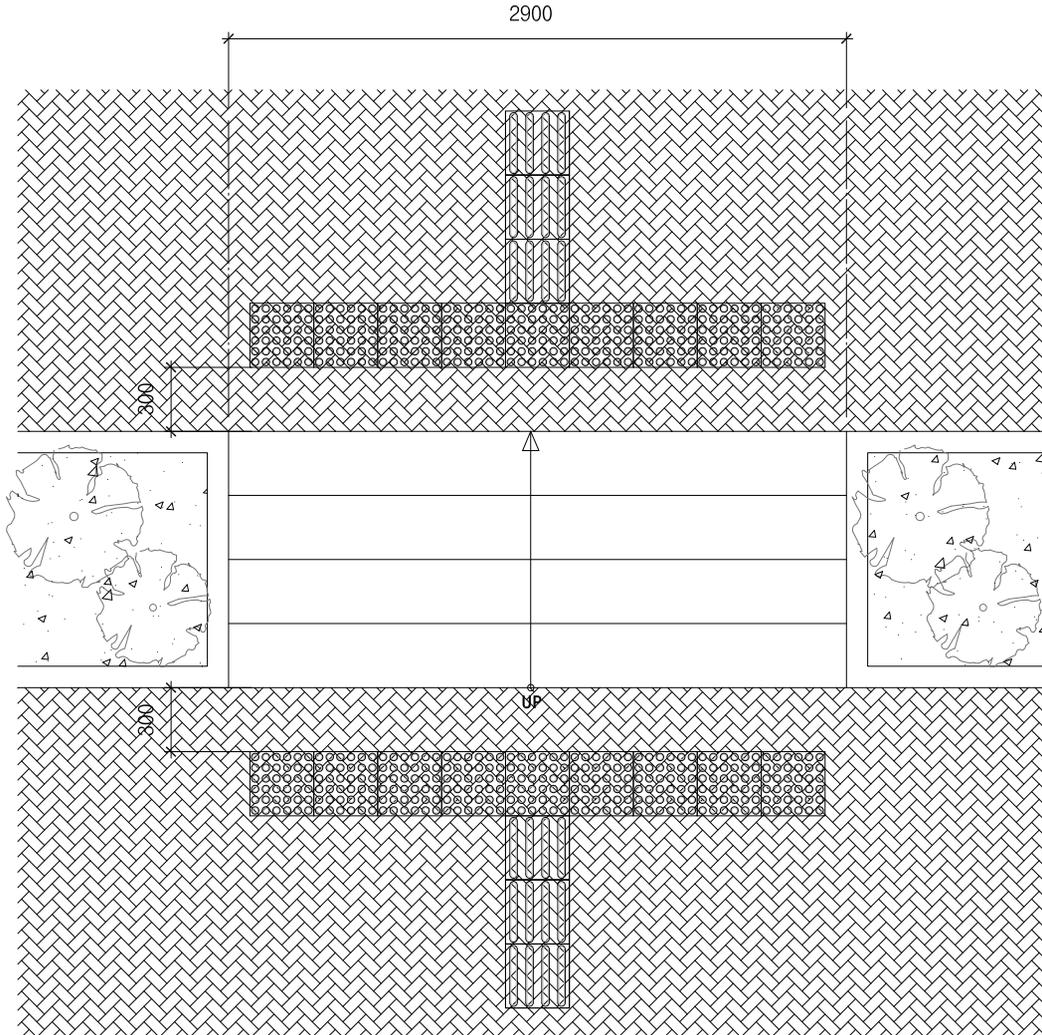
구 분	4. 안내시설	항 목	4.1 점자블록	E-412-103
-----	---------	-----	----------	-----------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영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영블록이 시작·교차·끝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영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3 - 접근로에서 점영블록의 설치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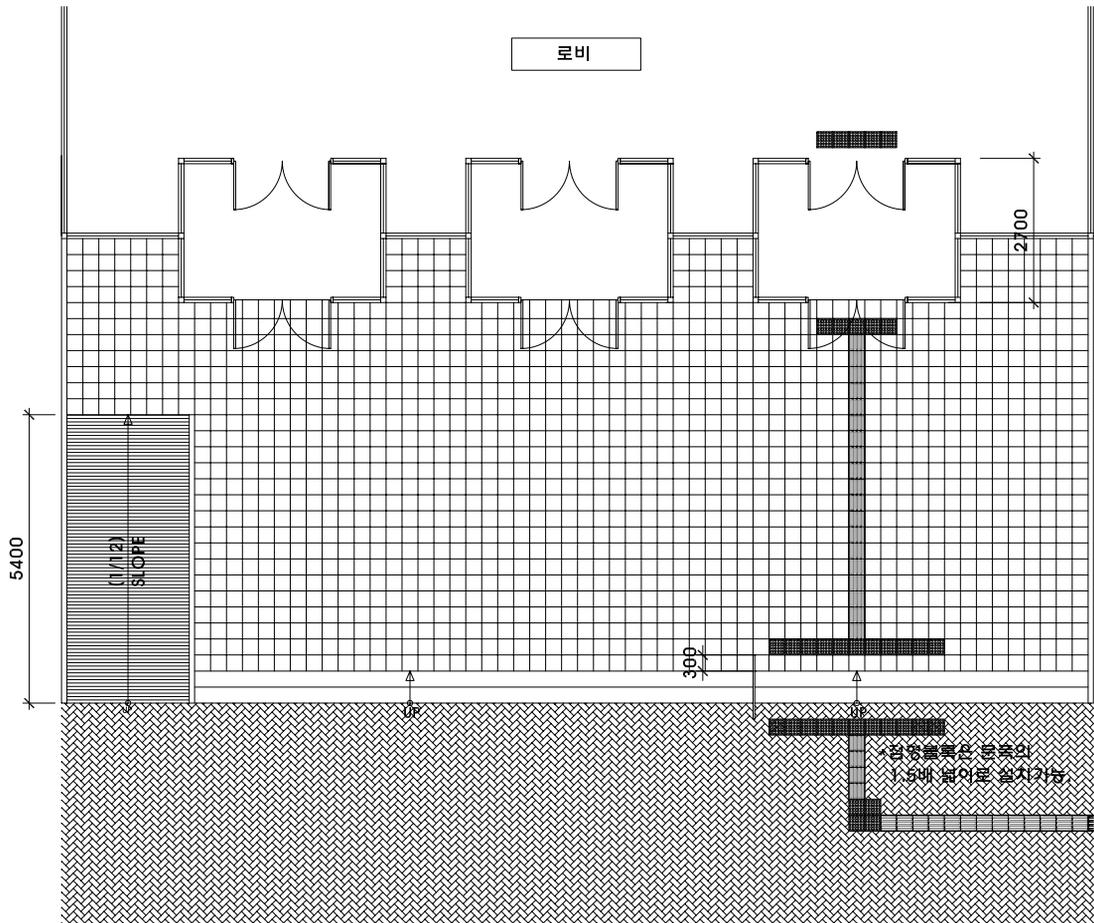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1 점자블록	E-412-104
----	---------	----	----------	-----------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이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끝맺히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4 - 주출입구 접근로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SCALE : 1/120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유도블록 설치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구 분	4. 안내시설	항 목	4.1 점자블록	E-412-10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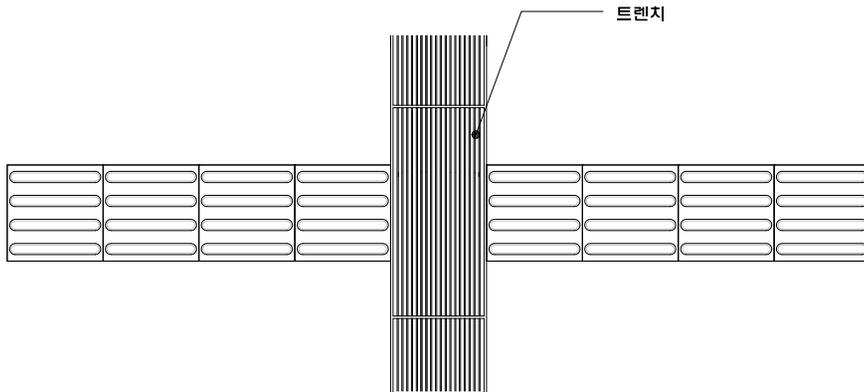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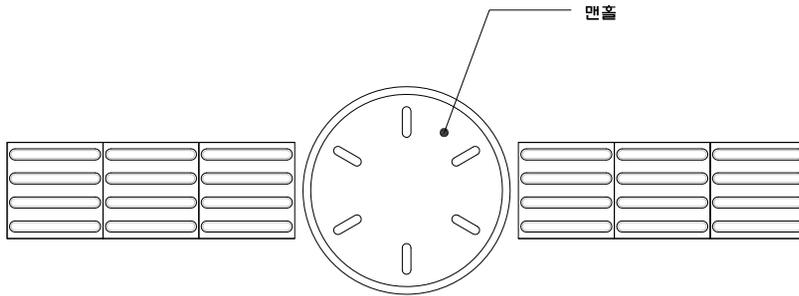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끝맺히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5 - 유도블록 선상에 설치 불가한 지장물이 발생한 경우

SCALE : 1/20

*맨홀, 트렌치등의 지장물은 가능하면 점자블록 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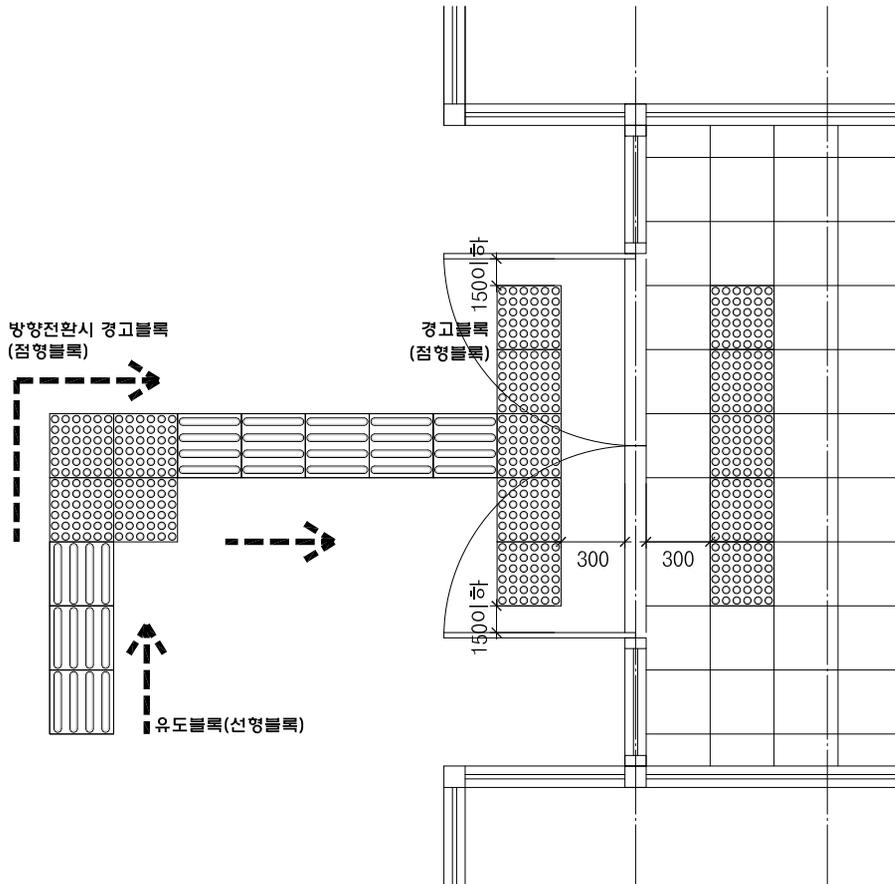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1 점자블록	E-412-106
----	---------	----	----------	-----------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영블록은 계단·장애이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영블록이 시작·교차·끝맺히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영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6 - 주출입구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SCALE : 1/30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1 점자블록	E-412-107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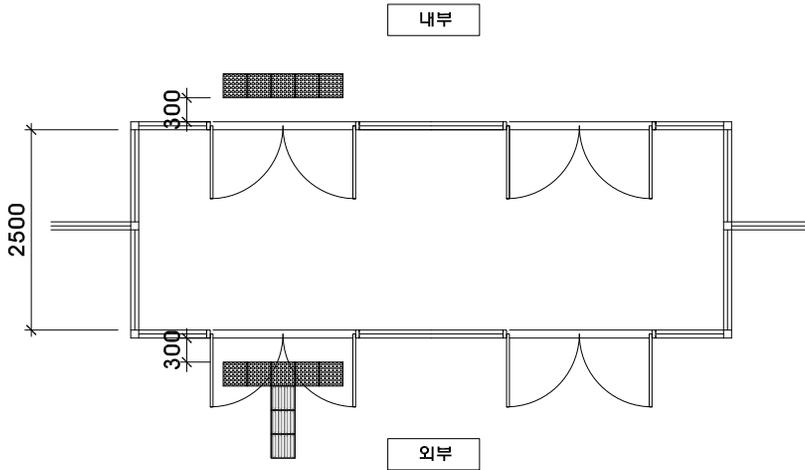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영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영블록이 시작·교차·끝맺히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영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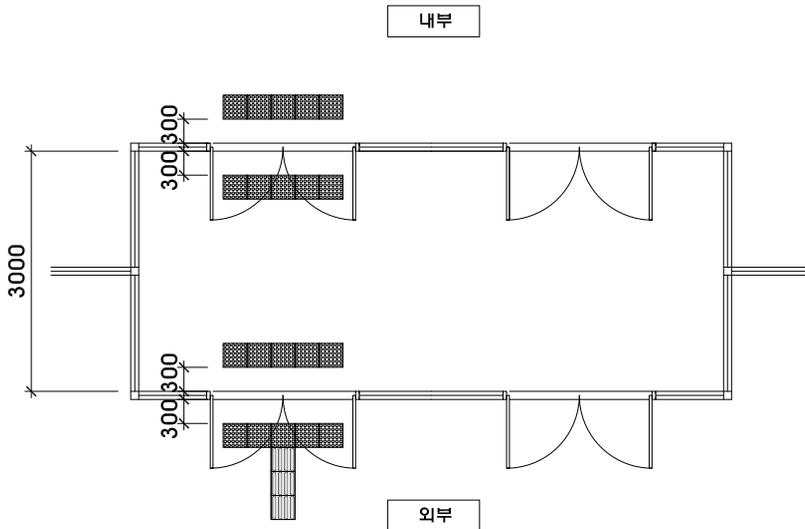
TYPE 07 - 주출입구에서 방풍실 깊이에 따른 점자블록 설치

SCALE : 1/80

방풍실 깊이 3M미만인 경우



방풍실 깊이 3M이상인 경우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1 점자블록	E-412-108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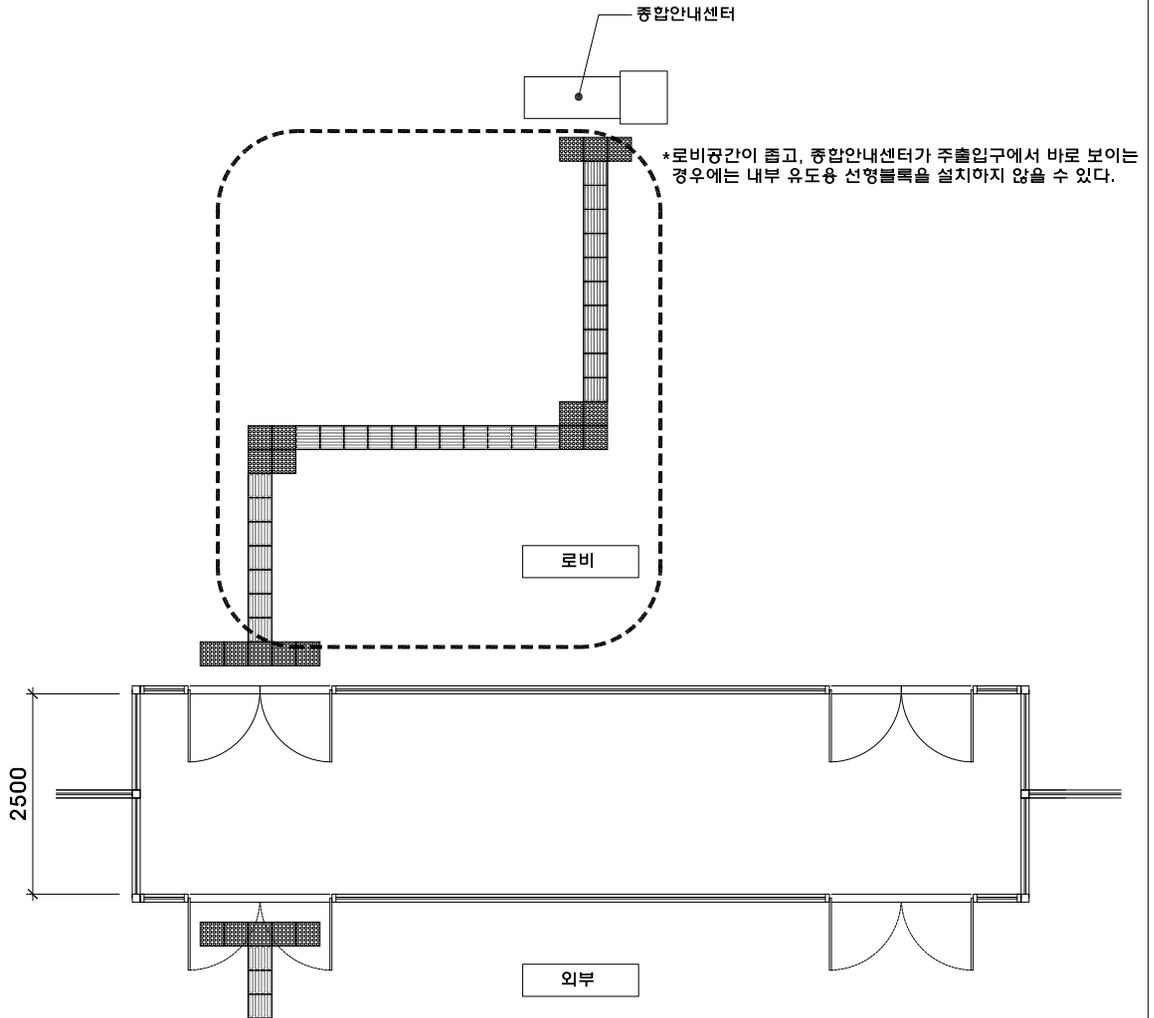
세부항목	4.1.2 설치방법
------	------------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결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TYPE 08 - 로비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SCALE : 1/80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의 설치는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항목의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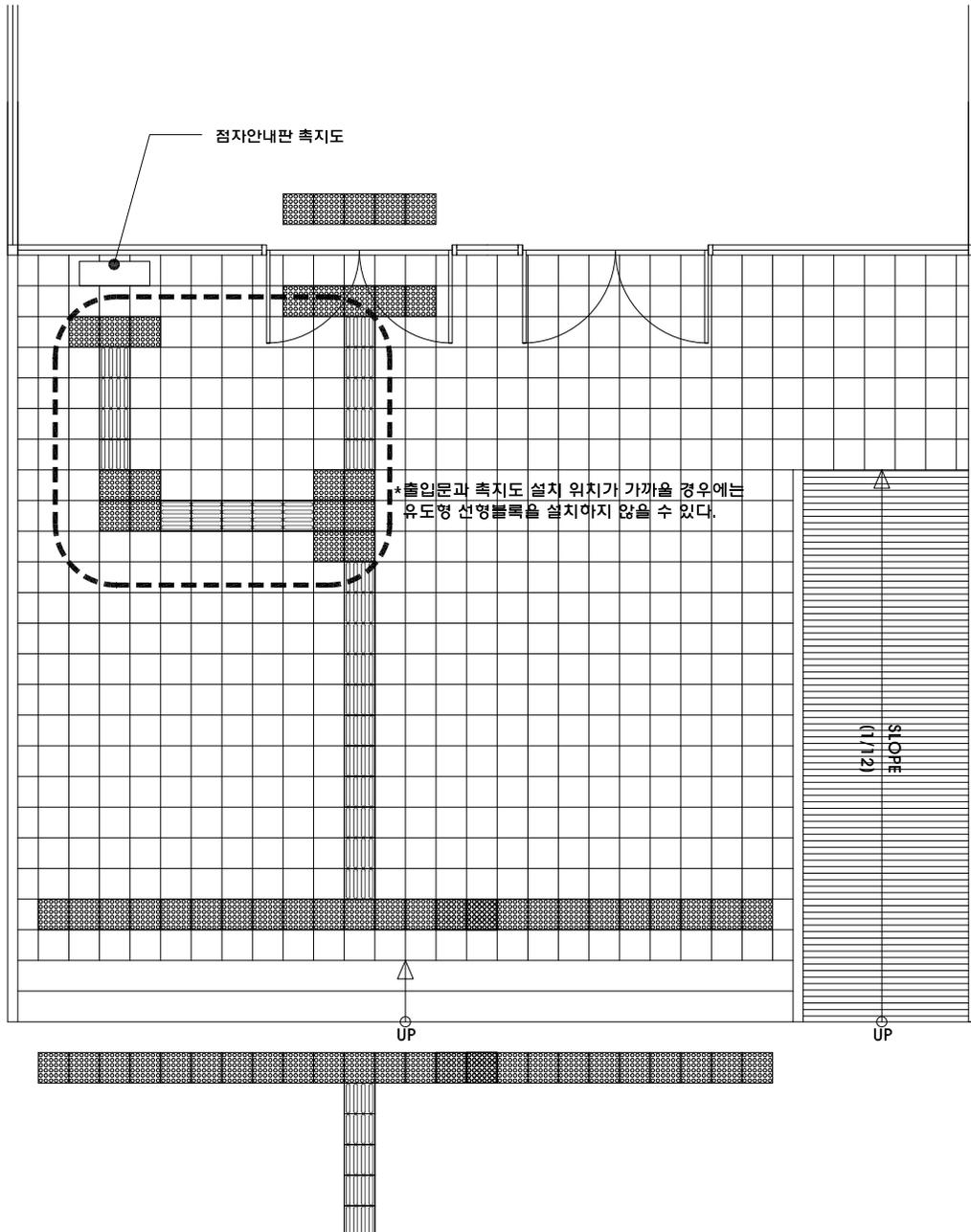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12-109
----	---------	----	---------------------	-----------

세부항목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TYPE 01 - 주출입구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SCALE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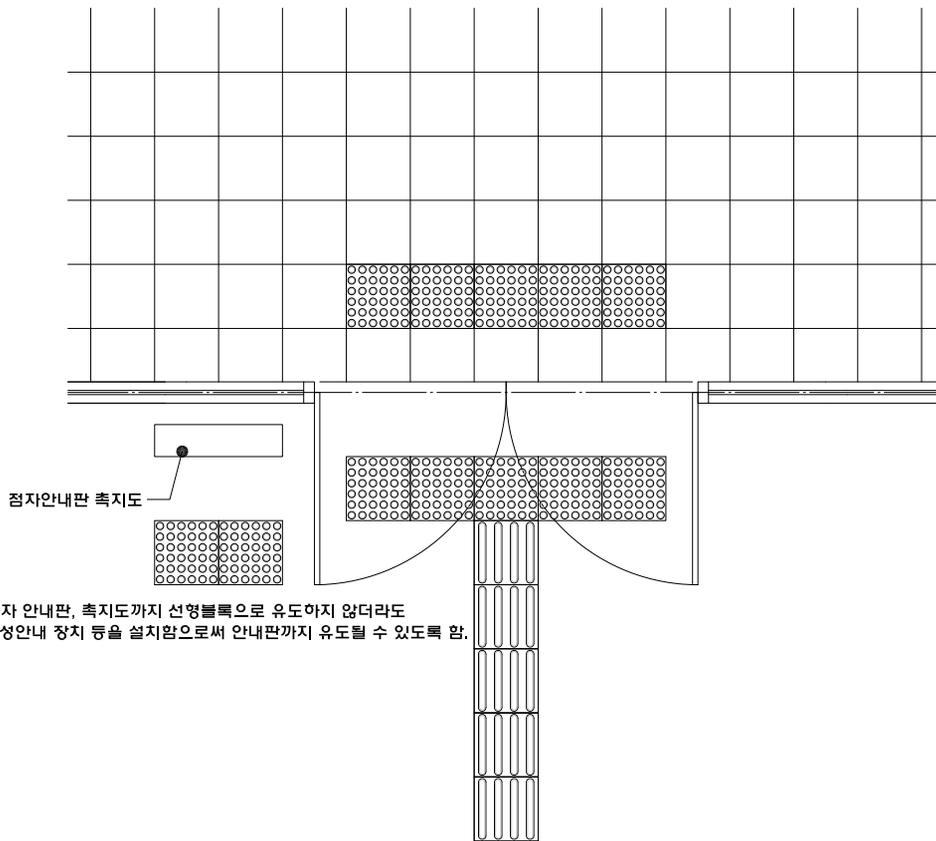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1-110
----	---------	----	---------------------	-----------

세부항목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TYPE 02 - 주출입구에 근접해 있는 경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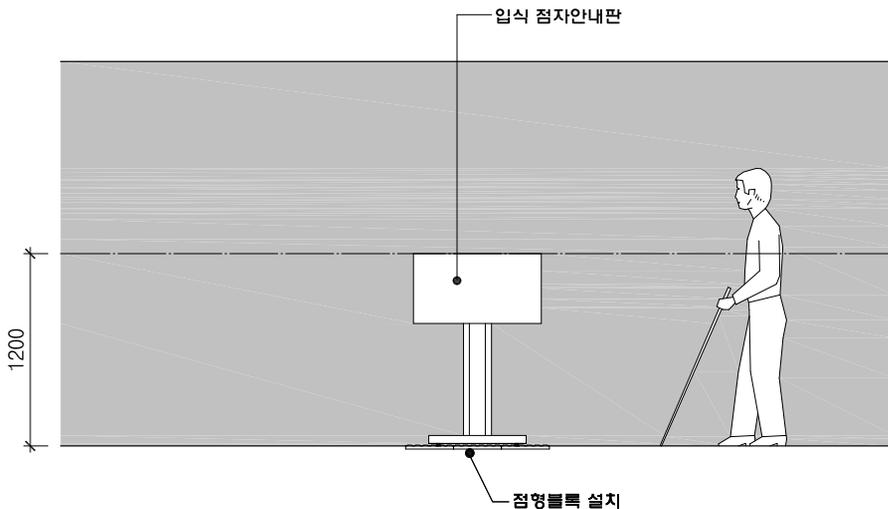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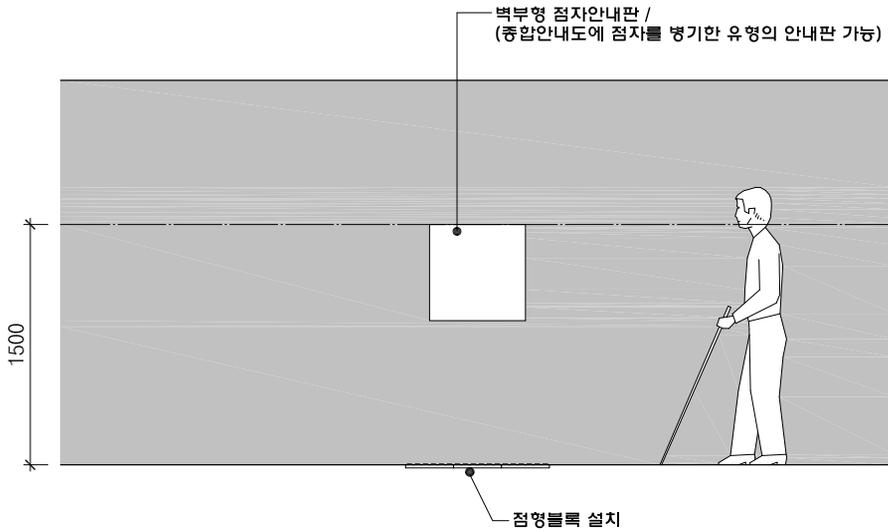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1-111
----	---------	----	---------------------	-----------

세부항목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TYPE 03 - 복도에서의 점자안내판 설치

SCALE : 1/40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1-11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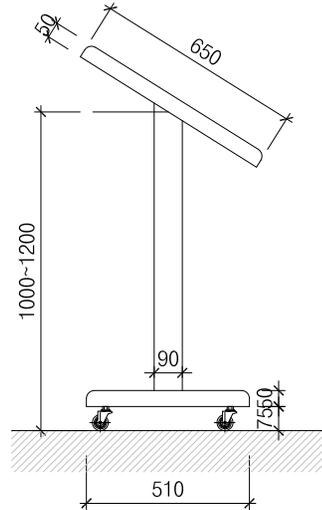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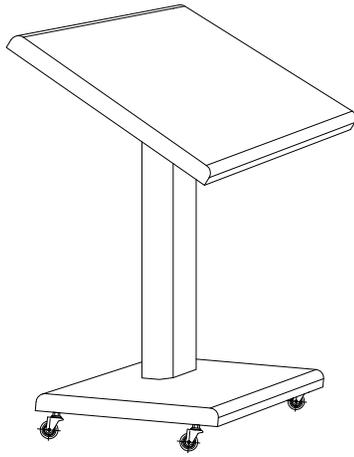
세부항목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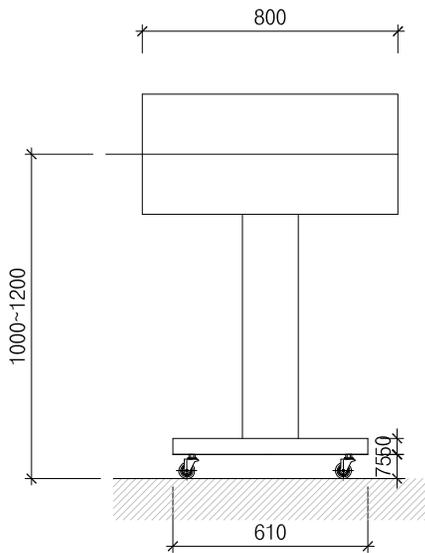
입식 점자안내판

SCALE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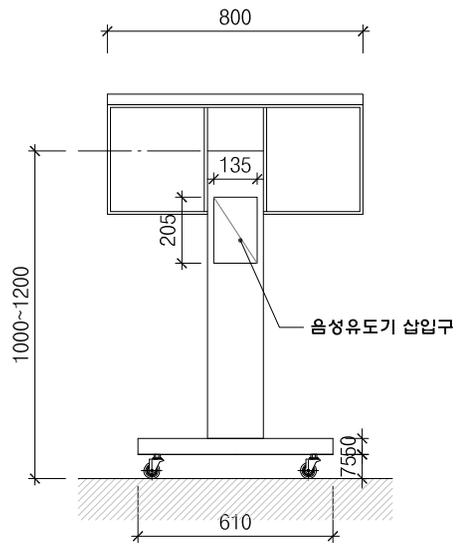
*디자인 및 치수는 사용자 의도에 따라 변경가능.



SIDE



FRONT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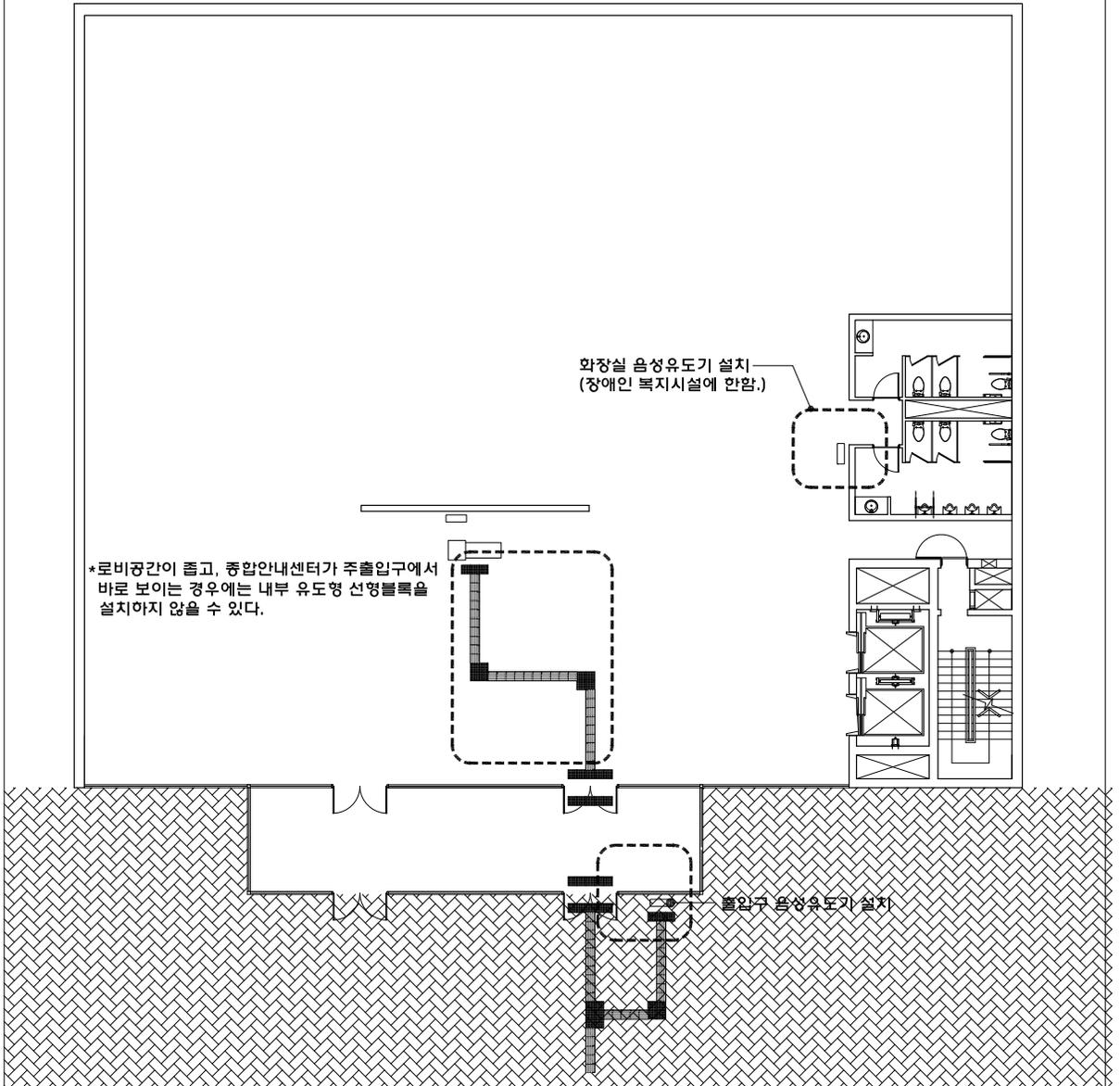
구 분	4. 안내시설	항 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2-113
-----	---------	-----	---------------------	-----------

세부항목	4.2.2 음성안내장치
------	--------------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SCALE : 1/200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2-114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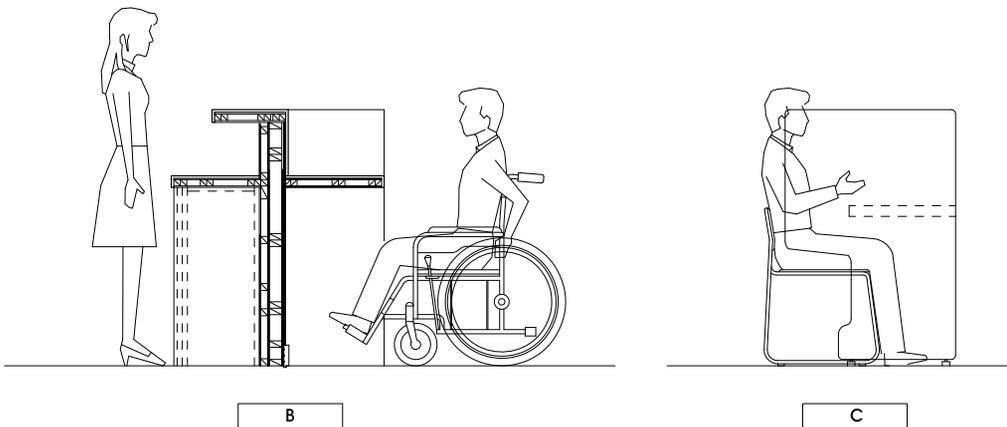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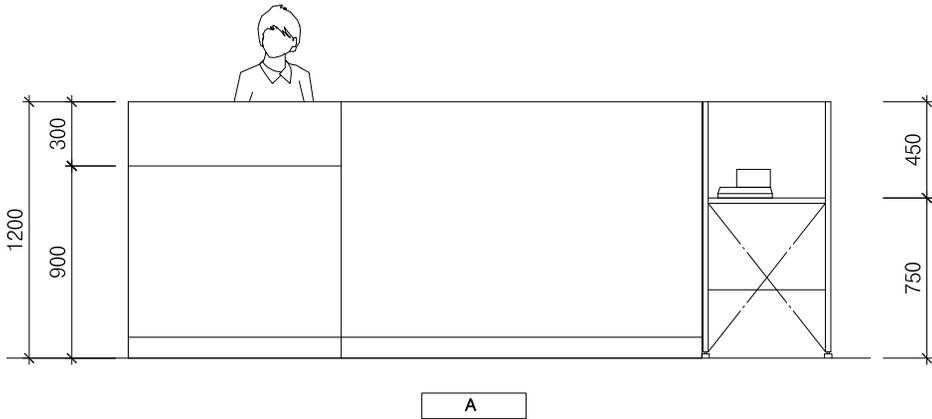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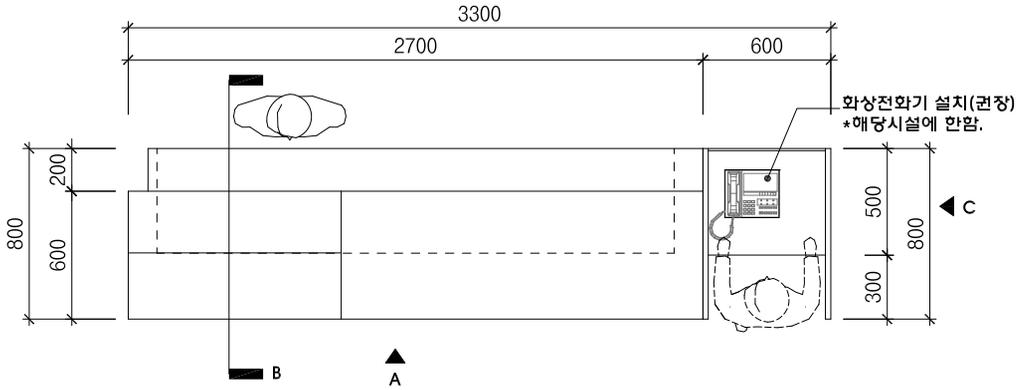
세부항목	4.2.2 음성안내장치
------	--------------

1)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중합안내센터

SCALE : 1/30

*중합안내센터에 필담보드, 문자안내판 등을 비치한다.(권장)



구분	4. 안내시설	항목	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E-423-11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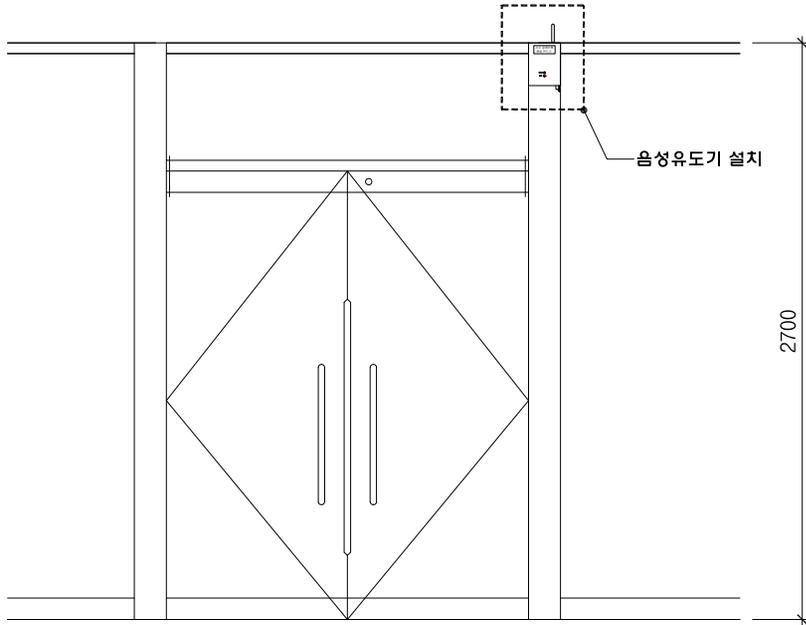
세부항목	4.2.3 기타 유도신호장치
------	-----------------

- 1)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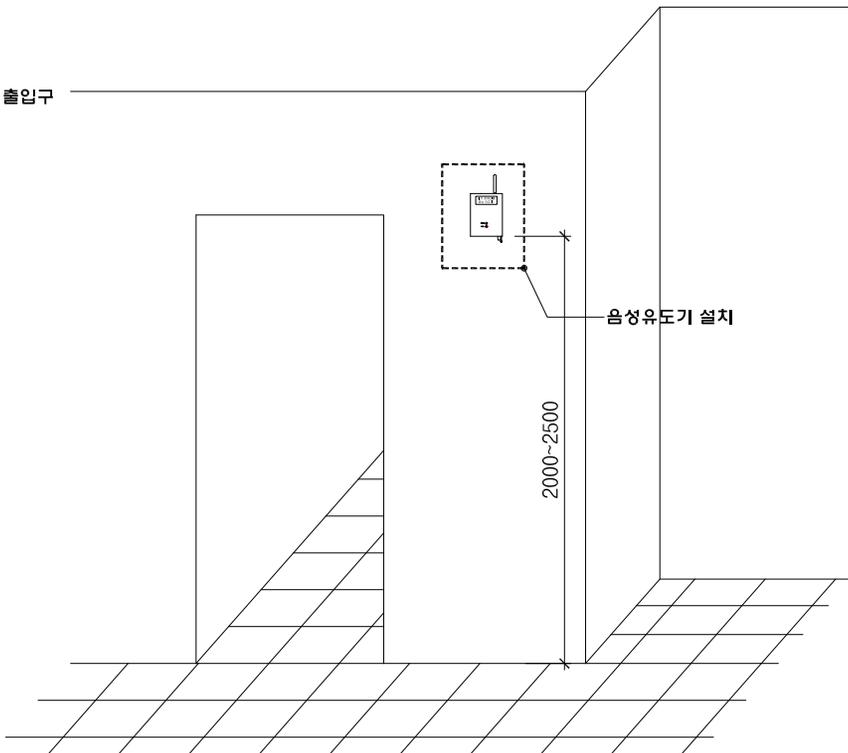
유도신호장치 설치위치

SCALE : 1/30

TYPE 01 - 주출입구



TYPE 02 - 화장실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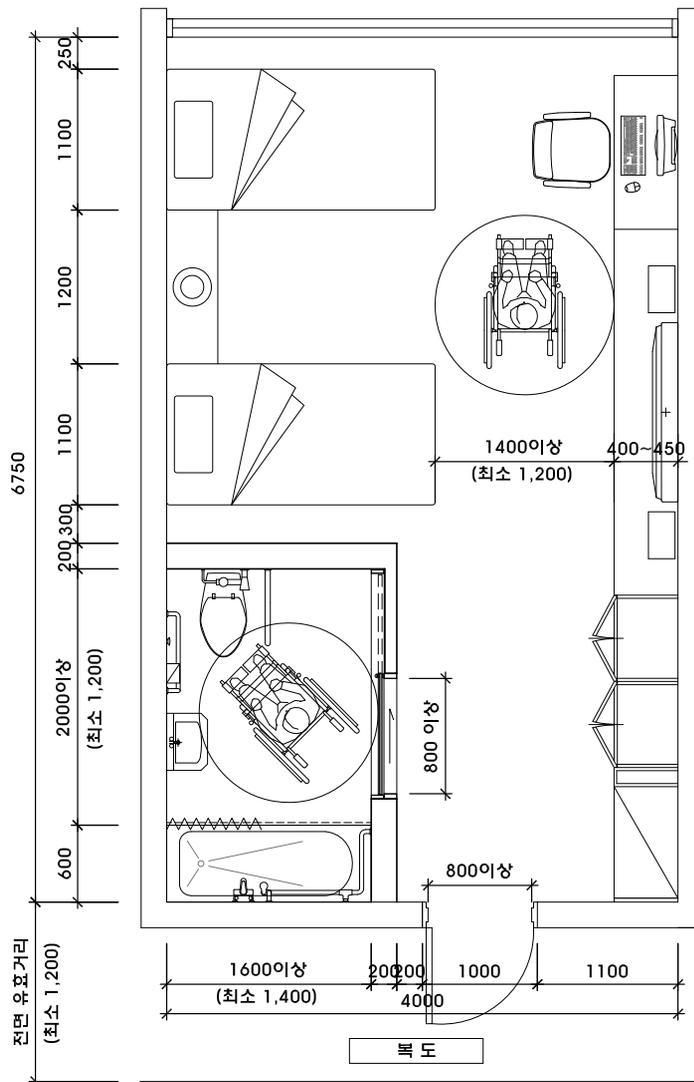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1-116
----	--------	----	-----------------------------	-----------

세부항목 5.1.1 설치장소 및 구조

- 1)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선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2)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4) 출입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1.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6)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8)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TYPE 01 - 더블룸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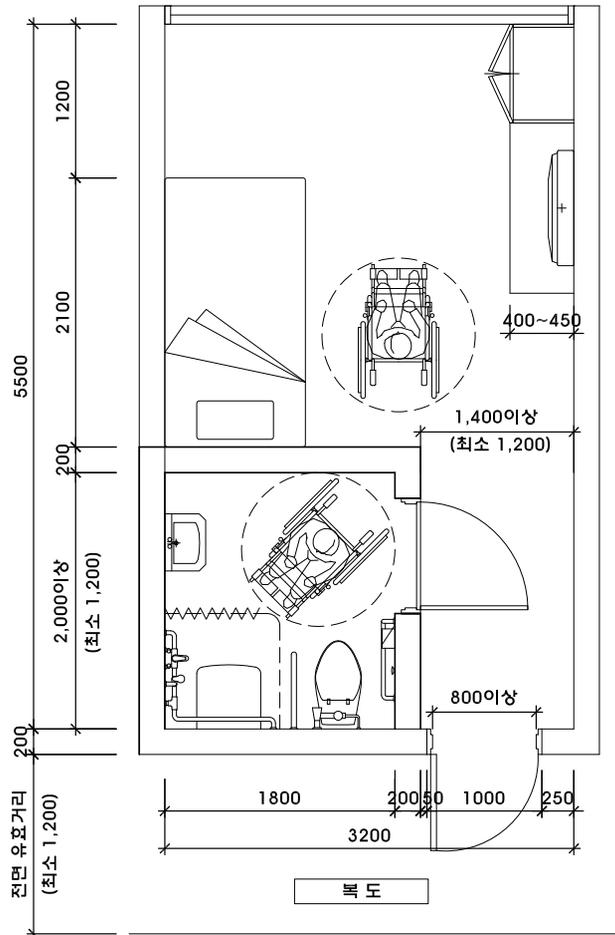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1-117
----	--------	----	-----------------------------	-----------

세부항목 5.1.1 설치장소 및 구조

- 1)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선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2)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4) 출입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1.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6)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8)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TYPE 02 - 싱글룸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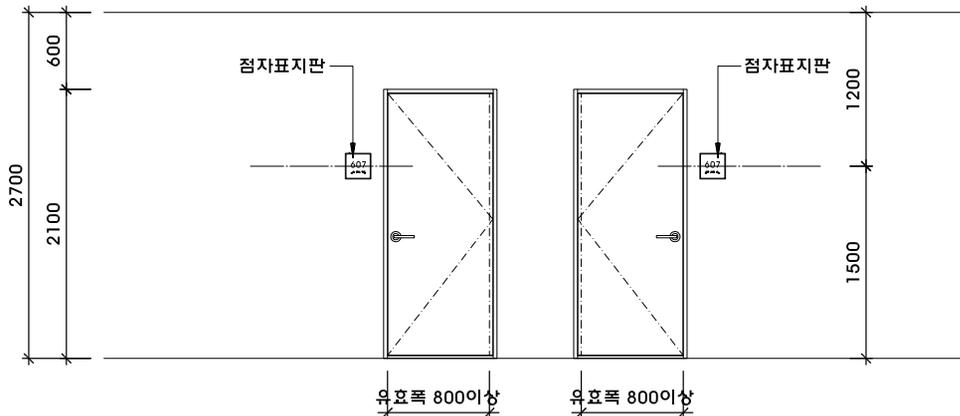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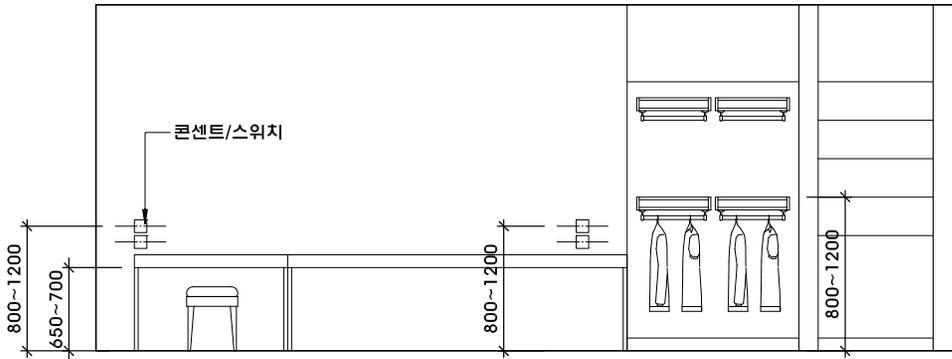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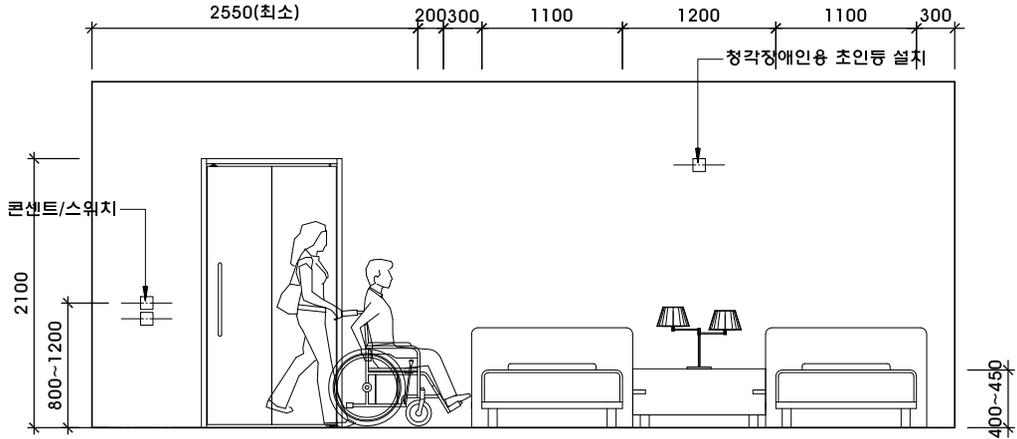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2-118
----	--------	----	-----------------------------	-----------

세부항목 5.1.2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이용 초인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이용 초인종, 콘센트/스위치, 점자표지판설치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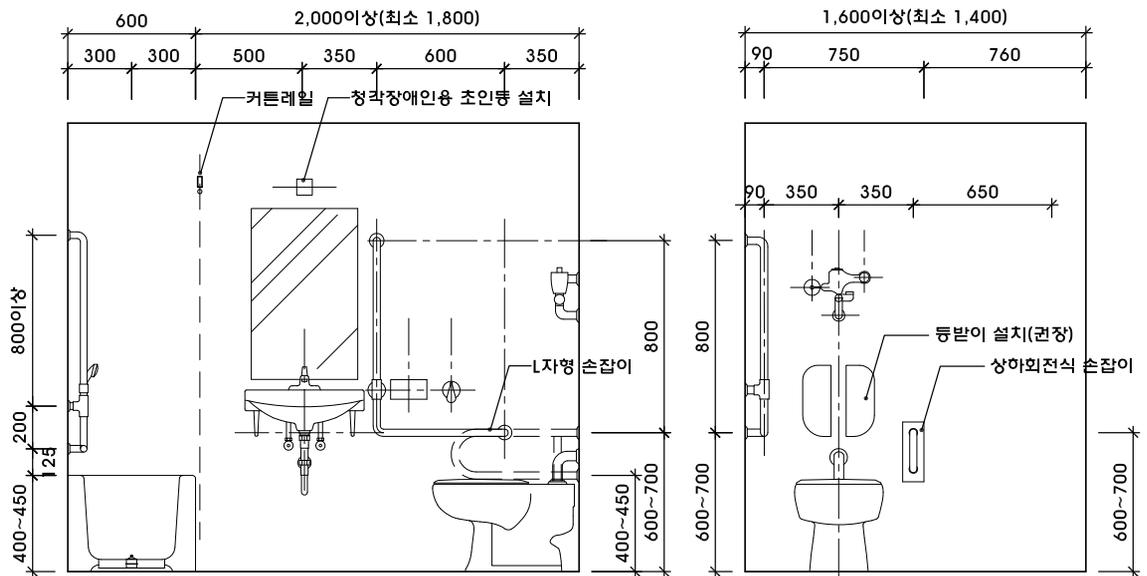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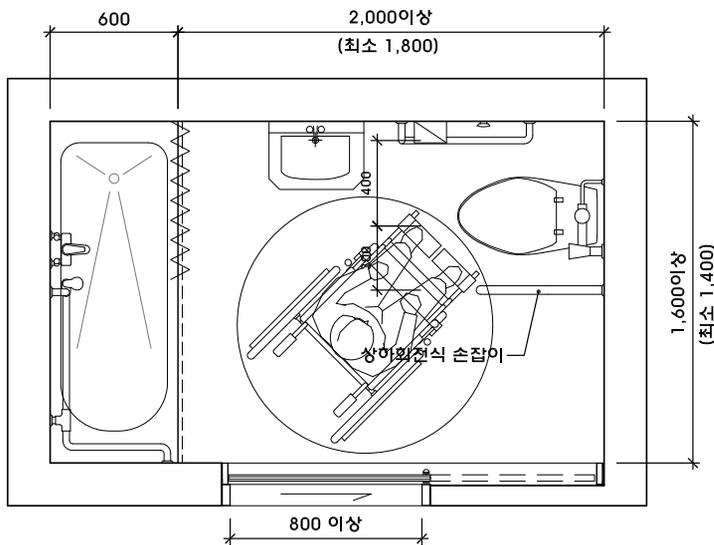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2-119
----	--------	----	-----------------------------	-----------

세부항목 5.1.2 기타 설비

- 1)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 확보하고 단차를 2CM이하로 한다.
- 2)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5)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6)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8)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객실 내 화장실 설치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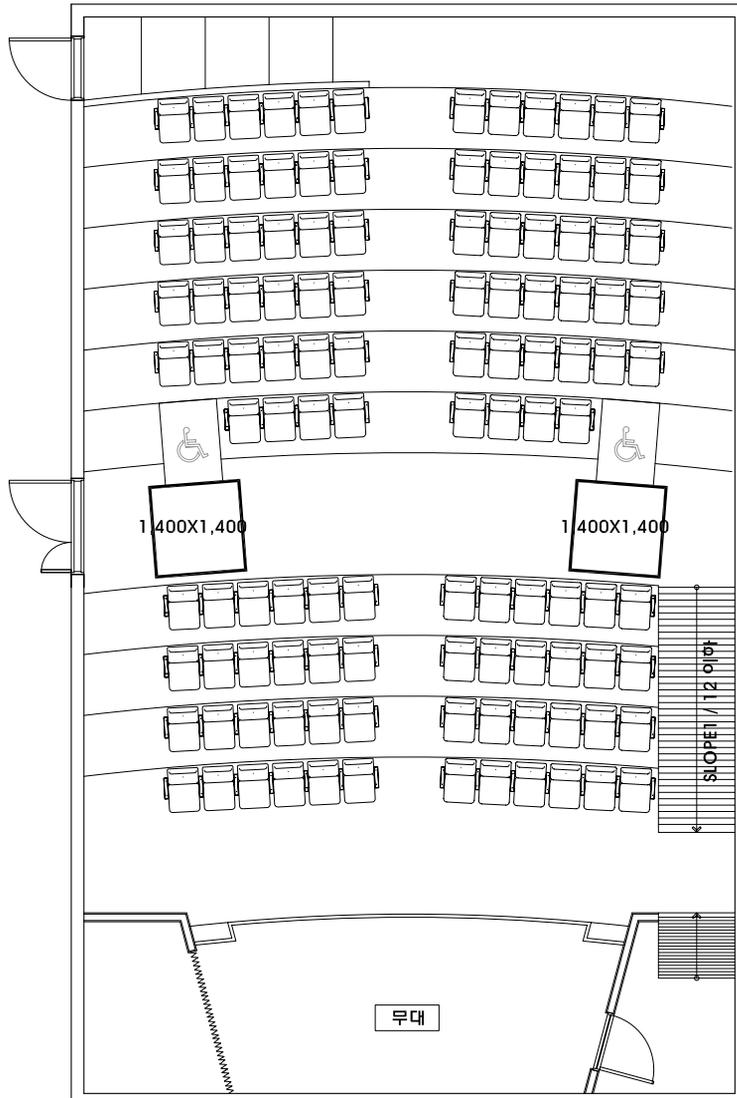
구 분	5.기타시설	항 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1-120
-----	--------	-----	-------------------------------	-----------

세부항목	5.2.1 설치장소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TYPE 01 - 전체 관람석 수가 200석 미만

SCALE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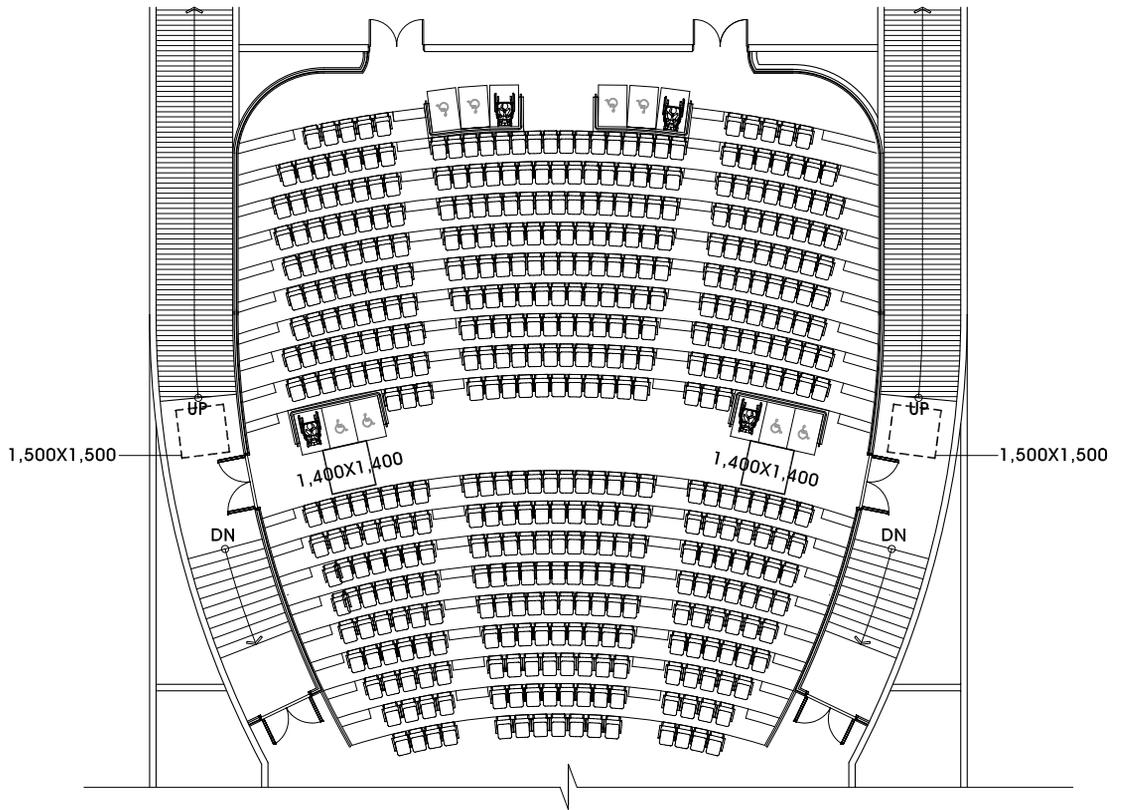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1-121
----	--------	----	-------------------------------	-----------

세부항목	5.2.1 설치장소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TYPE 02 - 전체 관람석 수가 500석 미만

SCALE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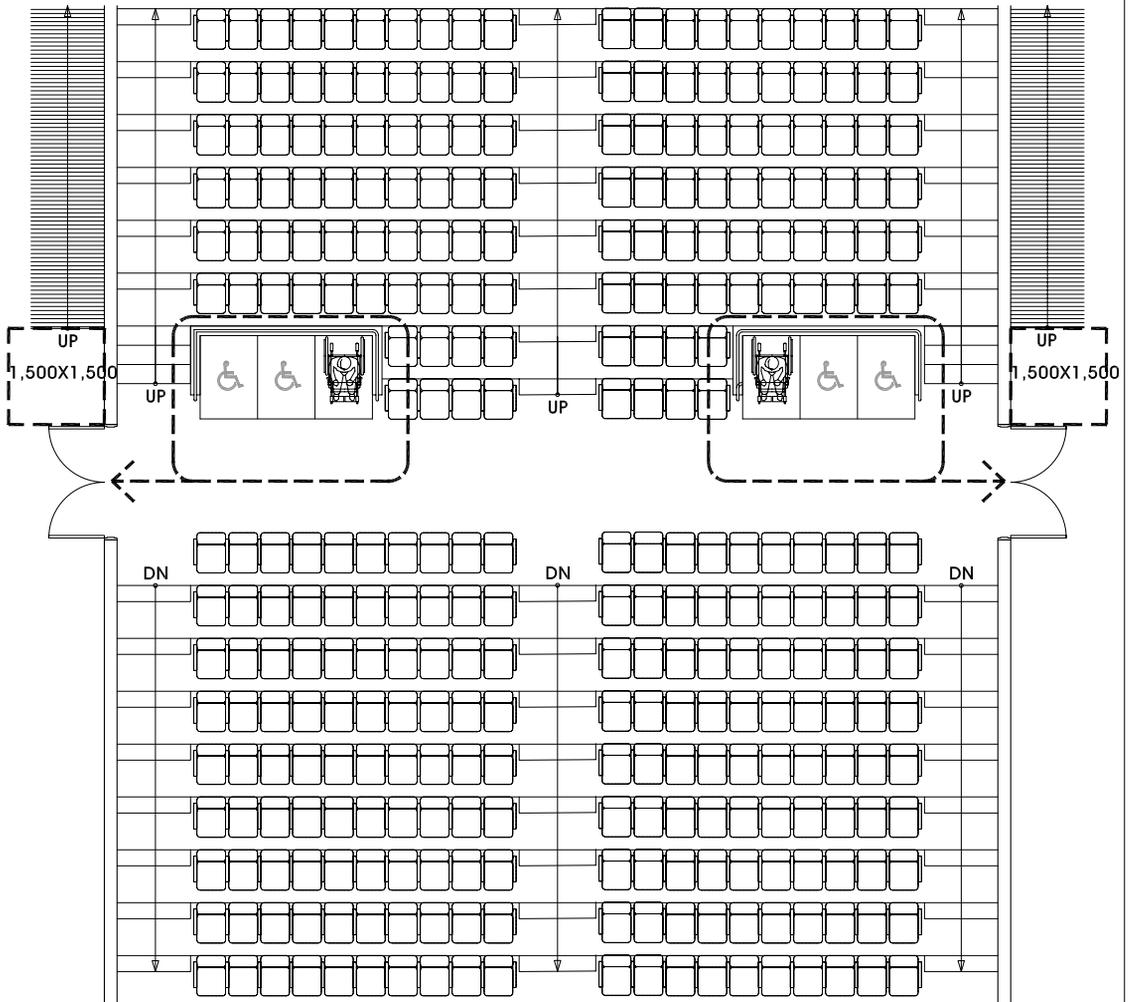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 521-122
----	--------	----	-------------------------------	------------

세부항목	5.2.1 설치장소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TYPE 01 관람석 중간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SCALE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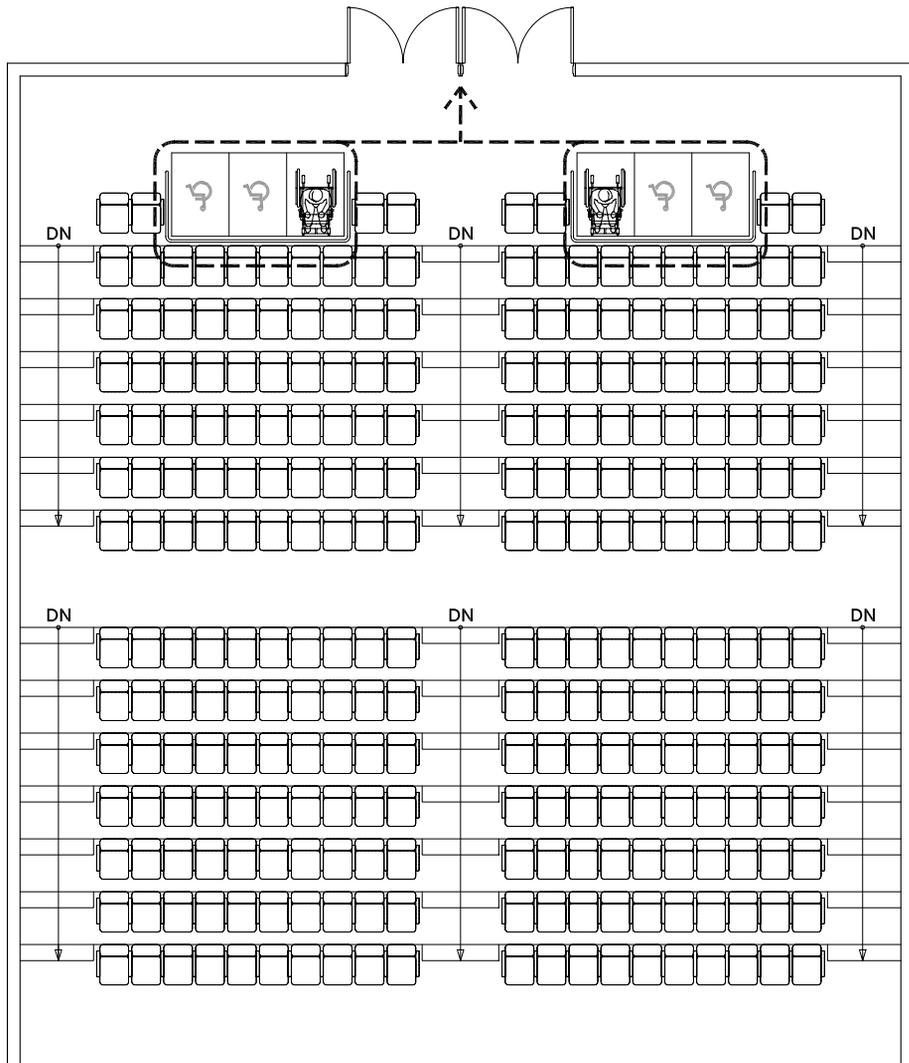
구 분	5.기타시설	항 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1-123
-----	--------	-----	-------------------------------	-----------

세부항목	5.2.1 설치장소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TYPE 02 관람석 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SCALE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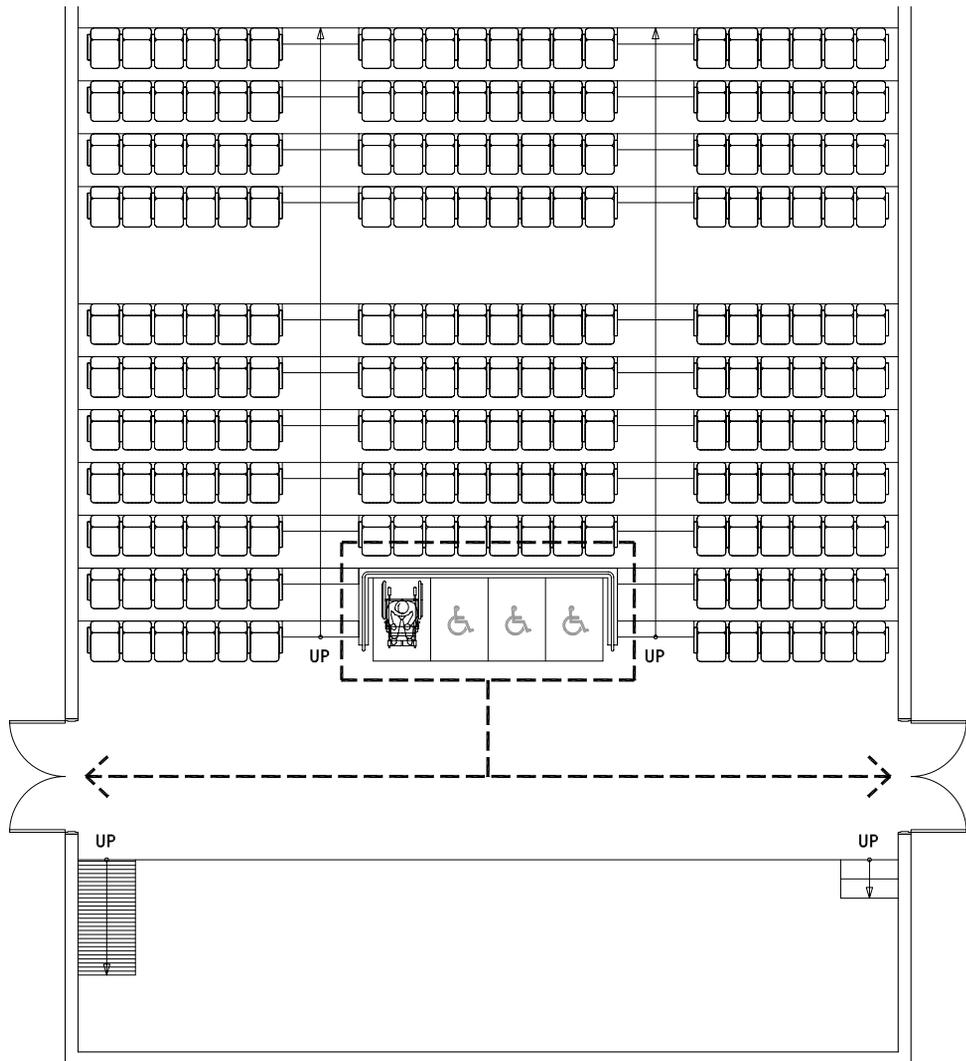
구 분	5.기타시설	항 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 521-124
-----	--------	-----	-------------------------------	------------

세부항목	5.2.1 설치장소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TYPE 03 관람석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SCALE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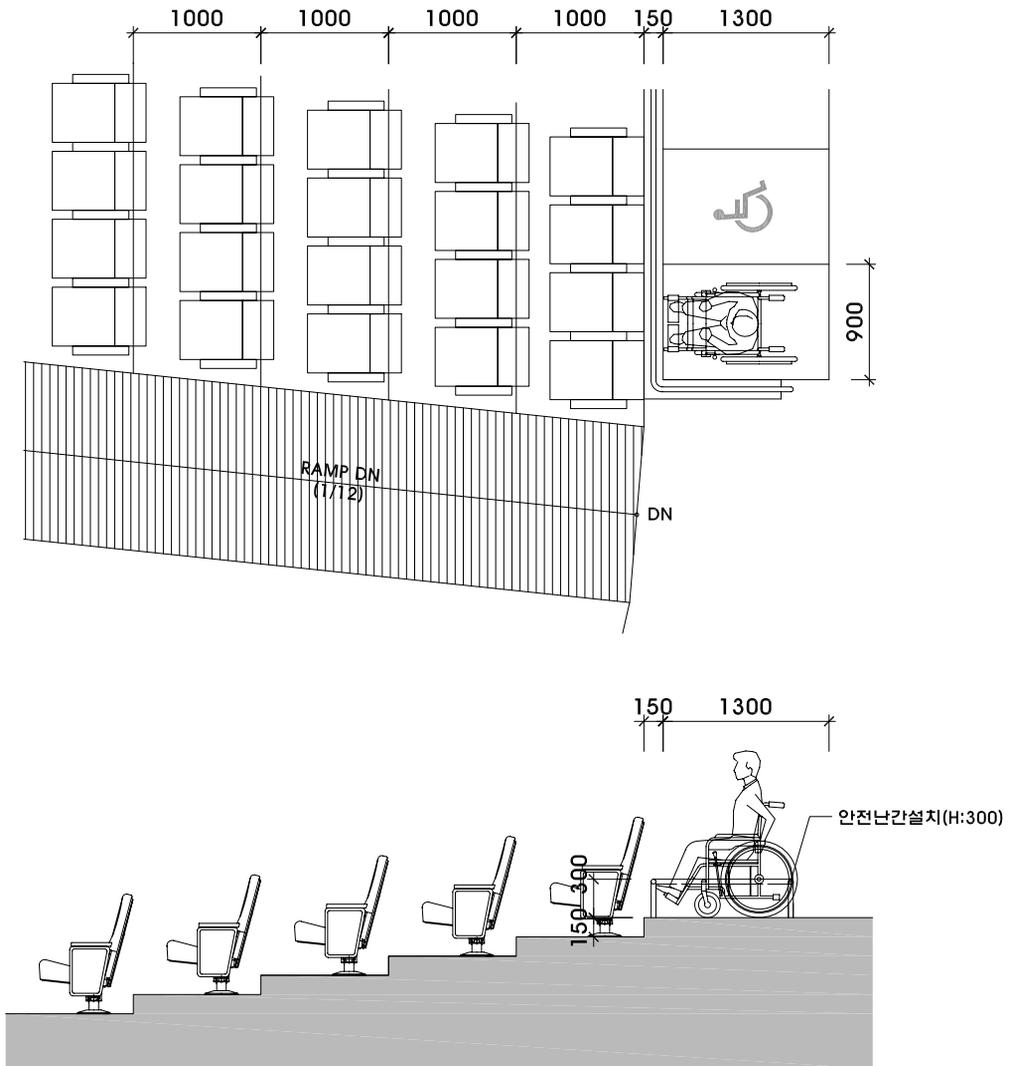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2-125
----	--------	----	-------------------------------	-----------

세부항목	5.2.2 관람석의 구조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 좌석의 유효바닥면적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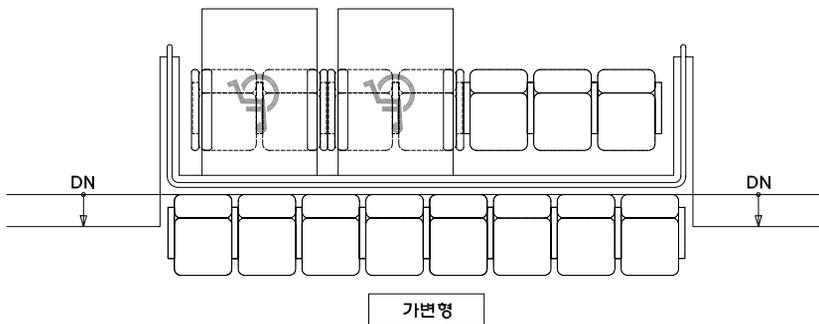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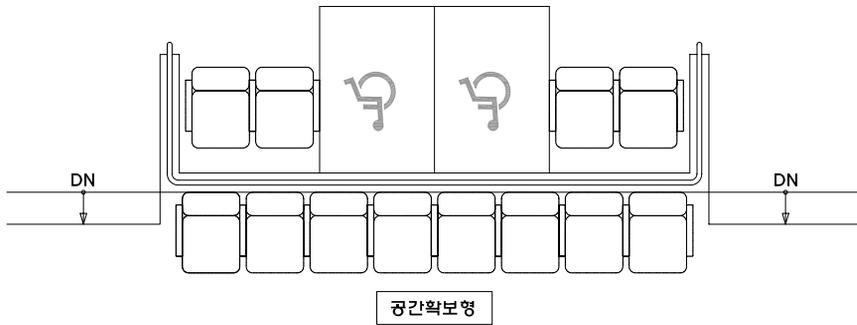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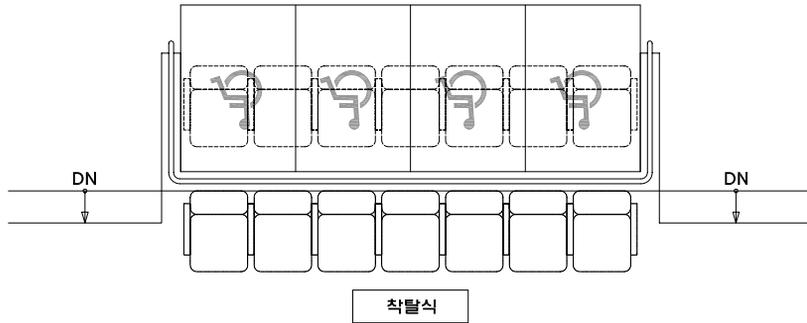
구 분	5.기타시설	항 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2-126
-----	--------	-----	-------------------------------	-----------

세부항목	5.2.2 관람석의 구조
------	---------------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유형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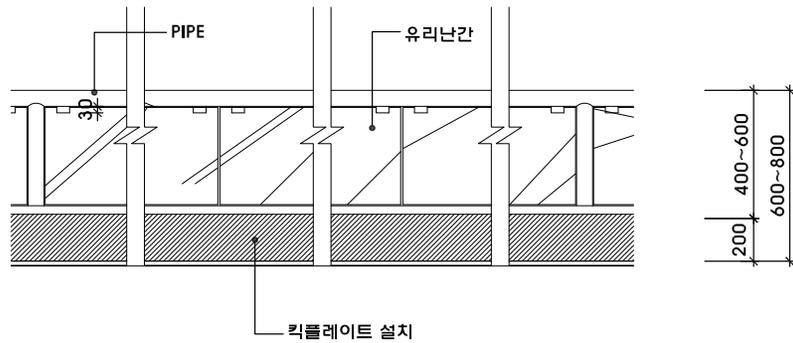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2-127
----	--------	----	-------------------------------	-----------

세부항목	5.2.2 관람석의 구조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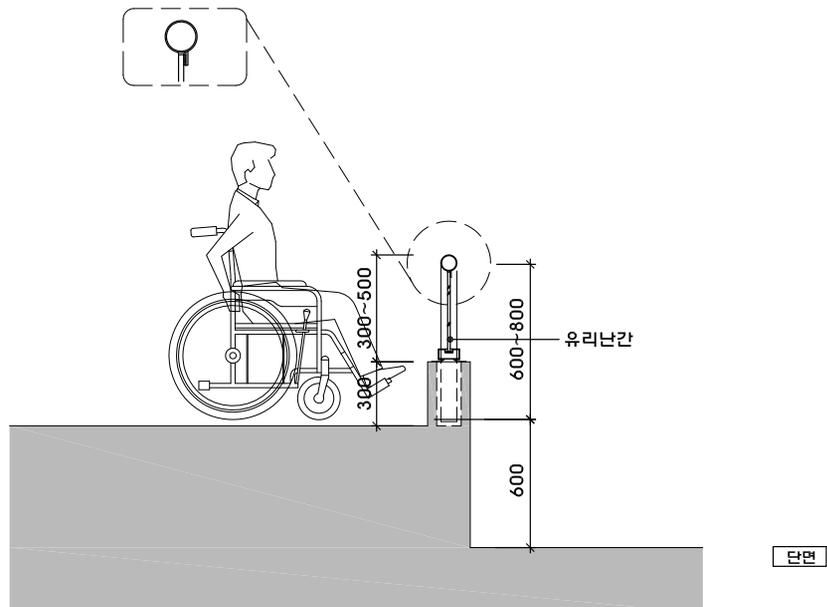
1)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 핸드레일의 높이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0.6M~0.8M 정도로 한다.

TYPE 01 - 앞에 좌석이 없는 경우

SCALE : 1/30



단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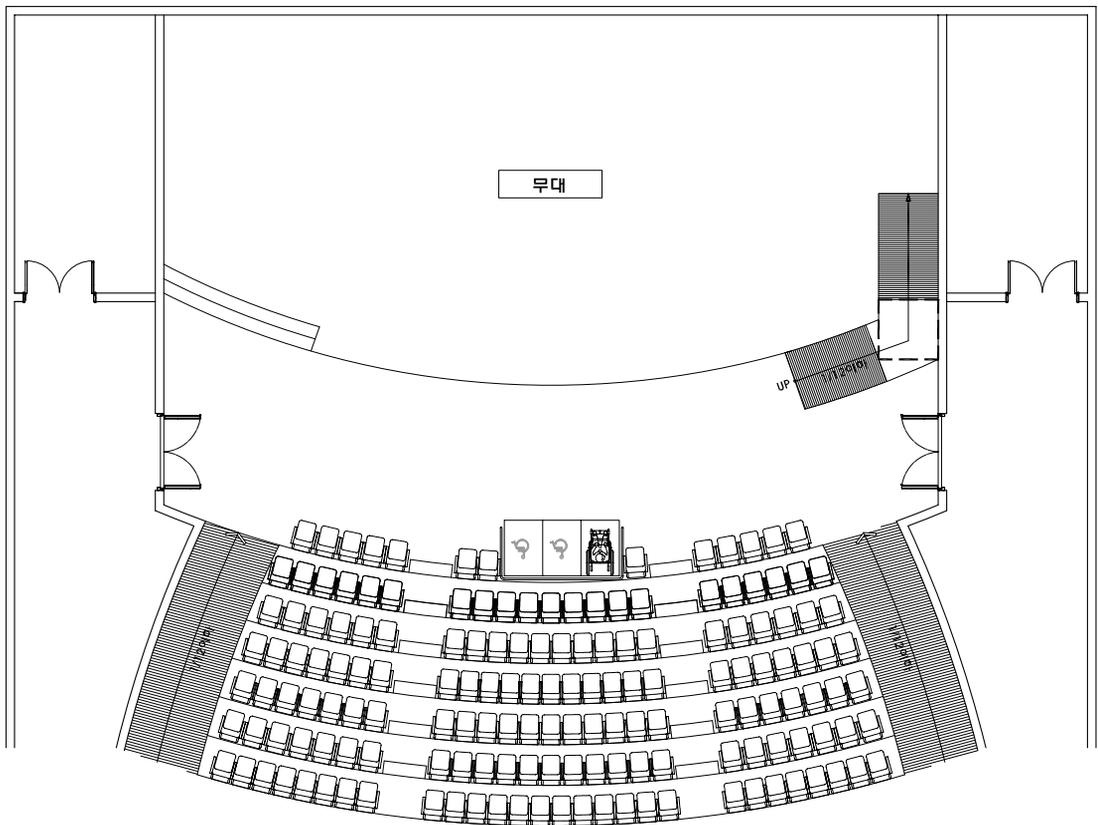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 523-129
----	--------	----	-------------------------------	------------

세부항목	5.2.3 무대의 구조
------	--------------

1)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

TYPE 01 - 고정형 경사로(무대)

SCALE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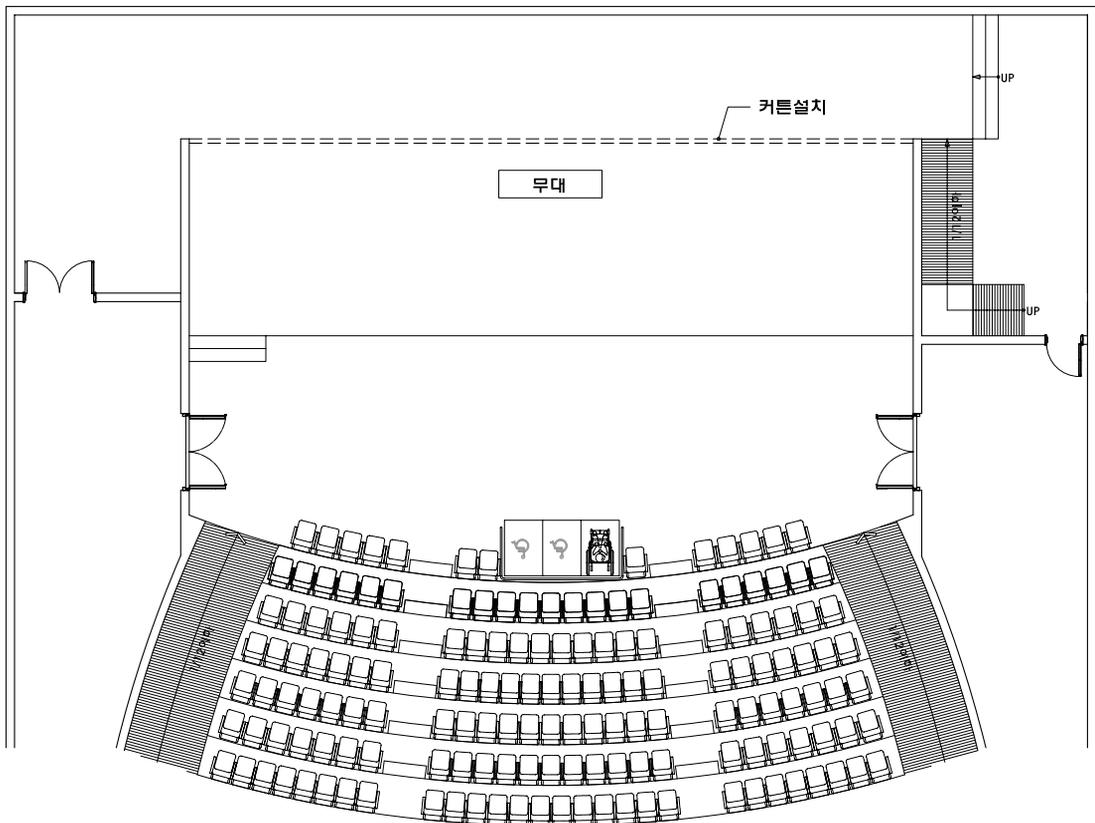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 523-130
----	--------	----	-------------------------------	------------

세부항목	5.2.3 무대의 구조
------	--------------

1)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

TYPE 02 - 고정형 경사로(준비실)

SCALE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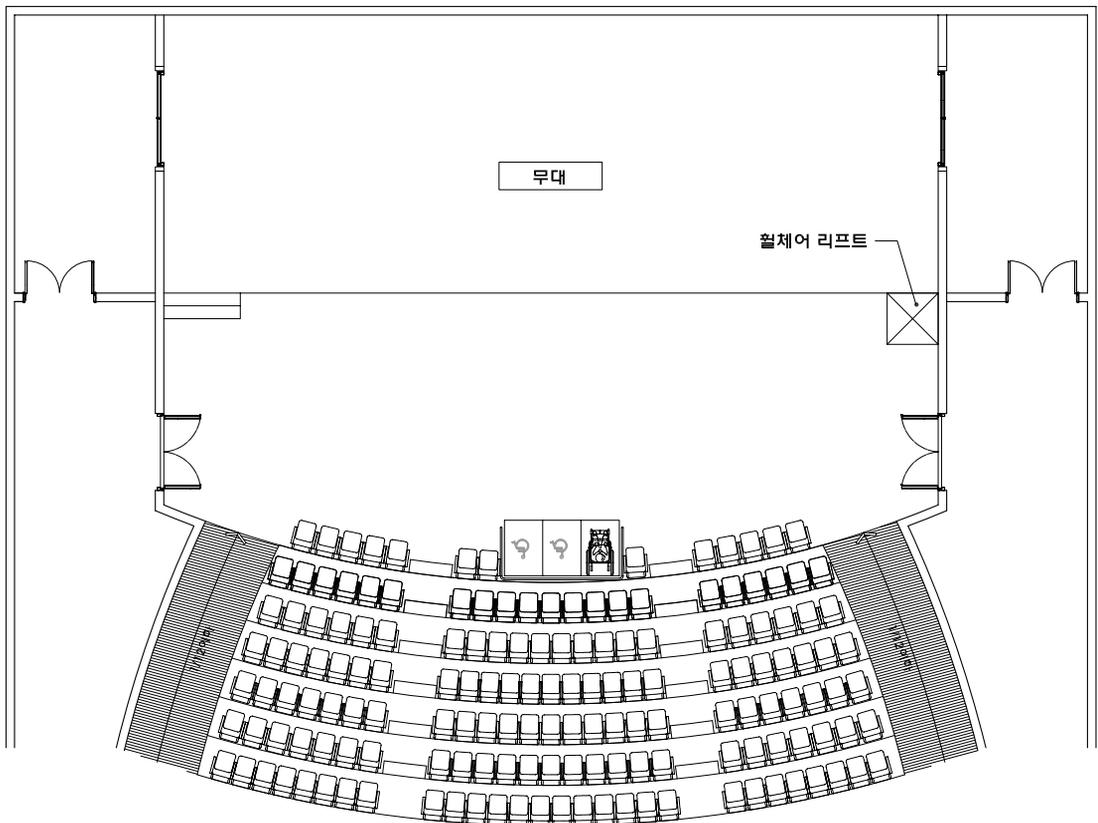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3-131
----	--------	----	-------------------------------	-----------

세부항목	5.2.3 무대의 구조
------	--------------

1)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

TYPE 03 - 휠체어 리프트(무대)

SCALE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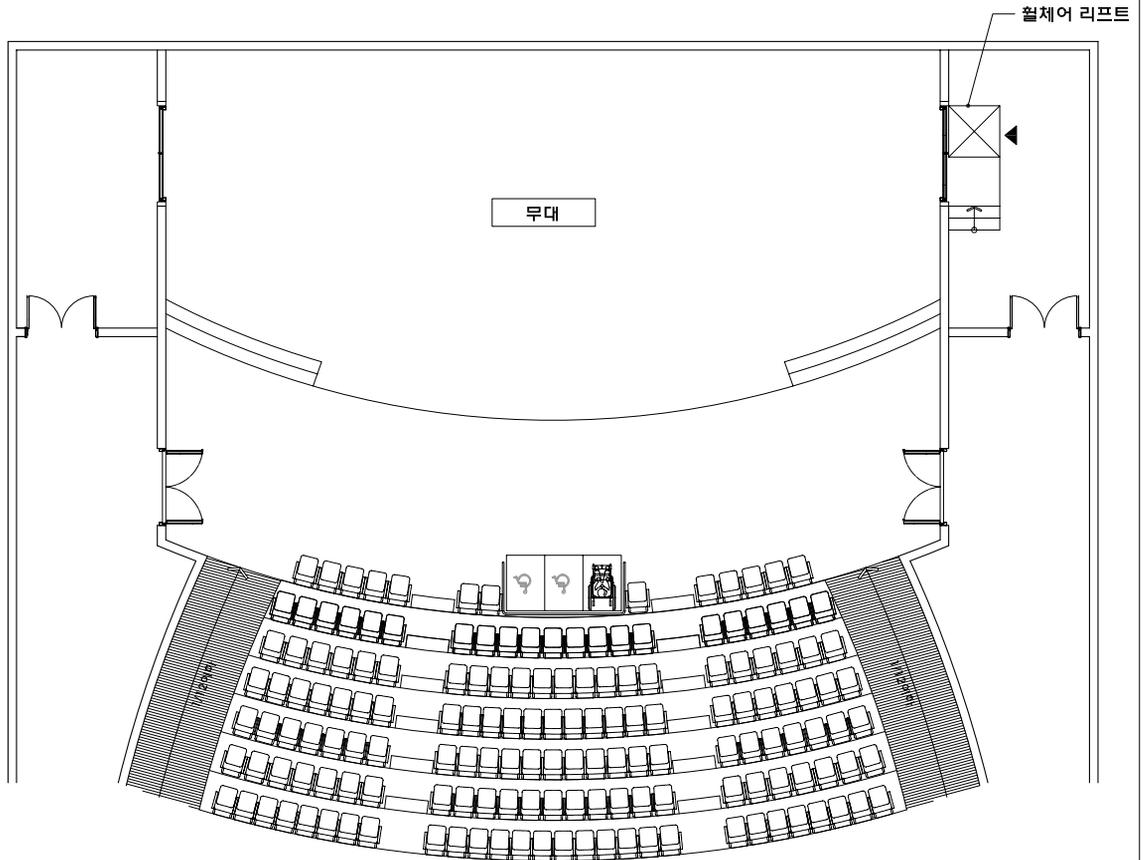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3-132
----	--------	----	-------------------------------	-----------

세부항목	5.2.3 무대의 구조
------	--------------

1)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

TYPE 04 - 휠체어 리프트(준비실)

SCALE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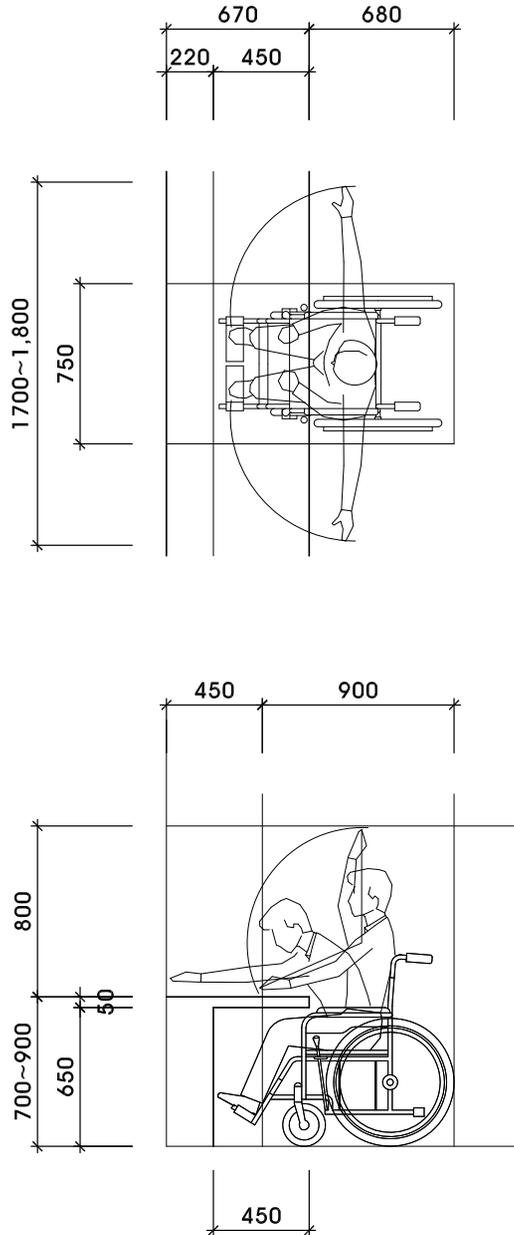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4-133
----	--------	----	-------------------------------	-----------

세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팔꿈치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1 - 개인 열람석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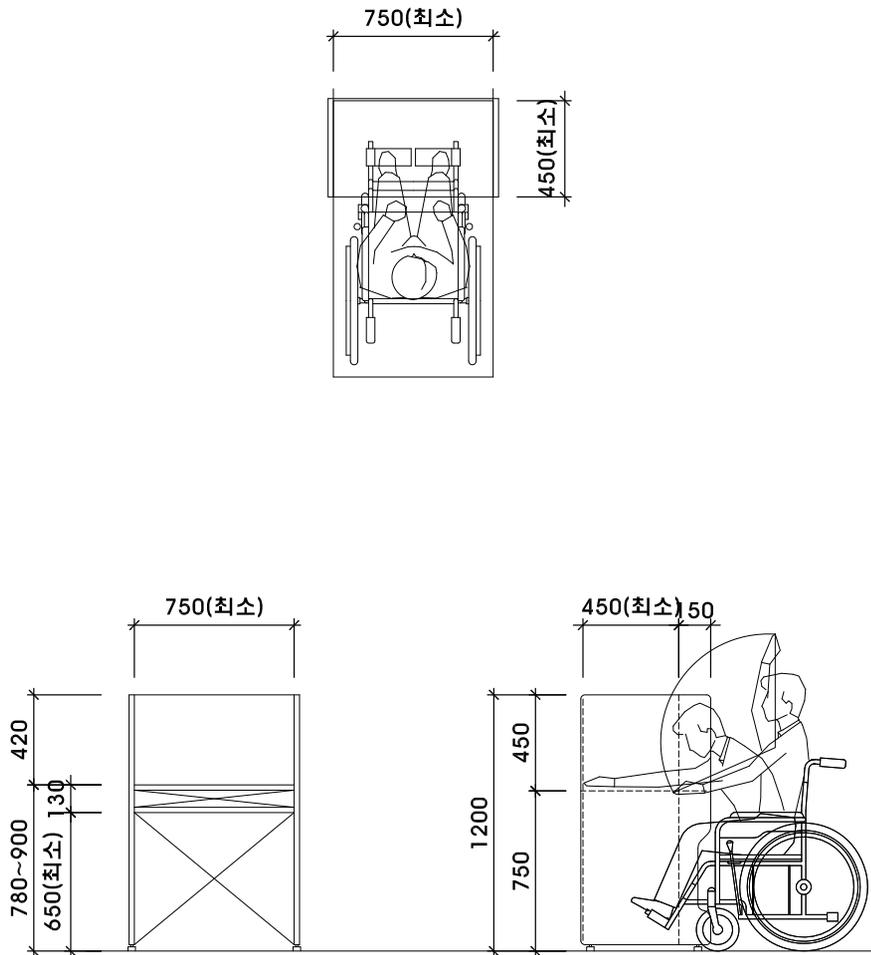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4-134
----	--------	----	-------------------------------	-----------

세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팔꿈치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2 - 개인 열람석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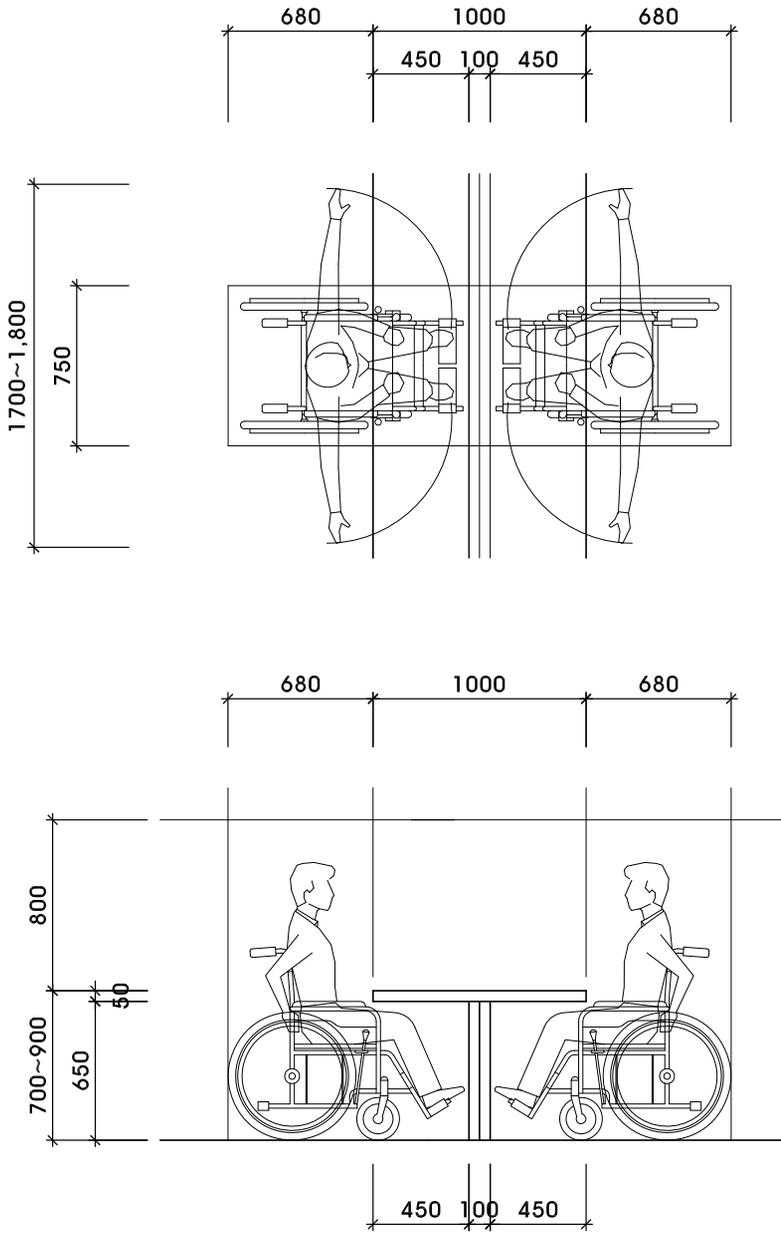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4-135
----	--------	----	-------------------------------	-----------

세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팔꿈치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3 - 단체 열람석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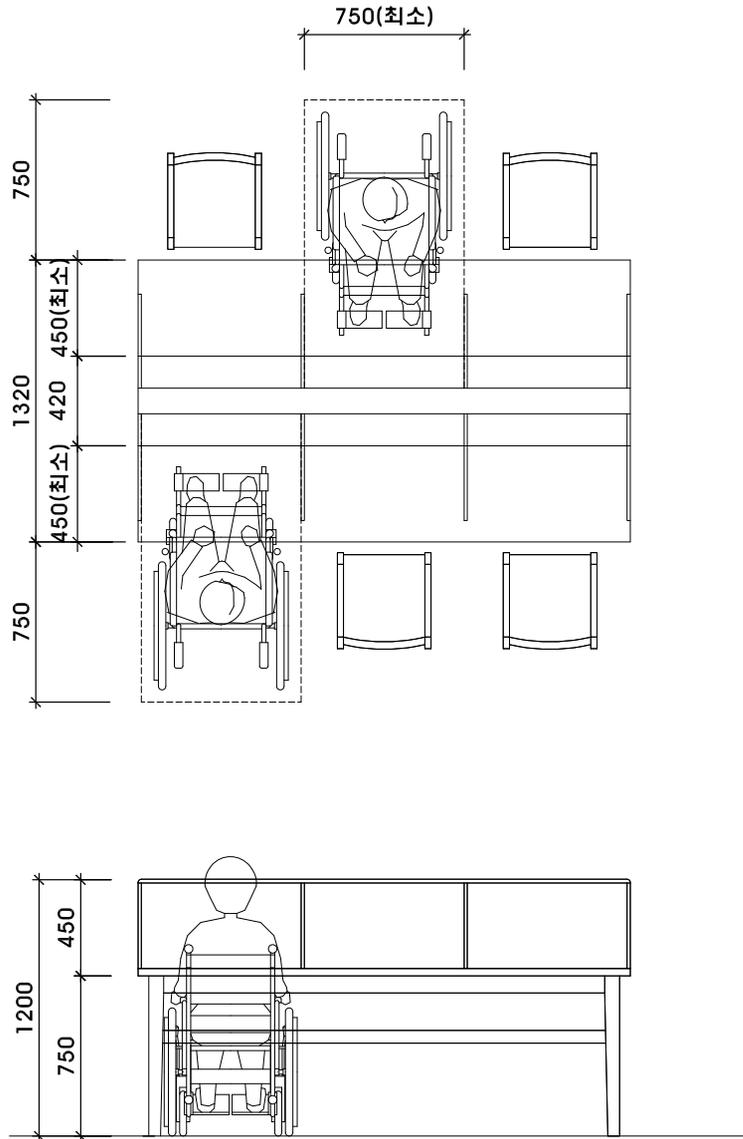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4-136
----	--------	----	-------------------------------	-----------

세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아부에는 무릎 및 팔뚝의 받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4 - 개인 열람석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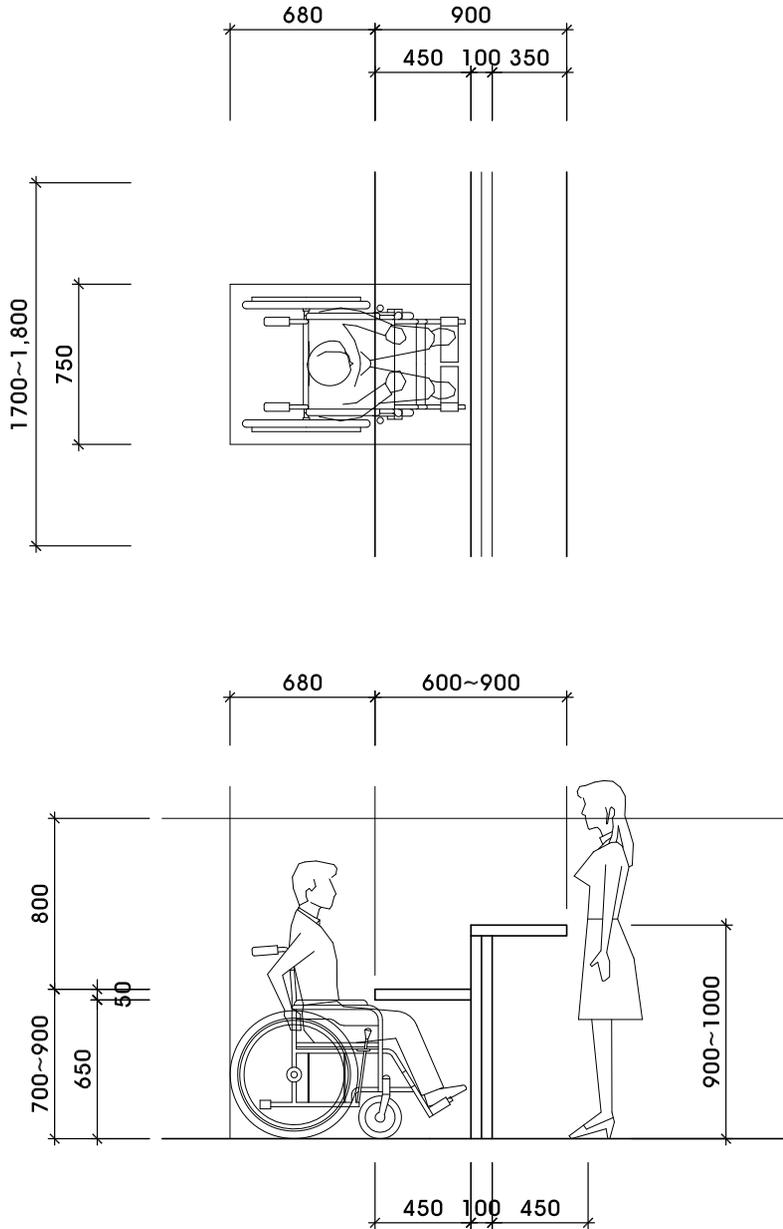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F-531-137
----	--------	----	-------------------------------	-----------

세부항목 5.3.1 활동공간 및 구조

- 1) 음,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1 - 접수대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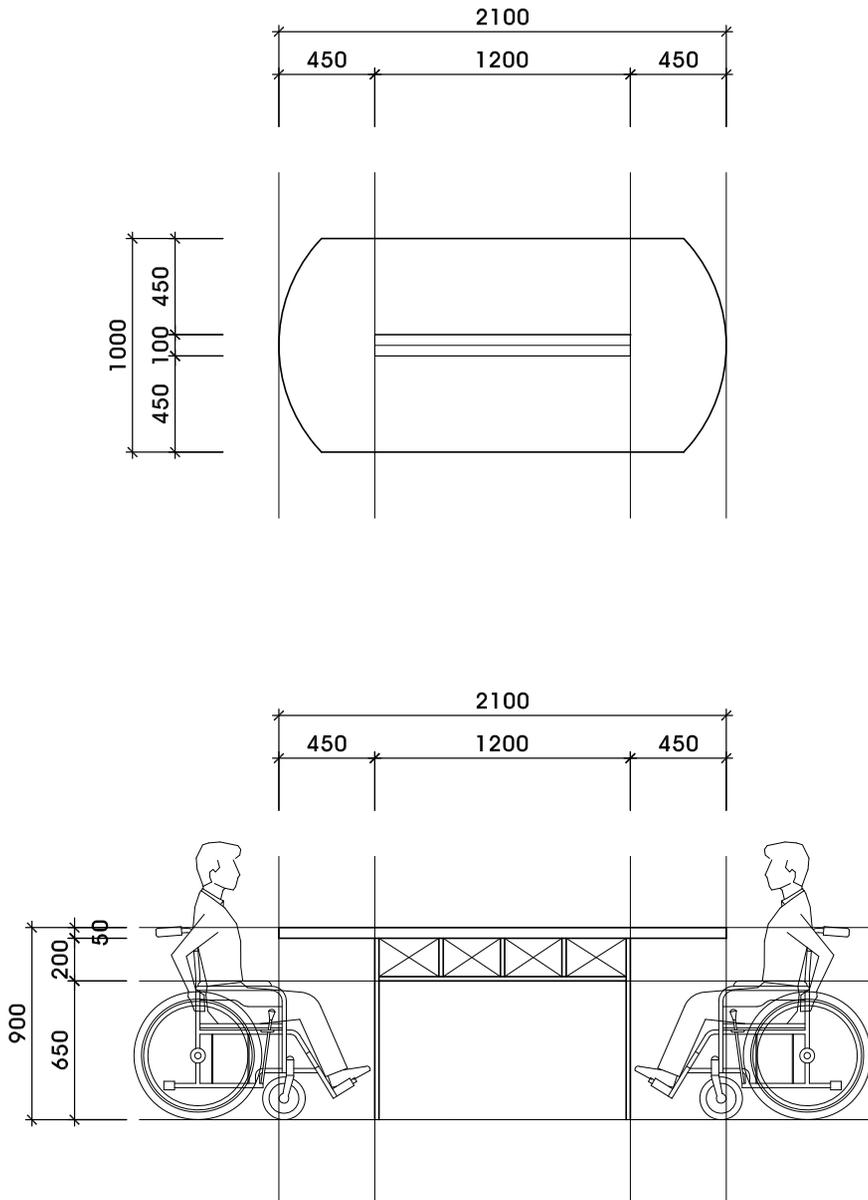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F-531-138
----	--------	----	-------------------------------	-----------

세부항목	5.3.1 활동공간 및 구조			
------	-----------------	--	--	--

- 1) 음,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2 - 작업대의 구조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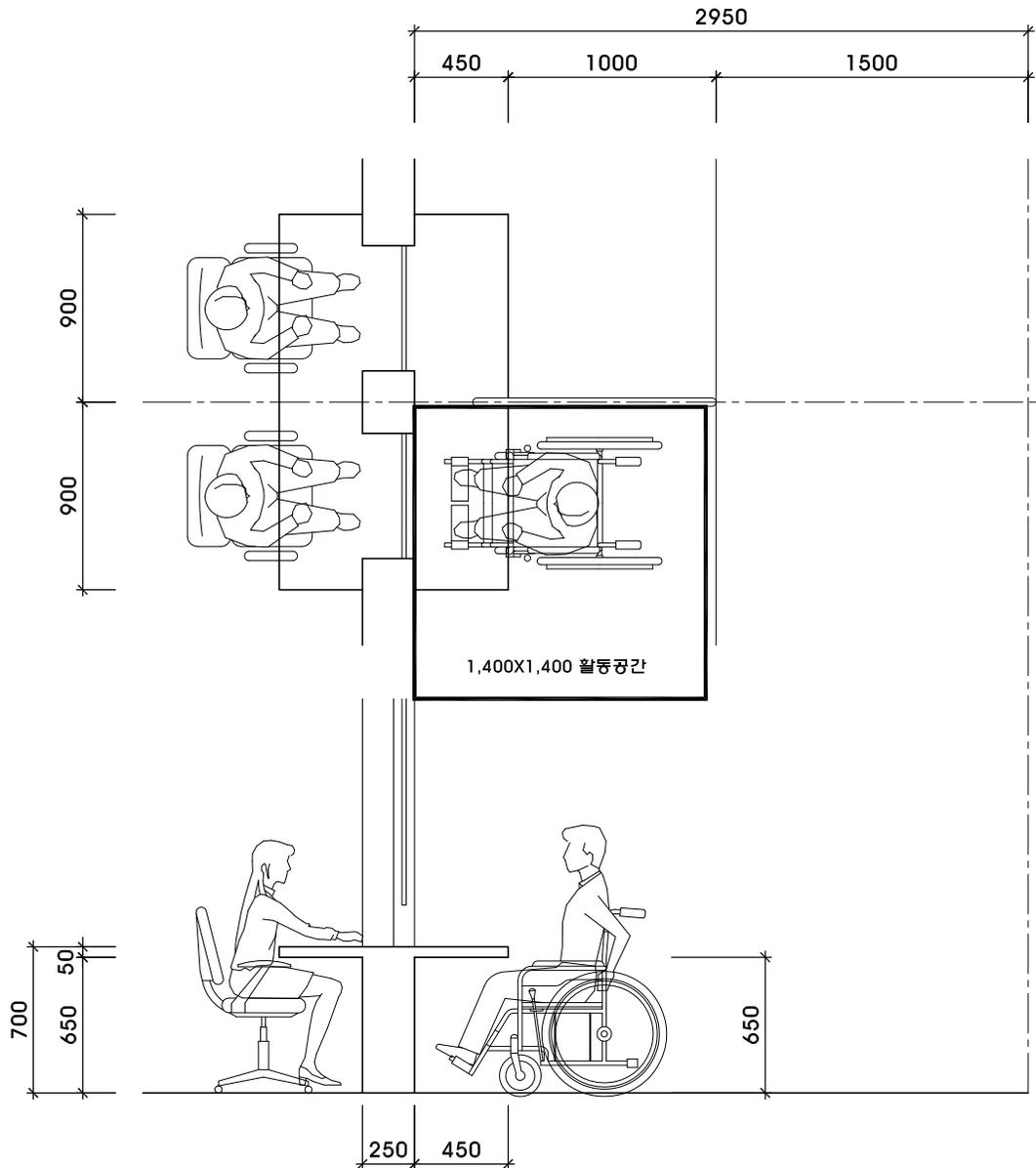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1-139
----	--------	----	-----------------------------------	-----------

세부항목	5.4.1 활동공간 및 구조
------	-----------------

- 1)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1 - 창구형 매표소의 구조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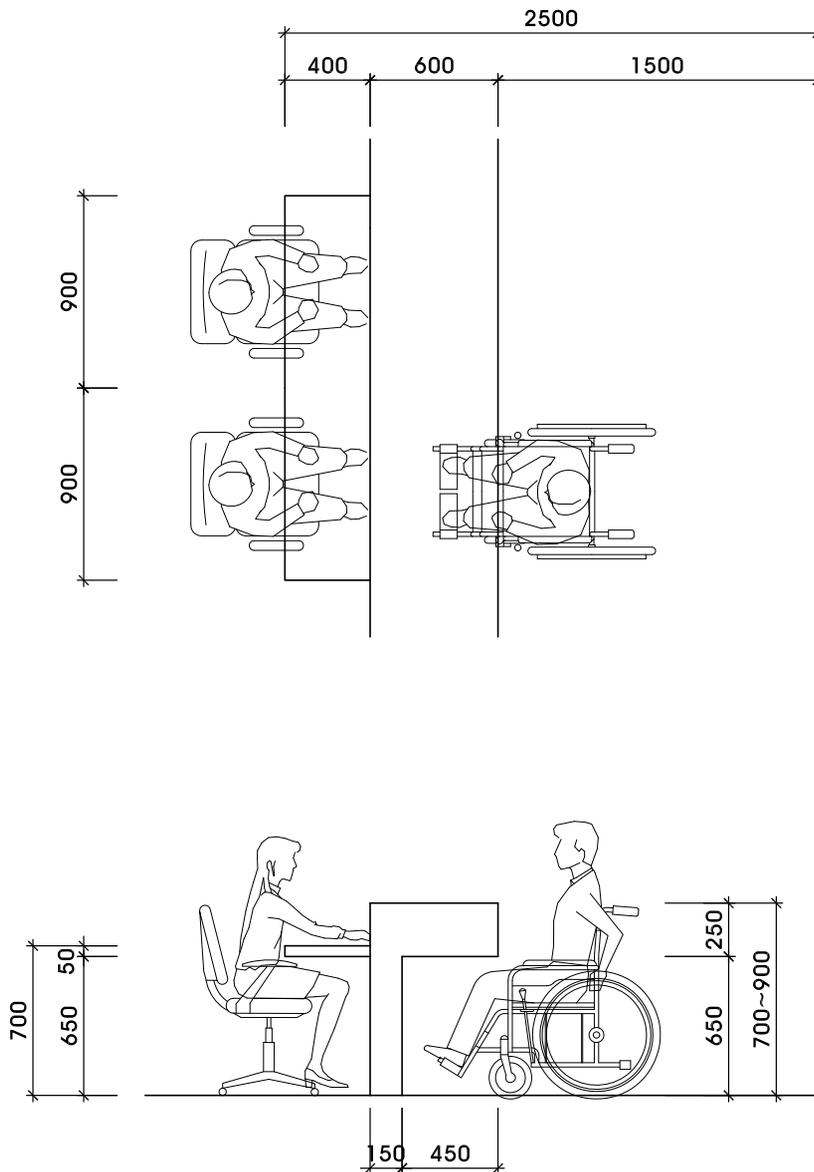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1-140
----	--------	----	-----------------------------------	-----------

세부항목	5.4.1 활동공간 및 구조
------	-----------------

- 1)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TYPE 02 - 오픈형 매표소의 구조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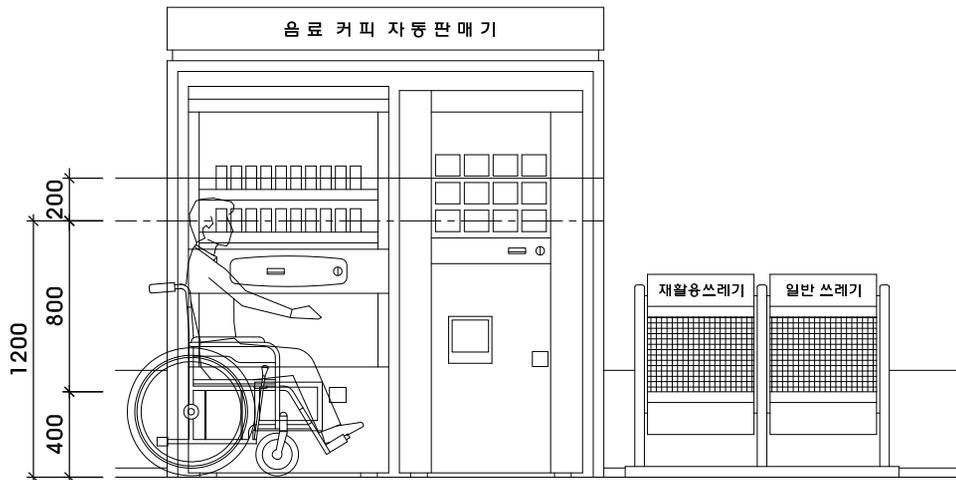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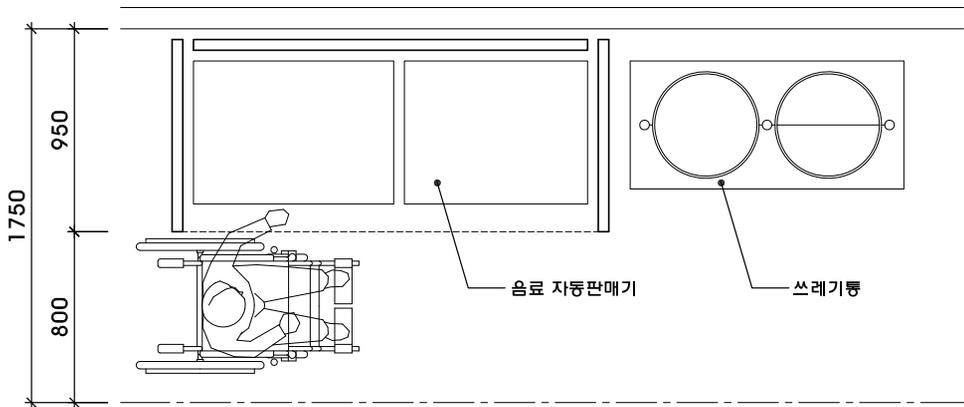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2-141
----	--------	----	-----------------------------------	-----------

세부항목 5.4.2 판매기/쓰레기통

- 1)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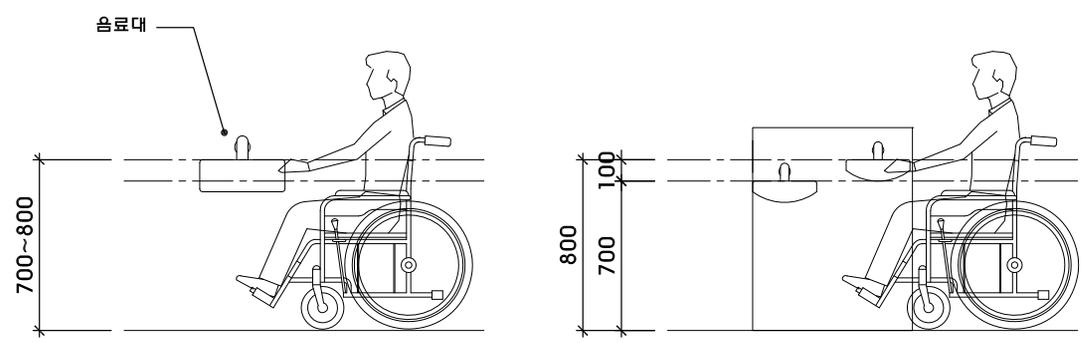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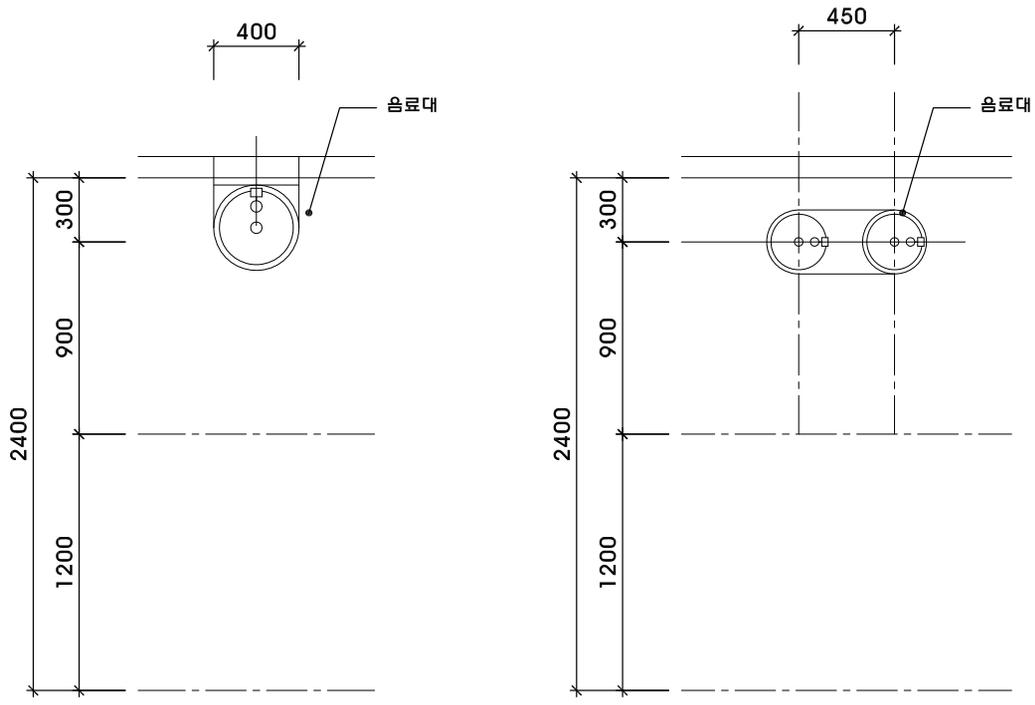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3-142
----	--------	----	-----------------------------------	-----------

세부항목 5.4.3 음료대

- 1)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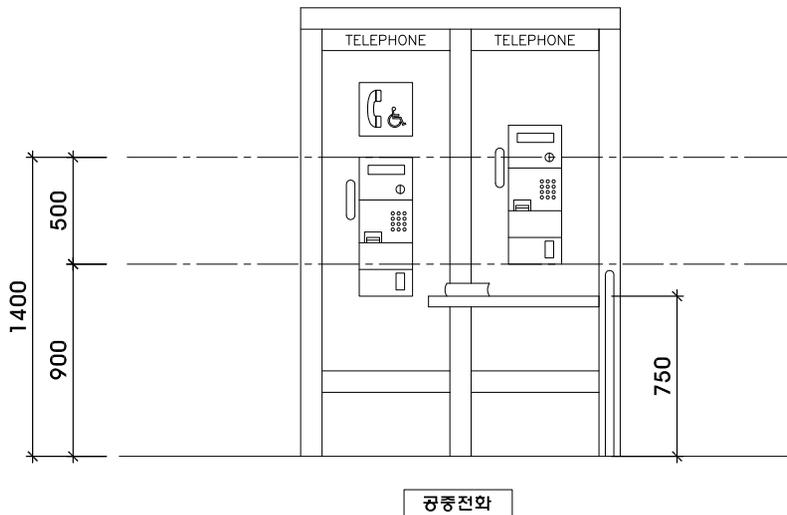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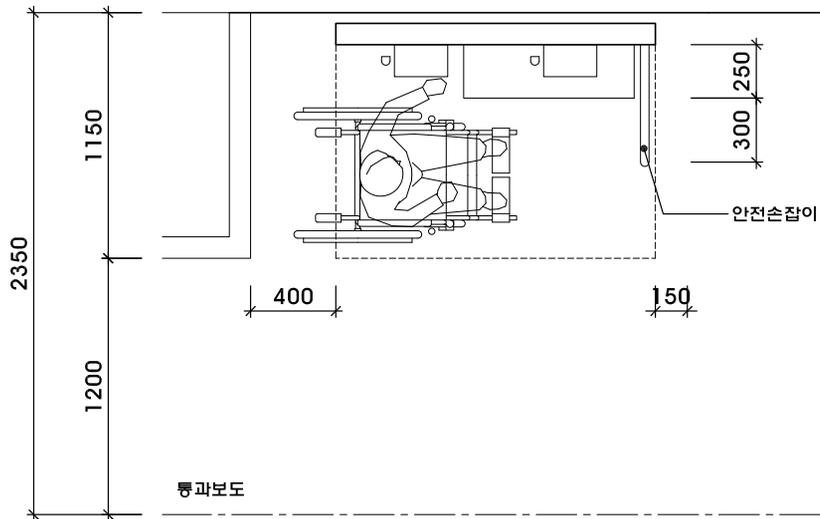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F-551-143
----	--------	----	-------------------------	-----------

세부항목 5.5.1 설치장소 및 구조

- 1)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4)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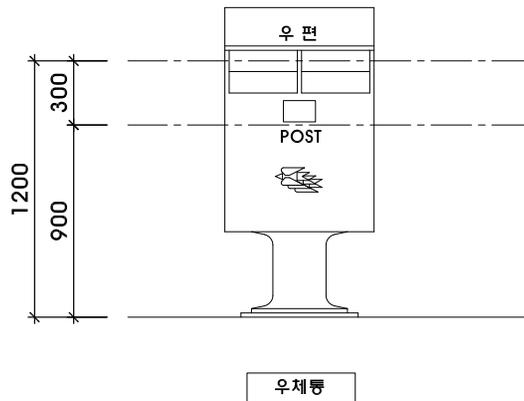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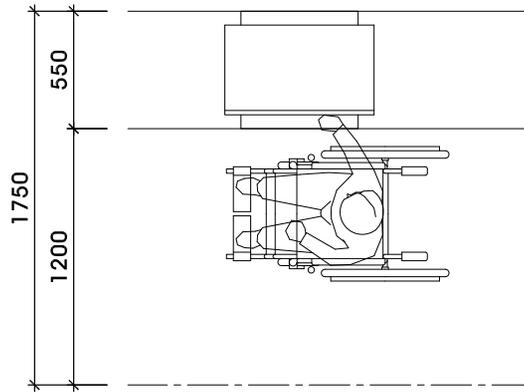
공중전화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F-561-144
----	--------	----	------------------------	-----------

세부항목	5.6.1 설치장소 및 구조
------	-----------------

- 1)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우체통 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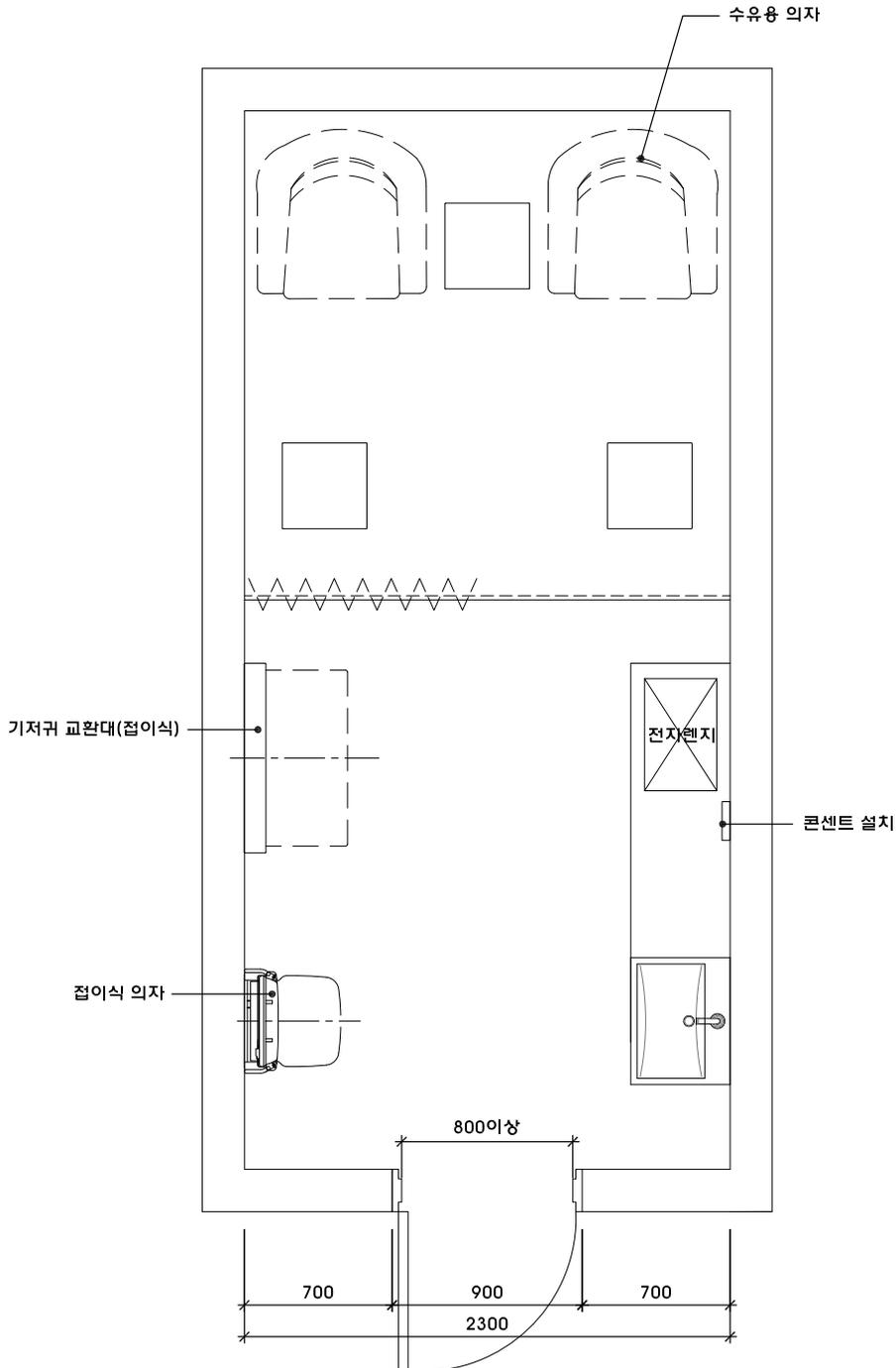


구분	5.기타시설	항목	5.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F-571-145
----	--------	----	--------------------	-----------

세부항목 5.7.1 설치장소 및 구조

- 1)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SCALE : 1/30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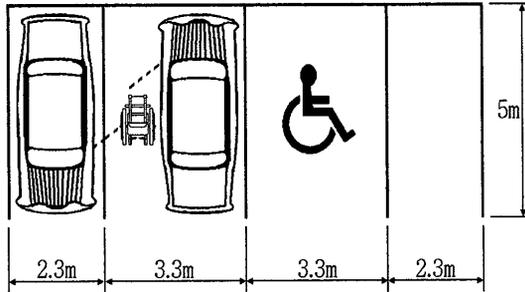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 - 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낫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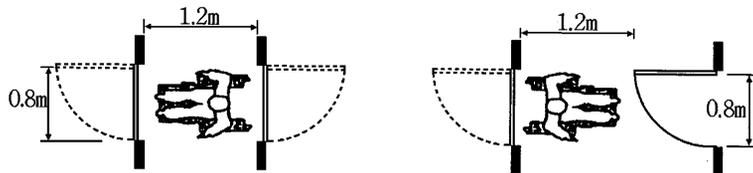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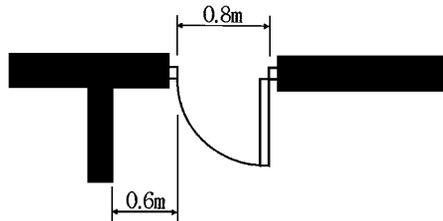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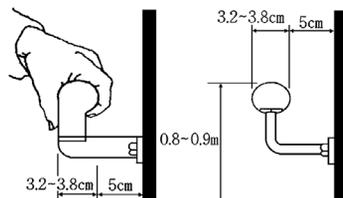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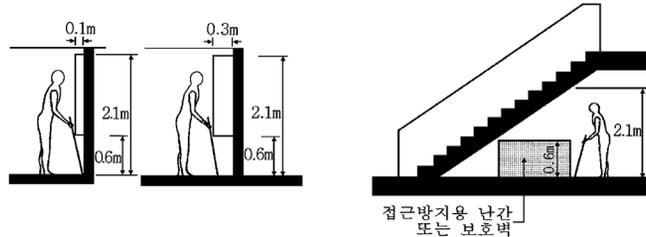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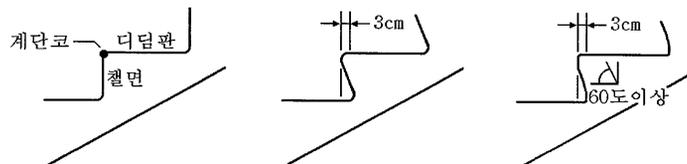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반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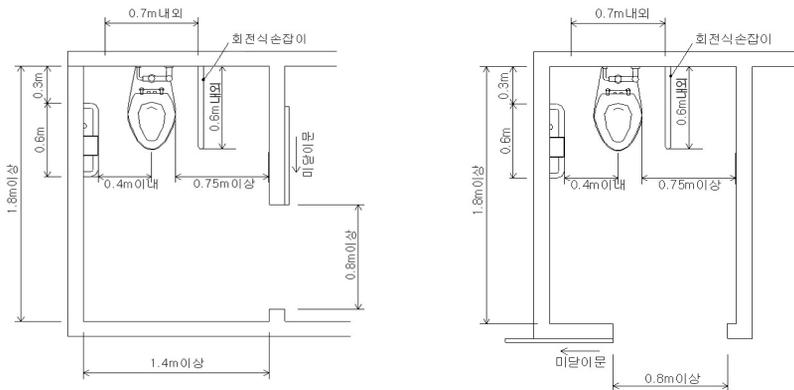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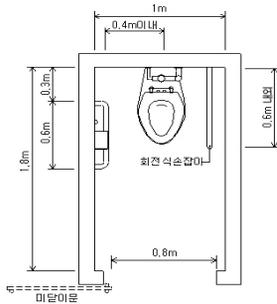
-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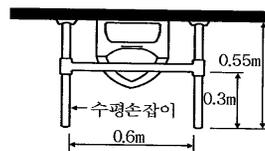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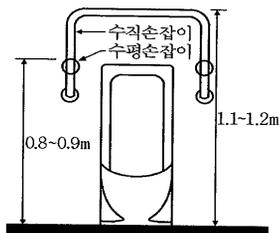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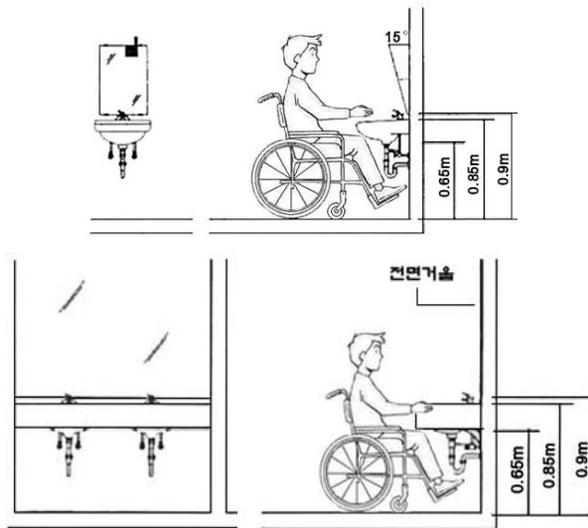
라. 세면대

(1) 구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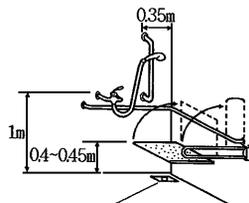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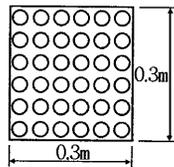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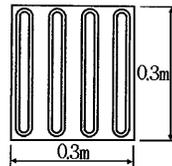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이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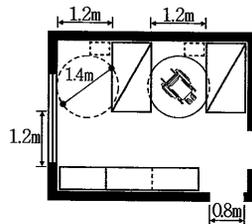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이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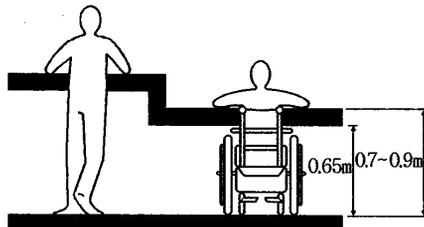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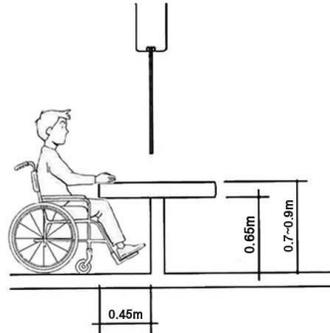
가. 활동공간

대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대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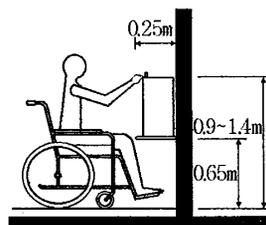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작진

- 제작책임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이증진연구부장, 공학박사)
- 연구원 이규일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이증진연구부 연구원, 공학박사)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이증진연구부 연구원, 공학박사수료)
이주송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이증진연구부 연구원)
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이증진연구부 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지훈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왕여진 (아름건축사사무소)

참여 자문단

- 장애인단체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이증진국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교수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윤영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 건축사 김진호 (인서울건축사사무소 대표)
신근식 (우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한 (친환경계획그룹청연 소장)
배경식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발행일 2011. 10. 27
 재발행일 2012. 12. 21
 발행인 임채민
 발행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 표준상세도 관련 문의처 : (02) 3433-0654

ISBN 978-89-94262-55-0 13540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